2023회계연도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결산
예 비 심 사 보 고 서

▢ 국 회 소관
▢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소관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 대 통 령 경 호 처 소관

2024. 9.

국 회 운 영 위 원 회

목 차

Ⅰ. 소관기관 결산 ····· 1

Ⅱ. 심사경과 ····· 2

Ⅲ. 개 요 ····· 3

Ⅳ.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7

Ⅴ. 대체토론 요지 ····· 292

Ⅵ.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배준영 위원장) 292

Ⅶ. 심사결과 ····· 296

Ⅷ. 소수의견 요지 ····· 296

Ⅸ. 시정요구사항 ····· 296

Ⅹ. 부대의견 ····· 297

[붙 임] 소관기관별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 ····· 299

2023회계연도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결산
예비심사보고서

2024. 9.

국회운영위원회

Ⅰ. 소관기관 결산

1. 국회 소관

○ 일반회계 : 세입 및 세출

2.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 일반회계 : 세입 및 세출

3.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 일반회계 : 세입 및 세출

4. 대통령경호처 소관

○ 일반회계 : 세입 및 세출

Ⅱ.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24년 5월 31일

2. 회부일자 : 2024년 6월 11일

3.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17회국회(임시회)

■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2024. 8. 27.)

- 국회 소관,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대통령경호처 소관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 제418회국회(정기회)

■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2024. 9. 9.)

- 국회 소관,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대통령경호처 소관(상정, 소위원회 회부)

■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2024. 9. 12.)

- 국회 소관,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대통령경호처 소관(상정, 심사, 의결)

■ 제3차 국회운영위원회(2024. 9. 25.)

- 국회 소관,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대통령경호처 소관
  (상정, 소위원회 심사보고, 의결)

Ⅲ. 개　요

1. 국회 소관

○ 세　입

- 세입예산액	41억 9,600만원
- 징수결정액	34억 3,700만원
- 수　납　액	32억 1,800만원
- 미 수 납 액	2억 500만원
- 불납결손액	1,500만원

○ 세　출

- 세출예산액	7,305억 6,300만원
- 전년도이월액	94억 2,200만원
- 이 · 전　용　액	68억 400만원
	△68억 400만원
- 세출예산현액	7,430억 1,800만원
- 지　출　액(91.0%)	6,957억 7,100만원
- 불　용　액(7.7%)	379억 2,500만원
- 이　월　액(1.3%)	93억 2,200만원

2.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 세 입

- 세입예산액	2,700만원
- 징수결정액	4,300만원
- 수 납 액	3,110만원

○ 세 출

- 세출예산액	410억 1,300만원
- 전 용 액	1억 2,700만원
	△1억 2,700만원
- 세출예산현액	410억 1,300만원
- 지 출 액(96.0%)	393억 7,100만원
- 불 용 액(3.1%)	12억 5,700만원
- 이 월 액(0.9%)	3억 8,400만원

3.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 세 입

- 세입예산액	2억 9,700만원
- 징수결정액	2억 8,300만원
- 수 납 액	2억 7,300만원
- 미 수 납 액	1,000만원

○ 세 출

- 세출예산액	985억 2,300만원
- 전 용 액	14억 2,800만원
	△14억 2,800만원
- 세출예산현액	985억 2,300만원
- 지 출 액(92.3%)	909억 4,300만원
- 불 용 액(7.7%)	75억 8,000만원

4. 대통령경호처 소관

○ 세 입

- 세입예산액	6,700만원
- 징수결정액	5억 1,400만원
- 수 납 액	5억 1,400만원

○ 세 출

- 세출예산액	1,163억 2,200만원
- 전년도이월액	1억 4,900만원
- 세출예산현액	1,301억 4,200만원
- 지 출 액(92.1%)	1,198억 600만원
- 불 용 액(3.6%)	46억 6,600만원
- 이 월 액(4.4%)	56억 6,900만원

Ⅳ.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 김 상 수)

국회 총괄

Ⅰ. 결산 개요

1. 세입세출 결산

가. 세 입

1) 수납실적

2023회계연도 국회 소관 세입은 일반회계만 있음. 세입예산액은 41억 9,600만원이었으나 34억 3,7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32억 1,800만원(93.6%)이 수납되었고, 2억 500만원(6.0%)이 미수납되었으며, 1,500만원(0.4%)이 불납결손되었음.

[2023회계연도 국회 소관 세입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불납결손액 (C)	미수납액 (A-B-C)	수 납 률 (B/A)
합 계	**4,196**	**3,437**	**3,218**	**15**	**205**	**93.6**
▢ 재산수입	**1,758**	**1,409**	**1,409**	**-**	**-**	**100.0**
- 관유물대여료	1,751	1,381	1,381	-	-	100.0
- 기타재산이자수입	7	28	28	-	-	100.0
▢ 경상이전수입	**1,086**	**958**	**738**	**15**	**205**	**77.0**
- 변상금 및 위약금	36	119	4	-	115	3.4

구 분	예 산 액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불납결손액 (C)	미수납액 (A-B-C)	수 납 률 (B/A)
- 기타경상이전수입	1,050	838	733	15	90	87.5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874**	**864**	**864**	**-**	**-**	**100.0**
- 면허료 및 수수료	92	59	59	-	-	100.0
- 기타잡수입	782	805	805	-	-	100.0
▢ 수입대체경비	**427**	**148**	**148**	**-**	**-**	**100.0**
- 기타잡수입	427	148	148	-	-	100.0
▢ 관유물매각대	**51**	**59**	**59**	**-**	**-**	**100.0**
- 기타고정자산매각대	51	59	59	-	-	100.0

예산액 대비 수납액 증가 주요 사유는 국회고성연수원 및 국회둔치주차장 사용료 등 기타잡수입 증가 등인 반면, 감소 주요 사유는 국고보조금 반납금 등 경상이전수입 감소 등임.

수납액의 주요내역은,

- 건물대여료 등 재산수입 14억 900만원
- 위약금 등 경상이전수입 7억 3,800만원
- 재화 및 용역 판매수입 8억 6,400만원
- 수입대체경비 1억 4,800만원
- 관유물 매각대 5,900만원 등임.

2) 미수납 내역 및 사유

미수납액 2억 500만원의 내역을 살펴보면, 국유재산 무단점유로 인해 가배두림(커피전문점)과 ㈜고촌정(식당)에 부과한 변상금 및 연체료 1억 5,100만원, 명예퇴직수당 환수금 및 가산금(2인 4,500만원), 퇴직자 등 급여 정산금액 반납금(300만원) 및 국회도서관 소송 승소비용 미수납액(600만원) 등임.

[2023년도 국회 소관 징수결정액 미수납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미수납액	미수납 사유
계	205	
▢ 경상이전수입	205	
- 변 상 금	115	· 국회의정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커피전문점) : 8,100만원 · 헌정기념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식당) : 3,400만원
- 기타경상이전수입	90	· 변상금 미납에 따른 연체료(커피전문점) : 3,600만원 · 변상금 미납에 따른 연체료(식당) : 100만원 · 명예퇴직수당 환수금(사무처직원) : 3,600만원 · 명예퇴직수당 환수금(보좌직원) : 900만원 · 퇴직자 등 급여반납금 : 300만원 · 도서 납본 거부 관련 행정소송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액(국회도서관) 미수납 : 600만원

3) 불납결손 내역 및 사유

불납결손액 1,500만원의 내역을 살펴보면, '가배두림' 및 '(주)고촌정'의 무단점유에 따라 부과한 변상금 및 연체료 중 일부 연체료(1,500만원)에 대한 소멸시효(5년) 경과로 불납결손 처리한 것임.

[2023년도 국회 소관 징수결정액 불납결손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불납결손액	불납결손 사유
계	15	
▢ 경상이전수입	15	
- 기타경상이전수입	15	· 변상금 미납에 따른 연체료(커피전문점) : 200만원 · 변상금 미납에 따른 연체료(식당) : 1,300만원

나. 세 출

1) 총 괄

2023년도 국회 소관 세출은 일반회계만 있음.

당초 예산액은 7,305억 6,300만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94억 2,200만원과 예비비 30억 3,400만원을 더한 예산현액은 7,430억 1,800만원임.

이 중 6,957억 7,100만원(93.6%)이 집행되었고 93억 2,200만원(1.3%)은 2024년도로 이월되었으며, 379억 2,500만원(5.1%)은 불용되었음.

[2023년도 국회 소관 세출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예 산 현 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 월 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이 용 증감(△)액	전 용 증감(△)액				
730,563	9,422	3,034	△2,168 2,168	△4,636 4,636	743,018	695,771	9,322	37,925

2) 집행 내역

가) 기관별 집행내역

2023년도 국회 소관 세출예산 집행액 6,957억 7,100만원 중 국회사무처는 5,880억 4,100만원(총 집행액 중 84.5%), 국회도서관은 703억 9,400만원(10.1%), 국회예산정책처는 200억 8,500만원(2.9%), 국회입법조사처는 172억 5,000만원(2.5%)을 각각 집행하였음.

[2023년도 국회 소관 세출 기관별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전년도이월액	예비비	이용증감(△)액	전용증감(△)액				
합 계	**730,563**	**9,422**	**3,034**	**△2,168 2,168**	**△4,636 4,636**	**743,018**	**695,771**	**9,322**	**37,925**
국회사무처	616,811	9,112	3,034	△2,168 2,168	△4,410 4,428	628,974	588,041	8,970	31,963
국회도서관	73,487	-	-	-	△142 124	73,469	70,394	-	3,075
국회 예산정책처	21,933	310	-	-	△44 44	22,243	20,085	352	1,806
국회 입법조사처	18,332	-	-	-	△40 40	18,332	17,250	-	1,082

나) 성질별 집행내역

2023년 국회 소관 세출예산 집행액 6,957억 7,100만원은 ①인건비 3,858억 800만원(총 집행액 중 55.5%), ②기본경비 318억 7,900만원(4.6%), ③주요사업비 2,780억 8,400만원(40.0%)으로 구성됨.

[2023년도 국회 소관 세출 성질별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본예산	추경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감) 예비비(증)	이용(감) 이용(증)	전용(감) 전용(증)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합 계	**730,563**	**730,563**	**9,422**	**3,034**	**△2,168 2,168**	**△4,636 4,636**	**743,018**	**695,771**	**9,322**	**37,925**
▢ 인건비	**397,862**	**397,862**	**-**	**-**	**△2,168**	**△605**	**395,089**	**385,808**	**-**	**9,282**
▢ 기본경비	**32,678**	**32,678**	**1,685**	**-**	**-**	**△129 735**	**34,969**	**31,879**	**1,188**	**1,900**
▢ 주요사업비	**300,023**	**300,023**	**7,736**	**3,034**	**2,168**	**△3,903 3,903**	**312,962**	**278,084**	**8,134**	**26,743**
국회사무처	**616,811**	**616,811**	**9,112**	**3,034**	**△2,168 2,168**	**△4,410 4,428**	**628,974**	**588,041**	**8,970**	**31,963**
인 건 비	339,948	339,948	-	-	△2,168	△534	337,246	332,138	-	5,108
기본경비	25,809	25,809	1,685	-	-	△77 629	28,046	25,520	1,070	1,455
주요사업비	251,054	251,054	7,427	3,034	2,168	△3,799 3,799	263,683	230,383	7,900	25,400
국회도서관	**73,487**	**73,487**	**-**	**-**	**-**	**△142 124**	**73,469**	**70,394**	**-**	**3,075**
인 건 비	30,668	30,668	-	-	-	△48	30,620	28,373	-	2,247
기본경비	2,216	2,216	-	-	-	△52 83	2,247	2,027	-	220
주요사업비	40,603	40,603	-	-	-	△42 42	40,603	39,995	-	608
국회예산정책처	**21,933**	**21,933**	**310**	**-**	**-**	**△44 44**	**22,243**	**20,085**	**352**	**1,806**
인 건 비	14,185	14,185	-	-	-	△23	14,162	13,020	-	1,143
기본경비	2,872	2,872	-	-	-	23	2,895	2,640	118	136
주요사업비	4,876	4,876	310	-	-	△21 21	5,186	4,425	234	527
국회입법조사처	**18,332**	**18,332**	**-**	**-**	**-**	**△40 40**	**18,332**	**17,250**	**-**	**1,082**
인 건 비	13,061	13,061	-	-	-	-	13,061	12,277	-	784
기본경비	1,781	1,781	-	-	-	-	1,781	1,692	-	89
주요사업비	3,490	3,490	-	-	-	△40 40	3,490	3,282	-	208

다) 프로그램 및 단위사업별 집행내역

2023년도 국회 소관 세출예산의 프로그램별 집행내역을 보면,

- 의정활동지원 프로그램 1,083억 9,300만원(15.6%),
- 국회사무처 운영 프로그램 1,219억 8,900만원(17.5%),
- 국회도서관 운영 프로그램 399억 9,500만원(5.7%),
- 국회예산정책처 운영 프로그램 44억 2,500만원(0.6%),
- 국회입법조사처 운영 프로그램 32억 8,200만원(0.5%),
- 국회행정지원 프로그램 4,176억 8,700만원(60.0%)이 각각 집행되었음.

[2023년도 국회 소관 프로그램 및 단위사업별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본예산	추 경	예산결정후 증감(△)액				예 산 현 액	집행액	다 음 연 도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이용	전용				
합 계	**730,563**	**730,563**	**9,422**	**3,034**	**△2,168 2,168**	**△4,636 4,636**	**743,018**	**695,771**	**9,322**	**37,925**
▢ 의정활동지원 (프로그램1000)	**124,076**	**124,076**	**433**	**3,034**	**-**	**△3,137 3,137**	**127,543**	**108,393**	**3,606**	**15,544**
- 의정지원(1031)	81,575	81,575	181	-	-	△2,244 49	79,561	69,004	847	9,710
- 위원회운영지원(1032)	13,126	13,126	232	760	-	△19 2,224	16,323	11,556	2,729	2,038
- 의회외교(1033)	16,726	16,726	20	2,274	-	△873 863	19,010	15,559	30	3,421
- 국회활동관련단체지원 (1034)	11,349	11,349	-	-	-	-	11,349	11,029	-	320
- 예비금(1035)	1,300	1,300	-	-	-	-	1,300	1,245	-	55
▢ 국회사무처 운영 (프로그램2000)	**126,978**	**126,978**	**6,993**	**-**	**2,168**	**△663 663**	**136,140**	**121,989**	**4,294**	**9,856**
- 의회운영지원(2031)	24,788	24,788	231	-	80	△137 26	24,988	22,677	334	1,976
- 법제활동지원(2032)	937	937	20	-	-	-	957	810	43	105
- 국회청사확보및시설관리 (2033)	45,753	45,753	2,177	-	2,089	△30 141	50,130	45,213	516	4,400
- 입법정보화(2034)	39,454	39,454	4,332	-	-	△496 496	43,786	38,250	2,562	2,974
- 의회운영교육수입대체경비 (2035)	427	427	-	-	-	-	427	295	-	132
- 국회방송운영(2036)	15,619	15,619	233	-	-	-	15,852	14,743	839	269
▢ 국회도서관 운영 (프로그램3000)	**40,603**	**40,603**	**-**	**-**	**-**	**△42 42**	**40,603**	**39,995**	**-**	**608**
- 도서관운영지원(3031)	4,264	4,264	-	-	-	△13 29	4,280	4,148	-	132
- 입법정보지원(3032)	1,212	1,212	-	-	-	13	1,225	1,216	-	9
- 도서관자료확충및보존 (3033)	7,763	7,763	-	-	-	△29	7,734	7,483	-	251
- 전자도서관운영(3035)	27,364	27,364	-	-	-	-	27,364	27,147	-	217
▢ 국회예산정책처 운영	**4,876**	**4,876**	**310**	**-**	**-**	**△21**	**5,186**	**4,425**	**234**	**527**

(단위 : 백만원)

구 분	본예산	추 경	예산결정후 증감(△)액				예 산 현 액	집행액	다 음 연 도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이용	전용				
(프로그램4000)						21				
- 기획관리및정책총괄지원(4031)	963	963	-	-	-	△912	966	841	47	78
- 국가재정·경제분석및의안비용추계(4032)	3,052	3,052	167	-	-	△129	3,215	2,619	187	409
- 예산정책처정보화(4033)	861	861	143	-	-	-	1,004	964	-	39
▢ 국회입법조사처 운영(프로그램5000)	3,490	3,490	-	-	-	△4040	3,490	3,282	-	208
- 기획관리및운영지원(5031)	519	519	-	-	-	25	544	519	-	25
- 입법및정책조사분석(5032)	2,016	2,016	-	-	-	△4015	1,991	1,836	-	155
- 입법조사처정보화(5033)	955	955	-	-	-	-	955	927	-	28
▢ 국회행정지원(프로그램7000)	430,540	430,540	1,685	-	△2,168	△734734	430,057	417,687	1,188	11,182
- 사무처인건비(7001)	339,948	339,948	-	-	△2,168	△534	337,246	332,138	-	5,108
- 도서관인건비(7002)	30,668	30,668	-	-	-	△48	30,620	28,373	-	2,247
- 예산처인건비(7003)	14,185	14,185	-	-	-	△23	14,162	13,020	-	1,143
- 조사처인건비(7004)	13,061	13,061	-	-	-	-	13,061	12,277	-	784
- 사무처기본경비(7011)	25,809	25,809	1,658	-	-	△77629	28,046	25,520	1,070	1,455
- 도서관기본경비(7018)	2,216	2,216	-	-	-	△5283	2,247	2,027	-	220
- 예산처기본경비(7019)	2,872	2,872	-	-	-	23	2,895	2,640	118	136
- 조사처기본경비(7020)	1,781	1,781	-	-	-	-	1,781	1,692	-	89

3) 이·전용내역

2023년도 국회 소관 세출예산 이·전용액은 68억 400만원임. 세부내역을 보면,

- 공공요금및제세 부족분 충당을 위하여 21억 6,800만원 이용되었으며,

- 일반용역비 부족분 충당을 위하여 22억 900만원,

- 국외업무여비 부족분 충당을 위하여 9억 200만원 등이 전용되었음.

[2023년도 국회 소관 결산 이·전용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이·전용액	주요 이·전용사유
의정활동지원	**3,137**	
- 의정지원	49	· 국회사무처 정책연구비 부족 등
- 위원회운영지원	2,224	· 특별위 일반용역비 부족 등
- 의회외교	863	· 국회사무처 국외업무여비 부족 등
국회사무처운영	**2,832**	
- 의회운영지원	106	· 국회사무처 공공요금 부족 등
- 국회청사확보 및 시설관리	2,230	· 국회사무처 공공요금 부족 등
- 입법정보화	496	· 국회사무처 일반연구비 부족
국회도서관운영	**42**	
- 도서관운영지원	29	· 국회도서관 일용임금 부족
- 입법정보지원	13	· 국회도서관 국외업무여비 부족
예산정책처운영	**21**	
- 기획관리 및정책총괄지원	12	· 국회예산정책처 국외업무여비 부족
- 국가재정·경제분석 및 의안비용추계	9	· 국회예산정책처 특근매식비 부족
입법조사처운영	**40**	
- 기획관리관운영지원	25	· 국회입법조사처 일반수용비 부족 등
- 입법및정책조사분석	15	· 국회입법조사처 정책연구비 부족
국회행정지원	**734**	
- 사무처 기본경비	629	· 국회사무처 일용임금 부족 등
- 도서관 기본경비	83	· 국회도서관 고용부담금 부족 등
- 예산처 기본경비	23	· 국회예산정책처 고용부담금 부족
합 계	**6,804**	

4) 다음연도 이월내역

2023년도 국회 소관 세출예산 중 2024년도로 이월된 예산액은 93억 2,200만원임. 세부내역을 보면,

- 연금개혁 방안에 대한 공론화 용역 24억 5,000만원,
- 국회방송 외주제작 7억 6,755만원,
- 사무처 기본경비 및 예산처 기본경비 이월 11억 8,800만원 등임.

[2023년도 국회 소관 결산 다음연도 이월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이월액	주요 이월사유
의정활동지원	**3,606**	
- 의정지원	847	· 계약체결 지연 등
- 위원회운영지원	2,729	· 연구용역 계약체결 지연 등
- 의회외교	30	· 연구용역 계약체결 지연
국회사무처운영	**4,294**	
- 의회운영지원	334	· 사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체결 지연 등
- 법제활동지원	43	· 연구용역 계약체결 지연
- 국회청사확보 및 시설관리	516	· 금년도 공사기간 부족
- 입법정보화	2,562	· 업무협의로 계약체결에 장기간 소요 등
- 국회방송운영	839	· 계약체결 지연 등
예산정책처운영	**234**	
- 기획관리 및 정책총괄 지원	47	· 용역 수행기간 확보
- 국가재정·경제분석 및 의안비용추계	187	· 연구용역 계약체결 지연
국회행정지원	**1,188**	
- 사무처 기본경비	1,070	· 기본경비 이월
- 예산처 기본경비	118	· 기본경비 이월
합 계	**9,322**	

5) 불용내역

2023년 국회 소관 세출예산 중 불용액은 379억 2,500만원임.

세부내역을 보면,

-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의정활동지원 예산 미집행액 155억 4,400만원,

-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운영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92억 8,100만원 등임.

[2023년도 국회 소관 결산 불용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불 용 액	주요 불용사유
의정활동지원	**15,544**	
- 의정지원	9,710	· 절약집행 및 집행잔액 등
- 위원회운영지원	2,038	· 절약집행 및 집행잔액 등
- 의회외교	3,421	· 사업계획 변경 및 집행잔액 등
- 국회활동관련단체지원	320	· 절약집행 및 집행잔액 등
- 예비금	55	· 절약집행 및 집행잔액 등
국회사무처운영	**9,856**	
- 의회운영지원	1,976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등
- 법제활동지원	105	· 절약집행 및 집행잔액 등
- 국회청사확보 및 시설관리	4,400	· 사업계획 변경,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등
- 입법정보화	2,974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등
- 의회운영교육 수입대체경비	132	· 절약집행 및 집행잔액 등
- 국회방송운영	269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등
국회행정지원	**11,182**	
- 인건비(소속기관 포함)	9,281	· 인건비 집행잔액
- 기본경비(소속기관 포함)	1,901	· 기본경비 집행잔액
국회도서관운영	**608**	· 사업비 집행잔액
예산정책처운영	**527**	· 사업비 집행잔액
입법조사처운영	**208**	· 사업비 집행잔액
합 계	**37,925**	

2. 예비비 지출 현황

2023년도 국회 소관 예비비는 30억 3,400만원이 지출 결정되었으나, 이 중 5억 7,700만원이 집행되고 24억 5,700만원이 불용되었음.

세부내역을 보면,

-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활동 지원 예비비 7억 6,000만원이 지출 결정되었고, 이 중 5억 7,7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1억 8,300만원은 불용되었음.

- 국회 대표단 방미(訪美) 지원 예비비 22억 7,400만원이 지출 결정되었고, 전액이 불용되었음[1].

[2023년도 국회 소관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구분 (세부사업)	지출결정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 용 액
일반예비비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활동 지원 (특별위 운영지원,1033-319)	760	577	-	183
	국회 대표단 방미(訪美) 지원 (의원외교활동, 1033-300)	2,274	-	-	2,274
	소 계	**3,034**	**577**	**-**	**2,457**

1) 국회사무처는 국회대표단의 방미 추진을 위한 미 의회와의 일정 조율 등을 추진하였으나, 미 의회 측 상황 변화에 따른 일정협의 곤란 등으로 방미를 추진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예비비를 전액 불용하였다는 설명임.

3. 국가채권 결산

2023년도 말 국회 소관 국가채권 현재액은 일반회계 5억 9,300만원임. 이는 2022년도 이전 발생액 3억 7,000만원에 2023년도 발생액 2억 2,400만원을 합한 금액임.

[2023년도 국회 소관 국가채권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채 권 종 류	2022년도 이전 발생액	2023년도 발생액	계
계	370	224	593
▢ 재산수입	-	-	-
- 관유물대여료	-	-	-
▢ 경상이전수입	204	1	205
- 변 상 금	115	-	115
- 기타경상이전수입	89	1	90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	-	-
- 면허료및수수료	-	-	-
▢ 기타수입	166	223	389
- 기타수입	166	223	389

Ⅱ. 재무결산

1. 재정상태표

재정상태표는 재정상태표 작성기준일 현재의 자산과 부채의 명세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 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성됨(「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2023회계연도 말 기준 국회 자산은 전기 대비 27억 6,900만원 증가한 6조 2억 5,300만원으로 무형자산이 147억 8,700만원, 투자자산이 8억 1,600만원 증가한 것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부채는 전기 대비 83억 100만원 증가한 490억 600만원으로 장기차입부채가 56억 500만원 증가한 것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2023년도 국회 재정상태표]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A)	2022(B)	증감	
			금액(C=A-B)	비율(C/B)
자 산	6,000,253	5,997,484	2,769	0.0
- 유동자산	3,678	3,943	(265)	(6.7)
- 투자자산	816	-	816	-
- 일반유형자산	5,919,299	5,931,825	(12,526)	(0.2)
- 무형자산	76,299	61,512	14,787	24.0
- 기타비유동자산	160	205	(45)	(22.0)
부 채	49,006	40,705	8,301	20.4
- 유동부채	15,537	12,840	2,697	21.0
- 장기차입부채	33,455	27,850	5,605	20.1
- 장기충당부채	14	16	(2)	(12.5)
- 기타유동부채	-	-	-	-
순자산(자산-부채)	5,951,247	5,956,779	(5,532)	(0.1)

2. 재정운영표

재정운영표는 회계연도 내 수행한 정책 또는 사업의 원가와 재정운영에 따른 원가의 회수명세 등을 포함한 재정운영결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프로그램순원가, 재정운영순원가, 재정운영결과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함(「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2023회계연도 국회의 프로그램순원가는 전기 대비 327억 6,200만원 증가한 2,827억 9,200만원이고, 재정운영결과는 전기 대비 498억 6,700만원 증가한 7,572억 5,600만원임.

[2023년도 국회 재정운영표]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A)	2022(B)	증감	
			금액(C=A-B)	비율(C/B)
Ⅰ.프로그램순원가	282,792	250,030	32,762	13.1
Ⅱ.관리운영비	477,562	462,340	15,222	3.3
Ⅲ.비배분비용	1	-	1	-
Ⅳ.비배분수익	3,099	4,981	(1,882)	(37.8)
Ⅴ.재정운영순원가(Ⅰ+Ⅱ+Ⅲ-Ⅳ)	757,256	707,389	49,867	7.0
Ⅵ.비교환수익 등	-	-	-	-
Ⅶ.재정운영결과(Ⅴ-Ⅵ)	757,256	707,389	49,867	7.0

3. 순자산변동표

순자산변동표는 회계연도 내 순자산의 변동명세를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기초순자산, 재정운영결과, 재원의 조달 및 이전, 조정항목, 기말순자산 등으로 구분함(「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

2023회계연도 기말순자산은 전기 대비 55억 3,200만원 감소한 5조 9,512억 4,700만원임.

[2023년도 국회 순자산변동표]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A)	2022(B)	증감	
			금액(C=A-B)	비율(C/B)
Ⅰ.기초순자산	5,956,779	5,946,682	10,097	0.2
Ⅱ.재정운영결과	757,256	707,389	49,867	7.0
Ⅲ.재원의조달및이전	751,975	709,428	42,547	6.0
Ⅳ.조정항목*	(251)	8,059	(8,310)	(103.1)
Ⅴ.기말순자산 (Ⅰ-Ⅱ+Ⅲ+Ⅳ)	5,951,247	5,956,779	(5,532)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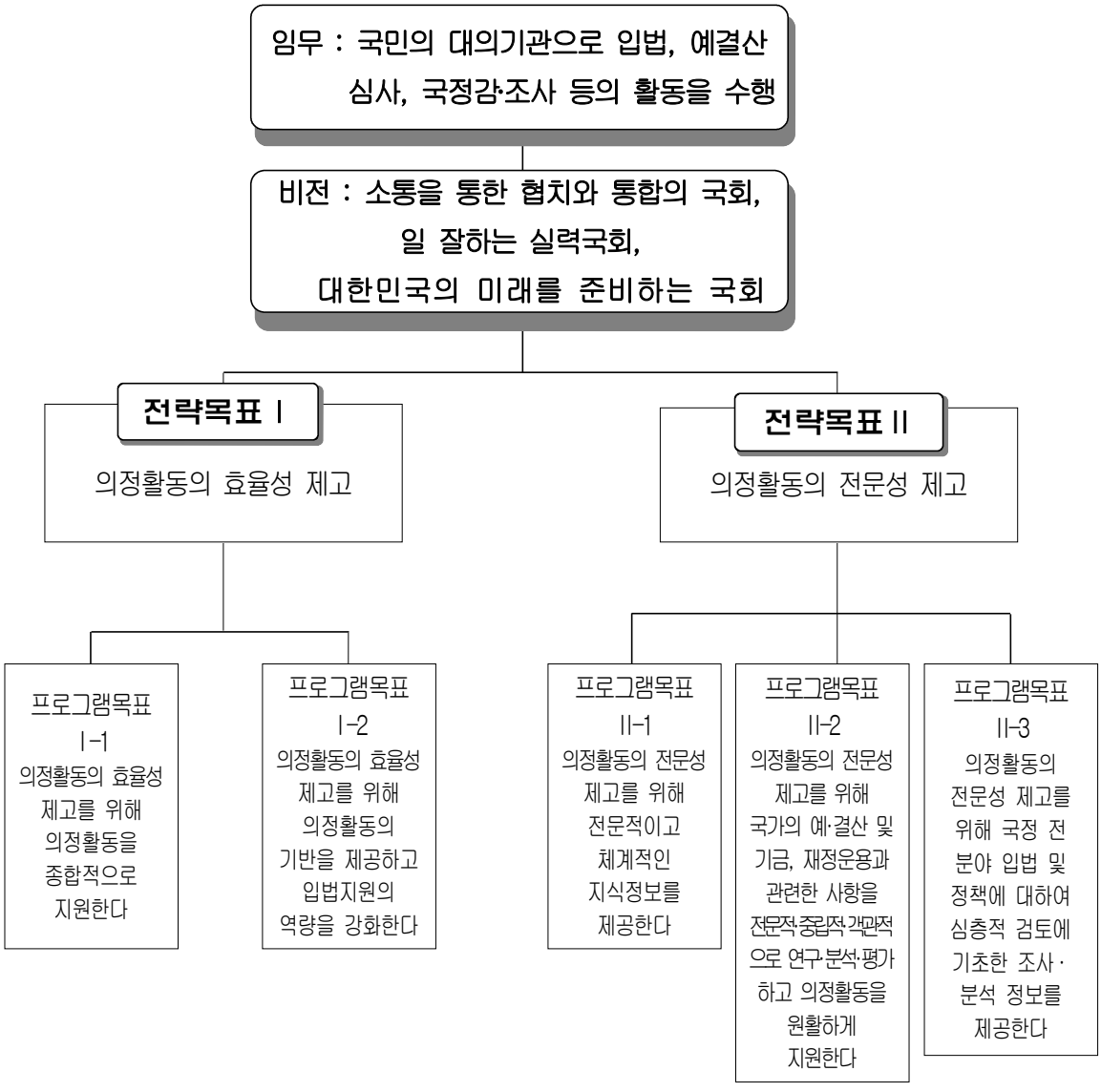
* 건물, 토지 등 자산재평가에 따른 건물 감가상각액과 토지 재평가이익 반영

Ⅲ. 2023회계연도 성과보고서 현황

1. 성과목표체계

2023년 국회 성과목표체계를 살펴보면, 의정활동의 효율성 제고와 전문성 제고를 전략목표로 설정함.

【 2023년 국회 성과목표체계 】



2. 성과목표 및 과제 현황

가. 전략목표 Ⅰ

전략목표 Ⅰ : 의정활동의 효율성 제고

전략목표 Ⅰ을 달성하기 위하여 2가지 프로그램목표와 9가지 관리과제를 설정함.

[2023년도 국회 소관 전략목표 Ⅰ]

성 과 목 표	관 리 과 제
[프로그램목표 Ⅰ-1] : 의정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의정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① 의정지원
	② 위원회운영지원
	③ 의회외교
	④ 국회활동관련단체지원
[프로그램목표 Ⅰ-2] : 의정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의정활동의 기반을 제공하고 입법지원의 역량을 강화한다	① 의회운영지원
	② 법제활동지원
	③ 입법정보화
	④ 의회운영교육 수입대체경비
	⑤ 국회방송운영

나. 전략목표 Ⅱ

전략목표 Ⅱ : 의정활동의 전문성 제고

전략목표 Ⅱ를 달성하기 위하여 3가지 프로그램목표와 10가지 관리과제를 설정함.

[2023년도 국회 소관 전략목표 Ⅱ]

성 과 목 표	관 리 과 제
[프로그램목표Ⅱ-1] : 의정활동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정보를 제공한다	① 도서관운영지원
	② 입법정보지원
	③ 도서관자료확충및보존
	④ 전자도서관운영
[프로그램목표Ⅱ-2] : 의정활동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국가의 예·결산 및 기금, 재정운용과 관련한 사항을 전문적·중립적·객관적으로 연구·분석·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한다	① 기획관리및정책총괄지원
	② 국가재정·경제분석및의안비용추계
	③ 예산정책처정보화
[프로그램목표Ⅱ-3] : 의정활동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국정 전 분야 입법 및 정책에 대하여 심층적 검토에 기초한 조사·분석 정보를 제공한다	① 기획관리및운영지원
	② 입법및정책조사분석
	③ 입법조사처 정보화

3. 성과목표관리체계와 예산사업과의 연계현황

2023년 성과목표관리체계와 예산사업의 연계현황을 살펴보면, 성과목표체계가 19개 예산사업(단위사업)과 연계되어 있음. 19개 사업의 예산 2,473억원 중 2,175억원이 집행되어 87.9%의 집행률을 보임.

[국회 성과목표체계와 예산사업과의 연계현황]

(단위 : 억원, %)

성과목표관리체계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3년 예산	'23년 결산	집행률
총 계					**2,473**	**2,175**	**87.9**
전략목표 I : 의정활동의 효율성 제고					**1,981**	**1,698**	**85.7**
프로그램목표 I -1 : 의정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의정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1,121**	**930**	**83.0**
의정활동지원	의정지원	일반회계	1000-1031		654	548	83.9
	위원회운영지원	일반회계	1000-1032		163	116	70.8
	의회외교	일반회계	1000-1033		190	156	81.8
	국회활동관련단체지원	일반회계	1000-1034		113	110	97.2
프로그램목표 I -2 : 의정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의정활동의 기반을 제공하고 입법지원의 역량을 강화한다					**860**	**768**	**89.3**
국회사무처 운영	의회운영지원	일반회계	2000-2031		250	227	90.8
	법제활동지원	일반회계	2000-2032		10	8	84.6
	입법정보화	일반회계	2000-2034		438	383	87.4
	의회운영교육 수입대체경비	일반회계	2000-2035		4	3	69.2
	국회방송운영	일반회계	2000-2036		159	147	93.0
전략목표 II : 의정활동의 전문성 제고					**493**	**477**	**96.8**

성과목표관리체계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3년 예산	'23년 결산	집행률
프로그램목표Ⅱ-1 : 의정활동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정보를 제공한다					**406**	**400**	**98.5**
국회도서관운영	도서관운영지원	일반회계	3000-3031		43	41	96.9
	입법정보지원	일반회계	3000-3032		12	12	99.3
	도서관자료확충및보존	일반회계	3000-3033		77	75	96.8
	전자도서관운영	일반회계	3000-3035		274	271	99.2
프로그램목표Ⅱ-2 : 의정활동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국가의 예·결산 및 기금, 재정운용과 관련한 사항을 전문적·중립적·객관적으로 연구·분석·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한다					**52**	**44**	**85.3**
예산정책처운영	기획관리및정책총괄지원	일반회계	4000-4031		10	8	87.1
	국가재정·경제분석및의안비용추계	일반회계	4000-4032		32	26	81.5
	예산정책처정보화	일반회계	4000-4033		10	10	96.1
프로그램목표Ⅱ-3 : 의정활동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국정 전 분야 입법 및 정책에 대하여 심층적 검토에 기초한 조사·분석 정보를 제공한다					**35**	**33**	**94.0**
입법조사처운영	기획관리및운영지원	일반회계	5000-5031		5	5	95.4
	입법및정책조사분석	일반회계	5000-5032		20	18	92.2
	입법조사처정보화	일반회계	5000-5033		10	9	97.1

국회사무처

Ⅰ. 결산 개요

1. 세입 결산

2023회계연도 국회사무처 소관 세입은 일반회계만 있음. 세입예산액은 41억 9,600만원이었으나 33억 1,0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30억 9,600만원(93.5%)이 수납되었고, 1억 9,900만원(6.1%)이 미수납되었으며, 1,500만원(0.4%)이 불납결손되었음.

[2023회계연도 국회사무처 소관 세입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불납결손액 (C)	미수납액 (A-B-C)	수 납 률 (B/A)
합 계	**4,196**	**3,310**	**3,096**	**15**	**199**	**93.5**
▢ 재산수입	**1,758**	**1,409**	**1,409**	**-**	**-**	**100.0**
- 관유물대여료	1,751	1,381	1,381	-	-	100.0
- 기타재산이자수입	7	28	28	-	-	100.0
▢ 경상이전수입	**1,086**	**831**	**617**	**15**	**199**	**74.2**
- 변상금 및 위약금	36	115	-	-	115	-
- 기타경상이전수입	1,050	716	617	15	84	86.2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874**	**864**	**864**	**-**	**-**	**100.0**
- 면허료 및 수수료	92	59	59	-	-	100.0

구 분	예 산 액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불납결손액 (C)	미수납액 (A-B-C)	수 납 률 (B/A)
- 기타잡수입	782	805	805	-	-	100.0
▢ 수입대체경비	**427**	**148**	**148**	**-**	**-**	**100.0**
- 기타잡수입	427	148	148	-	-	100.0
▢ 관유물매각대	**51**	**59**	**59**	**-**	**-**	**100.0**
- 기타고정자산매각대	51	59	59	-	-	100.0

예산액 대비 수납액 증가 주요 사유는 국회고성연수원 및 국회둔치주차장 사용료 등 기타잡수입 증가 등인 반면, 감소 주요 사유는 국고보조금 반납금 등 경상이전수입 감소 등임.

수납액의 주요내역은,

- 건물대여료 등 재산수입 14억 900만원
- 위약금 등 경상이전수입 6억 1,700만원
- 재화 및 용역 판매수입 8억 6,400만원
- 수입대체경비 1억 4,800만원
- 관유물 매각대 5,900만원 등임.

미수납액 1억 9,900만원의 내역을 살펴보면, 국유재산 무단점유로 인해 가배두림(커피전문점)과 ㈜고촌정(식당)에 부과한 변상금 및 연체료 1억 5,100만원, 명예퇴직수당 환수금 및 가산금(2인 4,500만원), 퇴직자 등 급여 정산금액 반납금(300만원) 등임.

[2023년도 국회사무처 소관 징수결정액 미수납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미수납액	미수납 사유
계	199	
▢ 경상이전수입	199	
- 변 상 금	115	· 국회의정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커피전문점) : 8,100만원 · 헌정기념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식당) : 3,400만원
- 기타경상이전수입	84	· 변상금 미납에 따른 연체료(커피전문점) : 3,600만원 · 변상금 미납에 따른 연체료(식당) : 100만원 · 명예퇴직수당 환수금(사무처직원) : 3,600만원 · 명예퇴직수당 환수금(보좌직원) : 900만원 · 퇴직자 등 급여반납금 : 300만원

불납결손액 1,500만원의 내역을 살펴보면, '가배두림' 및 '(주)고촌정'의 무단점유에 따라 부과한 변상금 및 연체료 중 일부 연체료(1,500만원)에 대한 소멸시효(5년) 경과로 불납결손 처리한 것임.

[2023년도 국회사무처 소관 징수결정액 불납결손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불납결손액	불납결손 사유
계	15	
▢ 경상이전수입	15	
- 기타경상이전수입	15	· 변상금 미납에 따른 연체료(커피전문점) : 200만원 · 변상금 미납에 따른 연체료(식당) : 1,300만원

국회사무처는 '가배두림'과 '고촌정'에 부과된 변상금 미수납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연체료 부과 및 독촉을 하였고, 관할 세무서에 위탁징수를 의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관할세무서로부터 "보유재산이 없는 등의 이유로 추심이 불가하다"는 통지를 받았음(가배두림: 2012. 8. 및 2014. 9., 고촌정: 2015. 10.).

2015년부터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채권회수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가배두림: 2015. 4., 고촌정: 2016. 3.) 2024년 현재까지 재산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나, 채권회수의 실익이 있는 재산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임.

국회사무처는 정기적인 독촉과 함께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관할세무서와의 협조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상황을 점검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2. 세출 결산

가. 총 괄

2023회계연도 국회사무처 소관 세출 예산액은 6,168억 1,100만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91억 1,200만원에 예비비 30억 3,400만원과 전용 순증액 1,800만원을 더한 예산현액은 6,289억 7,400만원임. 이 중 93.5%인 5,880억 4,100만원이 집행되었고, 1.4%인 89억 7,0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5.1%인 319억 6,3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국회사무처 소관 세출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불용률)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이용 증감(△)액	전용 증감(△)액				
616,811	9,112	3,034	△2,168 2,168	△4,410 4,428	628,974	588,041 (93.5)	8,970	31,963 (5.1)

2023년도 국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의 프로그램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 의정활동지원 프로그램 1,083억 9,300만원(18.4%),

- 국회사무처운영 프로그램 1,219억 8,900만원(20.7%),

- 국회행정지원 프로그램 3,576억 5,800만원(60.8%)임.

[2023년도 국회사무처 소관 프로그램별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본예산	추 경	예산결정후 증감(△)액				예 산 현 액	집행액	다 음 연 도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이용	전용				
합 계	**616,811**	**616,811**	**9,112**	**3,034**	**△2,168 2,168**	**△4,410 4,428**	**628,974**	**588,041**	**8,970**	**31,963**
▢ 의정활동지원 (프로그램1000)	**124,076**	**124,076**	**433**	**3,034**	**-**	**△3,137 3,137**	**127,543**	**108,393**	**3,606**	**15,544**
- 의정지원(1031)	81,575	81,575	181	-	-	△2,244 49	79,561	69,004	847	9,710
- 위원회운영지원(1032)	13,126	13,126	232	760	-	△19 2,224	16,323	11,556	2,729	2,038
- 의회외교(1033)	16,726	16,726	20	2,274	-	△873 863	19,010	15,559	30	3,421
- 국회활동관련단체지원 (1034)	11,349	11,349	-	-	-	-	11,349	11,029	-	320
- 예비금(1035)	1,300	1,300	-	-	-	-	1,300	1,245	-	55
▢ 국회사무처 운영 (프로그램2000)	**126,978**	**126,978**	**6,993**	**-**	**2,168**	**△663 663**	**136,140**	**121,989**	**4,294**	**9,856**
- 의회운영지원(2031)	24,788	24,788	231	-	80	△137 26	24,988	22,677	334	1,976
- 법제활동지원(2032)	937	937	20	-	-	-	957	810	43	105
- 국회청사확보및시설관리(2033)	45,753	45,753	2,177	-	2,089	△30 141	50,130	45,213	516	4,400
- 입법정보화(2034)	39,454	39,454	4,332	-	-	△496 496	43,786	38,250	2,562	2,974
- 의회운영교육수입대체경비(2035)	427	427	-	-	-	-	427	295	-	132
- 국회방송운영(2036)	15,619	15,619	233	-	-	-	15,852	14,743	839	269
▢ 국회행정지원 (프로그램7000)	**365,757**	**365,757**	**1,685**	**-**	**△2,168**	**△611 629**	**365,292**	**357,658**	**1,070**	**6,563**
- 사무처인건비(7001)	339,948	339,948	-	-	△2,168	△534	337,246	332,138	-	5,108
- 사무처기본경비(7011)	25,809	25,809	1,685	-	-	△77 629	28,046	25,520	1,070	1,455

나. 성질별 결산현황

2023년도 국회사무처 예산 집행내역을 성질별로 구분하면, 인건비 집행액은 전체 집행액 중 56.5%인 3,321억 3,800만원, 기본경비는 4.3%인 255억 2,000만원, 주요사업비는 39.2%인 2,303억 8,100만원임.

[국회사무처 성질별 예산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		2023년	
	예 산 액	집 행 액 (구성비)	예 산 액	집 행 액 (구성비)
인 건 비	335,094	323,336 (58.6)	339,948	332,138 (56.5)
기 본 경 비	24,607	23,413 (4.2)	25,809	25,520 (4.3)
주요사업비	231,082	205,251 (37.2)	251,054	230,381 (39.2)
합 계	**590,783**	**536,908**	**616,811**	**588,041**

다. 이·전용 내역

2023년도 국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 이·전용액은 65억 9,700만원임.

세부내역을 보면,

- 공공요금및제세 부족분 충당을 위하여 21억 6,800만원 이용되었으며,

- 일반용역비 부족분 충당을 위하여 22억 900만원,

- 국외업무여비 부족분 충당을 위하여 8억 7,700만원 등이 전용되었음.

[2023년도 국회사무처 소관 결산 이·전용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이·전용액	주요 이·전용사유
의정활동지원	**3,137**	
- 의정지원	49	· 국회사무처 정책연구비 부족 등
- 위원회운영지원	2,224	· 특별위 일반용역비 부족 등
- 의회외교	863	· 국회사무처 국외업무여비 부족 등
국회사무처운영	**2,832**	
- 의회운영지원	80	· 국회사무처 공공요금 부족
	26	· 국회사무처 국외업무여비 부족 등
- 국회청사확보 및 시설관리	2,089	· 국회사무처 공공요금 부족
	141	· 국회사무처 일반수용비 부족 등
- 입법정보화	496	· 국회사무처 일반연구비 부족
국회행정지원	**629**	
- 사무처 기본경비	629	· 국회사무처 일용임금 부족 등
합 계	**6,597**	

라. 다음연도 이월 내역

2023년도 국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 중 2024년도로 이월된 예산액은 89억 7,000만원임. 세부내역을 보면,

- 입법정보화 계약체결지연 25억 6,200만원,

- 연금개혁 방안에 대한 공론화 용역 24억 5,000만원,

- 사무처 기본경비 이월 10억 7,000만원 등임.

[2023년도 국회사무처 소관 결산 다음연도 이월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이월액	주요 이월사유
의정활동지원	**3,606**	
- 의정지원	847	· 계약체결 지연 등
- 위원회운영지원	2,729	· 연구용역 계약체결 지연 등
- 의회외교	30	· 연구용역 계약체결 지연
국회사무처운영	**4,294**	
- 의회운영지원	334	· 사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체결 지연 등
- 법제활동지원	43	· 연구용역 계약체결 지연
- 국회청사확보 및 시설관리	516	· 금년도 공사기간 부족
- 입법정보화	2,562	· 업무협의로 계약체결에 장기간 소요 등
- 국회방송운영	839	· 계약체결 지연 등
국회행정지원	**1,070**	
- 사무처 기본경비	1,070	· 기본경비 이월
합 계	**8,970**	

마. 불용 내역

2023년도 국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 중 불용액은 319억 6,300만원임.

세부내역을 보면,

-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의정활동지원 예산 미집행액 155억 4,400만원,

-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운영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51억 800만원 등임.

[2023년도 국회사무처 소관 결산 불용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불 용 액	주요 불용사유
의정활동지원	**15,544**	
- 의정지원	9,710	· 절약집행 및 집행잔액 등
- 위원회운영지원	2,038	· 절약집행 및 집행잔액 등
- 의회외교	3,421	· 사업계획 변경 및 집행잔액 등
- 국회활동관련단체지원	320	· 절약집행 및 집행잔액 등
- 예비금	55	· 절약집행 및 집행잔액 등
국회사무처운영	**9,856**	
- 의회운영지원	1,976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등
- 법제활동지원	105	· 절약집행 및 집행잔액 등
- 국회청사확보 및 시설관리	4,400	· 사업계획 변경,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등
- 입법정보화	2,974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등
- 의회운영교육 수입대체경비	132	· 절약집행 및 집행잔액 등
- 국회방송운영	269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등
국회행정지원	**6,563**	
- 인건비	5,108	· 인건비 집행잔액
- 기본경비	1,455	· 기본경비 집행잔액
합 계	**31,963**	

Ⅱ. 검토의견

1. 총괄 :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실적 개선 필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2]는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각 공공기관의 물품·용역 총 구매액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우선구매 비율”)이 1%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2023년도 국회사무처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살펴 보면, 물품·용역 총 구매액 678억 9,300만원 중 6억 800만원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에 집행하였고, 우선구매 비율은 0.90%임.

최근 국회사무처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이 매년 1%를 상회하였던 것을 감안하면 이는 다소 낮은 수치임.

---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중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⑥ (생 략)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구매실적이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작성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에는 공공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생 략)
③ 제1항 후단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 이상**(100분의 1을 초과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 있으면 그 비율을 말한다)이 되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구매액에 포함되는 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의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참고로, 국가기관·지자체·교육청 및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2023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의 전체 평균은 1.07%[3]임.

[연도별 국회사무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단위 : 천원)

연도	물품·용역 총 구매액(A)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B)	비율(B/A)
2020	59,386,605	680,810	1.15%
2021	48,416,359	615,873	1.27%
2022	59,566,836	686,674	1.15%
2023	67,893,215	608,247	0.90%

자료: 국회사무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제도는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 재활을 돕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4], 국회사무처는 국회의 소속기관으로서 동 제도와 관련된 법정 구매목표 비율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따라서 국회사무처는 물품·용역 구매 집행 부서 및 담당 직원 등을 대상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제도의 취지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청사 내부에서 공동 활용되는 물품을 비롯한 사무용품, 인쇄용역 등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의 적용이 용이한 분야를 발굴 및 확대

3)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303호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2023년 구매실적 및 2024년 구매계획 공고(안)> 참고

4)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는 등의 개선책을 강구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비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입법 및 정책개발(1031-302)

가. 개 요

「입법 및 정책개발」은 국회의원 개인의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의원 입법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국회의원의 입법정책 개발역량을 강화하려는 사업으로, 국회의원의 세미나·토론회·공청회·간담회 등 개최비용과 정책연구용역 비용 등을 지원함.

2023년도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액 76억 3,900만원에 이·전용(감) 4,600만원을 반영한 예산현액 75억 9,300만원 중 57억 1,600만원을 집행하였고, 18억 7,700만원은 불용하였음.

[2023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2023						2024
예산액	이·전용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7,639	△46	7,593	5,716	-	1,877	7,639

자료: 국회사무처

주요 집행내역은 ① 토론회 등 행사지원 35억 3,400만원, ② 연구용역 지원 13억 3,300만원, ③ 포상금 1억 7,000만원 등임.

나. 정책연구비의 적정규모 예산 편성 및 집행률 개선 필요

「입법 및 정책개발」 사업의 비목별 집행현황[5]을 살펴보면 정책연구비의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2023년도 정책연구비 예산액은 21억원 중 13억 3,300만원이 집행되고 7억 3,900만원이 불용되어 집행률은 63.5%이며, 최근 5년간 정책연구비 집행률은 낮아지는 추세임.

[2023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사업 비목별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A)	이·전용 등	예산 현액 (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본예산대비 (C/A)	현액대비 (C/B)
입법 및 정책개발	7,639	△46	7,593	5,716	1,877	74.8	75.3
- 일반수용비	4,654	-	4,654	3,534	1,120	75.9	75.9
- 특정업무경비	688	△8	680	679	1	98.7	98.7
- 정책연구비	2,100	△28	2,072	1,333	739	63.5	64.3
- 포상금	197	△10	187	170	17	86.3	86.3

자료: 국회사무처

5) [비목별 집행 기준]
- 일반수용비: 입법 및 정책개발 행사 및 활동과 관련되는 자료발간비, 도서구입비, 전문가사례금, 물품구입비, 장소·장비 사용료 등에 집행
- 정책연구비: 여론수렴, 조사연구 등을 위한 1회 1,000만원(두 명 이상의 의원이 공동 발주 시 2,000만원 상한) 이하의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연구용역에 집행
- 특정업무경비: 입법 및 정책개발 행사와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일반수용비나 정책연구비로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 집행
- 포상금: 입법 및 정책개발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하여 포상하는 경비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입법활동 부문 등 수상 결과를 고려

[최근 5년간 연도별 정책연구비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이전용등	예산현액(B)	집행액(C)	불용액	집행률	
	본예산(A)	추경					본예산대비(C/A)	현액대비(C/B)
2019	1,200	1,200	200	1,400	1,323	77	110.3	94.5
2020	1,200	810	100	910	886	24	73.8	97.4
2021	1,200	1,200	-	1,200	1,191	9	99.2	99.2
2022	1,200	1,200	-	1,200	909	291	75.8	75.8
2023	2,100	2,100	△28	2,072	1,333	739	63.5	64.3

자료: 국회사무처

정책연구비는 입법 및 정책개발 목적의 여론 수렴, 조사 연구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으로, 1회 최대 1,000만원(두 명 이상의 의원이 공동 발주하는 경우는 최대 2,000만원) 이하의 연구용역에 집행하며, 의원 개인별로 배분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한 후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사후 보전하는 방식으로 집행이 이루어짐.

이에 대하여 국회사무처는 코로나-19 이후 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외부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하여, 2023년도 정책연구비 예산의 전년 대비 증액(9억원 증)을 추진하는 한편, 연구용역 비용 지원의 상한을 1건당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집행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2023년도 결산상 정책연구비의 집행률은 63.5%로 7억 3,9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의원실마다 집행 수요에 편차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의 궐원 및 국무위원 겸직 등에 따른 미집행[6], 정보

공개 청구, 언론 보도 및 연구용역 표절 검사 의무화[7] 등의 영향으로 정책연구비의 집행이 예상 대비 소극적으로 이루어진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임.

최근 5년간 정책연구비의 실집행 규모가 9억원에서 13억원 내외였다는 점, 연구용역 계약 절차와 결과물 품질 관리 등에 대한 사회적·제도적인 요구 수준이 엄격해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2023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사업의 정책연구비 예산액은 실수요 및 집행 가능성 대비 과다 편성된 측면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국회사무처는 「입법 및 정책개발」 사업 정책연구비의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집행 소요에 부합하는 적정 예산액을 편성하는 한편, 의원실을 대상으로 정책연구비의 집행 대상, 활용 방법 및 표절 검사 방법 등에 관한 안내·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

6)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직하고 있을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은 입법 및 정책개발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다만, 겸직이 종료된 경우 종료 시부터 일할 계산하여 예산 배분)

7) "연구용역 결과물의 표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2023년부터 연구용역 결과물의 표절검사를 의무화하였습니다. 각 의원실에서는 연구용역 결과물이 공개대상이라는 점을 참고하시어 카피킬러, KCI 문헌 유사도 검사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표절여부를 확인하신 후 결과지와 함께 연구용역비 지급을 신청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국회사무처의 정책연구용역 표절여부 판단 기준은 100분의 20임을 알려드리니 표절여부의 판단에 참고바랍니다."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집행 안내자료」, 2024.1,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

3. 의원외교활동 (1033-300)

가. 개 요

「의원외교활동」은 외빈초청외교와 의원방문외교를 실시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협력기반을 확대하고 국가적 현안 해결의 통로를 확보하며, 의회 인사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임.

2023년도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전년도 이월액 2,000만원과 전용(감) 3억 4,000만원 및 예비비 22억 7,400만원[8]이 반영된 예산현액 142억 5,200만원 중 110억 3,100만원(77.4%)을 집행하고, 3,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1억 9,1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3년도 의원외교활동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2023								2024
본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등	예비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12,299	20	△340	2,274	14,252	11,031	30	3,191	15,219

자료: 국회사무처

주요 집행내역은 ① 방문외교 89억 1,500만원, ② 외빈초청 및 의전행사 10억 7,400만원, ③ 의원외교활동 공통경비 10억 4,200만원 등임.

8) 국회대표단 방미 추진을 위한 예비비(22억 7,400만원)는 미 의회 측 사정변경 등으로 인하여 최종적으로 방미가 결렬됨에 따라 전액 불용됨.

나. 초청외교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의원외교활동 사업은 크게 초청외교, 방문외교 및 국제회의 부문으로 구분됨. 2023년도 의원외교활동 부문별 계획[9] 대비 실적 현황을 살펴보면, 타 부문 대비 초청외교의 실적이 상대적으로 부진하였음.

초청외교의 경우 총 57건을 계획하였으나 성사 실적은 15건(26.3%)에 그쳤는데, 특히 의원친선협회 초청의 경우 계획 20건 대비 실적은 4건이며, 상임위원장 초청의 경우는 계획 10건 대비 실적이 전무하였음.

이에 비해 방문외교의 경우 총 74건의 계획 중 67건(90.5%), 국제회의의 경우 총 22건의 계획 중 21건(95.5%)을 추진하였음.

9) 「국회의원의 외교활동 등에 관한 규정」은 의회외교활동의 효율적·체계적 수행과 지원을 위하여 매년 의회외교활동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국회사무처는 동 규정에 기하여 의회외교활동을 초청외교, 방문외교, 국제회의 부문으로 구분하여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음.

[2023년도 의원외교활동 부문별 계획 대비 실적]

(단위 : 건)

구 분		계 획	실 적 (계획대비 비율)
초청외교	의 장 단	20	9
	상임위원장	10	-
	의원친선협회	20	4
	기 타	7	2
	소 계	**57**	**15 (26.3%)**
방문외교	의 장	10	9
	부 의 장	2	3
	한일의회미래대화	1	-
	한·중정기교류체제	1	-
	의원친선협회	39	20
	의회외교포럼	6	4
	특정현안	15	31
	소 계	**74**	**67 (90.5%)**
국제회의	참 석	19	18
	개 최	3	3
	소 계	**22**	**21 (95.5%)**
총 계		153	103 (67.3%)

자료: 국회사무처

초청외교의 부문의 실적 부진은 의원외교 활동의 균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사업 간 과다한 예산 조정과 예산 불용을 유발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음.

세사업별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초청외교에 해당하는 “외빈초청 및 의전행사”의 경우 당초 예산액 33억 700만원에서 내역 조정(감) 16억 2,300만원이 반영된 예산현액 16억 8,400만원 중 10억 7,400만원을 집행하고, 6억 1,0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3년도 의원외교활동 세사업별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세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등	예비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의원외교활동	12,299	20	△340	2,274	14,252	11,031	30	3,191	15,219
· 방문외교	7,318	-	1,786	2,274	11,378	8,915	-	2,463	7,318
· 외빈초청 및 의전행사	3,307	-	△1,623	-	1,684	1,074	-	610	4,393
· 의원외교활동 공통경비	1,674	20	△503	-	1,190	1,042	30	118	1,258
· 워싱턴 의회 교류센터	-	-	-	-	-	-	-	-	2,250

자료: 국회사무처

이에 대하여 국회사무처는 코로나-19의 종식으로 방문외교가 활발히 추진되었던 반면, 초청외교의 경우는 우리측 초청자와 상대국 피초청자 간의 시기 조율이 어렵거나 상대측에서 방한 의사를 표명하지 아니함에 따라 초청외교 계획분의 상당수가 성사되지 못하였다는 설명임.

그러나, 초청외교가 한국의 정치·경제·문화에 대한 상대국의 이해를 제고하고 양국 의회 간 우호적인 교류·협력 환경의 조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의회외교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초청외교를 활성화하

기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기존의 초청외교는 그 대상자를 해외국 의장단을 중심으로 선정함에 따라 초청사업의 성사 여부가 상대국의 정세나 정치 일정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측면이 있었으므로,

경제협력·안보·첨단기술 등 주요 현안과 관련성이 있는 각국 의회 상임위원장, 의원친선협회, 개별 의원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초청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국회사무처의 의회외교 지원 역량을 초청외교에 보다 집중하여 외빈 방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등 초청외교의 실적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음.

4. 국회미래연구원(1034-308)

가. 개 요

국회미래연구원은 단기간 현안분석에 초점을 두는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와 달리 미래 환경 변화의 예측·분석 및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 도출을 통해 국회의 정책역량 강화와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범된 국회출연기관으로서, 「국회미래연구원법」(2017년 12월 12일 제정, 2018년 3월 13일 시행)에 근거하여 2018년 5월 28일 출범하였음.

「국회미래연구원」은 국회미래연구원에 대한 운영 및 연구비용을 출연하는 사업으로, 2023회계연도 출연금 예산현액 40억 8,000만원 중 40억 2,000만원을 집행(예산현액 대비 98.5%)하고, 6,000만원은 불용(예산현액 대비 1.5%)하였음.

[2023회계연도 국회미래연구원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기관운영출연금 (350-01)	2,534	2,534	-	-	2,534	2,474	60	2,615
사업출연금 (350-02)	1,546	1,546	-	-	1,546	1,546	-	1,646
합 계	**4,080**	**4,080**	**-**	**-**	**4,080**	**4,020**	**60**	**4,261**

자료: 국회사무처

국회미래연구원 출연금의 실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 경상운영비 및 시설구축운영비가 포함된 기관운영출연금(350-01)의 경우 24억 7,400만원이 출연되었고, 전년도 이월액 1,300만원 및 자체수입 4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24억 9,100만원임. 이 중 24억 8,500만원을 집행하고, 600만원은 불용하였음.

사업출연금(350-02)의 경우 15억 4,600만원이 출연되었고, 전년도 이월액 2,4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5억 7,000만원임. 이 중 15억 4,700만원을 집행하고 2,300만원은 불용하였음.

[시설관리 및 개선 내 실시설계비 및 공사비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자체 수입[10]	예산 현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기관운영출연금 (350-01)	2,474	13	4*	2,491	2,485	-	6
사업출연금 (350-02)	1,546	24	-	1,570	1,547	-	23
합 계	**4,020**	**37**	**4**	**4,061**	**4,032**	**-**	**29**

자료: 국회미래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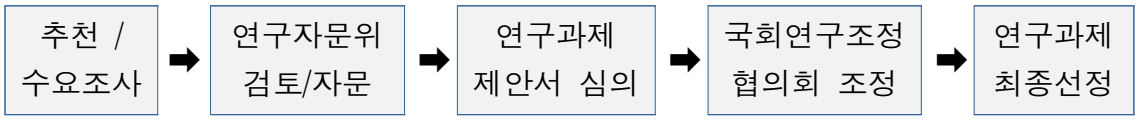
10) 이자수입 350만원 및 법인카드 할인액인 기타 잡수입 50만원임

나. 연구과제 추천제도 활성화 필요

국회미래연구원은 그 설립목적[11]에 따라 미래 환경의 변화를 예측·분석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출하기 위하여 2023년의 경우 총 35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였음.

연구과제 선정은 ① 「국회미래연구원법」에 따라 국회의장, 국회 상임위 및 특위의 추천 또는 ② 국회를 포함한 외부 전문가 및 내부 연구진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③ 연구자문위원회의 검토, 연구위원회의 심의, 국회 연구조정협의회를 통한 조정·협의 및 이사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이루어지고 있음.

[국회미래연구원 연구과제 선정 절차 흐름도]



자료: 국회미래연구원 제출자료 바탕으로 재작성

이 중 국회의장, 국회 상임위 및 특위의 추천과 관련하여, 국회미래연구원은 「국회미래연구원법」 제14조제1항[12]에 따라 매 분기말에 국회의장, 국회 상임위원회와 국회의원실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연구과제를 추천받고 있음.

다만, 국회미래연구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및 2023년의

11) **「국회미래연구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미래연구원을 설립하여 미래 환경의 변화를 예측·분석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출함으로써 국회의 정책역량 강화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국회미래연구원법」 제14조(연구과제의 추천 및 선정)** ① 의장, 국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는 미래연구원에 연구과제를 추천할 수 있다.

경우 국회의장이 추천한 연구과제는 없고, 상임위 또는 특위에서 추천한 연구과제 건수는 총 12건(2022년 8건/2023년 4건)으로, 추천제도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고 보임.

[2022년 및 2023년 연구과제 추천제도 실시 현황]

구 분	추천인	추천 연구과제명	연구과제 선정여부
2022년 (8건)	박대수 환경노동위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노동 현장 변화에 관한 연구	선정
		미래 노동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국회의 역할	선정
	최연숙 보건복지위원	미래 초고령사회 대비 국가 간호·돌봄체계 발전 과제와 전략	선정
	권인숙 여성가족위원	혐오사회에서 평등법의 의의와 국가간 비교법적 의미	선정
	김예지 문화체육 관광위원	탈시설 장애인과 시설거주 장애인의 만족도 비교 연구	선정
		장애인 탈시설 후 (돌봄이 아닌) 자립지원체계에 관한 해외 사례 연구	선정
		국회 법제실의 장애인식에 따른 입법 영향 연구	-
		최중중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현황 및 개선 방향 연구	선정
2023년 (4건)	이은주 환경노동위원	노동안전건강 의제의 사회화와 국회의 역할	선정
	최연숙 보건복지위원	적절한 병상자원을 위한 전략과 관리방안	-
	진선미 기획재정위원	근로자의 식대비과세 한도 상향 등 입법 및 행정적 조치가 4대사회보험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	-
	김태호 외교통일위원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과의 미래 대화	선정

자료: 국회미래연구원 제출자료 바탕으로 재작성

앞에서 살펴본 '국회의장, 국회 상임위 및 특위의 연구과제 추천제도'는 국회미래연구원의 연구성과가 국회입법과 정부정책으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국회 상임위 및 특위와 연계되어 유기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으므로, 연구과제 선정부터 입법기관의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연구에 반영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이해됨.[13)]

따라서, 국회미래연구원은 향후 연구과제 선정 시 연구성과가 유의미한 입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구과제 추천제도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다. 자료제공 요청규정 활용방안 모색 필요

「국회미래연구원법」 제16조[14)]는 국회미래연구원은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 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연구수행에 필

13) 국회운영위원회 회의록_20대_제354회국회(정기회)_2017. 11. 15.

○ **조응천 위원** 그런데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해왔듯이 상임위와 유기적으로 연구원이 돌아가려면상임위에서도 상임위 의결로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12조에?
○ **국회사무총장 김교흥** 상임위에서 연구과제로 의뢰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방법이지요.
○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연구원의 선정 시 상임위 의견을 반영해서 하도록 그렇게....
○ **조응천 위원** 그렇지요. 상임위에서 의뢰할 수 있어야지 그것도 상임위에서 써 먹지.

14) 「국회미래연구원법」 제16조(자료의 협조요청) ① 미래연구원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단체에 대하여 연구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국회미래연구원이 수행하는 미래연구가 현재 상황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바탕으로 보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래 전망을 제시할 수 있도록,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규정으로 이해되나, 「국회미래연구원법」이 제정된 2017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해당 규정을 통해 자료제공을 요청한 사례는 없어 사실상 사문화 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됨.

이에 대하여 국회미래연구원은 정부의 정책 현황이나 국가기관에서 관리하는 정보를 확보하여 이를 분석 · 평가하고 연구에 활용하기 위한 자료제공 요청의 필요성은 있으나, 실제 자료요청에 필요한 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아 활용이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음.

국회미래연구원이 미래 환경의 변화를 예측·분석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기관의 설립취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연구분야의 소관 국가기관과 관련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회미래연구원은 향후 국회사무처와 협의를 통해 자료제공 요청을 위한 행정적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해당 규정을 활용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5. 언론·공보활동 및 국회박물관 운영 (2031-302)

가. 개 요

「언론·공보활동 및 국회박물관 운영」은 국회 의정활동 홍보 및 국회 주요 행사현장 취재진 구성·지원 등을 통해 언론에 대한 국회 홍보를 강화하고, 국회박물관 전시공간 개편 및 운영을 통하여 국회방문객에게 의회 민주주의의 역사를 홍보하려는 사업임.

2023년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액 40억 8,2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억 8,600만원과 이·전용(감) 7,000만원이 반영된 예산현액 41억 9,800만원 중 35억 3,600만원(84.2%)을 집행하고, 2억 6,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 9,5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3년도 언론·공보활동 및 국회박물관 운영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2023							2024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4,082	186	△70	4,198	3,536	267	395	4,124

자료: 국회사무처

주요 집행내역은 ① 국회박물관 운영 7억 9,200만원, ② 국회온라인 미디어운영 7억 6,700만원, ③ 언론 및 공보활동 5억 3,400만원, ④ 국회보 발간 5억 6,800만원, ⑤ 의정활동광고 2억 9,900만원, ⑥ 헌정자료 수집 및 관리 1억 9,800만원 등임.

나. 국회박물관 기획전시 사업 관리 강화 필요

국회박물관[15] 운영 세사업 내에 “국회박물관 기획전시 연출·설계 및 제작·설치”를 위하여 편성된 일반용역비 예산 1억 6,000만원은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음.

[국회박물관 운영 일반용역비 예산 이월·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건 명	2023 예산		2024 집행		
	예산액	차년도 이월액	사업수행 기간	집행액	계약방식
국회박물관 기획전시 연출 ·설계 및 제작·설치	160	160	2024.2.～8.	157	협상에 의한 계약

자료: 국회사무처

15)국회박물관은 임시의정원부터 현재까지의 국회활동과 의회민주주의의 관련 자료를 보관·전시하고 있는 제1종 국립박물관으로 1998년에 건립된 기존의 헌정기념관을 전면 개편하여 2022년 4월 개관하였음. 국회체험관, 어린이박물관 및 4개의 상설전시실과 1개의 기획전시실로 구성됨.

[국회박물관 전시실 구성 현황]

전시실명	구분	전시 주제	주요 내용
국회체험관	체험전시	민의의 전당, 국회	▪ 국회의 기능과 역할 소개 및 안내 ▪ 본회의 모의투표 등 의정체험
기획전시실	기획전시	개헌의 역사	▪ 대한민국 개헌의 역사 및 개헌 논의에 대한 소개
어린이박물관	어린이 체험전시	우리가 만드는 국회놀이터	▪ 함께 규칙을 만들고, 규칙을 지키는 과정에서 배우는 국회와 민주주의의 의미
제1전시실	상설	임시의정원에서 시작된 민주주의	▪ 3.1운동 이후 중국 상해에서 개원한 임시의정원의 활동과 성과
제2전시실	상설	민주주의를 위해 국회가 걸어온 길	▪ 제헌국회에서 9차 개헌(제12대 국회)까지 국회가 걸어온 길
제3전시실	상설	국회와 민주주의의 성숙	▪ 9차 개헌 이후 국회(제13대 국회~제20대국회)의 변화와 성과 및 정치 참여와 민주주의의 발전
제4전시실	상설	국민의 목소리, 국회의장	▪ 역대 의장의 발언을 통해 민주주의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 의견을 반영하는 국회상 제시

“국회박물관 기획전시 연출·설계 및 제작·설치”사업은 종전에 진행 중이던 기획전시(「대한민국임시의정원 개원 103주년 기념 특별전 - 국회, 국민의 뜻에 다가가다」”)[16]가 2023년 11월에 종료될 것에 대비하여 사전에 기획전시 교체를 위한 연출·설계 및 제작·설치 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이었음.

국회사무처는 기획전시 개편 과정에서 전시 주제, 공간 구성 등 사업내용 확정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고, 조달청 계약의뢰 등 후속 절차의 순연 및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유찰 등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여 해당 예산액 1억 6,000만원을 전액 2024년도로 이월하였다는 설명임.

그러나, 이러한 사업 지연은 예산의 이월집행으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전시공간 폐쇄의 장기화로 국회박물관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를 저하시킬 우려가 크다고 보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 사업은 2024년도로 이월되어 2월에 용역업체 계약체결 및 사업 착수가 이루어진 이후 2024년도 7월 초에 기획전시실 제작·설치가 완료되었고, 7월 15일에 신규 기획전시가 공개되었음[17]. 이에 따라 기획전시실은 기존의 전시 종료 이후 8개월간 임시

16)동 기획전시는 국회박물관 개관일인 2022년 4월 11일부터 시작하여 2023년 11월 중순까지 진행되었음.
17) 2024년 7월 15일 신규 오픈한 기획전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국회박물관 홈페이지 기획전시란 참조).

■ 전시주제: 헌법-원하다, 말하다, 살피다
■ 전시기간: 2024년 7월 15일 - 2025년 3월 29일
■ 전시구성: 1부 - 1919-1945 민주공화제를 원하다
2부 - 1948-1987 민주주의를 말하다 (영상)
3부 - 1988-현재 행복할 권리를 살피다

폐쇄되어 기획전시의 관람이 제한되었음.

따라서 국회사무처는 전시 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향후 전시교체 계획 및 기획전시 개편안 등을 조기에 수립하고, 전시교체 사업의 일정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전시 공백을 최소화하여 국회박물관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여야 할 것임.

다. 헌정자료 확충을 위한 자산취득비 집행률 제고 필요

헌정자료 수집 및 관리 세사업은 국회박물관 전시 콘텐츠 확보 및 연구자료 활용 등을 위하여 국회 및 의정활동과 관련 있는 헌정자료를 수집하고 등록·관리하는 사업임.

동 사업에 편성된 자산취득비는 전시 콘텐츠, 연구자료 등 헌정자료를 구매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도 결산현황을 살펴보면 예산액 1억 1,000만원 중 6,100만원(55.5%)을 집행하고 4,900만원을 불용하였음.

[헌정자료 수집 및 관리 자산취득비(430-01)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세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이·전용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 헌정자료 수집 및 관리	247	-	247	198	-	49	248
- 자산취득비 (430-01)	110	-	110	61	-	49	110

국회박물관(구. 헌정기념관) 헌정자료 수집을 위한 자산취득비는 과거 매년 1천만원 수준으로 편성·집행되었으나, 국회박물관의 전면개편(2022.4.)[18]에 따른 자료 확보를 위하여 2021년도부터 자산취득비 예산액이 1억 1천만원으로 증액된 이래 매년 같은 수준으로 편성되고 있음.

그러나, 헌정자료 수집을 위한 자산취득비는 연례적으로 집행률이 낮아 반복적인 불용이 발생하고 있음. 최근 3년간 집행현황을 보면, 예산액 1억 1,000만원 중 집행액은 5,200만원에서 7,000만원 이내이며, 집행률은 60% 내외임.

[최근 3년간 헌정자료 수집 및 관리 자산취득비(430-01)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연 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헌정자료 구입실적
2021	110	70	63.6%	총 197건 539점
2022	110	52	47.3%	총 52건 98점
2023	110	61	55.5%	총 154건 342점

국회사무처는 주요 국립박물관의 관련 규정과 절차에 준하여 “공개구입” 방식으로 헌정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19], 이는 ① 박물관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개구입 공고 게재 → ② 자료매도 신청 접수 → ③ 자료구입평

18) 국회박물관은 1998년 헌정기념관이라는 이름으로 최초 건립되었는데, 국회사무처는 국회박물관 전시공간의 체계적 개편을 위하여 건립 22년만인 2020년 전면 개편을 실시하였음. 이후 20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국회박물관이라는 이름으로 2022년 4월 11일 다시 개관하였음.

19)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2020년까지 자료 구입은 지정구입(담당자가 직접 구입업체와 매도 대상자료를 선택하여 구입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였으나, 국회박물관 전면개편에 따른 자료 확보를 위해 2021년 자료구입 예산이 증가(1천만원→1억 1천만원)함에 따라 국립박물관의 공개구입 방식으로 전환하였다는 설명임.

가위원회에서 진위여부와 구입여부 및 가격 등 결정 → ④ 구입대상 자료 확정 및 온라인 공개 → ⑤ 구매계약 체결의 절차로 진행됨.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2021년 이후 매년 2회(상·하반기)에 걸쳐 헌정자료 공개구입을 계획하였으나 2021년과 2022년은 수장고 조성 공사(2021.9.~2022.5)로 연 1회 공개구입을 실시하였고, 2023년도에 처음으로 연 2회 공개구입을 실시한 것으로,

헌정자료 공개구입은 온라인 공고를 통해 문화재 매매업자, 개인소장자 등으로부터 자료를 구입할 수 있어 다양한 자료 수집에 용이하나, 매도 신청되는 자료의 수량과 구입 소요액을 사전에 특정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임.

그러나, 동 자산취득비의 연례적 불용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적시에 사용해야 하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국회박물관의 전시역량 강화 측면에서도 적절하지 않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국회박물관은 의회 민주주의 및 국회 활동과 관련한 자료를 보관·전시하는 국립 제1종 전문박물관[20]인바, 국회박물관이 의회민주주의와 의정

---

2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은 박물관을 제1종 및 제2종으로 나누고, 종합박물관과 전문박물관으로 구분하여 등록요건을 정하고 있음.
국회박물관은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국립박물관으로서, 동법 시행령에 따른 제1종 전문박물관에 해당함.

[참고] 제1종 전문박물관의 등록요건

자 료	학예사	시 설
100점 이상	1명 이상	1) 1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또는 2,000제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 2) 수장고 3) 사무실 또는 연구실 4) 자료실·도서실·강당 중 1개 시설 5) 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활동에 관한 학술연구와 국민의 민주주의 체험 교육에 기여하는 복합 문화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헌정자료와 전시 콘텐츠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보임.

참고로, 주요 국립박물관의 자료(유물)구입 예산규모와 비교할 때 국회박물관의 헌정자료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예산은 미미한 실정임.

[주요 국립박물관의 2024년도 자료(유물)구입 예산액 현황]

(2024년도 기준 / 단위 : 원)

국립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국립민속 박물관	국립한글 박물관	국회 박물관
7억	8억 6천만	14억 2,200만	10억 8천만	1억 1천만

자료: 국회사무처

국립박물관으로서 국회박물관의 위상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며 예산의 연례적인 불용으로 인한 예산집행의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동 자산취득비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하여 다양한 헌정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함.

따라서 국회사무처는 국회박물관의 헌정자료 수집에 대한 홍보 강화 및 헌정자료 구입 횟수의 확대, 경매·지정구입 등 자료구입 방식의 다변화 등 자산취득비의 집행률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6. 연수활동지원 (2031-306)

가. 개 요

「연수활동지원」은 국회의 조직·역할과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대국민 연수과정, 지방의회사무처 직원 연수과정 및 국회 인적자원 개발과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고위·중견관리자 과정, 의정아카데미, 입법지원서비스 능력개발 과정 등을 운영하고 국회고성연수원을 운영·관리하는 사업임.

2023년도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액 43억 6,100만원에 이·전용 증액 8,1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44억 4,200만원 중 39억 4,300만원을 집행하고, 5억원이 불용되었음.

[2023년도 연수활동지원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2023							2024
예산액 (추경)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4,361	-	81	4,442	3,943	-	500	4,874

자료: 국회사무처

주요 집행내역은 ① 시민의정연수 7,400만원, ② 지방의회 의정지원 역량강화(신규) 1억 2,100만원, ③ 의정인적 역량강화 3억 6,500만원, ④ 고성연수원 민간근로자 운용 21억 2,900만원, ⑤ 고성연수원 운영·관리 10억 2,800만원 등임.

나. 지방의회 의정지원 역량강화의 적정 연수기간 및 인원 확보 필요

지방의회 의정지원 역량강화 사업은 2023년도 신규 추진된 연수과정으로, 지방의회사무기구의 전문성 및 의정활동 지원 역량을 제고하고 국회와 지방의회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따른 시·도의회 사무처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회 사무국·사무과 소속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장기(6개월 이상 1년 이내) 교육·연수과정을 제공하는 사업임.

동 사업의 2023년도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액 3억원 중 1억 2,100만원(40.3%)이 집행되었고, 1억 7,9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3년도 지방의회 의정지원 역량강화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2023							2024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지방의회 의정지원 역량강화과정	300	-	-	300	121	-	179	300
일반수용비 (210-01)	242	-	-	242	101	-	141	242
공공요금및제세 (210-02)	2	-	-	2	-	-	2	2
급식비 (210-04)	11	-	-	11	6	-	5	11
특근매식비 (210-05)	1	-	-	1	-	-	1	1
임차료 (210-07)	10	-	-	10	1	-	9	10
국내여비 (220-01)	24	-	-	24	3	-	21	24
사업추진비 (240-01)	10	-	-	10	10	-	-	10

자료: 국회사무처

동 예산의 집행부진은 예산상 계획 대비 교육정원 및 기간을 축소 운영

함에 따라 강사비 등을 비롯한 연수과정 운영경비의 집행소요가 감소하였기 때문임.

동 연수과정은 당초 지방의회와의 협력체계 구축이라는 취지와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17명의 교육정원을 대상으로 한 10개월의 과정으로 계획되었으나,

실집행은 11명을 대상으로 6개월의 과정을 운영하는 것에 그쳤음.

[지방의회 의정지원 역량강화 사업 계획 대비 집행 현황]

	계획(A)	집행(B)	비교 (A-B)
연수 기간	10개월	6개월	4개월 단축
연수 인원	17명	11명	6명 과소
소 요 액	3억원	1억 2,100만원	1억 7,900만원 불용

자료: 국회사무처

사업 추진경과를 보면, 장기 연수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협조를 확보하기 위한 행정안전부와의 실무 협의, 지방의회 연수대상자 선발 등 사전 준비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었고, 당초 계획한 2023년 2월이 아닌 6월에 연수과정이 시작됨에 따라 당초 계획 대비 4개월이 단축된 6개월의 과정을 운영하게 된 것임.

[지방의회 의정지원 역량강화 과정 주요 추진경과]

○ 연수과정 운영을 위한 행정안전부와의 실무협의 및 협조 확보(’ 23.1.~ 4.)
○ 지방의회 연수대상자 선발 추천요청 및 연수대상자 선발 (’ 23.5.)
○ 지방의회 의정지원 역량강화 과정 운영 (’ 23.6.12.~12.15.)

자료: 국회사무처

동 과정은 지방공무원 대상의 교육연수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21]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22] 등에 따라 지방공무원 위탁교육 훈련계획 수립 및 교육파견자 관리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각 지방의회 교육대상자 수요조사, 추천·선발 등 상당한 준비를 요하는 사업이므로,

교육연수 계획의 차질없는 시행과 편성된 예산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는 사업 계획을 보다 면밀히 수립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의·조정 등 사전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하였을 것임.

---

2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위탁교육훈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국내외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소속 지방공무원을 국내외 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무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무원에 대한 국내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6급 이하 지방공무원에 대한 국내 위탁교육훈련계획은 해당 시·도지사, 시·도의회의 의장 및 교육감이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22)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훈련을 위한 파견기간 동안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은 제외한다)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수립한 국외 위탁교육훈련계획 중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 결원 보충이 필요한 경우
2.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제2항 본문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하는 6개월 이상인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교육훈련대상자의 직급 및 인원이 기관별로 결정된 경우
3.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시·도지사, 시·도의회의 의장과 교육감이 6급 이하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인 국내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함에 따라 결원 보충이 필요한 경우

뿐만 아니라, 예산의 투입효과성 제고, 지방의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연수 과정 품질관리를 위한 적정 연수인원 확보의 필요성[23] 등을 고려할 때 연수인원의 확대와 연수프로그램의 내실화 및 확대개편이 필요하다고 보임.

이에 국회사무처는 동 연수과정의 원활한 시행과 충분한 연수기간 확보를 위하여 준비 과정에 조속히 착수하는 한편, 연수인원 추가 확보를 위하여 행정안전부 및 지방의회 등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추진하고 연수프로그램을 확대 개편하는 등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임[24].

23) 2023년도 지방의회 의정지원 역량강화 연수생(11인)을 대상으로 국회사무처가 자체 실시한 연구과정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적정 연수인원 규모에 대한 질문에 대부분이 “30명 이상(45%), 17명 전후(45%)로 응답하였음.

24) 2024년도 동 연수과정의 경우 44주 과정(2024.2.14.~12.13)으로 운영되고 있고, 2025년도부터는 연수 인원의 증가를 위하여 국회사무처가 관계기관과 협의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7. 의회경호 및 방호 (2031-310)

가. 개 요

「의회경호 및 방호」는 회의장 질서유지, 청사 보안 등 의회 경호·방호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둔치주차장 등 국회경내 주차장을 관리하기 위한 사업임.

2023년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액 41억 200만원에 이·전용(감) 2,400만원이 반영된 예산현액 40억 7,800만원 중 38억 6,200만원(94.7%)을 집행하고, 7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억 9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3년도 의회경호및방호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2023							2024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4,102	-	△24	4,078	3,862	7	209	5,212

자료: 국회사무처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① 청사경비인력 운용 20억 4,900만원, ② 의회경호 및 방호 운영 7억 7,600만원, ③ 주차장관리인력 운영 5억 400만원, ④ 전자출입시스템구축 3억 5,800만원 ⑤ 의원회관 및 둔치주차장 CCTV 고도화 1억 7,600만원 등을 각각 집행하였음.

나. 실소요를 반영한 국회 외곽 경비 운용 예산 편성 필요

“국회경비대 운용” 세사업은 국회경비대를 위한 직원식당의 운영에 필요한 조리인력 2인을 공무직 근로자로 채용·운영하기 위한 사업이었음.

2023년도 예산은 1억 6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세부내역은 상용임금·복리후생비·고용부담금으로 구성되었으나, 전액 불용되었음.

[2023년도 국회경비대 운용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세사업 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국회경비대 운용	**106**	**-**	**106**	**-**	**-**	**106**	**109**
- 상용임금 (110-03)	87	-	87	-	-	87	90
- 복리후생비 (210-12)	1	-	1	-	-	1	1
- 고용부담금 (320-09)	17	-	17	-	-	17	18

이와 관련하여 국회사무처는 당초 별도의 식당 조리인력을 채용하여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를 위한 직원식당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국회경비대가 최종적으로 직원식당[25]을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동 사업 예산을 전액 불용하였다는 설명임.

한편, 국회경비대 운용 예산은 2024년도에도 상당액의 불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25) 참고로, 종전의 국회경비대 직원식당 공간은 현재 무도훈련장으로 리모델링 되어 사용 중임.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2023년 2월 국회경비대가 국회 외곽 경비인력 부족을 이유로 헌정회 정문 구역 경비를 국회사무처 자체 인력으로 해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국회경비대 지원을 위한 상근인력 2인을 연중 운영할 계획으로 2024년도 국회경비대 운용 예산액 1억 900만원을 편성하였다는 설명임[26].

그러나, 현재 국회사무처는 공무직 근로자 2인을 채용하여 교대근무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7월 말 기준 집행액은 1,264만원(11.6%)에 불과한 상황임[27].

2023년도 국회경비대 운용 예산의 불용은 국회경비대가 당초 계획하였던 직원식당을 운영하지 않기로 함에 따른 것으로 이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적시에 사용해야 하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고, 2024년도 예산 역시 헌정회 정문 경비를 위한 실소요 인력 대비 상용임금 등이 과다 편성되어 상당액의 불용이 예상되고 있음.

따라서 국회사무처는 향후 유관 기관과의 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국회 외곽 경비에 필요한 실소요를 감안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

26) 국회경비대 지원인력 2인: 상용임금 90백만원, 복리후생비 1백만원, 고용부담금 18백만원 (2024년도 예산사업설명자료 Ⅱ-1, p247)

27)현재 국회경비대 지원인력은 헌정회 정문 경비를 담당하는 인력으로, 국회사무처는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측의 요청에 따라 2023년 3월부터 기간제 근로자 2인을 채용·운용하였고, 2024년도 예산안에 국회경비대 지원인력 운용을 위한 예산을 "국회경비대 운용"사업에 편성하여 2024년 4월부터는 동 예산으로 기간제 근로자 2인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음.

8. 입법서비스지원활동 (2032-300)

가. 개 요

「입법서비스지원활동」은 국회의원이 의뢰하는 법률안의 입안 및 검토를 실시하여 국회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상임위원회가 의뢰하는 행정입법의 분석·평가를 실시하여 행정입법 통제를 지원하는 한편, 법제연구사업 추진 등을 통하여 법제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법률안 입안의 내실화 및 신속화를 도모하는 사업임.

2023년도 결산 현황을 보면, 예산액 9억 3,7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2,0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9억 5,700만원 중 8억 1,000만원(84.6%)을 집행하고, 4,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 5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3년도 입법서비스지원활동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2023							2024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937	20	-	957	810	43	105	734

자료: 국회사무처

주요 집행내역은 ① 법률체계 및 법제기준 연구 1억 3,400만원, ② 입법제안 네트워크 운영 7,000만원, ③ 지역현안 입법지원토론회 5,100만원, ④ 입법서비스 개선 4억 9,400만원, ⑤ 행정입법 분석 및 평가 4,100만원, ⑥ 통일법제연구 2,100만원 등임.

나. 지역현안 입법지원토론회와 입법지원 서비스의 연계성 제고 필요

지역현안 입법지원토론회 세사업은 지역현안의 입법화를 위한 자료 수집 등을 위하여 국회의원과 법제관 등 국회 소속 공무원이 해당 국회의원의 지역구 등 지역현장을 방문하여 지역현안과 관련한 전문가, 법제관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나누고 토론을 진행하는 사업임[28].

2023년도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액 6,200만원에서 이·전용(감) 300만원이 반영된 예산현액 5,900만원 중 5,100만원을 집행하고 8백만원을 불용하였음.

[2023년도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2023							2024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	62	-	△3	59	51	-	8	35
- 일반수용비 (210-01)	41	-	-	41	32	-	8	20
- 임차료 (210-07)	8	-	△4	4	4	-	-	4
- 국내여비 (220-01)	7		1	8	8	-	-	5
- 사업추진비 (240-01)	6	-	-	6	6	-	-	6

자료: 국회사무처

2023년도의 경우 총 7회의 지역현안 입법지원토론회를 개최하였음.

28) “입법지원 토론회”란 지역현안을 입법화하기 위한 자료 등을 수집하기 위하여 국회의원과 국회 소속 공무원이 해당 국회의원 지역구 등 지역현장을 직접 찾아가 지역현안에 관한 발표 및 의견을 듣고 이에 대한 토론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 개최에 관한 내규」 제2조).

[2023년도 지역현안 입법지원토론회 개최 현황]

(단위: 백만원)

주 제		일 자	장 소
1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만료 대응 방안 마련	3.10.(금)	전북 군산
2	호남권 반도체 특화단지 육성을 위한 입법지원 토론회	3.27.(월)	광주 서구을
3	강원도 미래산업 고도화 방안과 규제 해결책을 위한 입법토론회	5.17.(수)	강원 원주시을
4	대구 도시철도 1·2호선 연장·순환선화를 통한 경산 발전전략 입법지원 토론회	6.16.(금)	경북 경산시
5	부산 경제금융특구 지정을 위한 법제화 방안	7.17.(월)	부산 남구을
6	1호선 지하화, 쟁점과 과제	8.25.(금)	서울 도봉구을
7	강북구 사유지도로 문제해결을 위한 국회 입법 토론회	10.5.(목)	서울 강북구갑

자료: 국회사무처

지역현안 입법지원토론회는 입법지원 서비스의 일환으로서, 동 사업의 취지는 국회의원과 국회사무처가 공동으로[29] 토론회를 개최하여 지역현안에 대한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법률안 입안·검토 등 입법지원 서비스로 연계함으로써 지역현안의 입법적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의 도출을 지원하는 것에 있음.

그러나, 최근 지역현안 입법지원토론회 개최 및 관련 법률안 입안 지원의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토론회 개최와 법률안 입안·검토 등 입법지원 서비스 간의 실질적인 연계성을 보다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제21대국회 기간 중 국회사무처는 총 11건의 지역현안 입법지원토론회를 의원실과 공동으로 개최하였으나, 토론회 개최 이후에 해당 의원실

29)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 개최에 관한 내규」 제3조(개최) 토론회는 국회의원과 국회사무처가 공동으로 개최한다.

로부터 토론회 주제와 관련한 법률안의 입안을 의뢰받아 성안한 실적은 1건임.

[제21대국회 지역현안 입법지원토론회 및 토론회 이후 법률안 입안지원 실적]

구 분	2022년	2023년	계
토론회 개최 건수	4건	7건	11건
토론회 이후 관련 법률안 입안의뢰 건수	0건	1건	1건

* 2020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는 코로나-19 또는 관련 내규에 따라 토론회 개최실적이 없음.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 개최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일 180일 전(그 밖의 선거는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토론회 개최 불가하였음(해당 기간: 2021.12.9.~ 2022.6.1. 및 2023.10.13.~2024.4.10.)

* 자료: 국회사무처

이와 관련하여, 국회사무처는 제21대국회에서 개최한 11건의 지역현안 입법지원토론회 중 3건의 경우는 토론회 개최 전에 관련 법률안의 입안지원 및 발의가 이루어졌으나,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법률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최근 관련 내규를 개정하여(2024.5.4.) 지역현안 입법지원토론회의 개최 제한 사유에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국회의원이 토론회의 주제인 지역현안에 관한 법률안을 이미 발의하여 법률안 입안·검토 등 입법지원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추가하는 등 토론회와 입법지원서비스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는 설명임.

동 사업이 법률안 입안·검토 지원서비스와 긴밀히 연계되어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칫 일회적인 행사 개최 지원에 그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회사무처는 향후 지역현안 입법지원토론회와 입안지원 서비스의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 내규를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토론회 개최를 신청한 의원실을 대상으로 법률안 입안 서비스 및 입안 의뢰 방법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등 사업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봄.

9. 국회청사 유지 및 관리 (2033-300)

가. 개 요

「국회청사유지및관리」는 국회청사를 유지·관리하고, 노후 비품 등을 교체하는 사업임.

2023년도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전년도 이월액 21억 7,700만원과 이·전용 순계(증) 22억원을 합한 예산현액 471억 800만원 중 452억 1,300만원(96.0%)을 집행하고, 5억 1,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3억 7,8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3년도 국회청사유지및관리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2023							2024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42,731	2,177	2,372 △172	47,108	45,213	516	1,378	50,969

자료: 국회사무처

주요 집행내역은 ① 청사유지 및 관리 352억 9,500만원, ② 청사시설 보수·보강 84억 1,700만원, ③ 노후비품 등 교체 15억 100만원 등임.

나. 공공요금 및 제세 이용증액 과다 및 적정예산 편성 필요

동 사업 예산 비목 중 “공공요금 및 제세(210-02)”는 국회 청사 내에서 사용되는 수도·전기·전화요금 및 교통유발부담금과 같은 법률상 지출의무 등에 따른 경비를 집행하는 항목임.

2023년도 동 비목의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액 83억 900만원에 이용 증액 20억 8,9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103억 9,8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음.

[2023년도 공공요금 및 제세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2023							2024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8,309	-	2,089	10,398	10,398	-	-	9,137

자료: 국회사무처

국회사무처는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분 충당을 위하여 당초 예산액의 25%에 해당하는 20억 8,900만원을 「사무처 인건비(7001-150)」에서 이용하였음.

[2023년도 공공요금 및 제세 이용 증액 현황]

(단위 : 백만원)

일자	~에서		금액	~으로		이용 사유
	세부사업명 (사업코드)	세목 코드		세부사업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23.10.10	사무처인건비 (7001-150)	보수 (110-01)	1,809	국회청사유지 및 관리 (2033-300)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에너지 요금 인상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
23.12.26	사무처인건비	보수	280	국회청사유지	공공요금	

일자	~에서		금액	~으로		이용 사유
	세부사업명 (사업코드)	세목 코드		세부사업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7001-150)	(110-01)		및 관리 (2033-300)	및 제세 (210-02)	부족분 충당
소 계			2,089			

자료: 국회사무처

최근 3년간 국회의 수도·전화·전기 등 공공요금 집행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는데, 2023년도에는 전년 대비 26.4% 증가한 98억 3,900만원이 집행되었음. 이는 코로나 해제로 재택근무 등의 조치가 완화되고 방문객이 증가하는 등에 따른 청사 내 에너지 사용량의 증가 및 에너지 요금 단가 인상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최근 3년간 수도·전화·전기요금 등 집행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2021년도 집행액	2022년도 집행액	2023년도 집행액
국회청사 (여의도)	수도	717	782	1,253
	전화	150	141	141
	전기	6,085	6,538	8,033
국회부산 도서관	수도 전화 전기	75	322	412
소 계 (전년 대비 증가율)		7,027	7,783 (10.8)	9,839 (26.4)

자료: 국회사무처

공공요금 및 제세의 부족분이 발생한 경우 「국가재정법」 제47조, 예산총칙[30] 등에 따라 타 비목으로부터 자체 이용하여 집행할 수 있음.

그러나, 예산편성 및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국회가 심의 확정한 예산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예산의 이용제도는 최소한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따라서 국회사무처는 향후 원활한 청사 유지·관리를 위하여 적정규모의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수도·전기 등 공공요금 인상 추이 및 사용량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사용량 관리를 강화하는 등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의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

30) 「국가재정법」 제47조(예산의 이용·이체)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또는 각 장·관·항 간에 상호 이용(移用)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1. 법령상 지출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 및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
2. 환율변동·유가변동 등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3.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023년도 예산총칙」 제10조 ① 다음 경비 또는 비목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관내의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1. 공무원의 보수, 기타직 보수, 상용임금, 일용임금
2. 공공요금 및 제세, 급식비, 임차료
3. ~ 11. (생 략)

10.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건립 (2033-302)

가. 개 요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건립」은 정보자원의 통합 이용을 활성화하고 보안관제 통합을 통하여 정보보안을 강화하며 위기 발생 시 자료유실 위험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복합 문화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임.

2023년도 결산현황을 보면, 예산액 30억 2,200만원이 전액 불용되었음.

[2023년도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건립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2023							2024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3,022	-	-	3,022	-	-	3,022	2,613

자료: 국회사무처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건립 사업개요]

- 건립목적 :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국회 통합데이터센터와 국민에게 다가가는 국회이미지 및 소통창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디지털 열람실 및 디지털 체험·전시관 등을 포함한 도심형 복합 문화 데이터센터로 추진
- 건립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갑천호수공원 부지
- 주요시설 : 국회 통합데이터센터, 디지털체험·전시관, 디지털열람실 등
- 시설규모 : 연면적 [당초] 11,934㎡ ⇨ [타당성재조사] 9,556㎡
- 총사업비 : 467억 7,900만원 ⇨ [타당성재조사] 639억 7,400만원

  ※ 기획재정부와 시설규모 및 총사업비 등 조정 중

자료: 국회사무처

나. 건립추진 지연에 따른 집행부진 개선 필요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건립사업은 당초 2021년부터 2024년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 467억 7,900만원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었음.

그러나,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설계·시공 일괄 경쟁입찰의 반복적인 유찰,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우선시공분 공사[31] 계약 업체와의 가격협상 결렬 등의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사업 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2021년 및 2022년 동 사업 예산액의 대부분이 이월·불용되었음.

이후 물가상승으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어 2022년 10월에 「국가재정법」 제50조제2항제1호[32]에 따른 타당성 재조사를 시행하게 되었으나, 2023년 상반기 완료 예정이던 타당성 재조사가 장기화(22.10.~24.1., 한국개발연구원)됨에 따라 2023년도에도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실시설계비 및 공사비 등 예산액 30억 2,200만원 전액이 불용되었음.

---

31) 우선시공분 공사는 본 공사 착수에 앞서 하는 가설공사, 부지조성공사(토공사, 터파기공사 등)를 의미하며,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에서 실시설계와 우선시공분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여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것임

32) 「국가재정법」 제50조(총사업비의 관리)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규모·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를 거친 사업규모·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및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을 재조사(이하 “타당성재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총사업비 또는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에 미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와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건립 추진 경과]

- 2021. 01. ~ 05.: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 2021. 06.: 입찰방법 심의(설계·시공 일괄입찰, 국토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 2021. 06. ~ 08.: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
- 2021. 08. ~ 09.: 입찰안내서 보완 및 심의
- 2021. 10. ~ 2022. 01.: 입찰공고 (1차~4차)
- 2022. 01. ~ 05.: 기본설계 및 우선시공분 공사 실시설계
- 2022. 06. ~ 08.: 우선시공분 공사 가격협상(결과 : 결렬)
- 2022. 08. : 입찰방법 변경 심의(설계·시공 일괄입찰→설계·시공 분리입찰)
- 2022. 09. ~ 10.: 타당성재조사 심의자료 제출 및 총사업비 조정 요청(국회사무처→기획재정부)
- 2022. 10.: 타당성재조사 시행 요청(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
- 2022. 10. ~ 2024. 1: 타당성재조사 시행 (한국개발연구원)

자료: 국회사무처

[연도별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건립사업 예·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세 목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1년	연구용역비	350	-	350	350	-	-
	기본조사설계비	162	-	162	54	-	108
	공사비	2,121	-	2,121	-	2,121	-
	소 계	**2,633**	**-**	**2,633**	**404**	**2,121**	**108**
22년	기본조사설계비	806	-	806	23	-	783
	공사비	9,753	2,121	11,874	724	-	11,150
	감리비	775	-	775	-	-	775
	시설부대비	26	-	26	-	-	26
	소 계	**11,360**	**2,121**	**13,481**	**747**	**-**	**12,734**
23년	기본조사설계비	1	-	1	-	-	1
	실시설계비	2,443	-	2,443	-	-	2,443
	공사비	578	-	578	-	-	578
	소 계	**3,022**	**-**	**3,022**	**-**	**-**	**3,022**

자료: 국회사무처

국회사무처는 당초 2023년 6·7월경 타당성 재조사와 총사업비 협의가 완료되어 하반기 중 사업의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2023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24년 1월에 타당성 재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관련 계획을 변경하고 불가피하게 예산을 불용처리하게 되었다는 설명임.

또한, 타당성 재조사 결과 국회 통합디지털 센터 건립사업의 편익-비용 비율(B/C ratio)은 1.36으로 사업의 경제성 및 타당성이 확인되었으며, 타당성 재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총사업비 및 보안시설·대민개방시설 규모 조정에 관한 협의가 현재 진행 중이라는 설명임.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건립사업은 국회의 정보보안 강화를 위하여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체험·연수 장소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산 투입의 효과성이 큰 사업이므로 조속한 건립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국회사무처는 재정당국과 원활한 협의를 통해 시설규모·총사업비 조정 및 공사계획 수립을 조속히 완료하고, 금년도에 편성된 실시설계비 예산(26억 1,300만원)의 집행을 연내 차질없이 추진[33]하는 등 동 사업의 추진 지연과 예산 집행부진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하여야 할 것임.

33) 국회사무처는 총사업비 협의 완료 후 설계공모를 통해 설계업체를 선정하여 실시설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11. 국회방송운영 (2036-300)

가. 개 요

「국회방송운영」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정활동 홍보기능 제고 등을 위하여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입법 활동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및 의회정치 과정 등에 관한 프로그램을 제작·방송하는 사업임.

2023년도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전년도 이월액 2억 3,3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158억 5,200만원 중 147억 4,300만원(93.0%)을 집행하고, 8억 4,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억 6,9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3년도 국회방송운영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2023							2024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15,619	233	-	15,852	14,743	840	269	17,244

자료: 국회사무처

주요 집행내역은 ① 프로그램 직접제작 27억 4,200만원, ② 방송시스템 임차 24억 900만원, ③ 프로그램 외주제작 19억 6,900만원, ④ 프로그램 구입 9억 4,900만원, ⑤ 방송시설물 구축 3억 5,300만원, ⑥ 방송국 운영경비 등 15억 2,600만원 등임.

나. 국회방송 경쟁력 강화 및 시청자 만족도 제고 필요

「국회방송운영」 사업의 성과지표 중 하나로 '시청자 만족도'가 설정되어 있는데, 이는 연례적으로 목표 수준에 미달하고 있음.

국회사무처가 설정한 국회방송의 시청자 만족도 목표 수치는 70점이나, 최근 3년간 국회방송 시청자 만족도는 매년 60점대로 목표 수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2023년도의 시청자 만족도는 62.9점임[34].

또한, 국회방송이 실시한 시청률 조사 결과를 보면, 2023년도의 국회방송 시청률은 0.036%(전체 223개 채널 중 84위)로 전년도의 0.052% (275개 채널 중 65위) 대비 0.016%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35].

[최근 4년간 국회방송 시청자만족도 조사 결과]

성과지표	구 분	2020	2021	2022	2023
시청자 만족도 (점수)	목 표	70	70	70	70
	실 적	68.8	67.8	62.1	62.9
	달성도(%)	98.3	96.9	88.7	89.9

자료: 국회사무처

34)국회사무처는 2022년도의 시청자만족도 점수가 그 이전 대비 크게 하락한 것은 조사척도 변경에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2022년도 시청자만족도 조사에서부터 조사척도가 변경(리커드 7점 → 5점)되었는데, 척도의 수가 적어질수록 중간값 쏠림 현상이 발생하여 "보통"응답자의 수가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임.

35) 국회사무처는 2023년도 연간 시청률 수치의 경우 2022년 대비 하락하였으나,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의 시청률은 0.049%를 기록하여 전년 동기(0.037%) 대비 상승하였고, 특히 2024년 6월과 7월에는 각각 0.060%, 0.064%를 기록하여 시청률 수치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설명임(조사기관: 닐슨미디어코리아, IPTV 기준).

[최근 4년간 국회방송 시청률 조사 결과]

	2020	2021	2022	2023
시청률	0.031%	0.044%	0.052%	0.036%
순 위 (채널 수)	102위 (270개)	83위 (276개)	65위 (275개)	84위 (223개)
조사대상 가구 수	2,611가구	2,575가구	2,629가구	2,670가구

자료: 국회사무처

국회방송에 대한 시청자 만족도와 시청률을 현행보다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국회방송이 본방송 시간을 확대하고 신규 시청자 유입을 위한 컨텐츠 제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 또는 구매할 필요가 있음.

최근 4년간 국회방송의 직접제작 프로그램 내역을 보면 라이브 뉴스, 의사·의정 중계, 법률 및 책 소개 프로그램 중심의 구성이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고, 재방송시간 비율 현황을 보더라도 전체 방송시간 중 본방송 비율이 줄고 재방송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재방송 비율: 2020년도 60.9% ⇒ 2023년도 64.5%)한 것으로 보임.

[최근 4년간 연도별 직접제작 프로그램 내역]

	2020		2021		2022		2023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시간
1	뉴스 N	60분 (주5회)	뉴스 N	60분 (주5회)	뉴스 945	15분 (주10회)	국회라이브1	30분 (주5회)
2	뉴스 945	15분 (주10회)	뉴스 945	15분 (주10회)	뉴스 N	60분 (주5회)	국회라이브6	60분 (주5회)
3	통통 입법토크 법률아 놀자	60분 (주1회)	알면 당신도 법테랑	60분 (주1회)	알면 당신도 법테랑	60분 (주1회)	의정뉴스 945	15분 내외 (주5회)
4	오유경의 인생책방	60분 (주1회)	오유경의 인생책방	60분 (주1회)	오유경의 인생책방	60분 (주1회)	우리들의 법	60분 (주1회)
5	NATV 이슈토론	60분 (주1회)	정치 톡톡, 사이다	60분 (주1회)	정치 톡톡, 사이다	60분 (주1회)	인생책방	60분 (주1회)
6	의사·의정 중계	수시	의사·의정 중계	수시	의사·의정 중계	수시	정관용의 정책토론	70분 (주1회)
7	의정중계 하이라이트	60분 (주5회)	의정중계 하이라이트	60분 (주5회)	의정중계 하이라이트	60분 (주5회)	의사·의정 중계	수시
8			국회최고위 인문학과정	60분 (특집)			의정중계 하이라이트	60분 (주5회)

[최근 4년간 국회방송 재방송시간 및 비율 현황]

(단위: 분, %)

구 분	2020	2021	2022	2023
본방송 시간[36]	83,854	77,870	78,700	77,540
재방송 시간	320,949	333,490	334,733	338,899
재방송 비율	60.9	63.5	63.7	64.5

자료: 국회사무처

36)직접제작 및 외주제작 프로그램과 구매 프로그램의 방송분량을 합산한 시간으로, 본회의 · 상임위 회의 중계 방송 등은 제외하였음.

국회사무처는 방송국 인력·예산의 한계로 인하여 본방송시간을 늘리는데 어려움이 있고, 2023년도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구매 예산의 일부를 의정뉴스 프로그램(국회라이브 1) 신규 제작에 투입함에 따라 구매 프로그램을 활용한 본방송시간이 감소하였다는 설명임.

그러나, 최근 스트리밍 서비스 및 소셜미디어 플랫폼 등 뉴미디어의 등장과 콘텐츠 경쟁의 심화 추세를 고려할 때, 국회방송이 의정활동 정보 제공을 위한 공공채널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시청자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위해서는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임.

따라서, 국회사무처는 본방송시간의 확대와 더불어 신규 시청자 유입을 위한 특화 콘텐츠 제작, 국회방송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 활성화[37] 등 국회방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37)국회사무처에 따르면 2023년 국회방송 유튜브 채널 콘텐츠 업로드 수는 3,074건으로 전년 대비 1,037건(50.9%), 총 조회수는 10,875,423건으로 전년 대비 7,263,782건(201.1%) 증가하였음..

국회도서관

Ⅰ. 결산 개요

1. 세입 결산

2023회계연도 국회도서관 세입예산액은 당초 계상되지 않았으나, 국회부산도서관 근무 공무원 주택임차보증금 반납 1억 200만원, 외국정기간행물 구입사업 등 정산 500만원, 해외장기체류보험료 정산 500만원 등으로 1억 1,200만원을 수납함.

[2023회계연도 국회도서관 소관 세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결손액(C)	미수납액 (A-B-C)	수납률 (B/A*100)
합 계	-	118	112	-	6	94.9
▢ 경상이전수입	-	117	111	-	6	94.9
- 기타경상이전수입	-	117	111	-	6	94.9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	1	1	-	-	100
- 기타잡수입	-	1	1	-	-	100

자료: 국회도서관

- 수납액의 주요내역은

국회부산도서관 근무 공무원 주택임차보증금 반납 1억 200만원

2022년도 외국정기간행물 구입사업 등 정산 500만원

2022년도 해외장기체류보험료 정산 등 500만원임.

- 미수납액은 도서 납본 거부 관련 행정소송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액 600만원임.

2. 세출 결산

가. 총 괄

2023회계연도 국회도서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734억 6,900만원으로, 이 중 95.8%인 703억 9,400만원을 집행하였고, 30억 7,5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3회계연도 국회도서관 소관 세출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예 산 현 액	집행액 (집행률)	다 음 연 도 이월액	불용액 (불용률)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이 용 증감(△)액	전 용 증감(△)액				
73,487	-	-	-	124 △142	73,469	70,394 (95.8%)	-	3,075 (4.2%)

자료: 국회도서관

나. 성질별 결산현황

2023회계연도 국회도서관 소관 세출예산의 성질별 집행내역을 보면, 인건비 283억 7,300만원(집행액구성비 40.3%), 기본경비 20억 2,700만원(집행액구성비 2.9%), 주요사업비 399억 9,500만원(집행액구성비 56.8%)임.

그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음.

첫째, 인건비 예산현액은 306억 2,000만원으로 도서관 전체 예산현액의 4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92.7%인 283억 7,300만원이 집행되고,

7.3%인 22억 4,700만원이 불용되었음.

둘째,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22억 4,700만원으로 도서관 전체 예산현액의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90.2%인 20억 2,700만원이 집행되고, 9.8%인 2억 2,000만원이 불용되었음.

셋째, 주요사업비 예산현액은 406억 300만원으로 도서관 전체 예산현액의 5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98.5%인 399억 9,500만원이 집행되고, 1.5%인 6억 8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국회도서관 소관 세출예산 성질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용(감) 이용(증)	전용·조정(증) 전용·조정(감)	예산 현액	집행액 (집행률)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불용률)
합 계	**73,487**	**-**	**-**	**124 △142**	**73,469**	**70,394 (95.8%)**	**-**	**3,075 (4.2%)**
인건비	30,668	-	-	△48	30,620	28,373	-	2,247
기본경비	2,216	-	-	83 △52	2,247	2,027	-	220
주요사업비	40,603	-	-	42 △42	40,603	39,995	-	608

자료: 국회도서관

주요사업비의 집행내역을 보면, 「도서관운영지원」사업 41억 4,800만원(집행액구성비 10.4%), 「입법정보지원」사업 12억 1,600만원(집행액구성비 3.0%), 「도서관자료확충및보존」사업 74억 8,300만원(집행액구성비 18.7%), 「전자도서관운영」사업 271억 4,700만원(집행액구성비 67.9%)임.

[2023회계연도 주요사업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 결정후 증감(△)액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액 구성비, %)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금 액	불용률
▢ 국회도서관 운영 (프로그램3000)	40,603	-	48 △48	40,603	39,995	-	608	1.5
○ 도서관운영지원(3031)	4,264	-	33 △17	4,280	4,148 (10.4)	-	132	3.1
- 도서관운영관리 (3031-300)	1,049	-	4 △17	1,036	986	-	50	4.8
- 국회부산도서관운영 (3031-301)	3,215	-	29	3,244	3,162	-	82	2.5
○ 입법정보지원(3032)	1,212	-	15 △2	1,225	1,216 (3.0)	-	9	0.7
- 입법자료지원 (3032-300)	529	-	-	529	528	-	1	0.2
- 법률정보지원 (3032-301)	683	-	15 △2	696	689	-	7	1.0
○ 도서관자료확충및보존 (3033)	7,763	-	△29	7,734	7,483 (18.7)	-	251	3.2
- 도서관자료확충 (3033-300)	5,178	-	-	5,178	5,092	-	86	1.7
- 도서관자료보존및열람 (3033-301)	1,951	-	△29	1,922	1,789	-	133	6.9
- 국회기록물관리 (3033-302)	634	-	-	634	602	-	32	5.0
○ 전자도서관운영(3035)	27,364	-	-	27,364	27,147 (67.9)	-	217	0.8
- 전자도서관운영(정보화) (3035-500)	27,364	-	-	27,364	27,147	-	217	0.8

자료: 국회도서관

다. 전용 내역

2023회계연도 국회도서관 소관 세출예산 전용액은 1억 4,20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보면,

- 국제법률도서관협회(IALL) 연례회의 참석 관련 국외업무여비 부족분 충당을 위하여 1,300만원,
- 국회부산도서관 운영에 따른 일용임금 부족분 충당을 위하여 2,900만원,
- 시간제임기제 퇴직금 부족분 충당을 위하여 4,800만원,
- 도서관 장애공무원 고용부담금 부족분 충당을 위하여 5,200만원을 전용하였음.

[2023회계연도 국회도서관 소관 결산 전용내역]

(단위: 백만원)

전용 감액			전용 증액		전용 사유
세부사업명 (단위-세부)	목-세목	금액	세부사업명 (단위-세부)	목-세목	
도서관운영관리 (3031-300)	일반수용비 (210-01)	13	법률정보지원 (3032-301)	국외업무여비 (220-02)	국제법률도서관협회(IALL) 연례회의 참석 관련 국외업무여비 부족
도서관자료보존및열람 (3033-301)	일용임금 (110-04)	29	국회부산도서관운영 (3031-301)	일용임금 (110-04)	국회부산도서관 운영에 따른 일용임금 부족
도서관 인건비 (7002-150)	보수 (110-01)	48	기관운영 기본경비 (7018-250)	고용부담금 (320-09)	시간제임기제 퇴직금 지급으로 인한 고용부담금 부족
기관운영기본경비 (7018-250)	일반수용비 (210-01)	52	기관운영 기본경비 (7011-250)	공공요금및제세 (210-02)	도서관 장애인공무원 고용부담금 소요분

자료: 국회도서관

라. 불용 내역

2023회계연도 국회도서관 소관 세출예산 불용액은 30억 7,500만원(예산현액의 4.2%)으로,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22억 4,700만원, 기본경비 집행잔액 2억 2,000만원, 주요사업비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6억 8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3회계연도 국회도서관 소관 결산 불용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불용액	주요 불용사유
합 계	**3,075**	
인건비	2,247	-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 운영
기본경비	220	- 일반수용비 집행 잔액 등 운영비 집행잔액(102) - 국회부산도서관 근무 공무원 주택보조금(임차보증금) 집행잔액(47) - 각 실국 관서운영경비 집행잔액(30)
주요사업비	608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도서관운영지원	132	- 정기간행물 구입 등 자산취득비 집행잔액(44) -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및제세 집행잔액 집행잔액(28) - 자료이관 용역사업 등 일반용역비 집행잔액(16)
입법정보지원	9	- 일반수용비 및 여비 집행잔액 등(9)
도서관자료확충 및 보존	251	- 자료정리 용역사업 등 일반용역비 집행잔액(61) - 도서 구입 등 자산취득비 집행잔액(54) - 도서관 전자태그 부착 등 일반수용비 집행잔액(42) - 전자책 구독 등 공공요금 및 제세 집행잔액(28) - 국회기록물 재분류 사업 등 일반연구비 낙찰차액(19)
전자도서관운영	217	- 정보화사업의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217)

자료: 국회도서관

Ⅱ. 검토의견

1. 총 괄

가. 연례적 전용·세목조정을 통한 예산 집행 지양 필요

예산의 이용·전용 등 예산 변경제도[38]는 「국가재정법」[39]이 정하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의 예외로서, 「국가재정법」 및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에 따라 예산 집행에 신축성을 부여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

다만, 이러한 예산 변경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국회에서 확정한 예산의 과도하고 반복적인 변경은 지양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예산 부족으로 인한 예산 변경에 대해서는 적정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회도서관의 최근 5년간(2019년~2023년)의 전용 및 세목조정 내역을 살펴보면, ① 전용의 경우 2020년을 제외한 4년간 '시간제임기제공무원 퇴직금 지급'이라는 동일한 사유로 고용부담금 예산에 전용[40]이 이루어졌으며, ② 세목조정의 경우 5년 연속으로 '채용시험 시험관리비 집행'이라는 동일한 사유로 기타운영비에서 세목조정[41]이 발생하

38) 이용: 예산이 정한 각 기관·장(분야)·관(부문)·항(프로그램) 등 입법과목 사이에 상호 융통하는 것
전용: 예산이 정한 각 세항(단위사업)·목 등 행정과목 사이에 상호 융통하는 것
세목조정: 행정과목인 '목'의 하위 예산과목으로서, 목의 범위 내에서 세목 간에 예산을 조정하는 것
내역변경: 단위사업 내에서 동일목을 세부사업 간에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

39)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40) 도서관 인건비(7002-150) 보수(110-01)에서 기관운영 기본경비(7018-250) 고용부담금(320-09)로 전용함.

41) 도서관운영관리(3031-300) 일반수용비(210-01)에서 도서관운영관리(3031-300) 기타운영비(210-16)로 세

였음. 특히, 시험관리비의 경우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당초 편성된 예산액보다 더 많은 금액(당초 예산액 대비 137.3%~354.7%)을 세목조정하여 집행하였음.

[2019년~2023년 고용부담금 전용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A)	전용액(B)	전용률(B/A)	집행액
2019년	16,000	42,695	266.8%	52,247
2020년	27,000	-	-	18,714
2021년	49,000	229,801	469.0%	238,721
2022년	52,000	49,926	96.0%	100,063
2023년	94,000	48,290	51.4%	137,902

자료: 국회도서관 제공자료 재구성

[2019년~2023년 시험관리비 세목조정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A)	조정액(B)	조정률(B/A)	집행액
2019년	3,160	280	8.9%	3,440
2020년	3,160	630	19.9%	3,790
2021년	3,160	11,210	354.7%	14,370
2022년	3,160	6,640	210.1%	9,800
2023년	3,160	4,340	137.3%	6,750

자료: 국회도서관 제공자료 재구성

①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의 경우 개인적 사유 등으로 인한 계약기간 만료 전 퇴직이나 계약기간의 연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계약기간이 이미 정해져 있어 매년 퇴직 예정자를 예측할 수 있으며,[42] ② 채용시험의 경우 의원면직 또는 휴직대체 등으로 인하여 예견하지 못

목조정함.

42) 최근 5년(2019년~2023년) 시간제임기제공무원 퇴직금 지급 현황

한 채용 소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매년 일정한 계획에 따라 채용시험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43] 적정한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고 연례적이고 반복적인 전용 또는 세목조정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보임.[44]

따라서 향후 국회도서관은 시간제임기제공무원 퇴직금 예산 소요액과 시험관리비 예산 소요액을 보다 면밀하게 추계하여 적정한 수준의 예산이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퇴직금 지급 대상자(명)	2	-	8	1	3
퇴직금 총지급액(천원)	41,486	-	225,608	72,539	113,781

자료: 국회도서관

43) 최근 5년(2019년~2023년) 채용건수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총 채용건수	12	10	26	26	16
시간제임기제 채용건수	5	3	-	1	4

자료: 국회도서관

44) 이와 관련하여 국회도서관은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의 경우 계약기간의 연장뿐만 아니라 계약기간 종료 후 해당 직위에 다시 채용되는 경우도 발생하여 정확한 퇴직 예정자를 예측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매년 발생하는 전용 소요를 충족하고자 예산액을 해마다 증액(2019년 1,600만원→2023년 9,400만원) 시켜 왔다고 설명함. 또한, 채용시험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채용시험보다 의원면직, 휴직대체 등으로 인한 채용소요가 과도하게 발생하여 예산액 범위에서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다고 밝힘.

나.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제출기한 준수 필요

국회도서관은 7개 세부사업에 국제회의·국제행사 및 특정 업무 등 공무국외출장을 위한 국외업무여비(220-02) 1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현액은 전용한 1,300만원을 합한 1억 4,100만원임. 이 중 1억 3,000만원을 집행하고 1,1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3년 국외업무여비 편성 및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도서관운영관리(3031-300)	55	55	50	5
입법자료지원(3032-300)	11	11	11	-
법률정보지원(3032-301)	13	26	22	4
도서관자료확충(3033-300)	6	6	5	1
국회기록물관리(3033-302)	5	5	5	-
전자도서관운영(3035-500)	7	7	7	-
기관운영 기본경비(7018-250)	31	31	30	1
계	128	141	130	11

자료: 국회도서관 제공자료 재구성

한편, 「국회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정」 제10조[45] 및 「국회도서관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지침」 제5조[46]는 출장공무원은 출장업무를 마치고

45) 「국회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정」 제10조(보고) 출장자가 출장업무를 마치고 귀국한 때에는 20일내에 보고서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한 자료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6) 「국회도서관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지침」 제5조(보고서) ① 출장공무원은 규정 제10조에 따른 보고서를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제4조의 공식일정과 관련한 사진, 주요내용, 수집자료 등의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② 출장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와 증빙자료를 규정 제10조에 따른 기간 내에 국회도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귀국한 때에는 보고서와 공식일정 관련 사진, 주요내용, 수집자료 등의 증빙자료를 20일 내에 국회도서관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일정 기간 내에 보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공무국외출장이 그 목적에 맞게 내실 있게 실시되었는지 절차적으로 신속히 확인·점검하고 출장을 통하여 수집·축적한 지식 및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공유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음.

그런데, 국회도서관의 2023년 공무국외출장 내역을 살펴보면, 총 9건의 공무국외출장 중 반이 넘는 5건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보고서가 제출기한이 지나서 제출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지 못하였음.[47]

47) 국회도서관은 2건(연번 7·9)은 제출기한 내 이메일 등을 통하여 보고서는 제출하였는데 결재가 늦어졌고, 2건(연번 2·8)은 결재가 제출기한 후에 이루어졌으며, 1건(연번 6)은 출장자가 제출기한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제출이 늦어졌다고 설명함.

[2023년 공무국외출장 내역]

연번	출장명	출장국 (출장인원)	출장기간 (제출기한)	제출일	경과 일수
1	2023년도 동아시아도서관협의회(CEAL) 회의 참가	미국 (2명)	3. 12. ~ 3. 19. (4. 10.)	4. 7.	-
2	미국 국립기록관리청 NARAⅡ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관련 기록 수집	미국 (1명)	6. 26. ~ 7. 6. (7. 26.)	7. 31.	5일
3	미국법률도서관협회(AALL) 회의 참석	미국 (2명)	7. 14. ~ 7. 22. (8. 14.)	8. 7.	-
4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 참석	네덜란드 등 (3명)	8. 11. ~ 8. 19. (9. 11.)	9. 5.	-
5	외국 정책기관 자료조사	호주 (3명)	9. 15. ~ 9. 23. (10. 16.)	10. 16.	-
6	국제교환기관 교류 및 자료협력 국외 출장	일본 (3명)	9. 19. ~ 9. 22. (10. 16.)	10. 26.	10일
7	국제법률도서관협회(IALL) 연례회의 참가	스위스 등 (3명)	10. 5. ~ 10. 12. (11. 1.)	11. 2.	1일
8	국제기록관리협의회(ICA) 총회 참가	아랍에미리트 (1명)	10. 8. ~ 10. 16. (11. 6.)	11. 7.	1일
9	ISNI 등록기관 운영 관련 출장	영국 등 (2명)	11. 6. ~ 11. 11. (12. 4.)	12. 5.	1일

주: 귀국일 다음 날부터 기간을 계산하되, 귀국일(그 다음 날)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계산하였고, 제출기한일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계산하였음.

자료: 국회도서관 제공자료 재구성

따라서, 향후 국회도서관은 제출기한 이후 공무국외출장 보고서가 제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고, 출장공무원이 관련 규정 및 지침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안내할 필요가 있음.

다. 국가전략 콜로키움 사업 예산의 단일화 검토 필요

국회도서관은, 2022년에 국회가 국가 중점 어젠다를 설정하고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국회도서관 내에 국가전략정보센터를 개관하였으며,[48] 2023년부터는 국가전략정보센터에서 국가전략정보의 최신 동향 파악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국력·기후위기·인구문제·과학기술 등 국가전략 핵심 현안 중심의 '국가전략 콜로키움'을 새롭게 개최하고 있음.

한편, 국가전략 콜로키움 개최 현황[49]을 살펴보면, 2023년에 총 8차례 개최되었는데 소요 경비(1,255만원)는 3개의 단위사업(도서관운영지원·입법정보지원·도서관자료확충및보존)과 4개의 세부사업(도서관운영관리·입법자료지원·법률정보지원·도서관자료확충) 예산에서 각각 나누어 집행되었음.

[2023년 국가전략 콜로키움 개최 현황]

(단위: 천원)

일자	토론회명	주요내용(주제)	단위사업	세부사업	집행액
2. 22.	제1차 국가전략 콜로키움	2023 세계 경제 동향과 한국의 대응	입법정보지원 (3032)	입법자료지원 (300)	1,212
3. 30.	제2차 국가전략 콜로키움	북한의 전략국가론	입법정보지원 (3032)	법률정보지원 (301)	1,098
4. 25.	제3차 국가전략 콜로키움	문화국가로의 도약 : 시장과 정부, 보편과 특수의 이분법을 넘어	도서관자료확충및보존 (3033)	도서관자료확충 (300)	800
6. 8.	제4차 국가전략	인공지능과 디지털	입법정보지원	입법자료지원	1,050

48) 아울러, '국가전략정보포털'을 2022년 오픈하여 국가별·기관별로 산재되어 있는 국가전략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서비스하고 있음.

49) 제5차의 경우 2023 한국국가 정보학회 하계학술 세미나를 겸함.

일자	토론회명	주요내용(주제)	단위사업	세부사업	집행액
	콜로키움	헬스케어	(3032)	(3032-300)	
6. 29.	제5차 국가전략 콜로키움	대전환기 한국의 국가안보와 정보	입법정보지원 (3032)	법률정보지원 (3032-301)	945
7. 5.	제6차 국가전략 콜로키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의 세계 지정학적 재편	도서관운영지원 (3031)	도서관운영관리 (300)	2,950
9. 7.	제7차 국가전략 콜로키움	국가전략과 종합국력	입법정보지원 (3032)	입법자료지원 (3032-300)	1,050
11. 2.	제8차 국가전략 콜로키움	혁신적인 데이터 활용과 도전	입법정보지원 (3032)	법률정보지원 (3032-301)	3,440

자료: 국회도서관 제공자료 재구성

국가전략 콜로키움은 ① '국가전략 콜로키움'이라는 단일 사업명(토론회명) 하에 ② '국가전략정보의 최신 동향 파악 및 전문성 강화'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③ 연속되는 일련번호 차수를 부여하여 ④ 같은 장소(국가전략정보센터)에서 개최되었다는 점에서 단일한 사업으로 인식[50] 됨에 따라, 하나의 세부사업에서 소요 경비를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했던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하여, 국회도서관은 매년 세부사업별로 배정된 예산에 따라 각 부서에서 세미나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2023년에는 이를 '국가전략'이라는 통일된 대주제 하에 현안 이슈가 되는 주제로 개최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51]

50) 국회도서관은 국가전략 콜로키움을 명시한 포스터 등을 제작하여 국회도서관 홈페이지 및 국회 디지털 정보안내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홍보하는 한편, 개최 후에는 국가전략 콜로키움 개최를 제목으로 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음.

51) 국회도서관의 설명에 따르면, 기존 세미나 및 토론회와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고 형식적으로 '국가전략 콜로키움'이라는 명칭을 부여했을 뿐인 것으로 이해됨. 이 경우 '국가전략 콜로키움'의 실체가 있는 것처럼 예산을 집행하고 홍보·보도자료 등을 배포한 것은 다소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가전략 콜로키움 소요 경비는 하나의 세부사업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첫째, 사업 방식과 지속성 측면에서 ① 기존의 개별 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 방식과 달리 '국가전략 콜로키움'이라는 단일 사업명 아래 체계적·연속적으로 개최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고, ② '국가전략정보센터' 개관 및 '국가전략정보포털' 오픈 등 국가전략정보 제공업무가 국회도서관의 주요 업무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국가전략 콜로키움'도 계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하나의 세부사업에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적절함.[52)]

둘째, 예산 집행 및 국회 심의 효율성 측면에서 ③ 하나의 사업에 여러 단위사업[53)] 및 세부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예산 편성·집행의 일관성과 투명성·책임성을 저해하고 성과의 관리 및 평가를 어렵게 할 수 있으며, ④ 국회의 예산안 및 결산 심의가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에 대한 예산의 편성·집행 내역이 여러 세부사업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이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어려워짐.

셋째, 동 사업은 차수별 주요내용(주제)를 기준으로 세부사업을 나눈 것으로 보이는데, 주요내용(주제)의 포괄성으로 인하여 각 세부사업의 목적[54)]에 부합하게 구분되었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사업 성과를

52) 2024년 8월 현재 2024년에도 3차례 국가전략 콜로키움이 개최되었는데, 제1차는 'AI와 공교육'을 주제로, 제2차는 '글로벌 AI 선도를 위한 전략 및 입법적 과제'를 주제로, 제3차는 '제22대 국회의 AI 입법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개최되었음.

53) 단위사업 간 예산을 상호 융통하는 것은 예산의 전용에 해당함.

54) 각 세부사업의 사업목적은 아래와 같음.

제대로 달성했는지 알기 어려움.

따라서, 국회도서관은 국가전략 콜로키움 사업 예산 집행의 일관성·투명성 및 책임성 등을 제고하고, 동 사업을 안정적·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단일한 세부사업 또는 내역사업[55]에 해당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구 분	사업목적
도서관운영관리	기획 및 홍보자료 발간, 국회도서관 웹진 및 뉴스레터 제작, 도서관 이용자 환경 개선, 기관운영 비품 구입
입법자료지원	의회자료 발간, 외국자료 번역, 의회자료지원 운영경비 등
법률정보지원	외국법률 번역·공개 사업, 법률정보 자료발간 사업, 법률정보지원 운영경비 등
도서관자료확충	도서관 열람자료 구입, Web-DB 사용, 납본보상금, 자료확충 운영경비 등

55) 2024년 예산부터 「도서관운영관리(3031-300)」, 「입법자료지원(3032-300)」, 「법률정보지원(3032-301)」, 「도서관자료확충(3033-300)」, 「도서관자료보존및열람(3033-301)」, 「국회기록물관리(3033-302)」 등 6개 세부사업이 「도서관운영관리(3031-300)」 세부사업의 6개 내역사업으로 조정·통합되었음. 따라서, 2024년의 경우 실질적으로 2023년과 같이 여러 세부사업에서 집행하더라도 형식적으로 하나의 세부사업에서 집행하게 되나, 내역사업 간에는 여전히 같은 문제가 존재함.

2. 국회부산도서관운영(3031-301)

가. 개 요

「국회부산도서관운영」 사업은 국가지식정보의 영구보존 및 제공을 위한 보존서고 관리・운영, 국회부산도서관 열람서비스 운영을 위한 신규 자료 구입・정리, 열람서비스 환경 조성 및 전시공간 운영 등을 수행하는 사업임.

2023년도 예산현액은 전용으로 예산액보다 2,900만원이 증가한 32억 4,400만원이며, 이 중 31억 6,200만원을 집행하고, 8,200만원(2.5%)을 불용하였음.

[2023년도 국회부산도서관운영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3,215	3,215	-	29	-	3,244	3,162	-	82	2,928

자료: 국회도서관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① 보존서고 운영에 1억 5,800만원, ② 자료구입・정리에 7억 5,900만원, ③ 열람공간 및 전시공간 운영에 9억 500만원, ④ 국회부산도서관 운영지원에 13억 4,0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음.

나. 전자책 및 오디오북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노력 필요

국회부산도서관은 국회부산도서관운영(3031-301) 사업에 구독형 전자책 및 오디오북 서비스 사용료 예산 9,00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음.

[2023년 전자책 및 오디오북 서비스 예산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90	90	90	-

자료: 국회도서관

국회부산도서관 회원[56] 및 국회직원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구독형 전자책 및 오디오북 서비스는 이용자가 시공간의 제약 없이 도서관 관내 및 관외에서 신간 및 베스트셀러 등의 이용이 가능하고, 예약 또는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용자 접근성 및 편의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전자책 및 오디오북 서비스 내용]

구 분	내 용
이용대상자	국회부산도서관 회원, 국회직원
이용 범위	국회부산도서관 관내・관외
제공 도서	10만종 이상(신간・베스트셀러 포함)
예약・대기	예약・대기 없이 바로 이용

자료: 국회도서관 제공자료 재구성

56) 국회도서관(본관)은 장기열람증 소지자(국회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을 하고 장기열람증을 받은 사람)와 국회직원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데 비하여, 국회부산도서관은 회원(국회부산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을 한 사람)과 국회직원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한편, 2023년 전자책 및 오디오북 월별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구독형 전자책 서비스를 확대 개편한 3월에 급격히 증가(2월 927책→3월 29,278책)한 다음, 서서히 감소하다가 10월에 급격히 감소(9월 13,788책→10월 37책)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국회부산도서관에 따르면 이는 구독형 전자책 및 오디오북 서비스 예산이 9월에 조기 소진되어 구독료를 지급[57]할 수 없었기 때문임.[58]

[2023년 전자책 및 오디오북 월별 이용(대출) 현황]

(단위: 책)

구 분	전자책	오디오북	계
1월	1,269	41	1,310
2월	899	28	927
3월	28,256	1,022	29,278
4월	21,399	938	22,337
5월	21,929	954	22,883
6월	18,163	610	18,773
7월	16,419	477	16,896
8월	14,231	412	14,643
9월	13,383	405	13,788
10월	35	2	37
11월	10	1	11
12월	37	30	67
합계	136,030	4,920	140,950

자료: 국회도서관 제공자료 재구성

예측하지 못했던 이용 수요 급증으로 인하여 관련 예산이 부득이하게

57) 구독료는 이용책수만큼 과금되는 방식으로 계약 업체에 지급됨.

58) 이와 관련하여, 국회부산도서관은 2022년 3월 개관 후 같은 해 6월에 구독형 전자책 및 오디오북 서비스를 개시하였는데, 국회부산도서관에 대한 인지도 및 홍보 부족으로 서비스 이용이 저조함에 따라, 2023년에는 구독형 전자책 및 오디오북 서비스 종수, 이용 대상 및 책수 등을 확대하고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함으로써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였다고 설명함.

조기 소진된 면은 있지만, 제공되던 서비스를 연도 중 일시에 중단하게 되면 서비스 이용자에게 불편이 발생하고 나아가 제공 서비스에 대한 신뢰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월 이용 총한도 책수 또는 금액 설정[59] 등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따라서, 향후 국회도서관은 전자책 및 오디오북 서비스가 연중 균형 있고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이용 추이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적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59) 국회부산도서관은 이용 추이와 예산 사정을 고려하여 2023. 7. 1. 1명당 1일 이용 책수를 20책에서 10책으로 조정하였다고 설명함.

3. 도서관자료확충(3033-300)

가. 개 요

「도서관자료확충」 사업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 지원 및 대국민 정보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국내외 단행본, 정기간행물, 전자책 등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의회·법률, 학술 분야 등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제공하며, 납본자에 대한 납본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임.

2023년도 예산현액은 예산액과 동일한 51억 7,800만원이며, 이 중 50억 9,200만원을 집행하고, 8,600만원(1.7%)을 불용하였음.

[2023년도 도서관자료확충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5,178	5,178	-	-	-	5,178	5,093	-	86	-

주: 2024년부터 「도서관자료확충(3033-300)」 세부사업이 「도서관운영관리(3031-300)」 세부사업으로 통합·운영됨.

자료: 국회도서관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① 도서관 열람자료 구입에 29억 3,100만원, ② Web-DB 사용료에 7억 9,000만원, ③ 납본보상금에 7억 3,100만원, ④ 자료확충 운영경비에 6억 4,0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음.

나. Web-DB 주기적 점검 필요

국회도서관은 국내 및 해외의 의회·법률·학술 분야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Web-DB(네트워크 접근이 가능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구독하여 서비스하고 있음.

국회도서관은 도서관자료확충(3033-300) 사업에 Web-DB 사용료 예산 8억 2,200만원을 편성하여, 7억 9,000만원을 집행하고 3,2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3년 Web-DB 사용료 예산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822	822	790	32

자료: 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은 2023년 기준 총 37개의 Web-DB를 구독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Web-DB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및 2020년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1년에는 전년 대비 211.8% 증가(202,862건→632,503건)하였고, 2022년에는 전년 대비 90.5% 증가(632,503건→1,204,738건)하였다가 2023년에는 전년 대비 39.2% 감소(1,204,738건→732,082건)하여 최근 3년간 급격한 증가 및 감소 양상을 보이고 있음.

참고로, 국회도서관에 따르면 이용건수의 급격한 변동은 Web-DB 이용건수 통계 산출 방식의 변경[60]에 기인한 것으로, 예산 집행 추이와 연관성은 적어 보임.[61]

60) 국회도서관에 따르면, 2021년 이전에는 도서관 자체 통계(DB접속 횟수)만을 사용하였는데 2021년부터는 업체 통계(검색수, 다운로드 수 등)도 활용하고 있다고 함. 다만, 업체 통계는 DB마다 산출 방식이 다르며, 외부 변수가 전체 통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함.

61) 최근 5년(2019년~2023년) Web-DB 예산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예산액	591	742	742	822	822
집행액	594	733	554	785	790

[Web-DB 사용료 및 이용건수 현황]

(단위: 백만원, 건)

연번	구분	Web-DB명	집행액	이용건수				
			2023	2019	2020	2021	2022	2023
1	국내	KSDC	3	3,133	1,983	1,793	11,596	10,780
2		인물검색(조인스)	19	31,377	26,079	18,323	18,303	10,029
3		조선일보 아카이브	4	15,598	1,745	475	2,994	7,467
4		동아일보 아카이브	4	16,485	2,953	2,919	5,765	8,551
5		인포맥스	6	443	165	146	358	560
6		KISS(한국학술정보)	37	50,765	31,622	186,518	679,635	157,726
7		DBPIA	63	26,540	59,309	138,047	127,815	175,484
8		LawnB	24	6,006	4,293	4,826	30,905	29,350
9		삼일아이닷컴	5	18,592	12,917	10,535	10,874	15,436
10		모아진	11	-	2,344	6,571	26,244	13,119
11		e-article	17	-	8,344	26,880	34,241	47,811
12	국외	JSTOR	11	2,027	1,368	1,123	366	281
13		Westlaw Next	40	2,403	1,978	67,142	35,900	37,192
14		Hein Online	12	1,215	891	6,451	9,091	9,350
15		ICPSR	8	3,350	1,954	1,716	8,645	7,792
16		NBER Working Papers	4	1,142	799	866	216	184
17		BeckOnline	14	1,664	1,177	3,776	3,665	4,069
18		북대법보	9	1,050	815	589	453	330
19		ProQuest Statistical Insight	8	3,556	2,109	2,255	668	18,484
20		ProQuest Congressional	8	873	673	33,779	33,313	24,257
21		TKC Law Library	16	2,513	1,529	909	1,159	2,010
22		Web of Science	68	4,051	2,380	2,117	22,415	18,871
23		EBSCOhost Complete	34	13,753	14,396	11,493	16,717	16,082
24		ProQuest Global	61	1,709	809	28,784	30,663	26,165
25		ProQuest Central	61	2,243	1,099	18,703	35,056	31,171
26		U.S. Declassified Documents Online (전 DDRS)	4	-	638	17,235	27,993	24,131
27		IMD World Competitiveness online	2	-	557	434	256	245
28		Lexis Library	8	-	671	334	238	157
29		China Academic Journal(CNKI)	34	-	1,578	1,768	294	286
30		JDET	20	-	545	309	4,433	3,368
31		EIU Country Report	80	-	2,160	3,262	2,273	6,219
32		EBSCO eBook	20	-	5,423	5,840	10,797	11,089
33		medici.tv	6	-	6,440	4,216	1,233	2,621
34		ProQuest Ebook Central	17	-	1,119	17,417	8,106	7,992
35		SAGE Premier	35	-	-	4,879	1,985	3,324
36		NK Pro	13	-	-	73	73	29
37		Strada lex Europe	4	-	-	-	-	70
계			790	210,488	202,862	632,503	1,204,738	732,082

자료: 국회도서관 제공자료 재구성

한편, 2023년 기준 구독 중인 37개 Web-DB의 이용건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9개의 Web-DB(국내 1개, 국외 8개)의 연간 이용건수가 1,000건 미만인데, 이 중 8개의 Web-DB(모두 국외)는 이용건수가 500건 미만으로 실적이 비교적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이용건수 저조 Web-DB 현황]

(단위: 백만원, 건)

구분	Web-DB명	집행액	이용건수				
		2023	2019	2020	2021	2022	2023
국내	인포맥스	6	443	165	146	358	560
국외	JSTOR	11	2,027	1,368	1,123	366	281
	NBER Working Papers	4	1,142	799	866	216	184
	북대법보	9	1,050	815	589	453	330
	IMD World Competitiveness online	2	-	557	434	256	245
	Lexis Library	8	-	671	334	238	157
	China Academic Journal(CNKI)	34	-	1,578	1,768	294	286
	NK Pro	13	-	-	73	73	29
	Strada lex Europe	4	-	-	-	-	70

자료: 국회도서관 제공자료 재구성

따라서, 향후 국회도서관은 Web-DB 구독 서비스의 이용실적이 제고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이용실적 점검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다. 납본기한 준수율 제고 노력 필요

「국회도서관법」 제7조[62]에 따라 국회도서관은 도서관자료[63]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자로부터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를 납본받고 있음.

국회도서관은 도서관자료확충(3033-300) 사업에 납본한 자에 대한 보상금(손실보상금 310-01)으로 7억 3,700만원을 편성하여 7억 3,100만원을 집행하고 600만원을 불용하였으며, 납본대행자[64]에 대한 수수료(일반수용비 210-01)로 1억 1,200만원을 편성하여 1억 900만원을 집행하고 3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3년 납본보상금 및 납본대행수수료 예산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납본보상금	737	737	731	6
납본대행수수료	112	112	109	3

자료: 국회도서관 제공자료 재구성

2023년 납본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도서 57,418책, 정기간행물 15,054책, 비도서 1,522점이 납본되었으며, 납본보상금으로 일반도서에 6억 1,300만원, 정기간행물에 8,800만원, 비도서자료에 3,000만원이 각각 지급되었음.

---

62) 「국회도서관법」 제7조(도서관자료의 납본 등) ③ 공공기관등이 아닌 자가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는 제외한다)를 발행 또는 제작한 때에는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 2부를 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서관은 납본한 자에게 그 자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63)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로서 도서관이 수집, 정리, 보존하는 자료를 말하는데, 편의상 크게 일반도서, 정기간행물, 비도서로 구분할 수 있음.

64) 일반도서는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납본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정기간행물은 한국잡지협회에서 납본업무를 대행하고 있음.

[2023년 납본 현황]

(단위: 책/점, 백만원)

구 분	일반도서	정기간행물	비도서
납본 책수/점수	57,418	15,054	1,522
납본보상금 지급액	613	88	30

자료: 국회도서관 제공자료 재구성

한편,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납본기한(30일 이내) 준수율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77% 수준을 유지하였고, 2022년에 80.3%(전년 대비 2.6%p 증가)로, 2023년에 82.6%(전년 대비 2.3%p 증가)로 각각 증가하여 다소 향상된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최근 5년간 납본기한 준수율 현황]

(단위: 책/점)

구 분		기한 내 납본(%)	기한 후 납본(%)	합 계
2019년	일반도서	38,702 (73.0%)	14,326 (27.0%)	53,028
	정기간행물	14,088 (85.2%)	2,452 (14.8%)	16,540
	비도서	3,560 (100%)	-	3,560
	소계	**56,350 (77.06%)**	**16,778 (22.94%)**	**73,128**
2020년	일반도서	39,730 (73.7%)	14,196 (26.3%)	53,926
	정기간행물	13,384 (86.3%)	2,117 (13.7%)	15,501
	비도서	2,247 (100%)	-	2,247
	소계	**55,361 (77.24%)**	**16,313 (22.76%)**	**71,674**
2021년	일반도서	39,538 (74.7%)	13,374 (25.3%)	52,912
	정기간행물	13,574 (85.1%)	2,369 (14.9%)	15,943
	비도서	1,850 (100%)	-	1,850
	소계	**54,962 (77.73%)**	**15,743 (22.27%)**	**70,705**
2022년	일반도서	39,972 (77.2%)	11,808 (22.8%)	51,780
	정기간행물	14,144 (87.9%)	1,951 (12.1%)	16,095
	비도서	1,827 (100%)	-	1,827
	소계	**55,943 (80.26%)**	**13,759 (19.74%)**	**69,702**
2023년	일반도서	45,784 (79.7%)	11,634 (20.3%)	57,418
	정기간행물	13,776 (91.5%)	1,278 (8.5%)	15,054
	비도서	1,522 (100%)	-	1,522
	소계	**61,082 (82.55%)**	**12,912 (17.45%)**	**73,994**

자료: 국회도서관

그러나, 국회도서관에 대한 납본제도는 국회도서관이 국회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심의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보존하고, 국민에게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둔 제도라는 점에서 납본기한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의정활동 지원에 지장을 초래할 소지가 있음.[65]

따라서, 향후 국회도서관은 납본기한 준수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납본의무자에 대한 선제적 납본 요청 등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고 납본대행자에게도 적극적으로 고지하는 한편, 납본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 방안[66]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65)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에서 국회도서관은 납본대행사인 대한출판문화협회와 납본의무자에게 납본의무 및 납본기한을 정기적으로 고지하는 한편, 신간출판정보를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납본대상 자료를 요청함으로써 자료가 납본기한 내 수집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음.

66) 「도서관법」은 국립중앙도서관에 대한 납본의무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실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

4. 도서관자료보존및열람(3033-301)

가. 개 요

「도서관자료보존및열람」 사업은 장서관리 및 열람 등 도서업무 지원 인력에 대한 임금 등 지급, 도서관자료 전자태그 부착, 북컨베이어 등 주요 장비 유지보수 등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임.

2023년도 예산현액은 전용으로 예산액보다 2,900만원이 감소한 19억 2,200만원이며, 이 중 17억 8,9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3,300만원(6.9%)을 불용하였음.

[2023년도 도서관자료보존및열람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1,951	1,951	-	△26	-	1,922	1,789	-	133	-

주: 2024년부터 「도서관자료보존및열람」(3033-301) 세부사업이 「도서관운영관리(3031-300)」 세부사업으로 통합·운영됨.

자료: 국회도서관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① 천연항진균제 구입에 4,000만원, ② 장서관리 및 열람 등 도서지원 인력에 대한 임금 등 지급에 4억 500만원, ③ 도서관자료 전자태그 부착에 3,400만원, ④ 북컨베이어 등 주요장비 유지보수에 8,700만원, ⑤ 자료실 운영경비 등에 12억 2,3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음.

나. 미디어 스튜디오 활성화 방안 강구 필요

국회도서관은 국회 내 영상 관련 업무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영상 촬영 및 편집 공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홍보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할 수 있는 미디어 스튜디오를 2023년 8월 국회도서관 디지털정보센터(국회의정관 3층) 내에 설치하였음.

국회도서관은 미디어 스튜디오 설치를 위하여 도서관운영관리(3031-300) 사업에서 1,793만원을, 도서관자료보존및열람(3033-301) 사업에서 5,914만원을 각각 집행하여 총 7,707만원을 집행하였음.

[미디어 스튜디오 설치 예산 집행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집행액	집행내용
도서관운영관리 (3031-300)	17,930	자료실 시설환경개선 및 공간 재구성
도서관자료보존및열람 (3033-301)	47,350	스튜디오 장비
	7,935	가구 및 사인물 제작
	1,904	의자 등 조달 가구
	1,948	조달 데스크톱 컴퓨터
합계	77,067	

자료: 국회도서관 제공자료 재구성

한편, 미디어 스튜디오가 운영을 시작한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의 이용실적을 살펴보면, 월평균 7회의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는 미디어 스튜디오가 국회의정관에 설치되어 있어 주요 사용자인 국회의원의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실제로, 비슷한 시기(2023년 7월) 국회사무처가 국회의원회관에 설치하여 운영을 시작한 '이실직고 스튜디오'[67]의 2023년 12월까지의 월평균 이용실적 53건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이용실적이 낮은 것으로 보임.

[2023년 이실직고 스튜디오 및 미디어 스튜디오 이용실적]

(단위: 건)

구 분	이실직고 스튜디오 (국회의원회관 소재)	미디어 스튜디오 (국회의정관 소재)
2023. 7.	12	(설치 전)
2023. 8.	17	5
2023. 9.	50	8
2023. 10.	51	9
2023. 11.	95	6
2023. 12.	95	7
합계	**320**	**35**
평균	**53**	**7**

자료: 국회사무처 및 국회도서관 제공자료 재구성

67) 이실직고 스튜디오는 미디어 스튜디오와 같은 가능을 하는 영상 촬영 공간임. 국회사무처는 이외에도 열린스튜디오를 2020년 9월부터 운영하고 있음.

< 이실직고 스튜디오 및 미디어 스튜디오 비교(2023년 기준) >

구 분	이실직고 스튜디오	미디어 스튜디오
목적	대담·토론프로그램 촬영	국회의원 의정활동 홍보 및 소속기관 영상 콘텐츠 제작
위치	국회의원회관 2층	국회의정관 3층
시설	DID 디스플레이, 무대세트, 4K카메라 3대, 프롬프터 등	카메라, 조명, 프롬프터 등
운영시간	평일 9시~18시 운영	평일 9시~18시 운영
지원내용	전담인력 상주, 다양한 SNS 플랫폼을 활용한 라이브 방송 지원	영상 촬영·편집에 필요한 장비 및 공간 제공,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을 활용한 실시간 라이브 방송 지원

따라서, 향후 국회도서관은 미디어 스튜디오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시간·요일의 확대 및 국회 내 다른 영상 촬영 스튜디오와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등 사용자 편의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미디어 스튜디오 이용에 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5. 전자도서관운영(3035-500)

가. 개 요

「전자도서관운영」 사업은 국회도서관 소장 학술자료 및 정책자료를 원문DB로 구축하고, 입법 관련 디지털 정보의 제공과 각종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보수 등을 수행하는 사업임.

2023년도 예산현액은 예산액과 동일한 273억 6,400만원이며, 이 중 271억 4,7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1,700만원(0.8%)을 불용하였음.

[2023년도 전자도서관운영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27,364	27,364	-	-	-	27,364	27,147	-	217	31,451

자료: 국회도서관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① AI의정분석서비스 아르고스 구축·운영에 6억 5,100만원,

② 전자도서관시스템 구축·운영에 18억 6,600만원,

③ 국가학술정보클라우드시스템 구축·운영에 6억 7,800만원,

④ 국회도서관 자료관리업무지원시스템 구축·운영에 10억 5,000만원,

⑤ 학술연구자정보관리·공유시스템 구축·운영에 2억 8,800만원,

⑥ 전자도서관 DB 구축에 124억 1,900만원,

⑦ 의회·법률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7억 900만원,

⑧ 국회기록통합관리 및 서비스시스템 구축·운영에 2억 8,800만원,

⑨ 국회도서관 정보인프라 구축·운영에 54억 3,800만원,

⑩ 국회부산도서관 정보인프라 구축·운영에 36억 700만원,

⑪ 전자도서관 운영경비에 1억 5,2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음.

나. 정보화업무 관련 내규 현행화 및 보완 필요

국회도서관은 1997년 제1차 전자도서관 구축·운영 사업에 따라 전자도서관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현재 17종의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국회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또한, 국회도서관은 인공지능(AI) 기술 기반의 디지털 미래도서관으로의 전환을 위하여 다양한 디지털 지식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서비스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68]

[국회도서관 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연 번	시스템명	구축연도	연 번	시스템명	구축연도
1	국회도서관 홈페이지 시스템	1996년	10	국회지방의회 의정포털	2014년
2	국회전자도서관	1997년	11	전자도서관 앱	2015년
3	도서관업무통합관리 시스템	2000년	12	국가학술정보 클라우드 시스템	2017년
4	Web-DB	2006년	13	학술연구자정보 공유 시스템	2017년
5	국회기록물통합관리 및 서비스 시스템	2009년	14	AI의정분석서비스 아르고스	2018년
6	국회법률도서관	2010년	15	국회회의록 빅데이터	2020년
7	국회의원정책자료 시스템	2010년	16	국회부산도서관 홈페이지 시스템	2022년
8	독도 홈페이지	2012년	17	국가전략정보포털	2022년
9	전문가정보데이터 서비스	2013년			

자료: 국회도서관 제공자료 재구성

68) 2024년에는 외국 입법·정책 자료 수집 기능 구축, 정형·비정형 데이터 표준화 적용 및 DB 구축 등을 사업 내용으로 하는 '국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을 진행 중에 있음.

한편, 국회도서관은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국회도서관 전산업무처리에 관한 내규」에 근거하여 수행하고 있는데,[69] 현재 운영 중인 17종의 정보시스템 중 12종의 정보시스템이 2010년 이후 구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내규는 2009년 이후 한차례도 개정되지 않아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첫째, 내용적 측면에서, 과거와 달리 정보화업무가 소프트웨어인 정보시스템 중심으로 전환되고 정보시스템도 다양화・고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전산자료의 이용・관리와 전산장비 및 통신망의 운영・관리 등 하드웨어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정보시스템의 관리책임자・운영담당자 및 관리담당자의 지정・업무범위・책임 등도 명시되어 있지 않음.[70]

참고로, 국회사무처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과 정보자원의 운영・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회사무처 정보화업무내규」는 소프트웨어인 정보시스템 중심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고, 각 정보시스템의 관리책임자・운영담당자 및 관리담당자의 지정・업무범위・책임 등과 정보자원의 관리담당자의 지정・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71]하는

---

69) 「국회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은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편의상 근거 법규에서 제외함.

70) 「국회도서관 전산업무처리에 관한 내규」는 전산기계실 관리책임자, 단말기 관리책임자, 전산자료관리책임자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음. 다만, 국회도서관은 각 시스템별로 관리책임자, 관리담당자, 운영담당자가 있다고 설명함. 예를 들어, AI의정분석 서비스 아르고스의 관리책임자는 정보관리국장이고, 관리담당자 및 운영담당자는 데이터융합분석과 데이터융합서비스담당이라고 밝힘.
「국회도서관 전산업무처리에 관한 내규」 제13조(기계실관리) ②정보관리국장은 기계실에 관리책임자 정·부 각 1인을 지정하여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15조(단말기 운영관리) ①각 부서에 설치된 단말기는 해당 부서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전산자료의 백업) ①정보관리국장은 전산자료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전산자료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71) 「국회사무처 정보화업무내규」 제6조(정보시스템의 관리·운영 책임자 등) ① 국회사무처 정보시스템의 관리

한편,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구축·관리를 위하여 현재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을 그 목적·기능에 따라 ① 의정지원 정보시스템, ② 대국민 정보시스템, ③ 행정지원 정보시스템으로 구분하여 모두 열거[72]하고 있음.

둘째, 형식적 측면에서, 정보화사업 영역의 확장과 정보화업무 성격의 변화 등에 따라 정보화 관련 용어의 용례가 바뀌었고, 직제 개편 등을 통하여 부서 또는 직렬 명칭 등이 변경되었는데,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이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예를 들어, '전산화', '전산기계실', '전산장비' 및 '통신장비' 등의 용어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으며, '정보기술지원과장' 및 '전산직' 등 변경 전 부서 명칭과 직렬 명칭[73]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

책임자 및 운영담당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책임자 : 디지털정책담당관 및 디지털운영담당관 중 주관부서의 장이 각 정보시스템별로 관리하도록 지정하는 담당관
2. 운영담당자
가. 위원회(「국회법」 제5장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 : 수석전문위원이 지정하는 자
나. 실·국(문화소통기획관·공보기획관·감사관·방송국장·국회민원지원센터장·인사과·운영지원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실·국의 장이 지정하는 자
② 국회사무처 정보시스템의 관리담당자는 관리책임자가 지정한다.
③ 국회사무처 정보시스템의 관리책임자 및 운영담당자는 정보시스템을 파손·분실·화재·도난 및 낙뢰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예방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정보시스템의 일시적 중단 및 자료백업) ① 관리책임자는 소관하는 정보시스템의 성능개선, 자료백업 및 정비보수 등이 필요한 경우 사전 공지 후 정보시스템의 운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② 관리책임자는 재해 또는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의 백업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시스템에 저장된 전산업무자료에 대하여 정기적인 백업을 실시한 후 백업된 전산업무자료를 국회사무총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2곳 이상의 장소에 분산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자원의 관리) ③ 디지털정책담당관 및 디지털운영담당관은 소관하는 정보자원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고,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 PC, 프린터 등 정보기기 관리를 위한 정보기기담당자
2. 소프트웨어 관리 및 정품 소프트웨어의 사용여부 파악 등을 위한 소프트웨어담당자
3.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련 산출물의 관리를 위한 정보기술아키텍처담당자
4. 정보보호 관련 자료의 취급 및 관리를 위한 정보보호담당자
5. 데이터센터의 시스템 및 설비 운영을 위한 관리담당자

72) ○ 의정지원 정보시스템: 디지털 본회의장시스템·입안지원시스템·법제지원시스템 등 8종
○ 대국민 정보시스템: 의안정보시스템·예산결산정보시스템·국정감사정보시스템 등 13종
○ 행정지원 정보시스템: 인적자원관리시스템·전자문서시스템·국회메일시스템 등 16종

73) 정보기술지원과는 2018. 6. 18. 「국회도서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으로 정보기술개발과로 변경되었고, 전산직은 2023. 4. 10. 「국회인사규칙」 개정으로 정보기술직으로 변경되었음.

따라서, 향후 국회도서관은 법규에 따라 정보화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관리되고 정보시스템이 체계적·안정적으로 구축·운영될 수 있도록, 현행 정보화업무 관련 내규를 전반적으로 검토·보완하는 한편, 정보화업무의 변화 또는 정보시스템의 변경 등 정보화업무 관련 내규의 개정 수요 발생 시 적기에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다. 전문가정보데이터베이스 이용 활성화 방안 모색 필요

국회도서관은 「국회도서관법」 제8조[74]에 근거하여 국회 입법활동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2014년(2013년 구축)부터 국회의원 및 각 분야 전문가[75]들의 인적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음.

국회도서관은 전자도서관운영(3035-500) 사업에 전문가 정보의 구축 및 관리를 위한 예산 5,800만원을 편성하여 5,800만원을 집행하였음.

[2023년 전문가정보데이터베이스 예산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58	58	58	-

자료: 국회도서관

74) 「국회도서관법」 제8조(인적자원 정보망의 구축) ① 관장은 입법활동 지원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의 인적자원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② 관장은 인적자원 정보의 수집·관리·활용을 위하여 인적자원 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75) 전문가정보데이터 등록기준

구 분	등록 기준
정계	- 전·현직 국회의원, 광역지자체 단체장, 정당 주요 인사 등
관계	- 국회소속 공무원 및 국회 보좌진 - 전·현직 장·차관 및 4급(상당)이상 공무원 - 정부산하기관 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임직원 - 국가기관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자문위원회 등 포함)의 위원
법조계	- 판사(헌법재판관 포함), 검사, 변호사
학계	- 전국 대학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등 박사학위 소지자 - 연구기관의 연구원
언론계	- 국회 출입기자 등 언론계 종사자
재계/금융계	- 기업체 및 금융계 종사자
종교계	- 성직자
군인	- 영관급 이상 계급의 장교
문화예술계	- 문학·음악·미술·체육 등 분야의 전문가
전문직업인	- 의사·한의사 및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업인
기관/단체	- 비영리 법인·단체·노동조합 등의 대표 및 상근자
기타	- 그 밖에 전문가정보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이 필요하다고 도서관장이 인정하는 사람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전문가정보데이터베이스에 신규 등록된 전문가 수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3,257건, 2022년 2,901건, 2023년 2,856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2021년~2023년 전문가정보데이터베이스 등록 현황]

(단위: 건)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신규 등록 건수	3,275	2,901	2,856
누적 등록 건수	33,660	36,561	39,417

자료: 국회도서관 제공자료 재구성

한편,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전문가정보데이터베이스 이용 실적을 살펴보면, 2021년 44,000건, 2022년 37,000건, 2023년 40,000건으로 국회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른 정보시스템 이용 실적과 비교할 때 비교적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특히, 2023년의 연간 이용 실적과 일평균 이용 실적은 국회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시스템 중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국회도서관 정보시스템 이용 실적]

(단위: 건)

시스템명	2021년 연간	2022년 연간	2023년	
			연간	일평균
국회전자도서관	33,881천	39,844천	53,593천	146,831
국가학술정보 클라우드 시스템	3,574천	5,277천	4,688천	12,844
국회도서관 홈페이지 시스템	1,664천	1,847천	1,985천	5,441
전자도서관 앱	1,371천	2,767천	1,771천	4,851
국가전략정보포털	-	-	997천	3,841
Web-DB	664천	1,231천	754천	2,125
국회의원정책자료 시스템	79천	143천	412천	981
학술연구자정보 공유 시스템	83천	134천	361천	988
독도 홈페이지	216천	219천	220천	601
국회지방의회 의정포털	260천	160천	198천	543
국회회의록 빅데이터	43천	107천	198천	542
국회부산도서관 홈페이지 시스템	-	114천	178천	487
AI의정분석서비스 아르고스	27천	53천	169천	462
국회법률도서관	66천	73천	126천	345
국회기록물통합관리 및 서비스 시스템	46천	42천	46천	126
전문가정보데이터 서비스	**44천**	**37천**	**40천**	**111**

자료: 국회도서관 제공자료 재구성

또한, 2023년에 국회의원, 보좌직원 및 상임위원회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회 및 법률정보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정보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인지율은 47.1%로, 2022년(36.2%) 대비 10.9%p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낮은 상황이며, 인지율을 제외한 이용경험률, 정보의 적시성, 정보의 내용(질), 편익성, 종합만족도가 모두 감소하여 2022년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023년도 전문가정보데이터베이스 만족도 조사 결과]

구 분	인지율 (%)	이용경험률 (%)	종합만족도 (점)	적시성 (점)	정보내용(질) (점)	편익성 (점)
2023년	47.1	49.6	69.6	69.2	70.0	69.6
2022년	36.2	61.7	71.7	73.3	71.6	70.3
GAP	10.9	△12.1	△2.1	△4.1	△1.6	△0.7

아울러, 국회도서관이 운영하고 있는 전문가정보데이터베이스는 인사혁신처가 운영하고 있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의 전문가 등재수[76]와 비교할 경우에도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향후 국회도서관은 전문가정보데이터베이스의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등록 전문가 수의 양적 확대와 제공되는 전문가 정보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는 동시에, 인지율 제고를 위한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76) 공무원 및 사회 각 분야 전문가의 인물정보(학력, 경력, 자격면허, 상훈, 저서, 논문 등)가 수록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약 36만 여명의 정보가 수록되어 있음.

국회예산정책처

Ⅰ. 결산 개요

1. 세입 결산

2023회계연도 국회예산정책처 세입액은 당초 계상되지 않았으나 연가보상비 및 직책수행경비 환수, 정산보험료 등 500만원을 세입징수하여 전액 수납하였음.

[2023회계연도 국회예산정책처 소관 세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결손액 (C)	미수납액 (A-B-C)	수납률 (B/A*100)
-	5	5	-	-	100.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세출 결산

가. 총 괄

2023회계연도 국회예산정책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219억 3,300만원이고,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억 1,000만원 등을 포함한 222억 4,300만원임. 이 중 90.3%인 200억 8,5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5,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8억 6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3회계연도 국회예산정책처 소관 세출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추경)	예산결정후 증감액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전년도이월액	예비비	이용증감액	전용증감액				
국회예산정책처	21,933	310	0	0	250 △250	22,243	20,085	352	1,80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성질별 결산현황

2023회계연도 국회예산정책처의 예산 집행내역을 성질별로 구분하면, 인건비 130억 2,000만원, 기본경비 26억 4,000만원, 주요사업비 44억 2,500만원을 집행하였음.

[2023회계연도 국회예산정책처 성질별 예산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추경)	전년도이월액	이용(증)이용(감)	전용(증)전용(감)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합 계	**21,933**	**310**	**-**	**250 △250**	**22,243**	**20,085**	**352**	**1,806**
인 건 비	14,185	-	-	127 △150	14,162	13,020	-	1,143
기본경비	2,872	-	-	35 △12	2,895	2,640	118	136
주요사업비	4,876	310	-	89 △89	5,186	4,425	234	52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3회계연도 국회예산정책처 주요사업비 집행액 44억 2,500만원의 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획관리 및 정책총괄지원」 사업에 8억 4,100만원, 「국가재정분석 및 평가」 사업에 10억 6,300만원, 「의안비용추계 및 조사분석」 사업에 8억 4,500만원, 「경제전망 및 경제정책분석」 사업에 7억 1,100만원, 「예산정책처정보화」 사업에 9억 6,400만원을 집행하였음.

[2023회계연도 국회예산정책처 주요사업비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 결정후 증감(△)액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전년도이월액	예비비	이 용	전용조정				
▢ 국회예산정책처 운영(프로그램4000)	4,876	310	-	-	89 △89	5,186	4,425	234	527
○ 기획관리및운영지원(4031)	963	-	-	-	12 △9	966	841	47	78
- 기획관리 및 정책총괄지원(4031-300)	963	-	-	-	12 △9	966	841	47	78
○ 국가재정·경제분석및의안비용추계(4032)	3,052	167	-	-	76 △80	3,215	2,619	187	409
- 국가재정분석및평가(4032-300)	1,333	69	-	-	3 △15	1,390	1,063	130	197
- 의안비용추계및조사분석(4032-301)	940	57	-	-	69 △65	1,001	845	57	100
- 경제전망및경제정책분석(4032-302)	779	40	-	-	4	823	711	-	112
○ 예산정책처정보화(4033)	861	143	-	-	-	1,004	964	-	39
- 예산정책처 정보화(4033-500)	861	143	-	-	-	1,004	964	-	3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전용 내역

2023회계연도 국회예산정책처 세출예산 전용액은 1억 7,100만원이며,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음.

첫째, 아시아 의회예산기구 네트워크 국제포럼 초청경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분석 및 평가(4032-300)」의 국외여비(220-02)에서 「기획관리 및 정책총괄지원(4031-300)」의 국외여비(220-02)로 1,200만원을 전용하였음.

둘째,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사업 실시 및 분석업무량 증가로 인한 특근매식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기획관리 및 정책총괄지원(4031-300)」의 특근매식비(210-05) 900만원을「국가재정분석 및 평가(4032-300)」 등 다른 3개 세부사업의 특근매식비(210-05)로 전용하였음.

셋째, 전문임기제 및 한시임기제 보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인건비(7003-150)」의 보수(110-01) 1억 2,700만원을 같은 세부사업의 기타직보수(110-02)로 전용하였음.

넷째, 국회예산정책처 행정실무원 퇴직연금 및 4대보험 기관부담금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인건비(7003-150)」의 보수(110-01) 2,300만원을 같은 세부사업의 고용부담금(320-09)로 전용하였음.

[2023회계연도 국회예산정책처 결산 전용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	목-세목	전용액	주요 전용사유
국가재정분석및평가 (4032-300)	220-02 (국외여비)	△12	아시아 의회예산기구 네트워크 국제포럼 초청경비 부족분 충당
기획관리및정책총괄지원 (4031-300)	220-02 (국외여비)	12	
기획관리및정책총괄지원 (4031-300)	210-05 (특근매식비)	△9	설립20주년 사업 및 국회 재정환경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분석 업무량 증가로 인한 특근매식비 부족분 충당
국가재정분석및평가 (4032-300)	210-05 (특근매식비)	3	
의안비용추계및조세분석 (4032-301)	210-05 (특근매식비)	4	
경제전망및경제정책분석 (4032-302)	210-05 (특근매식비)	2	
7003-150 (인건비)	110-01 (보수)	△127	전문임기제 및 한시임기제 보수 부족분 충당
7003-150 (인건비)	110-02 (기타직 보수)	127	
7003-150 (인건비)	110-01 (보수)	△23	국회예산정책처 행정실무원 퇴직연금 및 4대보험 기관부담금 부족분 충당
7019-250 (기관운영 기본경비)	320-09 (고용부담금)	23	
계		171 △17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라. 불용 내역

2023회계연도 국회예산정책처 세출예산 불용액은 18억 600만원(예산현액 대비 8.1%)으로, ①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11억 4,300만원, ② 행정실무원 보수 등 운영경비 집행잔액 6,800만원, 운영비 예산절감 4,900만원 등 기본경비 집행잔액 1억 3,600만원, ③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1억 4,500만원 등 주요사업비 집행잔액 5억 2,7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음.

[2023회계연도 국회예산정책처 결산 불용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불용액	불 용 사 유
인 건 비	1,143	-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 운영
기 본 경 비	136	- 행정실무원 보수 등 운영경비 잔액(6,800만원) - 불요불급한 소모품 구입 자제 및 운영비 예산절감(4,900만원) - 여비 집행 잔액(300만원) - 업무추진비 및 자산취득비 등 집행잔액(1,700만원)
주요사업비	527	- 자료분석지원요원 보수, 고용부담금 등 집행잔액(9,800만원) - 보고서 발간비 등 일반수용비 집행잔액(1억 4,500만원) - 공공요금, 일반용역비 등 집행잔액 (1억 8,100만원) - 여비 집행 잔액(2,100만원) - 업무추진비 등 집행잔액(1,100만원) - 연구용역 및 일반연구비 집행잔액(7,100만원)
합 계	1,80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Ⅱ. 검토의견

1. 연례적인 정책연구비 이월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필요

국회예산정책처는 매년 국가재정분석, 조세분석, 경제전망 및 경제정책분석과 같은 정책연구를 위해 학계 및 연구기관 등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매년 일정한 정책연구비(260-02)를 책정하여 사용하고 있음.

2023년도 국회예산정책처의 정책연구비 예산현액은 예산액 7억 700만원에 전년도 이월금 1억 1,200만원을 합한 8억 1,900만원임. 이 중 5억 7,8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8,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4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음.

[2023년 국회예산정책처 정책연구비(260-02)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집행률)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률)	불용액 (불용률)
국가재정분석 및 평가 (4032-300)	263	45	-	308	145 (47.1)	130 (42.2)	33 (10.7)
의안비용추계 및 조세분석 (4032-301)	225	57	-	282	220 (78.0)	57 (20.2)	5 (1.8)
경제전망 및 경제정책분석 (4032-302)	219	10	-	229	213 (93.0)	-	16 (7.0)
합계	707	112	-	819	578 (70.6)	187 (22.8)	54 (6.6)

주: 집행률, 이월률,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정책연구비 집행률[77]은 70.6%이고, 이월률은 22.8%로 정책연구비의 다음연도 이월이 상당히 높은 수준임. 특히, 세부사업 중 「국가재정분석 및 평가(4032-300)」의 경우, 2023년도 정책연구비의 다음연도 이월률은 42.2%이고 집행률은 47.1%로서, 다음연도로 이월처리된 예산이 연도내 집행된 예산과 유사한 규모임.

한편, 국회예산정책처 정책연구비의 집행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에는 다음연도 이월액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2019년에는 다음연도 이월액이 2,000만원만 발생(이월률 3.2%)하는 등 예산의 이월이 높지 않았으나, 2020년부터 상당한 규모의 예산의 이월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2023년의 다음연도 예산이월액은 2022년 대비 약 67%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2022년 1억 1,200만원, 2023년 1억 8,700만원).

[2018년 이후 국회예산정책처 정책연구비(260-02) 집행 추이]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이월액 (이월률)	불용액 (불용률)
2018년	601	601	572 (95.1)	-	29 (4.8)
2019년	630	630	604 (95.8)	20 (3.2)	6 (1.0)
2020년	772	742	514 (69.3)	157 (21.1)	69 (9.3)
2021년	772	909	578 (63.5)	257 (28.2)	74 (8.1)
2022년	701	958	838 (87.5)	112 (11.7)	8 (0.9)
2023년	707	819	578 (70.6)	187 (22.8)	54 (6.6)

주: 집행률, 이월률,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이며, 각 세부사업에 편성된 정책연구비를 합산한 금액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77) 집행률=집행액/예산현액, 이월률=다음연도 이월액/예산현액

2023년 정책연구용역 실시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26건의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하여 20건은 2023년 중에 완료하였으나, 6건은 2023년 중에 완료하지 못하여 해당 정책연구비가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음.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경제전망 및 경제정책분석」은 10건 모두 연내 집행하였고, 「의안비용추계 및 조세분석」은 총 9건 중 7건을 연내 집행하고 2건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반면에, 「국가재정 분석 및 평가」는 총 7건 중 3건만 연내에 집행하고, 4건을 다음연도로 이월함.

[2023년 국회예산정책처 정책연구용역 실시건수 및 예산 이월 현황]

구 분	정책연구용역 건수		
	계	연내 집행	이월
국가재정 분석 및 평가(4032-300)	7	3	4
의안비용추계 및 조세분석(4032-301)	9	7	2
경제전망 및 경제정책분석(4032-302)	9	9	0
합 계	25	19	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에 이월된 정책연구용역 6건 중 3건은 9월에 계약이 체결되었고, 나머지 3건은 11월에 계약이 체결되었음. 특히, 2023년 11월에 계약이 체결된 연구과제 3건은 2024년 3월 이후에 연구가 종료되는 등 전반적인 사업 진행이 지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2023년 국회예산정책처의 정책연구용역 중 예산의 다음연도 이월이 발생한 연구용역 목록]

(단위 : 천원)

정책연구용역명	계약기간	계약상대방	예산 집행액	수행 사유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소득 재분배 효과 연구	2023.9.15. ~ 2024.1.14. (4개월)	한국 보건사회 연구원	36,364	인구구조 변화 및 소득양극화 등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복지분야 의무지출 및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보장성 및 효과성에 대한 점검 요구 증가
주요국 사례 연구를 통한 모·부성보호급여 재정 추이 분석 및 시사점	2023.9.22. ~ 2024.1.21. (4개월)	한국고용 노사관계학회	25,000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전망에 있어 남성 육아휴직의 증가추세 및 지출한도가 주요 변수이므로, 이에 따른 재정 추이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성별을 구분한 모·부성보호급여 수급자 수 등에 대한 해외동향 분석이 필요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지표 및 분석 방안 연구	2023.9.26. ~ 2024.1.25. (4개월)	한국경제학회	50,000	코로나 19 대응 등 확장적 재정정책 집행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점검 및 분석할 필요성 확대
실업급여 제도의 고용 성과에 관한 효과성 분석	2023.11.09. ~ 2024.5.08. (6개월)	한국재정학회	28,790	2019년 10월부터 실업급여 지급요건, 지급수준, 지급기간 등이 변경되었으며, 2020년 이후 예술인·노무제공자도 실업급여가 적용되는 등 변화된 실업급여 제도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
모태펀드 적정 규모 운영에 관한 연구: 민간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2023.11.14. ~ 2024.3.25. (4개월)	벤처시장 연구원	30,000	민간 자본 유입 효과와 구축 효과를 비교하여 모태펀드 사업의 효과성 및 적정 규모를 검토할 필요
세수오차에 대비한 중장기적 재정제도 개선방안 연구	2023.11.27. ~ 2024.3.26. (4개월)	한국재정학회	31,818	대규모 초과세수 또는 부족세수의 발생시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재정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의 이월이란 세출예산 중 연도 내 미지출액을 다음연도에 지출하는 것으로서 「국가재정법」 제3조의 “회계연도 독립 원칙”[78]의 예외로서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제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예산액 대비 과도한 규모의 예산을 이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음연도의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이월이 과다하게 발생한 「국가재정 분석 및 평가」를 담당하는 사업부서는 정책연구용역 과제에 대한 면밀한 수요조사 및 계획 등을 수립하고, 향후 정책연구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정책연구용역 과제를 결정하는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적시에 개최하는 등 정책연구용역 예산 이월 방지를 위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78)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2. 기획관리 및 정책총괄지원(4031-300)

가. 개 요

기획관리 및 정책총괄지원(4031-300)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인사·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고 공식행사활동 및 직원들의 업무추진 효율성 향상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임.

2023년 예산현액은 당초 예산액 9억 6,300만원에 전용증액 1,200만원 및 전용감액 900만원을 합한 9억 6,600만원임. 이 중 8억 4,100만원을 집행하고, 7,8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음. 주요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① 운영비 4억 7,700만원, ② 업무추진비 1억 7,000만원, ③ 여비 7,500만원을 집행하였음.

[2023년도 기획관리 및 정책총괄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세사업 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기획관리 및 정책총괄지원	963	963	-	12 △9	-	966	841	47	78	-
·운영비	592	592	-	△9	-	583	477	47	59	-
·여비	73	73	-	12	-	86	75	86	10	-
·업무추진비	173	173	-	-	-	173	170	-	3	-
·직무수행경비	13	13	-	-	-	13	13	-	-	-
·연구용역비	30	30	-		-	30	26	-	4	-
·보전금(포상금)	76	76	-	-	-	76	75	-	1	-
·유형자산(자산취득비)	6	6	-	-	-	6	4	-	2	-

주: 2024년부터「기획관리및정책총괄지원」을 포함한 기존의 4개 세부사업이 「예산정책처운영관리」로 조정·통합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아시아 의회예산기구 네트워크 국제포럼: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 및 참가국과의 교류방안 다각화를 위한 노력 필요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년도에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아시아 의회예산기구(PBO[79]) 네트워크 국제포럼'을 신규로 실시하였음.

해당 사업은 아시아 지역 의회예산기구 운영 현황 공유 및 재정·현안 논의를 통해 지속가능하고 신뢰성 높은 공공재정운용 방안을 상호 모색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를 위해,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년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OECD 및 아시아 의회예산기구 관계자 등이 참석한 「아시아 의회예산기구 네트워크 출범식 및 국제포럼」을 개최하였으며, 기조연설, 패널토론, 현안 논의 세션 및 중장기 재정전망을 주제로 한 워크샵 등을 진행하였음. 또한, 해당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년도에 총 1억 500만원을 집행하였음.

[2023년도 아시아 의회예산기구 네트워크 국제포럼 실시 현황]

구 분	주요내용
행사명	제1회 아시아 의회예산기구 네트워크 국제포럼
목 적	아시아 지역 의회예산기구 간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재정·경제 관련 이슈 및 현안 논의를 통해 신뢰성 높은 공공재정운용 방안 모색
기 간	2023. 10. 11.(수) ~ 10. 13. (금)

79) Parliamentary Budget Officials, 의회 내 재정 정책과 예산에 대한 분석을 제공하는 기구 및 관계자

<table>
<tr><td>참석국가</td><td>○ 국가(8개국): 대한민국, 몽골,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호주, 미국, 캐나다
○ 국제기구(2개기구): OECD, PCAsia
※ PCAsia(Parliamentary Centre of Asia) : 아시아 역내 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비정부기구</td></tr>
<tr><td>프로그램</td><td>
<table>
<tr><th>일자</th><th>구 분</th><th>주요 내용</th></tr>
<tr><td>10.11.
(수)</td><td>환영 리셉션
및 사전 행사</td><td>- 참가자 등록 및 사전환담
-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참관</td></tr>
<tr><td rowspan="5">10.12.
(목)</td><td>아시아 PBO
네트워크 출범식</td><td>- Mark Hadley OECD PBO 네트워크 의장,
Jon Blondal OECD 예산공공지출국장 등 참석</td></tr>
<tr><td>기조연설 및
패널토론</td><td>- 기조연설자 : Kevin Page 캐나다 초대 의회예산처장</td></tr>
<tr><td>제1세션</td><td>- 아시아 의회예산기구 네트워크 출범 및 참여국별 현황 공유</td></tr>
<tr><td>제2세션</td><td>- OECD 의회예산기구 네트워크 소개 및 모범사례 공유</td></tr>
<tr><td>제3세션</td><td>- 아시아 의회예산기구 네트워크 발전 방향 논의</td></tr>
<tr><td>10.13.
(금)</td><td>워크샵 등</td><td>- 예산정책처 주재 워크샵 개최 (주제 : 중장기 재정전망) 등</td></tr>
</table>
</td></tr>
</tabl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동 사업은 국회예산정책처와 아시아 지역 중심의 의회관계기구 및 국제기구의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해외 관계기관과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조성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임.[80]

다만, 2023년은 아시아 의회예산기구 네트워크가 출범된 첫해이었고, 앞으로도 해당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임.

첫째, 2023년도에는 '아시아 의회예산기구 네트워크'의 출범단계로 아시아 지역 중 5개 국가(대한민국, 몽골, 캄보디아, 태국,

80) 2021년 10월 국회예산정책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상호협력확인서를 체결하였을 당시 OECD가 국회예산정책처에게 "아시아 PBO 네트워크"를 구축·운영시 초대 의장직을 맡는 등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것을 요청하였고, 2022년 9월에는 아시아 의회예산기구 네트워크를 국회예산정책처와 OECD가 공동 설립하여 매년 연례회의를 하기로 합의하였음.

필리핀)가 참가하였는데, 향후 보다 다양한 국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81]

둘째, 2023년도 동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해당 국제포럼에 참가한 아시아 국가의 의회예산기구에서 예산 분석 방법론, 법률안 비용추계 등 연구·조사 업무, 조직·인사 등 기관 운영 사례 등에 대한 교류방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인 바 있으므로[82], 네트워크 참가국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국회예산정책처와 참가국 간의 양자간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동시에 모색할 필요가 있음.[83]

셋째, 동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축적한 업무경력, 노하우 등을 바탕으로 아시아 외에 유럽 등 타 권역 국가 의회예산기구로 협력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81) 참고로, 2024년도에 국회예산정책처는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제2회 아시아 의회예산기구 네트워크 국제포럼」을 개최하였는데, 중국·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스리랑카 등이 새롭게 참가하면서 참가국이 9개국(대한민국, 몽골,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스리랑카)으로 증가하였음.

82) 2023년도에 개최된 「제1회 아시아 의회예산기구 네트워크 국제포럼」에서는 ① 몽골 의회예산기구는 예산 분석 방법론의 개선, 거시경제 지표 관련 조력 등을 희망하였고, ② 필리핀 의회예산기구는 소속직원이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비용추계 기술이나 방법 등을 학습하려는 의사를 보였으며, ③ 캄보디아 의회예산기구는 비용추계 등 전반적인 업무시스템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의 조언을 얻고자 하는 의사를 보였음 (국회예산정책처, 「OECD · 국회예산정책처 공동주최「아시아 의회예산기구 네트워크 국제포럼」결과보고서」, 2023.11, pp. 200, 226, 232)

83)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년 「제1회 아시아 의회예산기구 네트워크 국제포럼」 개최 이후 몽골(2023.10.), 캄보디아(2023.11.), 인도네시아(2023.11.)와 예산분석, 경제전망, 공공재정 관리 등 공동관심 분야에서의 상호 교류 및 공동연구 등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고, 2024년 4월 개최된 「제2회 아시아 의회예산기구 네트워크 국제포럼」에서도 국회예산정책처는 인도네시아 관계자와 예산 및 비용추계 교육 및 인턴십 제도 운영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중국 관계자와는 중국 예산공작위원회와의 정기적 상호 교류를 통한 예·결산 분석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음.

다.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운영: 분과위원회의 운영 활성화 필요

국회예산정책처는 예·결산 분석, 국가재정운용 전망 등 주요 직무 및 기관 운영에 대한 외부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및 「예산정책자문위원회내규」에 따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예산정책자문위원회[84]'를 운영 중이며, 분야별로 예산분석·추계세제분석·경제분석 등 3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음.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년에 해당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으로 총 3,400만원을 편성하여, 이 중 1,816만원을 집행하였음. 구체적으로, 사업추진비 800만원은 전액 집행되었으나 일반수용비는 2,600만원 중 1,060만원만이 집행되어, 집행액은 총 1,816만원이고 집행률은 53.4%임.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일반수용비	6,000	8,750	26,000	11,300	26,000	10,160
사업추진비	8,000	8,000	8,000	9,211	8,000	8,000
계	14,000	16,750	34,000	20,511	34,000	18,16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이는 2022년도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신규로 설치·운영하면서 전반적인 예산정책자문위원회의 회의건수 및 자문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2022년

84) 예산정책자문위원회는 국회예산정책처 주요 업무·연구과제 및 기관 운영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구성된 임기 2년의 자문위원회로서, 현재(제10기) 18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임기는 2023. 8. 1.~ 2025. 7. 31.임.

부터 예산을 증액하였으나, 2023년에 분과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한 것에 기인함.

구체적으로, 2023년도에는 분과위원회가 총 3회만 개최되어 개최 실적이 높지 않았고, 개최시기 또한 연말에 집중된 경향이 나타나는 등 분과위원회가 제한적으로 활용된 측면이 있어 보임.[85]

[2021년~2023년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운영 현황]

연도	구분		회의일자	주요 안건
2021년	전체회의 (2회)		2.16	· 국회예산정책처 업무에 대한 의견 또는 개선안 · 재정·경제 관련 주요 화두와 의견 등
			9.28	· 국회예산정책처 발전 방향 및 독립재정기구로서의 역할에 대한 제언 등
2022년	전체회의 (2회)		7.20	· 한국의 재정경제 정책의 방향 등
			12.22	· 국회예산정책처 발전방안 및 2023년도 업무방향 등에 대한 자문
	분과위원회 (3회)	예산분석	4.13	· 재정환경 변화를 고려한 예·결산 중점 분석사항
		추계세제	5.13	· 지속가능한 재정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추계세제분석실의 역할
			9.28	· 세입 전망 및 세법 개정안 분석과 관련된 자문 ·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 준칙 도입방안에 대한 자문
		경제분석	-	-
2023년	전체회의 (2회)		7.11	· 한국경제의 미래와 재정경제 정책의 영향
			10.20	· 국회예산정책처의 지난 20년에 대한 평가와 향후 나아갈 길
	분과위원회 (3회)	예산분석	12.19 (서면)	· 재정환경 변화를 고려한 예·결산 중점 사항 분석 · 예산분석실 조직 역량 강화 방안

85) 이에 대하여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년 하반기에 제9기 예산정책자문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자문위원회 전체회의가 10월에 개최되는 등 조기 개최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으며, 분과위원회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여 적시성 있는 자문의견을 구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입장임.

연도	구분		회의일자	주요 안건
		추계세제	12.15	· 2023년도 추계세제분석실 업무에 대한 총평 · 2024년도 추계세제분석실 업무 발전 방향 · 2024년도 추계세제분석실 대외 협력 강화 방향
		경제분석	12.7-18 (서면)	· 2024년도 경제분석국 업무 발전 방향 · 2024년 우리나라 및 세계 경제 전망 · 인구와 기후 위기 대응 방안 · 고금리 기조의 방향성 및 대응 방안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따라서 국회예산정책처는 당초 예산정책자문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신설과 이에 따른 예산 증액의 취지를 반영하여 보고서의 질적 향상 및 의정지원역량 증진을 위해 분과위원회의 연중 개최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3. 국가재정분석 및 평가(4032-300)

가. 개 요

국가재정분석 및 평가(4032-300)는 예·결산 분석 업무, 국가사업 평가 업무, 국가재정운용 및 재정제도 분석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임.

2023년 예산액은 13억 3,300만원이었으나, 전년도 예산 6,900만원이 이월되고 타 사업으로부터 1,200만원이 조정감액되면서 예산현액은 13억 9,000만원임. 이 중 10억 6,3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3,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 9,7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음.

주요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① 운영비 5억 5,900만원, ② 연구용역비 1억 4,500만원, ③ 인건비(일용임금) 1억 100만원, ④ 업무추진비 9,200만원 등을 집행하였음.

[2023년 국가재정분석 및 평가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세사업 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국가재정분석 및 평가	1,333	1,333	69	△12	-	1,390	1,063	130	197	-
·인건비(일용임금)	120	120	-	-	-	120	101	-	19	-
·운영비	660	660	24	3	-	687	559	-	128	-
·여비	78	78	-	△15	-	64	61	-	3	-
·업무추진비	98	98	-	-	-	98	92	-	6	-
·직무수행경비	99	99	-	-	-	99	94	-	5	-
·연구용역비	264	264	45	-	-	308	145	130	33	-
·민간이전(고용부담금)	14	14	-	-	-	14	11	-	3	-

주: 2024년부터「국가재정분석 및 평가」를 포함한 기존의 4개 세부사업이 「예산정책처운영관리」로 조정·통합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나. 국회예산정책처의 거시적 예결산 분석기능 강화 방안 모색 필요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등 재정건전성, 경제성장률 및 민간소비·투자, 고용 등 경제여건, 중기 총수입 및 의무지출 전망 등을 고려하여 재정총량 및 분야별 예산안 분석을 내실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3년 10월에 「예산안 분석보고서」 시리즈 중 하나로서 「재정총량분석보고서」를 발간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년 동 사업 예산 중 일반수용비 9,900만원을 「예산안 분석보고서」 발간을 위해 집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예산안 분석보고서」의 일부인 「재정총량분석보고서」를 발간하였음.

[「2024년 예산안 분석보고서」 발간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단위: 백만원)

비목	예산액	집행액
일반수용비(210-01)	274	99
계	274	99

주: 예산액은 해당 보고서를 위한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아 인쇄비로 책정된 일반수용비 예산액 전체를 기재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구체적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년도에 「재정총량분석보고서」를 통해 기존에 각 부서가 개별적으로 수행하였던 재정건전성 분석, 재정전망, 경제전망 등의 분석[86]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① 경제

86) 구체적으로, 기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재정건전성분석은 예산분석실에서, 중기재정전망은 추계세제분석실에서,

여건 및 전망, ②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③ 예산안 등의 경제적 효과 분석, ④ 12대 분야별 재정의 효과성, ⑤ 재정위험요인 분석, ⑥ 재정제도 개선방안 등의 내용을 다루었음.

[2023년「재정총량분석보고서」의 주요내용]

목 차	주요내용	소관부서
경제여건 및 전망	- 2024년 경제여건 및 향후 10년간 경제전망	경제분석국
예산안 및 국가재정 운용계획 분석	- 재정기조 및 과거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비교·분석 - 재정건전성 분석(D1, D2 등), 재정수지, 국채이자부담 등 분석	예산분석실
예산안 등의 경제적 효과 분석	- 총지출, 주요 분야·사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 - 2024년도 세법개정의 경제적 효과 분석	예산분석실 추세세제분석실 경제분석국
총지출 시나리오별 재정총량 분석	- 향후 재정총량(국가채무, 총지출·총수입, 재정수지 등)의 변화를 살펴 볼 수 있도록 총지출 시나리오 구성 - 시나리오별 총지출·총수입 등을 기반으로 국가채무, 재정수지 등 재정총량 분석	예산분석실 추세세제분석실 경제분석국
12대 분야별 재정의 효과성 분석	- 12대 분야 및 분야 내 부문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분야간 혹은 분야 내 부문간 재원배분의 방향성 검토	예산분석실

중기경제전망은 경제분석국에서 각각 발간하였음.

부서	보고서명	주요 내용
예산 분석실	예산안분석~ 총괄분석	– 예산안 개요(총수입·총지출 및 재정수지, 국가채무, 12대 분야별 재원배분, 국가재정운용계획,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 2023년도 경제전망(대내외 경제요건 및 2023년 경제전망 등) – 재정건전성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 세입예산안 분석
추계세제 분석실	10년 중기 재정전망	– 개요(목적, 기본전제 등) – 중기재정전망 결과(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비교
경제 분석국	각년도 및 중기경제전망	– 대내외 경제여건(세계 및 국내 경제여건, 국제유가) – 지출 부문 (경제성장률, 민간소비, 정부소비, 건설투자, 설비투자, 지식재산생산물투자, 대외거래, 소비자물가) – 성장 및 금융 부문 (잠재성장률, 총요소생산성, 온실가스 배출량, 금융) – 생산 부문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 소득 및 인구·고용 부문

목 차	주요내용	소관부서
재정위험요인 분석	- 연금, 공공기관 부채 등 재정위험요인을 항목별로 분석	예산분석실 추세세제분석실 경제분석국
재정제도 개선방안	- 국가채무 관리, 효율적 재정지출 및 재원배분 등을 위한 재정준칙 등 재정제도 관련 개선방안 분석	예산분석실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재정총량 및 재원배분 방향을 포함한 거시적인 측면을 강화하고 전략적인 시각에서의 심사를 보강하기 위해서 국회예산정책처가 국가경제에서의 재정의 역할 및 재정건전성을 고려한 재정총량의 적정규모에 대한 분석·연구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성이 있음.

첫째, 예산안 심의가 재정 전반에 대한 전략적·거시적 심사보다는 세부사업 중심의 미시적 심사로 진행되어 재정총량 규모 및 재원배분 방향을 적절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물가안정·고용확대·성장동력 확충 등 경제 안정·성장에 있어 재정의 역할을 감안할 때 경제여건에 부합하는 재정총량이 제시될 필요가 있으나 관련된 분석·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며,

셋째, 우리 위원회에서도 2021년도 국정감사시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시정·처리 요구사항 중 하나로 “전략적 지출분석 등에 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시하였고,

넷째, 재정총량에 대한 국회의 예결산 심사기능 강화, 재정준칙의 법제화 등 재정운용의 건전성·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강화하려는 내용의 입법논의가 제21대 국회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점[87] 등을 고려해야 함.

따라서 2023년도에 신규로 실시된 재정총량 규모 및 재원배분 방향 등 예산안에 대한 거시적 분석·연구가 향후에도 내실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① 재정총량과 재원배분 방향 등에 대한 연구분석 방법론의 개발, ② 학계 및 관련 전문가와의 지속적인 협력 등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87) 예를 들어, 제21대 국회에서 예·결산 심사기능 강화와 관련한 15건의 개정안(「국회법」 8건, 「국가재정법」 6건, 「국회예산정책처법」 1건)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주요내용은 ①다음연도 재정규모 등 국회보고 및 재정총량심사, ②분야별 재원배분방안의 국회보고, ③예산요구서의 소관 상임위 보고, ④영기준예산제도 도입 등임. 해당 법률안에 대해서는 국회선진화소위에서 2차례 논의(22.11.23., 23.2.15.)된 바 있음.
또한, 기획재정위원회에는 재정준칙 법제화에 관한 6건의 법률안(「재정건전화법안」 2건, 「국가재정법 개정안」 2건)이 회부되었으며, 주요내용은 ① 재정준칙 법제화, ②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 제·개정 시 법률에 재원조달방안 명시하는 방안 도입 등임. 해당 법률안에 대해서는 경제재정소위에서 7차례 논의(20.11.11., 20.11.15., 21.11.23., 23.2.15., 23.3.15., 23.6.27.)된 바 있음.
제22대 국회에서는 상기에 언급된 개정안의 상당수(「국회법」 1건, 「국가재정법」 3건, 「국회예산정책처법」 1건, 「재정건전화법안」 1건)가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

4. 의안비용추계 및 조세분석(4032-301)

가. 개 요

의안비용추계 및 조세분석(4032-301)은 의안비용추계, 세입·세제 분석, 중장기 재정추계 및 전망 등을 실시하는 사업임.

2023년 예산현액은 당초 예산액 9억 4,0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5,700만원 등을 합한 10억 100만원으로, 이 중 8억 4,500만원을 집행하고 5,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원을 불용처리하였음.

주요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① 운영비 4억 3,500만원, ② 연구용역비 2억 2,000만원, ③ 인건비(일용임금) 1억 900만원, ④ 업무추진비 3,200만원 등을 집행하였음.

[2023년 의안비용추계 및 조세분석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세사업 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의안비용추계 및 조세분석	940	940	57	4	-	1,001	845	57	100	-
·인건비(일용임금)	148	148	-	-	-	148	109	-	38	-
·운영비	480	480	-	69 △65	-	484	435	-	49	-
·여비	38	38	-	-	-	38	36	-	2	-
·업무추진비	32	32	-	-	-	32	32	-	-	-
·연구용역비	225	225	57	-	-	282	220	57	5	-
·민간이전(고용부담금)	17	17	-	-	-	17	12	-	5	-

주: 2024년부터 「의안비용추계 및 조사분석」을 포함한 기존의 4개 세부사업이 「예산정책처운영관리」로 조정·통합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나. 의안 비용추계의 적시성 확보 노력 필요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법」 제79조의2[88]와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제2호[89]에 근거하여 위원회나 국회의원이 예산·기금상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를 실시하고 있으며, 의안비용추계는 법률안 등 관련 의안 심사의 내실화를 위하여 의안의 심사시기에 맞추어 제공될 필요가 있음.

2023년도에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의 회답기간 준수율은 62.6%로 2022년 대비 약 8%p 감소하고, 평균 회답소요일수는 17.8일로 2022년 대비 약 4일이 늦어지는 것으로 집계되어, 전반적으로 회답의 적시성이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90]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조세관련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인 '세수추계'는 2022년보다 회답기간 준수율과 평균 회답소요일수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그 밖의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인 '지출추계'는 2023년 회답기한 준수율이 61.2%이고 평균 회답소요일수가 17.6일로서 202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

88) 「국회법」 제79조의2(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의원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추계요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비용추계요구서를 제출한 경우 국회예산정책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58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 전에 해당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의장과 비용추계를 요구한 의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원이 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추계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④·⑤ (생략)

89)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직무) 예산정책처는 국가의 예산결산·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생략)
2.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법률안 등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의 추계
3. ~ 5. (생략)

90) 2023년의 의안비용추계 회답기한은 30일을 원칙으로 하되, 요구받은 의안이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답기한을 10일로 하고 있음.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출추계 회답 건수(3,468건 → 4,470건)가 전년대비 증가하였고, 기획·현안보고서 등 수시보고서 발간물 증대 및 정책현안토론회 개최 준비 등으로 분석관 업무부담이 커져 회답소요일수가 증가하였다고 설명함.[91]

[비용추계 회답기간 준수율 및 평균회답 소요일수 현황]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3월
지출추계	수행건수(건)	3,978	4,334	3,468	4,470	182
	회답기한 준수율(%)	**71.9**	**72.9**	**72.0**	**61.2**	**81.3**
	평균 회답소요일수(일)	**11.0**	**10.6**	**12.1**	**17.6**	**13.9**
세수추계	수행건수(건)	667	576	541	566	32
	회답기한 준수율(%)	77.4	74.1	62.5	74.0	96.9
	평균 회답소요일수(일)	14.6	17.1	25.6	19.0	13.0
합계	수행건수(건)	4,645	4,910	4,009	5,036	214
	회답기한 준수율(%)	**72.7**	**73.0**	**70.7**	**62.6**	**83.6**
	평균 회답소요일수(일)	**11.6**	**11.4**	**13.9**	**17.8**	**13.8**

주: 세수추계는 국세·지방세 등 조세관련 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이고 지출추계는 그 밖의 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그러나 의안 비용추계가 지연될 경우 의안 심사에 적절하게 활용되지 못해 비용추계의 활용도가 떨어지고[92], 2022년도 국회의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에도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시정요구사항 중 하나로 "의안비용추계 업무의 신속화·체계화 필요"가 제시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국회예산정책처는 의안 비용추계의 적시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91) 또한, 국회예산정책처는 비용추계 회답 건수 증가 및 수시보고서 발간 확대 등 업무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담당하는 분석관(보) 정원(29인)은 2017년 이후 증원이 없어 1인당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입장임.

92)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년에 국회의원 보좌진을 대상으로 비용추계 활용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설문조사 결과, 의안 비용추계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국회의원의 관심 강화',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 요구권 강화'와 함께 '신속한 비용추계 회답'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남.(출처: 국회예산정책처, 「NABO 재정추계&세제 이슈 제23호」, 2023)

5. 예산정책처 정보화(4033-500)

가. 개 요

예산정책처 정보화(4033-500)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정보시스템의 구축·고도화와 정보인프라의 운영·유지보수를 수행하는 사업임.

2023년 예산현액은 8억 6,100만원에 전년도 이월금 1억 4,300만원을 합한 10억 400만원이고, 이 중 9억 6,400만원을 집행하고 4,0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음.

주요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① 연구용역비 5억 4,000만원, ② 운영비 2억 9,500만원, ③ 유형자산(자산취득비) 1억 2,400만원 등을 집행하였음.

[2023년 예산정책처 정보화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세사업 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예산정책처 정보화	861	861	143	-	-	1,004	964	-	40	969
·연구용역비	411	411	143	-	-	554	540	-	14	390
·운영비	296	296	-	-	-	296	295	-	1	420
·업무추진비	6	6	-	-	-	6	5	-	1	5
·유형자산(자산취득비)	148	148	-	-	-	148	124	-	24	154

나. NABO 재정경제통계 정보시스템의 이용률 제고 필요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원, 보좌진, 국회 직원과 국민들에게 재정 및 경제 통계, 국회의 예산과 결산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18년에 'NABO 재정경제통계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음. 이 시스템은 한국은행의 경제통계시스템(ECOS),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과 e-나라지표, 기획재정부의 열린재정과 같은 다양한 출처에서 획득한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국회의 예산과 결산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93].

[NABO 재정경제통계 정보시스템의 운영 현황]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년도에 'NABO 재정정보통계 정보시스템'에 수록된 530여 종의 통계지표를 갱신하기 위하여, 1억 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음.

93)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ecos.bok.or.kr), 국가통계포털(kosis.kr), e-나라지표(www.index.go.kr),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등임.

[2023년 NABO 재정경제통계 정보시스템 DB 갱신 현황]

○ 주요 DB 갱신 사항

- 총수입·총지출 심사연혁, 세입·세출예산 심사연혁, 기금운용계획심사연혁
- 예산부대의견 964건
- 결산시정요구 1,885건, 조치결과 1,416건, 부대의견 26건, 감사요구 1건
- 컨텐츠 업로드 대행, 통계 업로드 및 표출 오류 수정, 홈페이지 화면, 문의 응대 및 조력 등

컨텐츠	오류 수정	홈페이지 화면	문의, 조력	기타	합계
75	25	5	32	110	247

- 신규 API 통계 72종 연계, 기존 API 90종 정비(연계 오류 통계 소스 개선 등)

○ 예산 편성 및 집행

(단위: 백만원)

비목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주요집행내용
일반연구비 (260-01)	110	110	0	DB 구축비 및 기능개선 대가 지급 ※ 사업 주요내용 1. 23년 신규자료 수집·등록 2. Open-API 변경 대응 3. 신규 지표 추가 4. 웹접근성 평가 대행 5. 자료 입력 기능 교육 6. 기타 시스템 운영 및 콘텐츠 수정·관리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다만, 2023년 NABO 재정경제통계 정보시스템의 이용률은 전년대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향후 활용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8년 NABO 재정경제통계 정보시스템 구축 이후 월평균 접속건수는 2019년 2,505건, 2020년 3,416건으로 증가하였다가, 2021년 3,225건, 2022년 3,158건, 2023년 2,804건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특히, 국회 내부의 월평균 접속건수는 2023년 266건으로 2022년보다 다소 증가하였으나 주요 이용대상자인 국회의원, 보좌직원 및 국회직원의 규모(약 4,900명[94])를 고려하면 이용률이 높다고 보기 어려우며, 국회 외부의 월평균 접속건수도 2023년 2,538건으로 2022년 2,935건 대비 10% 이상 감소하여 해당 정보시스템 이용률 저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NABO 재정경제통계 정보시스템 접속건수(월평균)]

(단위: 건)

연도	국회 내부	국회 외부	합계
2019년	333	2,172	2,505
2020년	315	3,101	3,416
2021년	217	3,008	3,225
2022년	223	2,935	3,158
2023년	266	2,538	2,804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따라서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원·보좌직원·국회직원 등 내부 이용자와 더불어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NABO 재정경제통계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용안내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타 기관과 차별화되는 동 시스템만의 콘텐츠를 개발해나가는 등 국회 의정활동 및 학계·언론 등 이해관계자가 동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94) 2024년 7월 기준 국회의원 300명, 의원보좌직원 2,400명,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77명, 국회사무처직원 1,486명, 국회도서관직원 362명, 국회예산정책처직원 138명, 국회입법조사처직원 126명으로 내부 이용자는 4,889명으로 집계됨.

국회입법조사처

Ⅰ. 결산 개요

1. 세입 결산

2023회계연도 국회입법조사처 세입액은 당초 계상되지 않았으나, 411만 7,000원을 세입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음. 구체적으로, 정책연구용역 계약해제 계약보증금 400만원 등이 수납되었음.

[2023회계연도 국회입법조사처 세입 결산 현황]

(단위: 천원, %)

예 산 액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불납결손액 (C)	미수납액 (A-B-C)	수 납 률 (B/A*100)
-	4,117	4,117	-	-	100

자료 : 국회입법조사처

2. 세출 결산

가. 총 괄

2023회계연도 국회입법조사처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83억 3,200만원임. 이 중 172억 5,000만원(예산현액의 94.1%)을 집행하고, 10억 8,200만원(예산현액의 5.9%)을 불용하였음.

[2023회계연도 국회입법조사처 소관 세출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추경)	예산결정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집행액	다 음 연 도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이 용 증감(△)액	전 용 증감(△)액				
국 회 입법조사처	18,332	-	-	-	△40 40	18,332	17,250	-	1,082

주: 세부항목 금액의 단수 반올림 처리로 예산현액과 관련 항목간 합계의 차이가 일부 발생함

자료 : 국회입법조사처

나. 성질별 결산현황

국회입법조사처는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액 172억 5,000만원 중 인건비 122억 7,700만원, 기본경비 16억 9,200만원, 주요사업비 32억 8,2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음.

[2023회계연도 국회입법조사처 성질별 예산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본예산	추경	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금액	집행률	금액	불용률
합 계	18,332	18,332	△40 40	18,332	17,250	94.1	1,082	5.9
인건비	13,061	13,061	-	13,061	12,277	94.0	784	6.0
기본경비	1,781	1,781	-	1,781	1,692	95.0	89	5.0
주요사업비	3,490	3,490	△40 40	3,490	3,282	94.0	208	6.0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2023회계연도 국회입법조사처 주요사업비 집행액 32억 8,200만원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① 기획·홍보·인사 등 기관 운영을 수행하는 「입법조사처 운영관리」 5억 1,900만원, ② 입법조사회답을 수행하는 「입법 및 정책조사분석 서비스」 5억 9,600만원, ③ 주요현안에 대한 입법 및 정책과제를 조사·분석하는 「장단기 입법 및 정책과제 개발」 7억 9,600만원, ④ 법령·제도·행정상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분석하는 「법령 및 제도개선사항 조사분석」 4억 4,300만원, ⑤ 입법 조사·분석 업무를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입법조사처 정보화」 9억 2,7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음.

[2023회계연도 국회입법조사처 세부사업별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본예산	추경	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금액	집행률	금액	불용률
합 계	**3,490**	**3,490**	**△40 40**	**3,490**	**3,282**	**94.0**	**208**	**6.0**
입법조사처 운영관리 (5031-300)	519	519	25	544	519	95.4	25	4.6
입법 및 정책 조사분석 서비스 (5032-300)	651	651	-	631	596	94.4	35	5.6
장단기 입법 및 정책과제개발 (5032-301)	882	882	△17 15	885	796	89.9	89	10.1
법령 및 제도 개선사항 조사분석 (5032-302)	483	483	△24	475	443	93.5	32	6.5
입법조사처 정보화 (5033-500)	955	955	-	955	927	97.1	28	2.9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다. 전용내역

2023회계연도 국회입법조사처 소관 세출예산 전용액은 4,000만원이며, 구체적인 전용내역은 다음과 같음.

첫째, MOU 체결 등 출장 수요 증가에 따른 기획협력담당관실 국내여비 부족분 충당을 충당하기 위해 「장단기 입법 및 정책과제 개발(5032-301)」 등에서 국내여비(220-01) 300만원을 「입법조사처 운영관리(5031-300)」의 국내여비(220-01)로 전용하였음.

둘째, 정책연구용역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장단기 입법 및 정책과제 개발(5032-301)」의 일반수용비(210-01)에서 1,500만원을 정책연구비(260-02)로 전용하였음.

셋째, 의회조사기구 국제세미나 등 관련 일반수용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법령 및 제도 개선사항 조사분석(5032-302)」의 일반수용비(210-01)에서 2,200만원을 「입법조사처 운영관리(5031-300)」의 일반수용비(210-01)로 전용하였음.

[2023회계연도 국회입법조사처 결산 전용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	목-세목	전용액	주요 전용사유
5032-301 (장단기 입법 및 정책과제 개발)	220-01 (국내여비)	△15	MOU 체결 등 출장 수요 증가에 따른 기획협력담당관실 국내여비 부족분 충당
5032-302 (법령 및 제도 개선사항 조사분석)		△15	
5031-300 (입법조사처 운영관리)	220-01 (국내여비)	3	

사업	목-세목	전용액	주요 전용사유
5032-301 (장단기 입법 및 정책과제 개발)	210-01 (일반수용비)	△15	정책연구용역비 부족분 충당
	260-02 (정책연구비)	15	
5032-302 (법령 및 제도 개선사항 조사분석)	210-01 (일반수용비)	△22	의회조사기구 국제세미나 등 관련 일반수용비 부족분 충당
5031-300 (입법조사처 운영관리)	210-01 (일반수용비)	22	
계		△40 40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라. 불용내역

2023회계연도 국회입법조사처 소관 세출예산 중 불용액은 10억 8,200만원임. 구체적으로는 인건비 집행잔액 7억 8,400만원, 기본경비 집행잔액 8,900만원, 주요사업비 집행잔액 2억 8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2회계연도 국회입법조사처 소관 결산 불용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불용액	불용내역 및 사유
인건비	784	- 공무원보수 7억 3,900만원, 기타직보수 800만원 등
기본경비	89	- 일반수용비 4,700만원, 직책수행경비 1,700만원 등
주요사업비	208	- 일반수용비 1억 1,700만원, 정보화 낙찰차액 2,800만원 등
합 계	1,082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Ⅱ. 검토의견

1. 입법조사처 운영관리(5031-300)

가. 개 요

입법조사처 운영관리(5031-300)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총무·기획 업무 등 기관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임. 2023년에는 예산현액 5억 4,400만원 중 5억 1,900만원을 집행하고 2,5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음. 주요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① 일반수용비 2억 500만원, ② 사업추진비 6,800만원, ③ 포상금 3,200만원 등을 집행하였음.

[2023년도 입법조사처 운영관리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세사업 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입법조사처 운영관리	519	519	-	51 △26	-	544	519	-	25	584
·일반수용비	212	212	-	22 △16	-	219	205	-	14	188
·공공요금및제세	7	7	-	1 △3	-	5	5	-	-	7
·특근매식비	43	43	-	△8	-	35	31	-	4	44
·일·숙직비	6	6	-	-	-	6	5	-	1	6
·임차료	7	7	-	5	-	12	12	-	-	9
·시설장비유지비	4	4	-	-	-	4	4	-	-	4
·복리후생비	10	10	-	-	-	10	8	-	2	10
·일반용역비	12	12	-	13	-	25	23	-	2	98
·기타운영비	23	23	-	8	-	31	31	-	-	23
·국내여비	15	15	-	3	-	18	17	-	1	16
·국외업무여비	30	30	-	-	-	30	30	-	1	40
·사업추진비	68	68	-	-	-	68	68	-	-	74
·특정업무경비	7	7	-	-	-	7	7	-	-	7
·일반연구비	20	20	-	-	-	20	20	-	-	20
·포상금	32	32	-	-	-	32	32	-	-	32
·자산취득비	21	21	-	-	-	21	21	-	-	5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나.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이용률 제고 필요

국회입법조사처는 민간 전문분야 연구 및 민간 전문가와의 정책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의정활동지원 역량강화를 위하여, 대학원 등 민간교육기관에서 개설하는 전문과정이 입법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는 경우 국회입법조사처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6개월 미만의 야간 전문과정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는 '입법지원서비스능력개발과정'을 운영해 매년 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5년간 입법지원서비스능력개발 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2021년, 2023년에는 민간위탁교육 실적이 없으며, 민간위탁교육이 활용된 2019년과 2022년에도 예산집행률이 50%에 머무르는 등 연례적으로 예산 집행률이 저조함.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지원서비스능력개발교육비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단위: 천원)

연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교육내용
2019년	8,000	4,000	50%	- 대한상사중재원 제17기 중재 전문가 아카데미 (9.4.~12.18.)
2020년	8,000	-	-	
2021년	8,000	-	-	
2022년	8,000	4,000	50%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SEL 데이터·인공지능법 전문과정 1기(9.20.~12.13.)
2023년	8,000	-	-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이에 대하여,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부분의 대학원에서 외부인 대상 전문과정을 개설하지 않아 위탁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웠으며, 2024년 6월에 신청자 1인에 대하여 지원하기로 의결하였고 추가 수요조사를 통해 지원대상을 발굴할 계획이라는 설명임.

또한, 향후 지속적으로 동 교육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입법역량강화에 필요한 외부 교육이 있을 경우 상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동 사업이 그 취지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입장임.

입법 및 정책현안의 복잡화·전문화·다양화 등의 환경에 대응하여 보다 내실있는 의정지원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계량분석, 통계분석, 비용편익분석 등의 연구방법론과 국내외 정책현안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국회입법조사처 소속 직원의 연구·분석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위탁교육 프로그램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국회입법조사처는 향후 당초 예산편성의 목적에 맞게 소속직원의 연구·분석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교육 프로그램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음.

2. 입법 및 정책 조사분석 서비스(5032-300)

가. 개 요

입법 및 정책 조사분석 서비스(5032-300)는 국회의원·위원회 및 의원연구단체의 입법 및 정책 관련 조사·분석 요구에 대하여 관련 회답을 제공하는 사업임.

2023년 예산현액 6억 3,100만원 중 5억 9,600만원을 집행하고 3,5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① 일반수용비 1억 7,500만원, ② 일용임금 1억 4,600만원, ③ 정책연구비 1억 2,500만원 등을 집행하였음.

[2023년도 입법 및 정책 조사분석 서비스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세사업 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입법 및 정책 조사분석서비스	651	651	-	△20	-	631	596	-	35	441
· 일용임금	149	149	-	△2	-	147	146	-	1	-
· 일반수용비	196	196	-	△10	-	186	175	-	11	187
· 공공요금및제세	1	1	-	-	-	1	-	-	1	1
· 특근매식비	91	91	-	-	-	91	73	-	18	81
· 임차료	2	2	-	-	-	2	-	-	1	1
· 국내여비	13	13	-	-	-	13	12	-	1	12
· 국외업무여비	23	23	-	△8	-	15	14	-	1	23
· 사업추진비	35	35	-	-	-	35	35	-	-	34
· 정책연구비	125	125	-	-	-	125	125	-	-	103
· 고용부담금	17	17	-	-	-	17	16	-	1	-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나. 조사회답의 적시성 제고 노력 필요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입법조사처법」 제3조제1호[95]에 따라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분석 및 회답'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음.

2023년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조사분석 회답 요구를 5,106건을 접수하여 4,822건을 회답처리하였으며, 평균 회답소요일수는 16.9일임. 한편, 2022년과 비교하였을 때, 2023년에는 조사회답 처리 건수가 약 5%(5,071건→4,822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회답소요일수는 약 1일 증가하여(15.7일 → 16.9일) 평균적인 회답의 적시성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분석 회답 현황]

(단위: 건, 일., * : 접수일 기준, ** : 처리일 기준)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요구건수(건)*	6,124	6,215	5,378	5,106
철회건수(건)*	524	590	362	364
회답건수(건)**	5,384	5,763	5,071	4,822
평균 회답소요일수(일)**	16.8	22.9	15.7	16.9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특히, 2023년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회답 평균 처리기간을 살펴보면, 전체 평균치는 16.9일이나 각 부서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바, 회답의 적시성을 고르게 확보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95) 「국회입법조사처법」 제3조(직무) 입법조사처는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국회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분석 및 회답
2. ~ 5. (생략)

구체적으로, 2023년 부서별 입법조사회답 평균 처리기간을 살펴보면, 정치의회팀, 보건복지여성팀은 10일 이내에 입법조사회답을 처리하는 반면, 환경노동팀, 국토해양팀, 교육문화팀은 평균 처리기간이 20일을 도과하여 부서별 처리일의 편차가 최대 2배 이상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일부 부서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입법조사회답의 평균처리일이 7일 이상 늦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2023년 부서별 입법조사회답의 평균처리일]

(단위: 건, 2023. 12. 31.기준. 접수일 기준)

팀명	조사회답 접수건수 (a+b+c)	조사회답 처리 건수(a+b)		진행중(c)	평균처리일 (전년도)	
		철회건수(a)	회신건수(b)			
정치의회팀	331	14	317	0	9.8	(10.9)
법제사법팀	365	14	350	1	15.9	(13.5)
외교안보팀	**255**	**8**	**247**	**0**	**21.5**	**(22.2)**
행정안전팀	563	15	548	0	13.2	(11.4)
재정경제팀	280	21	259	0	13.3	(10.4)
금융공정거래팀	264	29	235	0	18.2	(19.7)
산업자원농수산팀	553	42	511	0	19.4	(16.5)
국토해양팀	**465**	**57**	**408**	**0**	**23.2**	**(14.8)**
교육문화팀	**359**	**31**	**328**	**0**	**22.8**	**(20.2)**
과학방송통신팀	**376**	**13**	**363**	**0**	**20.2**	**(18.7)**
보건복지여성팀	812	27	785	0	9.2	(9.5)
환경노동팀	**412**	**22**	**390**	**0**	**25.4**	**(17.1)**
합계	5,035	293	4,741	1	16.9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2023년도에 실시한 「국회입법조사처 의정활동지원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회답기간의 '적시성'에 대하여 만족한 것으로 응답한 비율은 국회의원이 47.4%, 보좌진이 50%으로 만족도 조사 지표 중 가장 낮은 수치이며,

이는 입법조사회답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국회의원 73.9%, 보좌진 72.1%)보다 크게 낮은 수준으로 입법조사회답에 대한 만족도 개선을 위하여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사항임[96].

[2023년 입법조사회답 만족도 조사결과]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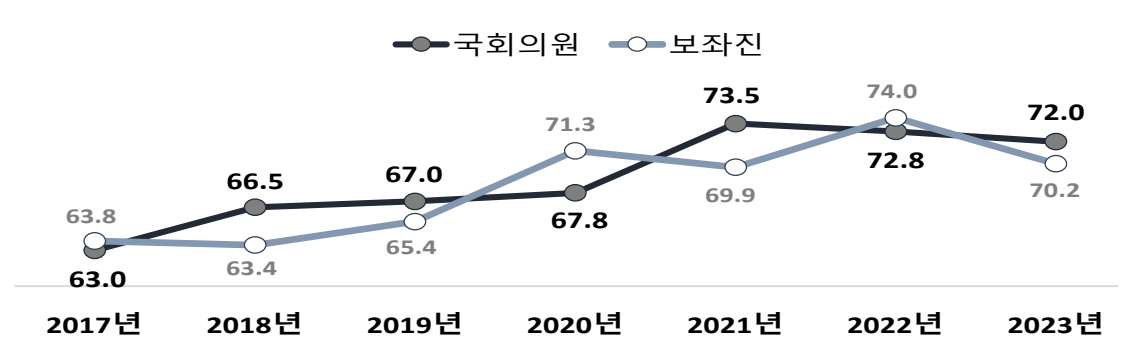
구분		만족	보통	불만족	계
회답내용 정확성	국회의원	82.7	17.3	0.0	100
	보좌진	85.2	12.8	2.0	100
회답내용 전문성	국회의원	80.5	18.0	1.5	100
	보좌진	78.9	16.4	4.6	100
회답내용 간결성	국회의원	76.3	22.1	1.5	100
	보좌진	69.6	26.4	4.0	100
회답내용 차별성	국회의원	55.6	36.8	7.5	100
	보좌진	62.0	28.1	9.9	100
회답기간 적시성	**국회의원**	**47.4**	**36.1**	**16.5**	**100**
	보좌진	**50.0**	**29.3**	**20.7**	**100**
전반적 만족도	**국회의원**	**73.9**	**23.1**	**3.0**	**100**
	보좌진	**72.1**	**22.3**	**5.6**	**100**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2023 국회입법조사처 연차보고서」, 2024, p.6

또한, 2022년에 국회에서 실시한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는

96) 참고로, 2023년 입법조사회답 서비스의 전반적 만족도는 국회의원 72.0점, 보좌진 70.2점으로 나타나 2022년 조사 결과 대비 국회의원은 0.8점 소폭 하락, 보좌진은 3.8점 하락하였으며, 회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2021년 이후 정체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그림] 입법조사회답서비스의 전반적 만족도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2023 국회입법조사처 연차보고서」, 2024, p.29

국회입법조사처에 대한 시정요구사항 중 하나로 “국회입법조사처는 조사회답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별 업무량을 고려한 인력배치 등의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시한 바 있었음.[97]

따라서 향후 국회입법조사처는 입법조사서비스의 적시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법조사회답을 의뢰한 의원실과 회답진행 상황에 대한 소통을 강화하고, 회답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으로 지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임.

참고로, 국회입법조사처가 2023년에 실시한 「국회입법조사처 의정활동지원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입법조사회답의 적시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① 입법조사회답 요구자에 대해 접수, 배당, 회답서 작성, 검토, 회답까지 단계별 안내가 이루어지는 ‘회답서비스 정보시스템’의 운영, ② 조사요구서의 충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위한 의원실과의 협의 과정을 필수단계로 운영, ③ 회답기한 경과에 대한 평가제도의 도입 등을 제시하였음.

97)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시 관련 시정요구사항은 아래와 같음.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5	조사회답 신속화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입법 및 정책 조사분석 서비스(5032-300)	제도개선	국회 입법조사처
		지적사항	○ 2021년도에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분석 및 회답의 평균 회답소요일수는 22.3일로 2020년 18.1일 대비 4일 이상 증가하였음 ○ 향후 조사회답 신속화를 위하여 부서별 업무량 편차를 고려한 인력 배치 등의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시정 요구사항	○ 국회입법조사처는 조사회답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별 업무량을 고려한 인력배치 등의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다. 조사회답 관련 외부자문 활성화 방안 모색 필요

국회입법조사처는 입법조사회답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회입법조사처는 2023년도에 동 사업 예산을 통하여 조사회답과 관련된 외부전문가 자문을 총 19건 실시하였으며, 총 610만원의 자문료를 집행하였음.

[2023년 동 사업에서의 외부전문가 자문 실시건수 및 자문료 집행 현황]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실시건수(건)	15	25	19
집행액(천원)	6,390	12,300	6,100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다만, 현재 조사회답 과정에서 외부전문가 자문이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지 못한 상황으로, 향후 전문적이고 차별성 있는 조사회답의 작성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조사회답과 관련된 외부전문가 자문은 매년 15~25건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회입법조사처가 연간 처리하는 조사회답이 약 5,000건 가량인 점을 고려한다면, 0.5% 미만의 조사회답에 대해서만 외부전문가 자문이 활용되고 있음.

[연도별 입법조사회답 건수 및 자문 실시 건수]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입법조사회답 처리 건수(A)	5,763	5,071	4,822
외부전문가 자문 실시 건수(B)	15	25	19
비율(B/A)	0.26%	0.49%	0.39%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입법조사관은 소관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등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이루어져 있고, 수시로 전문가간담회와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외부 전문가와 소통하고 있다는 설명임.

또한, 조사회답의 내용에 따라 외부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자문에 소요되는 시간만큼 회답기간이 길어지는 측면도 있고, 회답업무가 기본적으로 입법조사관 본연의 업무라는 점에서 일방적으로 자문을 장려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입장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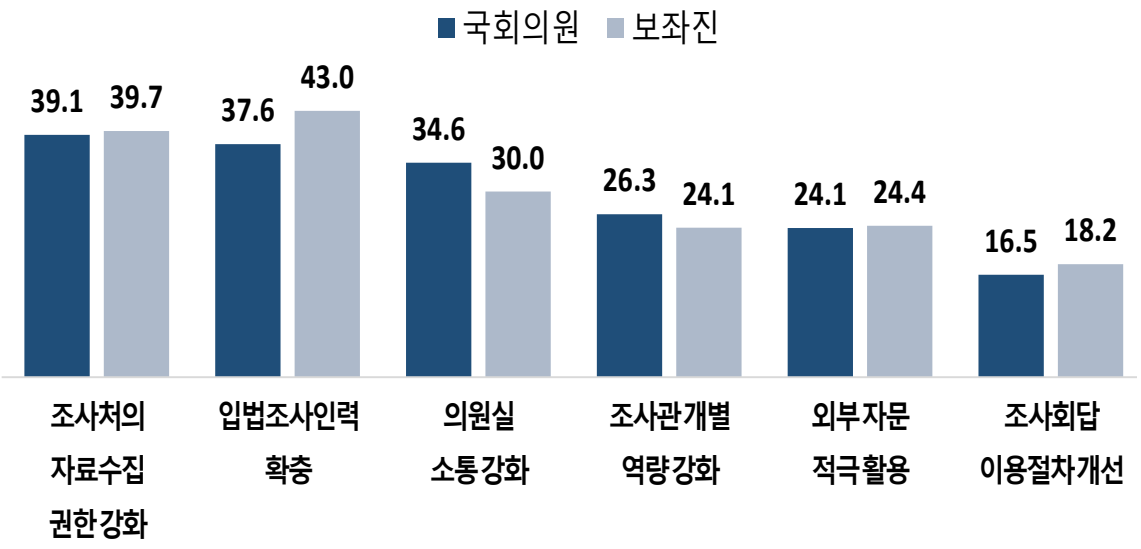
그러나 국회의원실에서 보다 심도있는 수준의 조사회답을 원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전문가의 시각을 반영하고 해외사례 등에 대한 풍부한 자료를 얻기 위해 국회입법조사처가 외부전문가 자문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첫째, 국회입법조사처가 실시한 「2023년도 국회입법조사처 의정활동 지원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인 국회의원과 보좌직원의 약 25%가 입법조사회답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외부자문

적극활용”을 제시하는 등 보다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입법조사회답 서비스를 위하여 외부자문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국회의원 및 보좌직원의 수요가 상당히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98]

[입법조사회답 서비스 만족도 제고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2023년)]

(복수응답, 단위: %)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연구용역보고서, 「국회입법조사처 의정활동지원 만족도 조사」, 2023, p.58

둘째, 상기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입법조사회답의 ‘차별성’에 대한 만족도가 66점 수준으로, 입법조사회답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70점 수준) 대비 상당히 낮아 입법조사회답이 행정부 등 다른 기관과의 자료와 차별화된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2023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회답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98)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조사회답 서비스 만족도 제고 방안에 대하여, 국회의원과 보좌진은 ‘조사처의 자료수집 강화’, ‘입법조사인력 확충’, ‘의원실 소통 강화’, ‘조사관 개별역량 강화’, ‘외부자문 적극활용’ 등을 제시하였음.(국회입법조사처 연구용역보고서, 「국회입법조사처 의정활동지원 만족도 조사」, p.52)

구분		평균				비율(2023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만족	보통	불만족
국회의원	전반적만족도(A)	67.8	73.5	72.8	72.0	73.9	23.1	3.0
	차별성(B)	61.5	70.3	68.8	66.2	55.6	36.8	7.5
	격차(B-A)	-6.3	-3.2	-4.0	-5.8	-18.3	13.7	4.5
보좌직원	전반적만족도(C)	70.6	69.8	74.0	70.2	72.1	22.3	5.6
	차별성(D)	64.3	63.7	66.1	66.4	62.0	28.1	9.9
	격차(D-C)	-6.3	-6.1	-7.9	-3.8	-10.1	5.8	4.3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연구용역보고서, 「국회입법조사처 의정활동지원 만족도 조사」, 2023, pp.30, 40 참고 후 작성

따라서 특정 쟁점에 대해 이루어지는 외부전문가 자문은 대면회의에서 전문가 발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전문가간담회·세미나에 비해 의뢰자의 취지에 맞는 전문적 식견을 입법조사회답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조사회답의 차별성을 향상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3. 장단기 입법 및 정책과제 개발(5032-301)

가. 개 요

「장단기 입법 및 정책과제 개발」은 주요현안이 될 수 있는 입법 및 정책과제를 능동적으로 조사·분석하여 보고서 형태로 제공하고, 전문학술지 '입법과 정책'을 발간하는 등의 내용임.

2023년도 예산현액은 8억 8,500만원으로, 이 중 7억 9,600만원을 집행하고 8,9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음. 주요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① 일반수용비 3억 3,500만원, ② 정책연구비 1억 2,800만원, ③ 일용임금 1억원 등을 집행하였음.

[2023년도 장단기 입법 및 정책과제 개발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세사업 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장단기 입법 및 정책과제 개발	882	882	-	25 △22	-	885	796	-	89	575
· 일용임금	98	98	-	2	-	100	100	-	-	-
· 일반수용비	425	425	-	△20	-	405	335	-	65	266
· 공공요금및제세	4	4	-	-	-	4	2	-	2	4
· 특근매식비	79	79	-	-	-	79	67	-	12	72
· 임차료	2	2	-	-	-	2	1	-	1	1
· 일반용역비	22	22	-	-	-	22	22	-	-	22
· 국내여비	14	14	-	△2	-	13	11	-	2	11
· 국외업무여비	32	32	-	8	-	40	38	-	2	32
· 사업추진비	52	52	-	-	-	52	52	-	-	52
· 정책연구비	113	113	-	15	-	128	128	-	-	113
· 고용부담금	11	11	-	-	-	11	11	-	-	-
· 자산취득비	30	30	-	-	-	30	30	-	-	2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나. 분야별 균형을 고려한 보고서 발간 노력 필요

국회입법조사처는 동 사업을 통하여 2023년도에 주요 보고서인 'NARS 입법·정책', 'NARS 현안분석', '이슈와 논점'을 발간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관련 예산을 총 2억 500만원을 편성하여 1억 7,201만원을 집행하였음.

[2023년도 국회입법조사처 주요 보고서 발간 예산 집행]

(단위: 천원)

구분	특징	예산액	집행액	발간건수
NARS 입법·정책	기획주제에 대한 중장기적 연구, 심도있는 분석 및 대안 제시 (분량: 50페이지 내외)	40,000	53,499	23건
NARS 현안분석	각 분야의 중요 현안을 발굴하고 간결한 입법 및 정책과제와 대안 제시 (분량: 20페이지 내외)	85,000	51,912	32건
이슈와 논점	현안에 대한 빠른 정보제공 (분량: 4페이지)	80,000	66,599	130건
소계		205,000	172,010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2023년도에 국회입법조사처의 각 실국별 'NARS 입법·정책' 및 'NARS 현안분석'의 발간 현황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정치행정 분야[99]에 보고서 발간이 집중되어 있고, 경제산업[100] 및 사회문화[101] 분야의 보고서 발간은 저조한 상황임.

구체적으로, 'NARS 입법·정책'은 2023년도에 총 23권이 발간되었는데,

99) 운영위, 행안위, 외통위, 국방위, 법사위 소관

100) 기재위, 정무위, 국토위, 산자위, 농해수위 소관

101) 복지위, 과방위, 교육위, 문체위, 환노위, 여성위 소관

정치행정분야가 14권으로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경제산업분야는 4권, 사회문화분야는 5권으로 발간 건수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상황임. 또한, 'NARS 현안분석'의 경우에도 총 32권이 발간되었는데, 정치행정분야는 16권으로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경제산업분야와 사회문화분야는 각각 6권, 10권으로 발간 건수가 상대적으로 저조함.

2024년에도 이러한 경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 보임. 국회입법조사처는 2024년에 'NARS 입법·정책'을 총 17권 발간할 계획인데, 이 중 정치행정분야가 12권으로 70%를 차지하고, 경제산업 및 사회문화 분야는 각각 3권, 2권으로 2021년 이후 가장 보고서 발간계획 건수가 가장 적음.

[2023년도 국회입법조사처 실국별 보고서 발간 현황]

연도	구분		정치행정조사실	경제산업조사실	사회문화조사실	계
2021년	NARS 입법·정책	계획	10	10	11	31
		실적	10.5	8.5	8	27
	NARS 현안분석	계획	27	26	24	77
		실적	21	14	18	53
2022년	NARS 입법·정책	계획	10.5	9	14	33.5
		실적	9.5	3.5	11	24
	NARS 현안분석	계획	20.5	21	19.5	61
		실적	17	9	16	42
2023년	NARS 입법·정책	계획	8	12	15	35
		실적	14	4	5	23
	NARS 현안분석	계획	21	24	21	66
		실적	16	6	10	32
2024년 (예정)	NARS 입법·정책	계획	12	3	2	17
	NARS 현안분석	계획	26	21	25	72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이와 같이 실국별 보고서 발간 편차가 크게 발생하는 것은 경제산업 및 사회문화 분야의 보고서 발간 실적이 계획대비 저조한 점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임.

예를 들어, 국회입법조사처는 2023년 보고서 발간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NARS 입법·정책'의 경우 정치행정분야 8건, 경제산업분야 12건, 사회문화분야 15건 등 분야별로 고르게 보고서 발간을 추진하였으나, 실제로는 정치행정분야는 당초 계획대비 보고서를 초과하여 발간한 반면 경제산업분야와 사회문화분야는 당초 계획대비 보고서를 50% 이하로 발간하면서 보고서 발간의 분야별 편차가 커졌음.

'NARS 현안분석'의 경우에도 2023년 발간계획 수립 당시에는 분야별로 21~24건으로 고르게 보고서 발간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경제산업분야와 사회문화분야의 보고서 발간 실적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저조해지면서 정치행정분야 16건, 경제산업분야 6건, 사회문화분야 10건으로 분야별 보고서 발간 편차가 커지게 되었음.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사회문화분야의 경우 다른 분야에 비하여 입법조사회답 업무가 많고[102] 입법영향분석 및 현장실태조사 보고서도 다수 발간[103]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고,

102)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야별 입법조사회답 실적은 아래와 같음.

구 분	정치행정	경제산업	사회문화
2021년	1,583 건	1,930 건	2,112 건
2022년	1,557 건	1,694 건	1,765 건
2023년	1,462 건	1,413 건	1,866 건

경제산업조사실이 담당하는 경제산업분야는 다른 조사실(정치행정조사실, 사회문화조사실)과 달리 실장을 보좌하는 심의관이 배치되어 있지 않아 경제산업 이슈를 상시 점검하고 보고서 주제를 발굴·기획할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과 관련이 있다는 설명임.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하는 보고서가 특정 분야에 편중되는 경우에는 보고서의 주요 수요자인 국회의원 및 상임위원회의 다양한 입법·정책 조사 수요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음.

따라서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의원·상임위원회의 수요조사 등을 통해 다양한 시의성 있는 주제를 발굴한 후 분야별로 균형 있게 발간계획을 수립하고, 계획대로 보고서 발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103) 2023년 국회입법조사처는 「NARS 현장실태조사」 10권(정치행정 분야 3권, 사회문화 분야 7권)과 「NARS 입법영향분석」 2권 (모두 사회문화 분야)을 발간하였음.

다. 보고서 발간시기 평준화 필요

동 사업을 통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하는 주요 보고서인 'NARS 입법·정책'과 'NARS 현안분석'의 발간 시기가 10월 이후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최근 3년간 국회입법조사처에서 'NARS 입법·정책'과 'NARS 현안분석'을 4/4분기(10월~12월)에 발간한 비율은 2021년 60.0%, 2022년 53.0%, 2023년 58.2%로, 매년 절반 이상의 보고서가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10월 이후에 발간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음.

[최근 3년간 발간시기별 'NARS 입법·정책', 'NARS 현안분석' 발간현황]

발간시기	2021년		2022년		2023년	
1/4분기(1월~3월)	5	(6.3%)	8	(12.1%)	5	(9.1%)
2/4분기(4월~6월)	19	(23.8%)	12	(18.2%)	10	(18.2%)
3/4분기(7월~9월)	8	(10.0%)	11	(16.7%)	8	(14.5%)
4/4분기(10월~12월)	**48**	**(60.0%)**	**35**	**(53.0%)**	**32**	**(58.2%)**
전체	80	(100.0%)	66	(100.0%)	55	(100.0%)

주: 'NARS 입법·정책', 'NARS 현안분석' 발간 건수 기준으로 작성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2023년도의 보고서별 발간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NARS 입법·정책'은 23건 중 19건(82.6%)이 10월 이후에 발간되었음. 특히, 12월에 발간된 건수는 14건(60.9%)으로, 연말에 보고서가 집중적으로 발간된 데

반해, 2023년 정기회 이전 기간(1월~8월)에 발간된 건수는 4건에 불과함. ‘NARS 입법·정책’은 기획주제에 대한 중장기 연구보고서로서 50면 내외의 분량으로 작성되어 단시간 내 발간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더라도, 동 보고서의 발간 시기가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연말, 특히 12월에 몰려있음.

한편, ‘NARS 현안분석’은 2023년에는 대체로 매월 1권 이상의 보고서가 꾸준하게 발간되었으나, 전체 발간보고서 32건의 약 40%에 해당되는 13건이 4/4분기에 발간되어 정기회 이후에 발간되는 보고서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수준임.

[2023년도 NARS 입법·정책’과 ‘NARS 현안분석’의 발간시기별 현황]

구분	NARS 입법·정책		NARS 현안분석	
	건수	비중	건수	비중
1월	-	-	2	6.3%
2월	-	-	1	3.1%
3월	-	-	2	6.3%
4월	1	4.4%	1	3.1%
5월	-	-	7	21.9%
6월	-	-	1	3.1%
7월	-	-	3	9.4%
8월	3	13.0%	2	6.3%
9월	-	-	-	-
10월	**2**	**8.7%**	**2**	**6.3%**
11월	**3**	**13.0%**	**5**	**15.6%**
12월	**14**	**60.9%**	**6**	**18.8%**
계	23	100.0%	3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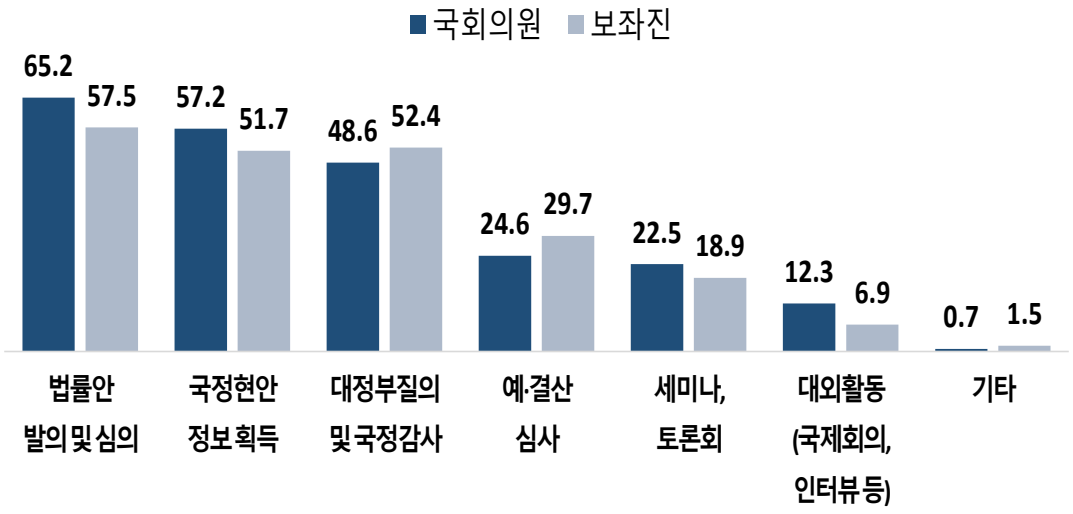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 참고 후 작성

국회입법조사처가 2023년도에 실시한 '국회입법조사처 의정활동지원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보좌진은 국회입법조사처의 발간물을 주로 '입법과 예결산 심사 및 대정부질의·국정감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104],

의정활동에 참고가 되는 'NARS 입법·정책' 및 'NARS 현안분석'이 회계연도 말(특히, 12월)에 집중적으로 발간되는 경우에는 의원실에서 입법조사처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법률안을 발의하거나 정책을 개발하기 어려워 입법조사처 보고서 활용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음.

[입법조사회답자료의 활용목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2023년)]

(복수응답, 단위: %)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연구용역보고서, 「국회입법조사처 의정활동지원 만족도 조사」, 2023, p.83

104) 국회입법조사처 발간물의 활용목적에 대하여, 국회의원과 보좌진 모두 '법률안 발의 및 심의'에 가장 많이 활용한다고 응답하였고, 그다음으로 '국정현안 정보 획득', '대정부 질의 및 국정감사', '예·결산 심사' 등의 순서로 나타났음.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시 국회는 국회입법조사처에 대하여 연말에 집중적으로 보고서가 발간되는 것을 지적하면서, 시정조치 요구로 “국회의원의 보고서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차원에서 정기국회 이전에 발간되는 보고서의 비율을 높일 것”을 제시한 바 있으나[105], 시정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의원과 보좌진이 해당 보고서를 법안 발의·심의 및 국정감사 등 의정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초에 보고서 발간계획을 수립하여 보고서를 연말에 편중되지 않고 연중 고르게 발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105)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시 관련 시정요구사항은 아래와 같음.

연번	시정 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6	보고서 발간실적 저조 및 연말 집중 발간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장단기 입법 및 정책과제 개발(5032-301)	제도개선	국회 입법조사처
		지적사항	○ 2022년도에 입법조사처의 조사분석 회답건수는 2019년 대비 20% 가량 감소하고 있는 반면, 보고서의 발간실적도 감소하여 당초 수립한 발간계획을 달성하지 못하였음 ○ 또한,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활동은 정기국회기간(9월~12월)에 집중되는 반면, 2022년도에는 12월에 발간된 보고서 비율이 25.1%으로 연말에 집중적으로 보고서가 발간되었음		
		시정요구사항	○ 국회입법조사처는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적극적으로 발간함으로써 보고서 발간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국회의원의 보고서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차원에서 정기국회 이전에 발간되는 보고서의 비율을 높일 것		

4. 법령 및 제도개선사항 조사분석(5032-302)

가. 개 요

「법령 및 제도개선사항 조사분석 사업」은 입법영향분석, 행정서비스 실태조사, 정책분석 및 실증분석 등을 통해 국가정책을 평가·분석하는 내용임.

2023년도 예산현액은 4억 7,500만원으로 이 중 4억 4,300만원을 집행하고 3,1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음. 주요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① 일반수용비 1억 7,000만원, ② 일용임금 7,800만원, ③ 정책연구비 4,500만원 등을 집행하였음.

[2023년도 법령 및 제도개선사항 조사분석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세사업 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법령 및 제도개선	483	483	-	35 △44	-	475	443	-	31	291
· 일용임금	79	79	-	-	-	79	78	-	1	-
· 고용부담금	9	9	-	-	-	9	8	-	1	-
· 일반수용비	220	220	-	15 △42	-	193	170	-	24	133
· 공공요금및제세	1	1	-	-	-	1	-	-	1	1
· 특근매식비	49	49	-	-	-	49	48	-	1	40
· 임차료	2	2	-	-	-	2	1	-	-	1
· 일반용역비	-	-	-	20	-	20	20	-	-	-
· 국내여비	18	18	-	△2	-	17	13	-	3	14
· 국외여비	13	13	-	-	-	13	13	-	-	11
· 업무추진비	37	37	-	-	-	37	37	-	-	37
· 특정업무경비	10	10	-	-	-	10	10	-	-	10
· 정책연구비	45	45	-	-	-	45	45	-	-	45

나. 세미나 관련 예산의 효율적 집행 도모 필요

국회입법조사처는 2023년 11월에 국회와 지방정부, 교육청이 함께 지방소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방소멸 위기, 실천적 방안과 대안”(이하 ‘지방소멸위기 세미나’)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총 2,342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음.

[2023년 개최 「지방소멸 위기, 실천적 방향과 대안」 세미나 개요]

<table>
<tr><th>구 분</th><th>주요내용</th></tr>
<tr><td>행사명</td><td>지방소멸 위기, 실천적 방향과 대안</td></tr>
<tr><td>일 시</td><td>11월 22일 (수) / 13:30 ~ 15:30</td></tr>
<tr><td>장 소</td><td>국회의정관 3층 중앙홀</td></tr>
<tr><td>소요예산</td><td>(단위: 천원)
<table>
<tr><th>예산과목</th><th>예산액</th><th>이용·전용 등</th><th>집행액</th><th>비고</th></tr>
<tr><td rowspan="2">일반
수용비</td><td rowspan="2">8,566</td><td>15,000</td><td rowspan="2">3,566</td><td>○ 타 세부사업*으로부터 일반수용비 1,500만원 내역조정 증액
* 입법 및 정책 조사분석 서비스(1000만원)
장단기 입법 및 정책과제 개발(500만원)</td></tr>
<tr><td>△20,000</td><td>○ 일반수용비 2,000만원을 일반용역비로 세목조정</td></tr>
<tr><td>일반
용역비</td><td>-</td><td>20,000</td><td>19,855</td><td>○ 동 사업의 일반수용비 2,000만원을 일반용역비로 세목조정</td></tr>
<tr><td>합계</td><td>8,566</td><td>15,000</td><td>23,421</td><td></td></tr>
</table></td></tr>
<tr><td>프로그램</td><td>
<table>
<tr><th>시간</th><th>내용</th><th>비고</th></tr>
<tr><td>13:30-14:00</td><td>개회식</td><td></td></tr>
<tr><td>14:00-14:40</td><td>기조연설</td><td>5인</td></tr>
<tr><td>14:40-14:50</td><td>발제(지방소멸 극복위기 제언을 위한 실천과제)</td><td></td></tr>
<tr><td>14:50-15:20</td><td>지정토론</td><td>좌장 1인
토론 5인</td></tr>
<tr><td>15:20-15:30</td><td>자유토론</td><td></td></tr>
</table></td></tr>
</table>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재구성

동 세미나는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방소멸 대응 연구 TF」를 발족한 후 전국에서 인구감소 지역이 가장 많은 전라남도, 경상북도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토론회 및 전문가간담회를 거쳐 도출한 주요 입법·정책과제를 제시하는 취지였음.

국회입법조사처는 동 세미나의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비목인 일반용역비(210-14)를 세목조정을 통해 집행하였는데, 이는 예산편성 당시 계획되지 않은 예산 집행일 뿐만 아니라 장소변경 등 사업수행방식 조정을 통해 절감할 수 있는 성격의 예산이라는 점에서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동 세미나를 무대・음향・조명장치 등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국회의정관 3층 중앙홀'에서 개최함에 따라, 관련 시설・장비 설치 등을 위해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일반용역비 2,000만원을 세목조정을 통해 확보하였고 이 중 1,985만원을 집행함.

[2023년 지방소멸위기 세미나 관련 일반용역비 집행 세부내역]

(단위: 원)

품 목	세부내역	금 액
음향시스템	스피커, 무선마이크, 음향조정기기 등	2,000,000
조명시스템	무대조명기기	1,800,000
무대 장치	무대 조립장치, 무대 가벽, LED TV	5,850,000
행사 도구	테이블, 의자, 포디움, 명패 등	4,600,000
인건비	음향・조명 등 운영, 무대장치 설치・철거 인력	2,700,000
물품운송비	편도 2회 기준	1,100,000
소계		**18,050,000**
부가세	부가가치세 10% 적용	1,805,000
총계		**19,855,000**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재구성

그러나 국회입법조사처가 무대・음향・조명장치 등이 구비된 국회 내부의 토론회장・세미나실 등을 활용하였다면, 무대장치 등을 설치하기 위한 추가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도 세미나를 실시할 수 있었을 것임.

특히, 2023년 국회입법조사처가 개최한 주요 세미나를 살펴보면, 「제12차 의회조사기구 국제세미나」와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 국가비전과 대한민국 법학의 과제」는 모두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하여 세미나 개최를 위한 시설·장비 설치에 별도의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음.

[2023년 국회입법조사처 개최 주요 세미나 현황]

구분	의회조사기구 국제세미나	국가비전 입법정책컨퍼런스	지방소멸위기 실천적방안과 대안
일시	2023.10.17. 09:30~17:00	2023.11.3. 09:30~18:00	2022.11.7. 14:00~16: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국회의정관 3층 중앙홀
참석자	발표 18인	발표 7인 토론 9인	기조연설 5인 발제 1인, 토론 5인

따라서 국회입법조사처는 향후 세미나·토론회 등을 운영할 때 가급적 국회 내에 설치된 세미나장·토론회장을 활용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 소모를 방지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국가인권위원회

Ⅰ. 결산 개요

1. 세입 결산

2023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700만원이고, 4,3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3,110만원을 수납함. 주요 수납 내역은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정산금 160만원, 법원 확정결정 징수비용 2,100만원, 공무직 산재보험 대위수령 청구급여 1,400만원 등임.

[2023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세입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미수납액 (B-A)	수 납 률 (B/A*100)
합 계	27	43	31.1	11.9	72.3
▢ 기타 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1	1.8	1.8	-	100
- 기타재산수입	1	1.8	1.8	-	100
▢ 과태료	5	-	-	-	-
- 과태료	5	-	-	-	-
▢ 변상금 및 위약금	0	0.3	0.3	-	100
- 위약금	0	0.3	0.3	-	100
▢ 기타경상이전 수입	20	40.5	28.6	11.9	70.6
- 기타경상이전수입	20	40.5	28.6	11.9	70.6
▢ 기타잡수입	1	0.4	0.4	-	100
- 기타 잡수입	1	0.4	0.4	-	100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2. 세출 결산

가. 총 괄

2023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410억 1,300만원으로, 이 중 393억 7,100만원을 집행(예산현액 대비 96.0%)하고, 3억 8,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2억 5,700만원은 불용함.

[2023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단위: 백만원)

예산액	예산 결정후 증감액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전용등				
41,013	-	-	127	41,013	39,371	384	1,257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나. 성질별 예산집행 현황

2023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집행액 393억 7,100만원 중 인건비로 198억 7,200만원(총 집행액 중 50.5%), 기본경비로 88억 9,200만원(총 집행액 중 22.9%), 주요사업비로 106억 800만원(총 집행액 중 26.9%)이 집행되었음.

[2023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세출 성질별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단 위 사 업	예산액(추경)	예산 결정후 증감액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전년도이월액	예비비	전용등				
합 계	41,013	-	-	±127 ±359	41,013	39,371	384	1,257
▢ 인 건 비	20,521	-	-	(-14) ±113	20,507	19,872	-	635
- 인 건 비[1001-100]	20,521	-	-	-14 ±113	20,507	19,872	-	635
▢ 기본경비	9,301			74(-19) ±156	9,356	8,892	384	80
-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1011-200]	2,175	-	-	14 -	2,188	2,124	-	65
- 기관운영 기본경비[1011-250]	7,126	-	-	42 ±43	7,167	6,768	384	15
▢ 주요사업비	11,150			53(-94) ±203	11,150	10,608	-	542
인권의식 증진[1031-300]	949	-	-	20 ±60	969	957	-	12
지역인권문화 확산[1031-303]	189	-	-	 ±10	189	180	-	9
인권교육기획 및 운영[1032-301]	2,189	-	-	19 ±5	2,208	2,091	-	116
상담서비스 접근성 제고[1033-300]	177	-	-	 ±4	167	140	-	27
취약분야 인권개선[1033-301]	1,455			-30 ±85	1,435	1,329	-	106
장애인 인권증진[1033-302]	547	-	-	-	547	520	-	27
차별시정 및 혐오대응강화[1033-303]	234	-	-	-	234	220	-	14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1034-301]	1,611	-	-	-50 ±8	1,561	1,481	-	80
북한인권 개선[1034-303]	136	-	-	-	136	130	-	6
국제교류협력[1036-300]	1,697	-	-	 ±25	1,697	1,600	-	97
국내교류협력[1036-303]	254	-	-	±12 ±3	254	248		6
인권정보시스템 구축운영[1037-300]	1,044	-	-	-	1,044	1,016	-	28
e-진정시스템 구축·운영[1037-501]	709	-	-	-	709	695	-	14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다. 전용 내역

2023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전용액은 1억 2,700만원으로, 인권교육원 경비보안용역 재원 마련 1,800만원, 소송수임료 부족 재원 마련 6,000만원, 인권의날 기념식 행사 부족 재원 마련 2,000만원 등임.

[2023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결산 전용내역]

(단위: 백만원)

(~에서)		금액	(~으로)		전용사유
단위사업-세부사업-목-세목			단위사업-세부사업-목-세목		
기관운영 기본경비 (1011-250)	일반수용비 (210-01)	8	인권교육 기획 및 운영 (1032-301)	관리용역비 (210-15)	인권교육원 경비보안용역 재원 마련
국내교류협력 (1036-303)	일반수용비 (210-01)	6	국내교류협력 (1036-303)	국내여비 (220-01)	인권옹호자 관련 행사 참가자 여비 부족 재원 마련
	임차료 (210-07)	6			
기관운영 기본경비 (1011-250)	일반수용비 (210-01)	10	인권교육 기획 및 운영 (1032-301)	관리용역비 (210-15)	인권교육원 경비보안용역 재원 마련
상담서비스 접근성 제고 (1033-300)	일반수용비 (210-01)	10	기관운영 기본경비 (1011-250)	일반수용비 (210-01)	소송수임료 부족 재원 마련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1034-301)	일반수용비 (210-01)	50			
취약분야 인권개선 (1033-301)	일반수용비 (210-01)	20	인권의식 증진 (1032-301)	일반용역비 (210-14)	인권의 날 기념식 행사 부족 재원 마련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1034-301)	일반수용비 (210-01)	3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1034-301)	국내여비 (220-01)	지역인권증진 사업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지급
인건비(총액) (1001-100)	보수 (110-01)	14	기본경비(총액) (1011-200)	고용부담금 (320-09)	고용부담금 부족 재원 마련
	계	127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라. 다음연도 이월 내역

2023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이월액은 3억 8,400만원으로 「국가재정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기본경비 이월액임.

[2023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결산 다음연도 이월 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이월금액	이 월 사 유
합 계	384	
▢ 기본경비	384	
- 기관운영 기본경비	384	「국가재정법」 제48조제2항에 의거한 기본경비 이월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마. 불용 내역

2023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불용액은 12억 5,700만원으로 대부분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임.

[2023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결산 불용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불용액	불 용 사 유
계	1,257	비목별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
인건비(총액)	635	집행잔액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	65	집행잔액
기관운영 기본경비	15	집행잔액
인권의식 증진	12	집행잔액
지역인권문화 확산	9	집행잔액
인권교육 기획 및 운영	116	①대상별교육과정 직접운영 13백만원 예산절감 ②연구용역비낙찰차액 23백만원,③인권교육센터 유지보수 사유 미발생 4.7백만원, ④집행잔액 등
상담서비스 접근성 제고	27	화상채팅상담설비 보안취약 문제로 운영 일시중단,(시설장비 유지비 미집행6.6백만원), 상담원교육 자체시설활용 등 예산절감
취약분야 인권개선	106	용역비 낙찰차액10백만원일반수용비54백만원, 임차료29백만원 등 집행잔액
장애인 인권증진	27	임차료4.8백만원 절감계약, 국외여비4백만원 환율하락에 따른 절감, 그 외 집행잔액
차별시정 및 혐오 대응 강화	14	일반연구비 12백만원 낙찰차액, 그 외 집행잔액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80	일반연구비 35.8백만원 낙찰차액, 그 외 집행잔액
북한인권 개선	6	집행잔액

사 업 명	불용액	불 용 사 유
국제교류협력	97	APF연례회의 4회→2회로 계획 축소, 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회의가 대면 회의에서 비대면으로 변경됨으로 인한 예산 절감 95백만원, 그 외 집행잔액
국내교류협력	6	집행잔액
인권정보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28	집행잔액
e-진정 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14	집행잔액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3. 재무 결산

가. 재정상태표

재정상태표는 작성기준일 현재의 자산과 부채의 명세 및 상호관계 등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 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성됨(「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2023년말 기준 국가인권위원회 자산은 228억 9,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100만원(△0.3%) 감소하였고, 부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0원이며, 순자산은 228억 9,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100만원(△0.3%) 감소함.

[2023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재정상태표]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A)	2022(B)	증 감	
			금액(C=A-B)	비율(C/B)
자 산	22,894	22,965	△71	△0.3
- 유동자산	168	10	158	1,580
- 투자자산	21	0	21	순증
- 일반유형자산	17,498	17,792	△294	△1.7
- 무형자산	2,373	2,232	141	6.3
- 기타비유동자산	2,834	2,931	△97	△3.3
부 채	0	0	0	0
순자산(자산-부채)	22,894	22,965	△71	△0.3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2023년도에는 유동자산 1억 5,800만원 증가, 투자자산 2,100만원 증가, 무형자산 1억 4,100만원 증가 등으로 순자산 증가요인이 있었으나, 일반유형자산 2억 9,400만원 감소, 기타비유동자산 9,700만원 감소 등으로 순자산이 감소한 것임.

나. 재정운영표

재정운영표는 회계연도 동안 수행한 정책 또는 사업의 원가와 재정운영에 따른 원가의 회수명세 등을 포함한 재정운영결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프로그램순원가, 재정운영순원가, 재정운영결과로 구분하여 표시함(「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2023년말 기준 국가인권위원회 재정운영결과는 426억 6,3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 8,000만원 증가하였음. 이는 주로 퇴직연금 운용자산관련 이자 및 영화제작비용 산업재산권 등재 등에 따른 비배분수익이 4억 5,200만원 증가하였으나, 인건비, 임차료, 여비, 연구개발비 증가에 따른 프로그램순원가가 전년 대비 7억 3,000만원 증가하였기 때문임.

[2023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재정운영표]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A)	2022(B)	증 감	
			금액(C=A-B)	비 율(C/B)
Ⅰ. 프로그램순원가	43,115	42,385	730	1.7
Ⅱ. 관리운영비			-	-
Ⅲ. 비배분비용			-	-
Ⅳ. 비배분수익	452	2	450	22,500
Ⅴ. 재정운영순원가 (Ⅰ+Ⅱ+Ⅲ-Ⅳ)	42,663	42,383	280	0.7
Ⅵ. 비교환수익 등	-	-	-	-
Ⅶ. 재정운영결과(Ⅴ-Ⅵ)	42,663	42,383	280	0.7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다. 순자산변동표

순자산변동표는 회계연도 동안 순자산의 변동명세를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기초순자산, 재정운영결과, 재원의 조달 및 이전, 조정항목, 기말순자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함(「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

2023년말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말순자산은 228억 9,400만원으로 전년도 229억 6,500만원보다 7,100만원(△0.3%) 감소하였음. 기말순자산은 기초순자산 229억 6,500만원에서 재정운영결과 426억 6,300만원을 차감한 후 재원의 조달 및 이전 426억 2,600만원을 가산하고 조정항목 △3,400만원을 반영한 금액임.

[2023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순자산변동표]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A)	2022(B)	증 감	
			금액(C=A-B)	비율(C/B)
Ⅰ. 기초순자산	22,965	22,654	311	1.4
Ⅱ. 재정운영결과	42,663	42,383	280	0.7
Ⅲ. 재원의 조달 및 이전	42,626	42,727	△101	△0.2
Ⅳ. 조정항목	△34	△33	△1	△3.0
Ⅴ. 기말순자산(Ⅰ-Ⅱ+Ⅲ+Ⅳ)	22,894	22,965	△71	△0.3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Ⅱ. 검토의견

1. 총 괄

가. 비목별 목적에 부합하는 예산 집행 필요: 비목 혼용 집행

「국가재정법」 제45조[106] 및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예산 집행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과 각 비목별 적용대상 및 세부지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의 관서운영경비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세출예산의 목적과 비목별 적용대상 등에 부합하지 못하는 집행 사례가 발견됨.

구체적으로, 정수기 사용 요금은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 등에 적용되는 '일반수용비(210-10)'에서 지급되어야 하는데, 특정 부서에서는 정수기 사용 요금을 토지・건물・시설・장비・물품 등의 임차료 및 이용료 등에 적용되는 '임차료(210-07)'에서 지급[107]하고 있음.

106)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107) 군인권보호국 및 부산인권사무소를 제외한 다른 부서는 정수기 사용 요금을 일반수용비(210-01)에서 집행하였음. 참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사항을 기획재정부에 문의하여 2024년부터는 군인권보호국 및 부산인권사무소도 일반수용비에서 지급하고 있다고 함.

[비목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 사례]

(단위: 원)

세부사업명	집행 부서	집행 비목	집행 내용
기관운영 기본경비 (1011-250)	군인권보호국	임차료 (210-07)	1월~12월 정수기 사용 요금
인권교육 기획 및 운영 (1032-301)	부산인권사무소	임차료 (210-07)	1월~9월 정수기 사용 요금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제공자료 재구성

이러한 예산 집행은 그 자체로 비목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고, 특정 부서만의 예산 집행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예산 집행의 일관성을 저해하고, 세목간 조정이 예산 변경제도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적정한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은 예산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음.

따라서, 향후 국가인권위원회는 관서운영경비가 세출예산의 목적과 비목별 적용대상 등에 맞추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 등 예산 집행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안내를 실시하는 한편, 동일 또는 유사 집행 내역에 대한 상이 비목 집행 사례를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할 필요가 있음.

나. 관서운영경비 미대상 지출의 관서운영경비 집행

「국고금 관리법」 제22조[108] 및 제24조[109]에 따르면 세출예산은 재무관의 지출원인행위와 지출관의 지출절차를 거쳐 지출하되, 관서를 운영하는 데 드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관서운영경비)는 필요한 자금을 출납공무원이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할 수 있음.

한편,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제2항[110] 및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기획재정부예규) 제20조[111]와 관련 별지 제1호에 따르면, 운영비(210목) 중 임차료(210-07)는 '건당 500만원 이하의 경비(청사임차료는 금액 제한 없음)'에만, 유형자산(430목)은 '취득단가 50만원(수수료 등 부대경비 포함) 미만인 물품의 취득경

108) 「국고금 관리법」 제22조(지출의 절차)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제21조에 따라 위임받은 공무원(이하 "재무관"이라 한다)이 그 소관 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중앙관서의 장이 임명한 공무원(이하 "지출관"이라 한다)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보내야 한다.

109) 「국고금 관리법」 제24조(관서운영경비의 지급)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관서를 운영하는 데 드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제22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이하 "관서운영경비"라 한다)는 필요한 자금을 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110)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관서운영경비의 범위) ①영 제31조제1호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의 최고금액은 건당 500만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
②영 제31조제4호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경비의 성질상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111)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제20조(관서운영경비의 교부 및 지급) ①규칙 제52조제1항에서 "건당(500만원)"이라 함은 동일한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1인의 채권자에게 1회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②규칙 제52조제1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운영비(210)중 선거관련 용품제작・인쇄비용・우편요금, 청사임차료
2. 특수활동비(230)중 정보・경호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대통령행사에 소요되는 경비
③ 영 제31조 및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별지 제1호와 같다.

비’에만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할 수 있음.

이에 따라 건당 500만원을 초과하는 임차에 대하여 임차료(210-07)를 지급하거나 취득단가 5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자산취득비(430-01)로 구입할 때에는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해서는 안 되고, 재무관의 지출원인행위와 지출관의 지출절차를 거쳐 지출되어야 함.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의 관서운영경비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500만원을 초과하는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5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구입하면서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한 사례가 발견됨.[112] 이는 「국고금관리법」 등 국고금 지출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있음.

[관서운영경비 미대상 지출의 관서운영경비 집행 사례]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일 자	집행 비목	집행 내용	집행액
기관운영 기본경비 (1011-250)	2023. 4. 20.	임차료 (210-07)	제주인권팀 관사 임차료 등 지급요청	12,838
기관운영 기본경비 (1011-250)	2023. 4. 4.	자산취득비 (430-01)	장애인 독서보조기기(컴퓨터 화면읽기 프로그램) 대금지급	985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제공자료 재구성

112) 청사의 개념에 관사가 포함되는 것으로 오인하는 등 착오로 인한 오집행으로 보임. 참고로, 제주인권팀 관사는 2019. 9. 1.부터 임차로 운영됨.

따라서, 향후 국가인권위원회는 관서운영경비 범위를 초과하는 지출원인행위가 관서운영경비로 지급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 등 예산 집행담당자에 대하여 「국고금 관리법」 등 국고금 지출 관련 법규를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2. 인권교육 기획 및 운영(1032-301)

가. 개 요

「인권교육 기획 및 운영」사업은 인권 연수과정 운영, 사이버 인권교육 운영,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인권도서관 운영 등을 수행하는 사업임.

2023년도 예산현액은 전용 등으로 예산액보다 1,900만원 증가한 22억 800만원이며, 이 중 20억 9,1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1,600만원(5.3%)을 불용하였음.

[2023년도 인권교육 기획 및 운영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2,189	2,189	-	19	-	2,208	2,091	-	116	1,945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① 인권 연수과정 운영에 12억 7,100만원, ② 사이버 인권교육 운영에 1억 5,100만원, ③ 인권교육 정책 제도 기반구축 및 국내외 협력에 9,600만원, ④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에 4억 8,000만원, ⑤ 직원 역량강화 교육에 7,100만원, ⑥ 인권도서관 운영에 2,2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음.

나. 노후화된 인권교육 콘텐츠 시의성 확보 노력 필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 각 분야의 인권감수성 증진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일반시민(인권 및 시민단체 활동가, 학생 등)과 공무원(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교육행정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이버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교육 인원]

(단위: 명)

구 분	공직자		교 사		시 민		합 계	
	신 청	이 수	신 청	이 수	신 청	이 수	신 청	이 수
2019년	68,404	56,140	6,874	5,663	231,124	199,702	306,402	261,505
2020년	100,864	80,667	6,790	5,606	154,731	134,119	262,385	220,392
2021년	69,913	46,958	2,829	1,892	187,578	156,888	260,320	205,738
2022년	141,754	109,137	1,828	1,257	416,668	322,850	560,250	433,244
2023년	180,672	174,566	1,362	1,034	488,156	409,160	670,190	584,760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이를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속적으로 대상・내용・수준별 인권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는데, 콘텐츠의 시의성을 고려하여 노후화된 콘텐츠의 경우 최대 5년(3년 원칙)을 유효기간으로 설정하고, 해마다 기존 콘텐츠에 대한 개정작업과 신규 콘텐츠 제작을 병행하고 있음.

2023년에는 ① 성희롱 예방교육, ② 성차별 예방교육, ③ 보건사회 정책과 건강권, ④ 기후위기와 인권이야기를 개발하였는데, ① 및 ②의 경우 2022년 실시한 콘텐츠 분석 결과, 콘텐츠 노후화로 인한 시의

성 부족, 사실 오류 등으로 사용중지가 필요한 상황[113]임에 따라 우선 제작한 것이고, ④의 경우 인권 현안인 '기후위기'와 관련하여 이미 제작된 콘텐츠를 재가공하여 새로 제작한 것임.[114]

[2023년 사이버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내용]

(단위: 백만원)

집행액	개발 주요 내용
66	○ 모듈(module) 형태의 콘텐츠 3종 신규 개발 - <보건사회 정책과 건강권>, <성희롱 예방교육>, <성평등 교육> - 콘텐츠별 6차시, 러닝타임 1시간 30분 이상으로 구성 - 1인 강의형, 대담형, 지식다큐, 인포그래픽 등 최신 트랜드 반영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제공자료 재구성

그런데, 2023년 사이버 인권교육 콘텐츠 및 이수 현황을 살펴보면, 총 43개 콘텐츠 중 2023년 기준으로 5년 전인 2018년 이전에 과정을 개시한 콘텐츠가 15개로 나타나고, 특히, 10년 전인 2013년 이전에 과정을 개시한 콘텐츠도 7개에 이르는 등 시의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113)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총 30개의 정규 콘텐츠 중 개발 시점이 오래된 22개 콘텐츠를 선정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 인권교육 콘텐츠 분석」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① 성희롱 예방교육, ② 성차별 예방교육, ③ 스포츠와 인권, ④ 기업과 인권은 사용중지가 필요한 상황임.

114)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① 성희롱 예방교육, ② 성차별 예방교육, ③ 보건사회정책과 건강권 콘텐츠는 내용의 단계별 검토 및 모니터링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어 2024년 5월 나라배움터 및 인권교육센터에 탑재하고 같은 해 하반기 최종 검수 후 과정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하며, ④ 기후위기와 인권이야기 콘텐츠는 2023년 11월에 과정을 개시하였다고 함.

[2023년 사이버 인권교육 콘텐츠 및 이수 현황]

연번	과정명	과정 개시일	이수 인원(명)
1	**성차별예방교육**	2006	12
2	인권의 이해	2006	2,598
3	신행정과 인권	2006	2,810
4	선생님을 위한 인권플러스	2010	983
5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해	2011	70
6	차별예방교육	2013	135,040
7	군인 인권의 이해	2013	1,720
8	학교폭력예방교육	2014	46
9	**성희롱예방교육**	2015	15
10	세계인권선언	2015	1,527
11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해	2015	14,704
12	이주민과 인권	2015	510
13	노인 인권의 이해	2015	3,212
14	사회복지와 인권	2016	10,215
15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해설	2017	1,448
16	**기업과 인권**	2019	42
17	인권경영의 이해	2020	59,145
18	인권의 이해(입문편)	2021	19,093
19	인권의 이해(권리구제편)	2021	38,015
20	노인 인권의이해 강좌	2021	2,805
21	알기쉬운 인권상담	2021	10,515
22	인권공부첫걸음	2021	36,149
23	차별금지의 이해_차별금지법 왜 필요한가	2021	19,682
24	표현의 자유와 차별 금지(차별금지법 왜 필요한가)	2021	10,106
25	코로나19 이후의 건강과 인권	2021	14,490
26	OECD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	2021	35,578
27	사례로 보는 인권경영	2021	88,338
28	인권과 함께 하는 사회복지	2021	6,194
29	인권행정 ABC	2021	11,721
30	인권경영 국내외 동향	2023	42,551
31	노동인권(직장 내 괴롭힘)	2023	10,677
32	돌봄노동과 인권	2023	2,865
33	행복하고 존엄한 노년의 삶(노인인권)	2023	902
34	인권이란(초등학교)	2023	87
35	초등학교 노동인권	2023	23
36	초등학교 스포츠인권	2023	28

연번	과정명	과정 개시일	이수 인원(명)
37	인권이란?(중학교)	2023	61
38	중학교 노동인권	2023	26
39	중학교 스포츠인권	2023	28
40	인권이란(고등학교)	2023	81
41	고등학교 노동인권	2023	199
42	고등학교 스포츠인권	2023	177
43	기후위기와 인권이야기	2023	272

주: 연번 1·9·16은 연구용역 결과 사용중지가 필요한 상황인데, 연번 1·9는 2023년에 개발하여 2024년 하반기 과정을 개시할 예정이며, 연번 16은 새로 개발되어 있지 않음. 2023년 개시한 과정(연번 43 제외)은 2022년에 개발한 콘텐츠임.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제공자료 재구성

특히, ①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군인 인권(2013년 과정 개시), 학교 폭력(2014년 과정 개시) 관련 콘텐츠, ② 2017년 과정 개시 후 다섯 차례 법률이 개정된 장애인차별법 관련 콘텐츠와 ③ 2022년 실시한 콘텐츠 분석 결과 사용중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기업과 인권(2019년 과정 개시) 관련 콘텐츠는 우선적으로 시의성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115)116)]

따라서, 향후 국가인권위원회는 노후화된 사이버 인권교육 콘텐츠의 시의성 확보 및 품질 제고와 인권분야별 적정 안배 등을 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기존 콘텐츠 개정 및 신규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적정 예산을 확보하거나 지출 구조를 조정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115) 아울러, 과정 개시 시기가 오래된 콘텐츠의 이수 인원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수준으로 나타남.

116) 국가인권위원회는 노후화된 콘텐츠 중 인권의 이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해설, 기업과 인권, 인권경영의 이해는 2024년 개발 진행 중이며, 군인권의 이해는 2023년 '군인권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여 사이버콘텐츠를 개발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3. 상담서비스 접근성 제고(1033-300)

가. 개 요

「상담서비스 접근성 제고」사업은 인권현장대응, 상담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상담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 전문상담원 및 전문상담위원을 배치하여 인권상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임.

2023년도 예산현액은 전용 등으로 예산액보다 1,000만원 감소한 1억 6,700만원이며, 이 중 1억 4,000만원을 집행하고, 2,700만원(16.2%)을 불용하였음.

[2023년도 상담서비스 접근성 제고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177	177	-	△10	-	167	140	-	27	423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① 전문상담원 및 상담위원 운영에 8,200만원, ② 인권현장 대응에 1,400만원, ③ CTI 전화시스템 운영에 4,4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음.

나. 전문상담위원제도 운영 전반적 점검 필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문제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을 전문상담위원으로 위촉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상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전문상담위원제도(임기 2년)를 운영하고 있음.

전문상담위원은 ① 인권관련 단체 또는 현재 위촉 중인 전문상담위원이 추천한 사람, ② 인권상담조정센터 또는 인권사무소에서 적격자로 자체 판단하여 선정한 사람, ③ 국가인권위원회의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 중에서 국가인권위원장이 심사하여 위촉하는데, 2023년 12월 기준으로 변호사 13명, 노무사 10명, 군인권 전문가 2명, 수화통역 1명 등 총 26명이 전문상담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음.

[최근 3년(2021년～2023년) 전문상담위원 현황]

구 분	변호사	노무사	군인권	수화 통역	계
2021년말 기준	13명	12명	2명	-	27명
2022년말 기준	14명	10명	2명	1명	27명
2023년말 기준	13명	10명	2명	1명	26명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한편, 국회는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서 전문상담위원의 상담서비스가 내실있게 이루어지고 사례금 등 관련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예약제도 활성화 등의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국가인권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한 바 있는데,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전문상담위원제도 효율화 방안을 보고하였음.

[전문상담위원제도 효율화 방안(2022. 12. 28.)]

○ 위원회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방문상담예약 신청란'을 배치하여 홈페이지 이용자들에게 위원회 인권전문위원 방문상담제도 홍보 및 방문상담 예약이 용이하도록 개선 ○ 예약상담 신청자들에게 사전 전화하여 상담요지 확인하여 내용에 맞는 전문상담위원과 매칭 ○ 1331 전화상담 시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안인 경우 해당 분야 전문상담위원 예약상담제도 안내 및 홍보 ○ 사전 예약상담제 확대 시행, 교육과 모니터링 강화, 상담환경 개선 및 지원, 방문상담제도 홍보 등으로 전문상담위원 방문상담제도 활성화 도모

그런데,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전문상담위원의 상담 실적을 살펴보면, 상담일수 및 상담건수 모두 3년 연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전문상담위원제도 효율화 방안 시행 전·후인 2022년과 2023년 상담 실적을 비교하면, 효율화 방안 시행 후 오히려 상담일수가 66일(△30%) 감소하였고 상담건수도 61건(△22.6%) 감소하였음.

[최근 3년(2021년~2023년) 전문상담위원 분야별 상담 실적]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상담일수	상담건수	상담일수	상담건수	상담일수	상담건수
변호사	84일	118건	83일	133건	42일	86건
노무사	178일	173건	107일	99건	73일	101건
군인권	43일	25건	27일	26건	9일	9건
이주	-	-	3일	-	6일	5건
수화통역	-	-	10일	12건	24일	8건
계	305일	316건	220일	270건	154일	209건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제공자료 재구성

또한, 상담건수 감소에 비례하여 상담건수 기준으로 지급되는 사례비[117]도 줄어듦에 따라 2023년에는 사례비 예산 5,700만원 중 1,200만원만 집행되어 집행률이 21.1%에 그치는 등 집행부진이 심각하였음.[118]

[2023년 전문상담위원 사례비 예산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액	집행액	잔 액
57	12	45

이와 같이, 상담 실적 감소 추세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전문상담위원제도 활성화 방안은 상담서비스 이용자의 편의성 및 접근성 제고와 이용자에 대한 홍보 강화 등을 위주로 마련되어 있어, 전문상담위원제도를 활성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임.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기존의 법률・노무・이주・군인권으로 단순화된 전문상담위원의 상담(위촉) 분야에 아동・여성・노인・북한인권 분야 등의 다양한 상담(위촉) 분야를 추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119]

따라서, 향후 국가인권위원회는 전문상담위원제도의 운영 전반을 점검・검토하여, 상담 실적을 제고하고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117) 사례비 지급 기준: 참석 1회당 80,000원
118) 2024년 예산에는 2023년 대비 1,900만원 감액되어 3,800만원이 편성됨.
119) 2020년 7월 이전에는 법률상담, 노동인권, 정신보건, 여성인권 및 성희롱, 북한인권, 인권일반, 군인권 분야로 나누어 전문상담위원을 위촉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변호사, 노무사, 군인권 등으로 전문상담위원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음.

4.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1034-301)

가. 개 요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사업은 인권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 등을 수행하여 인권 관련 정책개발을 추진하고,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인권경영 확산을 위하여 인권경영 관련 정책을 개발하며, 국가 인권정책 추진에 필요한 국가인권통계를 생산・분석하는 사업임.

2023년도 예산현액은 전용 등으로 예산액보다 5,000만원 감소한 15억 6,100만원이며, 이 중 14억 8,100만원을 집행하고, 8,000만원(5.1%)을 불용하였음.

[2023년도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1,611	1,611	-	△50	-	1,561	1,481	-	80	1,319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①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에 1,700만원, ② 인권 관련 정책개발 및 연구역량 강화에 7억 4,800만원, ③ 정보인권보호 제도 개선에 4,900만원, ④ 기업인권 정책개발에 6,900만원, ⑤ 국가인권통계 운영에 5억 9,7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음.

나. 정보인권전문위원회 운영 및 예산 집행 부적정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120]은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에는 심의 사항을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성·장애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전문위원회의 구성·업무 및 운영과 전문위원의 자격·임기 및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회 규칙」[121]은 12개의 전문위원회를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에 분야별로 두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 중 정보인권전문위원회는 2023. 1. 16. 규칙 개정을 통하여 신설되었음.

한편, 2023년 정보인권전문위원회 운영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총 4회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3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하고 1회는 장소를 임차하여 개최하였으며, 참석사례비 등 소요 경비(1,719만원)는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1034-301) 사업에 이미 편성된 정보인권포럼 관련 예산[122]에서 집행하였음.

---

120)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2조(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 ③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에는 심의 사항을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성·장애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업무 및 운영과 전문위원의 자격·임기 및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121)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회 규칙」 제2조(구성) ①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둔다.
1. 상임위원회 : 사회권전문위원회, 인권교육전문위원회, 국제인권전문위원회, 지역인권전문위원회, 북한인권전문위원회, 정보인권전문위원회
2. 침해구제제1위원회 : 자유권제1전문위원회
3. 침해구제제2위원회 : 자유권제2전문위원회
4. 차별시정위원회 : 차별시정전문위원회
5.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 장애인인권전문위원회
6. 아동권리위원회 : 아동인권전문위원회
7. 군인권보호위원회 : 군인권전문위원회

[2023년 정보인권전문위원회 회의 운영 및 예산 집행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개최일(장소)	주요 안건	예산집행내역(단위: 천원)
2023년 제1차 회의	2023. 3. 27. 전원위원회실	○2022년 주요 성과 및 2023년 업무 추진 계획 공유 ○전자장치 분리 후 도주자의 사건 공개 논의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과 인권 가이드라인 논의	○참석 사례비 2,400(200*12명) ○발제 사례비 400(1명) ○자료집 등 제작비 608 ○필요물품 구매 116 ○오찬비용 490
2023년 제2차 회의	2023. 6. 21. 전원위원회실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논의 ○지능정보사회에서의 정보격차 해소 방안 논의	○참석 사례비 1,800(200*9명) ○발제 사례비 800(400*2명) ○자료집 등 제작비 529 ○필요물품 구입비 105
2023년 제3차 회의	2023. 10. 25.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서울명동점)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도구 권고 초안 검토	○참석 사례비 2,200(200*11명) ○발제 사례비 400(1명) ○속기 사례비 420[123] ○자료집 등 제작비 628 ○필요물품 구입비 102 ○회의장 임차료 2,680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2023년 제4차 회의	2023. 12. 22. 전원위원회실	○2024년 정보인권 업무계획 보고 ○신규 정보인권 제안사항 검토	○참석 사례비 2,400(200*12명) ○자료집 등 제작비 632 ○필요물품 구입비 225 ○다과 등 250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제공자료 재구성

122) 2023년 정보인권포럼 관련 예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내 역
일반수용비	25,200	정보인권포럼, 실태조사(자료 인쇄 12,000 / 발표 및 토론 사례비 13,200)
임차료	4,000	정보인권포럼 운영(장소 임차)
합계	29,200	-

123) 속기 사례비는 제3차 회의에서만 집행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속기 사례비는 회의 장소(내부 또는 외부)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논의되는 안건의 중요성, 즉 소관 위원회(상임위원회)의 정책안건 심의·의결 시 참고자료 활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속기를 하고 있다고 설명함.

다만, 정보인권전문위원회의 운영 및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정보인권전문위원회의 운영 측면에서, 제3차 회의는 장소를 임차하여 개최하였는데, 이는 정보인권전문위원회의 전신[124]이라 할 수 있는 '정보인권포럼'이 장소를 임차하여 개최하던 관행을 따른 것으로 보임.[125]

그러나, ① 법적 근거가 없는 행사적 성격의 정보인권포럼과 달리 정보인권전문위원회는 법적 근거가 있는 공식 회의체로서 그 위상과 성격에 차이가 있는 점, ② 정보인권전문위원회를 제외한 다른 전문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있는 점, ③ 전문위원회는 발제자・토론자・청중 등을 위한 대규모의 공간이 필요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회의장소를 임차하여 회의를 개최한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임.

둘째, 정보인권전문위원회의 예산 집행 측면에서, 회의장소 임차로 인하여 임차료(286만원)가 추가로 지출되었음. 호텔 임차료의 경우 정보인권전문위원회 회의의 성격상 국가인권위원회 회의실을 활용하

124)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까지 정보인권 관련 전문가 자문기구로 운영되던 정보인권포럼을 2023년부터 정보인권전문위원회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함. 참고로, 2022년 정보인권포럼은 4차례 개최되었는데 3차례는 장소를 임차하여 개최되었고 1차례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별관에서 개최되었음. 또한, 정보인권포럼과 정보인권전문위원회 구성 인원수는 15명으로 동일하며 이 중 10명이 중복됨.

125) 국가인권위원회는 전문위원회 회의는 안건 검토의 적시성과 다수의 전문위원 참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회의 일시를 정하고, 해당일의 위원회 내부 회의실 사정을 살펴 회의장소의 임차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위원회에서 정보인권전문위원회 회의가 가능한 규모의 회의실은 전원위원회 회의실, 중회의실, 배움터 등이 있으나, 정보인권전문위원회가 있던 날 모두 예약이 되어 있어 불가피하게 외부 장소를 임차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힘.

였더라면 집행할 필요가 없었던 경비라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예산 집행으로 보임.[126]

따라서, 향후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보인권전문위원회의 성격에 부합하도록 회의를 운영하고 소요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126) 참고로, 2024년 정보인권전문위원회 관련 예산에 임차료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내 역
일반수용비	10,800	정보인권 전문위원회 운영 등(자료인쇄 2,000 / 발표 및 토론 사례비 8,800)
임차료	2,000	정보인권전문위원회 운영 등(장소 임차)
합계	12,800	-

5. 국제교류협력(1036-300)

가. 개 요

「국제교류협력」 사업은 UN 등 국제사회에서 국가인권기구로서의 기본 임무를 수행하고 국제인권기구와의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국내외적으로 인권을 개선하려는 사업임.

2023년도 예산현액은 예산액과 동일한 16억 9,700만원이며, 이 중 16억원을 집행하고, 9,700만원(5.7%)을 불용하였음.

[2023년도 국제교류협력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1,697	1,697	-	-	-	1,697	1,600	-	97	1,450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① 국제회의 참석에 4억 4,500만원, ② 외국 국가인권기구 협력 워크숍에 2,300만원, ③ 인권현안 국제협력에 8,900만원, ④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운영에 2,400만원, ⑤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APF) 활동지원에 1억원, ⑥ 국제인권조약 심의 대응 등에 1,300만원, ⑦ 아셈 노인인권정책센터 운영 지원에 6억 8,600만원, ⑧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소개에 2억 2,0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음.

나. 아셈 노인인권정책센터 운영 예산 조달방안 다각화 노력 필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아셈(ASEM)[127] 회원국 노인들이 직면한 인권 문제 해소 및 인권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4년 10월 제10차 ASEM 정상회의에서 노인인권센터 설립을 제안하였음.

이에 2016년 7월 제11차 아셈 정상회의에서 노인인권 국제전문기구로 'ASEM 글로벌 에이징 센터(ASEM Global Ageing Center,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의 설치·운영을 승인받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을 주도하여 2018년 6월 아셈 노인인권정책센터를 서울에 개소하게 되었음. 아울러, 아셈 노인인권정책센터는 「민법」 및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으로 2018년 1월 설립허가를 받았음.

아셈 노인인권정책센터는 ① 노인인권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현안 분석 등 정책연구, ② 노인인권 관련 국내외 단체, 기구 등과의 교류 및 협력, ③ 노인, 연령주의(ageism) 등 인식개선과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④ 노인인권 관련 정책, 보고서 및 주요 동향 등 노인인권 정보 제공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음.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아셈 노인인권정책센터 운영지원 협약서」[128]에 근거하여 아셈 노인인권정책센터가 설립된 2018년 이후

127) Asia-Europe Meeting을 줄인 말로 '아시아-유럽 정상회의'를 의미함. 아시아 및 유럽정상, EU 집행위원장과 ASEAN 사무총장이 참석하는 대규모 국제회의로 51개 ASEM 회원국, EU 집행위원회 및 ASEAN 사무국(총 53개 회원국으로 구성)이 참여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 등 다양한 주제를 폭넓게 논의하며, 2년에 한 번꼴로 개최됨.

128)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 운영지원 협약서」 제4조 : 위원회는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매년 정부예산 배

해당 센터의 예산 전액을 국제부담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2018년 5억 3,000만원을 지원한 이후 2023년까지 매년 6억 8,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아셈 노인인권정책센터 국제부담금 지원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예산액	530	686	686	686	686	686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아셈 노인인권정책센터는 2023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국제부담금으로 지급한 6억 8,600만원을 인건비로 2억 9,900만원, 운영비로 2억 2,100만원, 사업비로 1억 6,400만원으로 각각 집행하였음.

[2023년 아셈 노인인권정책센터 예산 편성 및 집행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A)	집행액(B)	불용액(A-B)	집행률(B/A)
인건비	296,557	299,384	173	99.94%
운영비	221,443	221,443	-	100.00%
사업비	165,000	164,997	3	99.99%
합계	686,000	685,824	176	99.97%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그런데, 2018년에 아셈 노인인권정책센터가 설립된 이후 기관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의 재원조달 현황을 살펴보면, 특정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한

정 계획에 따른 지원금을 센터에 지급한다. 다만, 정부예산의 변경, 사업 집행 저조,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 시기 및 규모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사례는 있으나, 기관운영에 사용되는 국제부담금 등은 다른 국가나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재원조달이 된 경우는 센터 설립 이후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나타남.

즉, 아셈 노인인권정책센터는 설립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원금에 운영 예산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다 안정적인 기관 운영 및 수업수행을 위해서는 재원조달 방안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음.[129)]

[2018년 이후 아셈 노인인권정책센터의 외부자금 조달 현황]

(단위: 백만원)

사 업	협력기관	협력기관 예산	센터 예산
제4차 아셈노인인권콘퍼런스 (2019년 10월 개최)	유럽연합(EU)	30	-
G20보건부장관회의 부대행사 (2019년 10월 개최)	일본 외무성, 후생성, 유엔인구기금 등	80	-
디지털사회와 노인인권 국제세미나 (2019년 11월 개최)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13	3
아셈인권세미나 (2021년 2월 개최)	아시아유럽재단 (ASEF)	285	70
제1차 아셈노인인권 현실과 대안 포럼 (2021년 10월 개최)	유럽연합(EU)	7	93
제20차 아셈인권세미나 후속사업: ASEF 노인인권 위탁교육 (2021년 10월~11월)	아시아유럽재단 (ASEF)	42	-
합계		457	166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129) 참고로, 국가인권위원회는 한아세안 협력기금 유치를 추진 중에 있음.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아셈 노인인권정책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부담금 이외에 아셈 회원국 또는 다른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을 통하여 재원조달 방안을 다각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6. 국내교류협력(1036-303)

가. 개 요

「국내교류협력」사업은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인권옹호활동을 지원하고, 민간단체화의 공동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며, 지방인권기구 및 인권단체와 공동협력을 추진하는 사업임.

2023년도 예산현액은 예산액과 동일한 2억 5,400만원이며, 이 중 2억 4,800만원을 집행하고, 600만원(2.4%)을 불용하였음.

[2023년도 국내교류협력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254	254	-	15 △15	-	254	248	-	6	217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① 인권단체 인권증진활동 지원사업에 1억 8,400만원, ② 지방인권기구 및 인권단체 공동협력에 6,4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음.

나. 시민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현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상호 협력 증진과 인권의 저변을 확대·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매년 인권 과제 공모를 통하여 신청을 받아 보조사업 단체를 선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민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내교류협력(1036-303) 사업에 시민사회단체 보조금 예산으로 1억 7,900만원을 편성하여 이 중 1억 7,400만원을 집행하고 5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3년 시민사회단체 보조금 예산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179	179	174	5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2023년에는 총 16개 단체에 대하여 보조사업을 실시하였는데, 각 단체별로 570만원에서 2,200만원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음.

[2023년 시민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세부내역]

(단위: 천원)

단체명	사업명	보조금	자부담	집행액	반납
건강세상네트워크	일하는 누구나 '아프면 쉴 권리' 찾기 캠페인	15,000	915	15,915	-
고성가족상담소	영화로 만나는 인권이야기	5,700	300	6,000	-
구리YMCA	청소년 기후인권 동아리 '안녕, 초록씨'	5,700	300	6,000	1,224

단체명	사업명	보조금	자부담	집행액	반납
군인권센터	군 인권침해 피해자와 유가족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마음돌봄' 사업	18,000	1,000	19,000	220
사단법인 제주여민회	2023 여성인권증진 연대활동 "페미니즘+@"	7,200	400	7,600	593
사단법인 강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나도 인권강사다'	11,800	630	12,430	-
사단법인 인권의학연구소	공익제보자 자기 돌봄 강화와 심리적 적응 지원을 위한 집단치유프로그램	8,800	500	9,300	10
사회적협동조합 기억과평화	갈등을 넘어 화해를 위한 한일 평화인권문화제: 100년을 향한 한걸음	22,000	4,800	26,800	-
연분홍치마	평등의 감각 연결하기 <당신과 나를 잇는 법>	11,500	720	12,220	-
원주기독교청년회	우리 모두 평화롭게 공존하기 제6회 원주인권박람회	6,300	400	6,700	1
이주와 인권연구소	기후정의를 위한 농·어업 이주노동자 인권선언	6,200	350	6,550	-
인권운동연대	시민인권활동가 역량 강화를 통한 인권정책평가사업	14,000	800	14,800	100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제주지역 중증 발달장애인 권리향상 프로젝트 'People first'	8,800	500	9,300	-
청년유니온	지역 청년 고용복지서비스 정책 사각지대 모니터링 및 교육사업	11,000	700	11,700	2,176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의 삶으로 새롭게 쓰는 성적 권리, 적극적 합의	10,500	580	11,080	-
환경정의	나는 기후위기 시대 노동자입니다 5인의 노동자와 함께 하는 폭염 동행기	16,500	870	17,370	7
계(16개 사업)		179,000	13,765	188,430	4,335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의 시민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문제가 있음.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8호 및 제10호[130]에 근거하여 시민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2019년에 기획재정부로부터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131] 시 해당 보조사업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이므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후, 국회 등으로부터 해당 보조사업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130)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3.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
5.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인권침해의 유형, 판단 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7.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8.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9.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
10.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31) <2019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부처가 제시한 자료를 기초로 할 때, 법률 또는 시행령에서 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는 없으며 국가인권위원회 훈령에서 해당 사업의 시행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즉 본 사업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없음 - 부처가 제시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8호 및 제10호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임무 중 하나에 해당하며 그것이 곧 해당 임무를 보조사업으로 시행해야 하거나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시민사회단체 보조금 법적 근거 미비에 대한 국회 지적]

구 분	시 기	주요내용
2021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국회운영위원회)	2020. 11.	국가인권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 11.	국가인권위원회의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2021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결산 검토보고 (국회운영위원회)	2022. 8.	국가인권위원회의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2022년도 국정감사 (국회운영위원회)	2022. 11.	시민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지원대상을 다양화할 필요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 11.	인권단체 인권증진 활동 지원 사업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적극적인 보완노력이 요구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의 지적이 있은 후 5년이 지난 현재까지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조속한 시일 내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132]

참고로, 제21대국회에서 양경숙의원 대표발의로 민간보조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2023. 1. 6.)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으며,[133] 국가인권위원회는 2024년 2건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134]하고 이 중 1건을 제22대국회에 제출하면서도 민간보조사업의

132) 국가인권위원회 훈령인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민간보조사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규칙에 해당하여 법적 근거로 볼 수 없음.

133) 2024. 8. 13. 이재강의원 대표발의로 민간보조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음.

134) 2024. 5. 21. 및 5. 27. 개정법률안을 각각 입법예고하였는데, 1건은 전문위원 채용 근거, 진정사건 처리결과 서면 송달 원칙 등에 관한 내용이며, 1건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 구축·운영, 전자적 송달 등에 관한 내용임. 이 중 후자의 내용을 담은 개정법률안은 2024. 7. 12.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하였음.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은 개정법률안에 포함하지 않았음.

따라서, 향후 국가인권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의 법적 근거가 조속히 마련되어, 해당 사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7.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노력 필요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에 따라 인권침해 행위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업무를 수행하는데, 같은 법 제42조[135]에 따라 당사자의 신청이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으로 조정위원회[136]에 회부하여 조정하게 할 수 있음.

이러한 조정제도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자발적인 해결에 도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로서, 분쟁 당사자 간에 조정이 성립되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3조[137]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진정인의 권리구체 측면에서 신속하고 실효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5년간 진정사건의 조정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조정접수 건수는 2019년 9건에서 2023년 36건으로 다소 증가하고 조정접수율은 2019년 0.09%에서 2023년 0.34%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극히 저조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3년간은 접수된 조정이 모두 각하[138]되어 실질적으로 조정이

---

135)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조정위원회의 조정) ① 조정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신청이나 위원회의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에 대하여 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136) 조정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성·장애 등의 분야별로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 현재 차별조정위원회, 성차별조정위원회, 장애차별조정위원회, 인권침해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음.

137)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3조(조정위원회의 조정의 효력) 제42조제2항에 따른 조정과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138)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규칙」 제11조(조정신청 등의 각하) ① 조정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1.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 사실을 통지할 수 없는 경우
2. 당사자에 대하여 기일을 통지할 수 없는 경우
3.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하거나 신청인이 조정을 취하한 경우
4. 기타 유사한 사유로 조정을 계속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임. 더욱이, 접수된 조정이 모두 각하됨에 따라 같은 기간 조정위원회가 한차례도 개최되지 않았음.[139]

[최근 5년(2019년~2023년) 조정처리 현황]

(단위: 건, %)

연 도	진정 접수	조정 접수	조정 접수율	조 정 종 결			
				소 계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각 하
2019년	9,768	9	0.09	9	1	1	7
2020년	9,017	6	0.07	6	2	3	1
2021년	10,035	14	0.14	14	-	-	14
2022년	10,582	13	0.12	13	-	-	13
2023년	10,745	36	0.34	36	-	-	36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제공자료 재구성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정제도 활성화 대책[140]을 마련하여 2023년부터 조정전문관 1명을 인권상담조정센터에 배치하고 조정사건 업무 및 통계관리, 조정사건 안내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적은 인력과 안내·홍보만으로 조정제도를 실제적으로 활성화하기에는 미흡한 면이 있어 보임.

---

139) 최근 5년(2019년~2023년) 조정위원회 개최 현황

(단위: 회)

구 분	합 계	차 별	성차별	장애차별	인권침해
2019	2	1	-	1	-
2020	5	2	2	-	1
2021	-	-	-	-	-
2022	-	-	-	-	-
2023	-	-	-	-	-
합계	7	3	2	1	1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140) 조정제도 활성화 대책에 따른 활성화 방안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에는 사건 처리의 신속성 확보, 비용 절감 도모, 구제효과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도입된 조정제도가 그 도입 취지에 부합하게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제도의 개선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전담 조정전문관 지명, 배치) 조사 경험이 많고 조정 역량이 있는 조정 전담 전문조사관을 고정 배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수행 여건 조성 - (조정제도 안내 강화) 조정 친화적 사건 유형에 대하여 상담 및 진정 접수단계에서 위원회 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 - (SNS 안내 통지 신설) 진정사건 접수 시 진정인에게 송부되는 접수통지문에 조정 안내 문구를 추가하여 통지 -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단독조정제 도입) 신속 조정사건, 경미한 사건, 원거리 지역 사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단독조정제도 도입(법 제41조제3항 개정, 행정법무담당관에 의뢰) ·(내부 조정위원 참여) 조정위원회의 신속한 개최와 안건검토의 효율화를 위해 전문성 있는 내부 위원 참여방안 마련(법 제41조제2항 개정 검토) - (신청서류 간소화) 구술로 조정신청을 받은 직원은 '조정신청서'를 대신 작성하여 서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간소화 등을 위해 조정신청 의사 등이 포함된 전화조사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 개선(규칙 제7조제4항) - (홍보 강화) 조정 제도 안내를 위한 포스터 제작, 위원회 게시판, 인권사무소, 관계 기관과 단체 등에 배포, 위원회 홈페이지(알림창) 및 지역 인권사무소 블로그 등 홍보 강화, 조사관을 위한 조정 제도 매뉴얼 마련, 배포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Ⅰ. 결산 개요

1. 세입 결산

2023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세입예산은 2억 9,700만원이며, 2억 8,4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2억 7,300만원 수납함.

수납내역은 청사 입점업체 국유재산 사용료 등 2,300만원, 명예퇴직수당 환수금, 관사보증금 회수 등 기타경상이전수입 2억 4,000만원, 국유재산 사용자 공공요금 등 기타잡수입 1,000만원임.

[2023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세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미수납액 (B-A)	수 납 률 (B/A)
합 계	297	284	273	10	96.1
토지·건물대여료	57	23	23	-	100
기타경상이전수입	220	250	240	10	96
기타잡수입	20	10	10	-	100

자료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2. 세출 결산

가. 총 괄

2023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985억 2,300만원으로, 이 중 909억 4,300만원을 집행(예산현액의 92.3%)하고 75억 8,000만원을 불용(예산현액의 7.7%)함.

[2023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세출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본예산	추경	예산결정후 증감(△)액			예 산 현 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 월 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이 용 증감(△)액	전 용 증감(△)액				
98,523	98,523	0	0	454 △454	98,523	90,943	0	7,580

자료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나. 성질별 결산현황

2023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세출예산 집행액 909억 4,300만원 중 인건비로 366억 2,300만원(총 집행액의 40.3%), 기본경비로 195억 3,800만원(총 집행액의 21.5%), 주요사업비로 347억 8,100만원(총 집행액의 38.2%)을 집행하였음.

[2023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세출 성질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단 위 사 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이용(증) 이용(감)	전용(증) 전용(감)	예 산 현 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합 계	98,523	0	0	0	383 △383	98,523	90,943	0	7,580
□ 인 건 비	42,428	0	0	0	△140	42,288	36,623	0	5,665
□ 기본경비	20,697	0	0	0	383 △243	20,837	19,538	0	1,299
□ 주요사업비	35,398	0	0	0	0	35,398	34,781	0	617
- 업무지원비	15,507	0	0	0	0	15,507	15,465	0	42
- 국정운영관리	5,973	0	0	0	0	5,973	5,706	0	267
- 시설관리 및 개선	5,171	0	0	0	0	5,171	5,014	0	157
-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	261	0	0	0	0	261	257	0	4
- 정보화 추진 (정보화)	7,553	0	0	0	0	7,553	7,468	0	85
-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	933	0	0	0	0	933	871	0	62

자료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다. 전용 내역

2023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세출예산 전용액은 3억 8,300만원임. 세부내역으로는 고용부담금 재원 마련을 위한 1억 4,000만원, 국외출장 수요증가에 따른 국외업무여비 재원 마련을 위한 2억원, 배상금 재원 마련을 위한 1,300만원 전용임.

[2023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결산 전용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전용액	주요 전용사유
기본경비	383	· 국외출장 수요증가에 따른 여비 마련(2억원) · 국내출장 수요증가에 따른 국내여비 마련(3,000만원) · 고용부담금 재원 마련(1억 4,000만원) · 배상금 재원 마련(1,300만원)

자료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라. 불용내역

2023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세출예산 중 불용액은 75억 8,000만원으로, 인건비 불용액 56억 6,500만원, 일용임금 집행 부진 등에 따른 기본경비 불용액 12억 9,900만원, 일반연구비 집행 부진 등에 따른 국정운영관리 불용액 2억 6,700만원 등임.

[2023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결산 불용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불용액	집 행 잔 액 내 역
합 계	7,580	-
- 인건비	5,665	· 공무원 인건비 집행 부진 등
- 기본경비	1,299	· 일용임금·직책수행경비 집행 부진 등
- 업무지원비	42	· 집행잔액 등
- 국정운영관리	267	· 일반연구비 집행 부진 등
- 시설관리 및 개선	157	·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등
-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4	· 집행잔액 등
- 정보화추진	85	·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등
-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	62	·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등

자료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마. 이월내역

해당사항 없음.

3. 재무 결산

가. 재정상태표

재정상태표는 재정상태표 작성기준일 현재의 자산과 부채의 명세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 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성됨(「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2023회계연도 말 기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자산은 전기 대비 944억 6,300만원 증가한 7,918억 9,100만원으로 토지 962억 7,700만원 등 일반유형자산 증가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부채는 전기 대비 2억 1,200만원 증가한 14억 5,600만원으로 퇴직급여충당부채 등의 증가에 따른 것임.

[2023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재정상태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A)	2022(B)	증 감	
			금액 (C=A-B)	비율 (C/B)
자산 합계	**791,891**	**697,428**	**94,463**	**13.5 %**
Ⅰ. 유동자산	846	304	542	178.3 %
Ⅱ. 일반유형자산	787,788	692,893	94,895	13.7 %
Ⅲ. 무형자산	2,761	3,545	△784	△22.1 %
Ⅳ. 기타비유동자산	496	686	△190	△27.7 %
부채 합계	**1,456**	**1,244**	**212**	**17.0 %**
Ⅰ. 유동부채	99	9	90	1,000.0 %
Ⅱ. 장기충당부채	1,357	1,235	122	9.9 %
순자산	**790,435**	**696,184**	**94,251**	**13.5 %**

자료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나. 재정운영표

재정운영표는 회계연도 동안 수행한 정책 또는 사업의 원가와 재정운영에 따른 원가의 회수명세 등을 포함한 재정운영결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프로그램순원가, 재정운영순원가, 재정운영결과로 구분하여 표시함(「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2023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프로그램순원가는 전기 대비 29억 8,500만원 증가한 985억 3,500만원이고, 재정운영결과는 전기 대비 35억원 증가한 983억 100만원임.

[2023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재정운영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A)	2022(B)	증 감	
			금액 (C=A-B)	비율(C/B)
Ⅰ.프로그램순원가	98,535	95,550	2,985	3.1 %
Ⅱ.관리운영비	-	-	-	-
Ⅲ.비배분비용	-	-	-	-
Ⅳ.비배분수익	235	750	(515)	(68.7 %)
Ⅴ.재정운영순원가(Ⅰ+Ⅱ+Ⅲ-Ⅳ)	98,301	94,801	3,500	3.7 %
Ⅵ.비교환수익 등	-	-	-	-
Ⅶ.재정운영결과(Ⅴ-Ⅵ)	**98,301**	**94,801**	**3,500**	**3.7 %**

자료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다. 순자산변동표

순자산변동표는 회계연도 동안 순자산의 변동명세를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기초순자산, 재정운영결과, 재원의 조달 및 이전, 조정항목, 기말순자산으로 구분함(「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

2023회계연도 말 기준 기말 순자산은 전기 대비 942억 5,100만원 증가한 7,904억 3,500만원임. 이는 재정운영결과로 983억 100만원 감소, 재원의 조달 및 이전으로 1,313억 2,800만원 증가, 조정항목에서 612억 2,300만원 증가 등에 의한 것임.

[2023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순자산변동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A)	2022(B)	증 감	
			금액 (C=A-B)	비율(C/B)
Ⅰ.기초순자산	696,184	514,086	182,098	35.4 %
Ⅱ.재정운영결과	98,301	94,801	3,500	3.7 %
Ⅲ.재원의 조달 및 이전	131,328	193,798	△62,470	△32.2 %
Ⅳ.조정항목	61,223	83,101	△21,878	△26.3 %
Ⅴ.기말순자산 (Ⅰ-Ⅱ+Ⅲ+Ⅳ)	790,435	696,184	94,251	13.5 %

자료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Ⅱ. 검토 의견

1. 인건비(1001-100)

가. 결산 현황

「인건비」는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직원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업임. 2023년 본예산 424억 2,800만원 중 타 세부사업으로 1억 4,000만원을 전용한 예산현액은 422억 8,800만원으로, 이 중 366억 2,300만원을 집행(예산현액 대비 86.6%)하고, 56억 6,500만원을 불용(예산현액 대비 13.4%)하였음.

[2023회계연도 인건비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42,428	42,428	-	△140	-	42,288	36,623	-	5,665	43,328

나. 인건비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인건비는 봉급,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정액수당 등의 보수(110-01)와 연가보상비(110-05)로 구성되는 바, 보수(110-01)의 불용액이 56억 5,700만원으로 인건비 불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인건비의 비목별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이·전용	예비비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보수(110-01)	42,108	△140	0	41,968	36,310	5,657
연가보상비(110-05)	320	0	0	320	313	7
합 계	42,428	△140	0	42,288	36,623	5,664

또한 최근 4년간 인건비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2020년 이후 집행률이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2년간은 85% 내외의 집행률을 기록하며 불용액이 각 65억(2022년) 및 56억(2023년)에 달하였음.

[최근 4년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인건비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A)	집행액(B)	불용액	집행률(B/A)
2020년도	42,066	39,604	39,464	140	99.7
2021년도	42,929	42,929	40,029	2,900	93.2
2022년도	43,328	42,068	35,515	6,553	84.4
2023년도	42,428	42,288	36,623	5,665	86.6

보수(110-01)는 법령상 조직의 직제[141]상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되는 예산인 바,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인건비 집행실적이 높지 아니한 이유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그 이전에 비하여 인력을 감축·운영함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2월 기준 정원 대비 약 25% 감축 운영(정원 490명 / 현원 368명)한 것으로 파악됨.

141) 「대통령비서실 직제」, 「국가안보실 직제」,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인력 현황]

(2023. 12월 기준, 단위: 명)

구 분		총 계	정무직	비서관	행정관	행정요원
대통령 비서실	정원	443	12	38	238	155
	현원	336	7	34	152	143
	과부족	-107	-5	-4	-86	-12
국가 안보실	정원	47	3	7	30	7
	현원	32	3	7	17	5
	과부족	-15	-	-	-13	-2
합 계	정원	490	15	45	268	162
	현원	368	10	41	169	148
	과부족	-122	-5	-4	-99	-14

자료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이러한 정원대비 부족한 인력 운영은 보수(110-01) 뿐만 아니라 「기본경비(1011-200)」에 편성된 특근매식비(210-05) 및 직책수행경비(250-02)에도 영향을 미치는 바, 상기 예산의 본예산 대비 집행률이 각 86.3%와 83.8%로 보수(110-01)와 연동되어 그 집행실적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2023회계연도 특근매식비 및 직책수행경비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A)	이·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	불용액
특근매식비 (210-05)	971	△133	-	838	838	86.3	-
직책수행경비 (250-02)	2,482	-	-	2,482	2,080	83.8	401

이와 같이 인건비 관련 예산에서 상당규모의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한정된 국가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적재적소 사용을 저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우리 국회는 지난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인건비 예산 편성 시 인원관리에 유의하고, 인건비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의 시정요구(제도개선)를 의결한 바 있음.[142]

따라서, 향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직제상 정원을 실제 인력 감축·운영 기조에 부합하도록 일부 조정하거나 차년도 예산안 편성 시 일정부분 감액하여 편성하는 등 인건비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각별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143]

---

142)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 12.)
【붙임2 2022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안)】 p.4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인건비 예산 편성 시 인원관리에 유의하고, 인건비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 (제도개선)

143)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그동안 감축 기조로 운영하여 인건비 예산을 절감하였으나, 2024년 초 정책실장실, 과학기술수석실 및 국가안보실 3차장실을 신설하였고, 같은 해 5월에는 민정수석실을, 6월에는 저출생대응수석실을 신설하는 등 현안 문제에 대한 적극 대응을 통해 2024년 인건비 집행률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2. 기본경비(1011-200)

가. 결산 현황

「기본경비」는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기관 운용에 필요한 기본운영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 편성된 본예산은 206억 9,700만원이였으나 수 차례 전용 및 조정된 예산현액은 208억 3,700만원으로, 이 중 195억 3,800만원을 집행(예산현액 대비 93.8%)하고 12억 9,900만원을 불용(예산현액 대비 6.2%)하였음.

[2023회계연도 기본경비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20,697	20,697	-	1,036 △896	-	20,837	19,538	-	1,299	21,557

나. 일용임금의 연례적 집행부진 개선 필요

「기본경비」 내 일용임금(110-04)의 경우 최근 4개년 간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2021년도를 제외하고는 연례적으로 집행률이 70%에 미달한 것으로 파악되며, 특히 2023년의 경우 예산현액 3억 3,100만원 중 7,800만원을 집행(예산현액 대비 23.6%)하고 2억 5,300만원을 불용(예산현액 대비 76.4%)하여 집행률이 23.6%에 불과하였음.

[최근 4년간 일용임금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률(B/A)	불용액
2020년도	296	296	129	43.6	167
2021년도	300	300	262	87.3	39
2022년도	315	315	219	69.5	96
2023년도	331	331	78	23.6	253

위와 같이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하여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일용임금 집행 대상에 해당하는 인력소요가 한시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집행이 다소 저조하였고, 2024년부터 각종 행사지원, 기록물 정리, 통·번역 등의 인력 소요가 발생함에 따라 집행률이 높아질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다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6월 말 기준 일용임금 집행률은 9.7%(3억 4,100만원 중 3,300만원 집행)에 불과하여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이 설명한 것처럼 집행률 호전이 예상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향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예산안 편성 시 일용임금(110-04)의 적정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예산을 조정함으로써 집행률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다. 과다하거나 비체계적인 전용 및 세목조정 지양 필요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2023회계연도 기본경비를 집행하면서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국외업무여비(220-02) 등의 부족재원 마련을 위하여 전용 및 세목조정을 통해 11억 5,800만원을 증액하고, 10억 1,800만원을 감액하였는 바, 세부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음.

[2023회계연도 기본경비 전용 및 세목조정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에서		금액	~으로		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목-세목		세부사업	목-세목	
전용	기본경비 (1011-200)	무형자산 (440-00)	13	기본경비 (1011-200)	배상금 (310-02)	배상금 부족
		임차료 (210-07)	200	기본경비 (1011-200)	국외업무여비 (220-02)	국외업무여비 부족
		특근매식비 (210-05)	30	기본경비 (1011-200)	국내여비 (220-01)	국내여비 부족
	인건비 (1001-100)	보수 (110-01)	140	기본경비 (1011-200)	고용부담금 (320-09)	계약직 퇴직금 및 4대 보험 부족
세목 조정	기본경비 (1011-200)	기타운영비 (210-16)	30	기본경비 (1011-200)	복리후생비 (210-12)	복리후생비 부족
		국내여비 (220-01)	235		국외업무여비 (220-02)	국외업무여비 부족
		국외업무여비 (220-02)	10		국내여비 (220-01)	불용 최소화 및 사업량 조정
		특근매식비 (210-05)	20		공공요금 (210-02)	
		임차료 (210-07)	30			
		복리후생비 (210-12)	30			
		관리용역비 (210-15)	140			
		공공요금 (210-02)	73		일반수용비 (210-01)	
		특근매식비 (210-05)	68			
		복리후생비 (210-12)	29			
		임차료 (210-07)	95			
		특근매식비 (210-05)	15		재료비 (210-11)	
합 계			1,158			

위와 같이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이 「기본경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실시한 전용 및 세목조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검토가 필요함.

첫째, 국외업무여비(220-02)의 경우 당초 항공임 1억 9,600만원 및 숙박료 8,000만원 등 2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용 및 세목조정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본예산 대비 상당한 규모의 초과집행이 이루어졌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3년 10월 임차료(210-07)에서 2억원을 전용하고, 5월·8월 및 12월 세 차례에 거쳐 국내여비(220-01)에서 1억 5,000만원, 8,000만원 및 540만원 등 총 2억 3,540만원의 세목을 조정한 후 12월에 국외업무여비(220-02) 중 954만원을 다시 국내여비(220-01)로 세목조정을 하였음.

위 전용 및 세목조정 결과, 국외업무여비(220-02)의 당초 편성된 본예산인 2억 7,600만원을 상당히 초과하는 7억 200만원의 집행(집행률 254%)이 이루어졌음.

이에 대하여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정상회담 후속조치 등 국외출장 소요 증가에 따라 불가피하게 전용 및 세목조정을 실시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최근 4년간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국외업무 소

요 추계의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2023년도 초과집행된 예산의 규모가 과도한 측면이 있음.

[최근 4년간 국외업무여비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A)	이·전용등	예산현액	집행액(B)	불용액	집행률(B/A)
2020년도	300	△50	250	213	37	71
2021년도	270	150	420	405	15	150
2022년도	253	△13	240	214	26	84.6
2023년도	276	426	702	702	-	254.3

자료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둘째, 공공요금 및 제세(210-02)의 경우 당초 본예산에 20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목조정을 실시하였으나 다소 체계적이지 못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3년 11월 '불용 최소화 및 사업량 조정'을 이유로 관리용역비(210-15) 1억 4,000만원, 임차료(210-07) 3,000만원 및 복리후생비(210-12) 3,000만원 등 총 2억 2,000만원을 공공요금 및 제세(210-02)로 세목조정하였으나,

이 중 7,310만원을 세목조정 다음 달인 12월에 다시 일반수용비(210-01)로 세목을 조정하고, 최종적으로 1억 3,400만원을 불용하였음.

세목조정은 기본경비와 같은 일반적인 경상비의 탄력적인 집행을 위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나, 세목조정된 예산을 다시 다른 예산으로 세목조정하거나 불용하는 경우는 드물어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예산 집행이 면밀하고 체계적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향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차년도 예산안 편성 시보다 면밀한 계획과 추계를 통해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체계적인 집행계획 수립·시행을 통해 불필요한 전용 및 세목조정을 최소화하는 등 예측가능한 예산관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임.

3. 국정운영관리(1131-301) 및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1133-600)

가. 결산 현황

「국정운영관리」는 간담회, 여론조사 및 정책연구용역 등을 수행하는 사업임. 2023년 본예산으로 59억 7,3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단위사업 내 세목조정을 거친 예산현액 59억 7,300만원 중 57억 600만원을 집행(예산현액 대비 95.5%)하고 2억 6,700만원을 불용(예산현액 대비 4.5%)하였음.

[2023회계연도 국정운영관리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5,973	5,973	-	161 △161	-	5,973	5,706	-	267	6,472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는 국가위기 상황정보망 유지, 위기상황 대응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2023년 예산현액 9억 3,300만원 중 8억 7,100만원을 집행(예산현액 대비 93.4%)하고 6,200만원을 불용(예산현액 대비 6.6%)하였음.

[2023회계연도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933	933	-	-	-	933	871	-	62	751

나. 비체계적인 세목조정 지양 필요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2023회계연도 「국정운영관리」 및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일부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세목조정을 실시하였으나, 다음과 같이 반복된 세목조정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됨.

첫째, 「국정운영관리」의 경우 지난 2023년 7월 '일반수용비 부족'을 이유로 일반용역비(210-14)에서 1억 6,120만원을 일반수용비(210-01)로 세목조정하였으나, 같은 달에 동일한 금액을 다시 일반용역비(210-14)로 세목을 조정하였음.

이후 9월에 다시 '불용 최소화 및 사업량 조정'을 이유로 지난 7월에 이루어진 세목조정과 동일한 세목과 규모인 일반용역비(210-14) 1억 6,120만원을 일반수용비(210-01)로 다시 세목조정 하였음.

둘째,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의 경우 지난 2023년 12월 '불용 최소화 및 사업량 조정'을 이유로 관리용역비에서(210-15) 3,000만원을 일반수용비(210-01)로 세목조정하였으나, 같은 달 조정받은 일반수용비(210-01) 3,000만원을 다시 관리용역비(210-15)로 세목조정 하였음.

세목조정은 집행지침 등의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고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긴 하나, 이는 국회가 심의·확정한 예산의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므로 가급적 최소화로 실시될 필요가 있음.

다만, 상기 두 사안과 같이 동일한 세목 간 동일한 금액의 세목조정이 수 차례 이루어지거나, 세목조정된 예산이 바로 다시 원래 세목으로 환원되었다는 점은 세목조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향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세목조정 뿐만 아니라 이·전용 등 불가피하게 국회가 심의·확정한 예산을 변경하여 집행하는 경우에는 체계적인 집행계획 수립을 통해 불필요한 세목조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임.

다. 정책연구용역 관련 적극적 공개 및 국회 자료제출 검토 필요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2023회계연도 정책연구용역 수행을 위하여 「국정운영관리」 및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 등 2개 세부사업에 편성된 정책연구비(260-02) 예산현액 5억 4,000만원 중 5억 600만원을 집행(예산현액 대비 93.7%)하고, 3,400만원을 불용(예산현액 대비 6.3%)하였음.

[정책연구비(260-02)의 세부사업별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국정운영관리	500	-	-	-	500	466	-	34	500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	40	-	-	-	40	40	-	-	70
합 계	**540**	**-**	**-**	**-**	**540**	**506**	**-**	**34**	**570**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국정운영관리」에서 12건,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에서 3건 등 총 15건의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였는바, 세부 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음.

[2023회계연도 정책연구용역 수행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과제명	집행액	계약기간	PRISM	
				등록여부	공개여부
국정운영 관리 (1131-301)	민생경제 회복(활성화)을 위한 국정과제 및 국민제안 실현 핵심방안 연구	48	2023. 9월 ~ 12월	등록	공개
	글A	18	2023년 중	등록	비공개
	유B	20	2023년 중	등록	비공개

	4C	21	2023년 중	등록	비공개
	수D	22	2023년 중	등록	비공개
	국E	44	2023년 중	미등록	비공개
	국F	44	2023년 중	미등록	비공개
	국G	56	2023년 중	미등록	비공개
	생H	20	2023년 중	미등록	비공개
	국I	18	2023년 중	미등록	비공개
	대J	43	2023년 중	등록	비공개
	국K	112	2023년 중	미등록	비공개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 (1133-600)	국가안보 우주전략 필요성 및 수립방향 연구	10	2023. 7월 ~ 9월	등록	공개
	새L	15	2023년 중	등록	비공개
	역M	15	2023년 중	미등록	비공개
합 계	**13건**	**491**		**8건**	**2건**

자료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정책연구용역 수행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임.

첫째,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이 수행한 정책연구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행정업무규정”)」 제53조[144]에 근거하여 구축·운영하고 있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보다 적극적으로 등록·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44)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3조(정책연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전자적으로 정책연구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행정업무규정」 제54조[145]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 정책연구에 관련 사항을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앞의 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2023년 수행한 정책연구용역 총 15건 중 8건을 등록(53.3%)하고, 이 중 2건을 공개(13.3%)한 것으로 파악됨.[146]

PRISM을 통한 정책연구용역의 등록·공개 취지는 ① 연구정보를 빠르게 검색하고 열람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② 각 기관에서 시행한 양질의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관련 분야의 연구품질을 높이며, ③ 기관별 발생할 수 있는 중복연구를 방지하여 예산낭비를 줄이는 등 정책연구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145)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정책연구의 공개)**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의 계약 체결 내용
2.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
3.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제1항제2호에 따른 정책연구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46) 정책연구용역 중 PRISM에 등록하였으나 비공개한 6건은 국민이나 타 기관이 해당 연구용역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미등록과 유사함.

따라서,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향후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타 부처의 중복연구 방지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 활용 등을 위하여 정부가 운영하는 PRISM에 보다 적극적으로 등록·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둘째, 국회의 효율적인 결산 심사를 위해서는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정책연구용역 수행과 관련한 자료의 국회 공개범위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음.

앞의 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2023회계연도에 수행한 정책연구용역 중 PRISM에 공개된 2건에 한하여 과제명과 계약기간을 제출하였고, 기타 13건에 대하여는 집행액과 PRISM 공개 여부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하였음.

이에 대하여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기관의 특수성 및 안보상의 사유로 인하여 대통령 경호, 공정한 업무수행 및 대통령실 보안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설명을 감안하더라도,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원문이 아닌 과제명, 집행액, 계약기간 및 계약방식의 경우에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극히 민감한 사항 외에는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이 경우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이 수행한 정책연구용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관련 법령을 준수하였는지, 타 부처가 수행하고 있는 연구과제들과 중복되어 비효율적 집행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최소한의 점검[147]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임.

따라서,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향후 국회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부의 예산 집행에 대한 사후적 심의를 통해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국회의 결산 심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협조·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148]

147) 예컨대,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등 보안상 필요가 있거나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과제명을 통해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1차적으로 점검할 수 있고, ② 「행정업무규정」 제54조는 정책연구용역 관련 사항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PRISM 공개의무가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과제명을 통해 위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1차적으로 점검할 수 있음.

148) 외부 유출의 우려로 인하여 공개가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열람 등의 방식을 모색할수 있다고 보임.

4. 시설관리 및 개선(1131-303)

가. 결산 현황

「시설관리 및 개선」은 청사 경내 건물 및 각종 시설물 등 유지관리를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 예산현액 51억 7,100만원 중 50억 1,400만원을 집행(예산현액 대비 97%)하고 1억 5,700만원이 불용(예산현액 대비 3%)되었음.

[2023회계연도 시설관리 및 개선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5,171	5,171	-	-	-	5,171	5,014	-	157	6,502

나. 시설관리 및 개선 소요 관련 적정예산 사전반영 필요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당초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던 실시설계비(420-02)에 대하여, 동 사업 내 공사비(420-3)에서 1억 1,000만원을 조정받은 예산현액 1억 5,000만원 중 1억 3,300만원을 집행하고 1,700만원을 불용하여 본예산 대비 333%의 집행률을 기록하였음.

[시설관리 및 개선 내 실시설계비 및 공사비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이·전용	예비비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실시설계비(420-02)	40	110	-	150	133	17
공사비(420-03)	2,890	△110	-	2,780	2,686	94

위와 같이 당초 편성된 실시설계비(420-02) 예산을 상당히 초과한 집행이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대통령비서실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국빈 행사가 수시로 진행되어 국격에 맞는 품격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건축된 지 20년 이상 경과 된 대통령실, 공관 등의 시설, 설비 등에 대한 공사 수요가 추가 발생하여 세목을 조정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다만, 청사의 노후화에 따른 공사수요가 있다 하더라도 국회의 예산안 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업을 세목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그 결과 당초 국회가 편성한 예산 규모를 상당히 초과하는 집행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보임.

따라서,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청사 등 노후화 시설 및 설비에 대한 개보수 공사수요를 사전에 면밀히 파악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연도별 계획에 따라 본예산에 해당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대통령경호처

Ⅰ. 결산 개요

1. 세입 결산

2023회계연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세입예산은 6,700만원이며, 5억 1,4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함.

수납내역은 종로구 일대 유휴토지 임대료 3억 9,600만원, 통신기지국 임대료 4,900만원, 경호장비 등의 납품기한 미준수에 따른 위약금 1,300만원, 가족수당 환수금 등 기타경상이전수입 100만원, 공개경쟁채용 응시 수수료 등 면허료 및 수수료 600만원, 폐탄두·폐차 매각대 및 교육생 숙박비 등 기타잡수입 4,900만원임.

[2023회계연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세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미수납액 (B-A)	수 납 률 (B/A)
합 계	67	514	514	0	100
토지대여료	0	396	396	0	100
건물대여료	47	49	49	0	100
위약금	0	13	13	0	100
기타경상이전수입	0	1	1	0	100
면허료 및 수수료	7	6	6	0	100
기타잡수입	13	49	49	0	100

자료 : 대통령경호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2. 세출 결산

가. 총 괄

2023회계연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일반회계 예산액은 1,163억 2,200만원이나, 전년도 이월액 1억 4,900만원 및 예비비 136억 7,1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301억 4,200만원으로 이 중 1,198억 700만원(예산현액의 92.1%)을 집행하고 56억 7,000만원(예산현액의 4.4%)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6억 6,500만원(예산현액의 3.6%)을 불용하였음.

[2023회계연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세출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본예산	추경	예산결정 후 증감(△)액				예 산 현 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 월 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이용 증감액	전용 증감액				
116,322	116,322	149	13,671	0	514 △514	130,142	119,807	5,670	4,665

자료 : 대통령경호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나. 성질별 예산집행 현황

2023회계연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세출예산 집행액 1,038억 2,100만원 중 인건비로 525억 1,800만원(총 집행액의 50.6%), 기본경비 115억 6,500만원(총 집행액의 11.1%), 주요사업비로 397억 3,800만원(총 집행액의 38.3%)을 집행하였음.

[2023회계연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세출 성질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이용(증) 이용(감)	전용(증) 전용(감)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합 계	116,322	149	13,671	0	514 △514	130,142	119,807	5,670	4,665
□ 인건비	58,242	0	0	0	0	58,242	57,842	0	400
□ 기본경비	16,166	0	0	0	12 △12	16,166	15,254	0	912
-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6,319	0	0	0	4 △4	6,319	5,677	0	642
-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9,847	0	0	0	8 △8	9,847	9,577	0	270
□ 주요사업비	41,914	149	13,671	0	502 △502	55,734	46,711	5,670	3,353
- 요인 및 국빈 경호활동	16,911	0	1,100	0	0	18,011	17,678	0	333
- 경호장비시설개선	17,005	149	7,566	0	105 △105	24,720	17,172	5,502	2,046
- 경호업무정보화	4,432	0	0	0	250 △250	4,432	4,177	0	255
- 경호안전교육원 운영	2,566	0	0	0	147 △147	2,566	2,177	168	221
-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0	0	5,005	0	0	5,005	4,507	0	498
- 경호경비과학화(R&D)	1,000	0	0	0	0	1,000	1,000	0	0

자료 : 대통령경호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다. 전용 내역

2023회계연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세출예산 전용액은 5억 1,400만원임. 세부내역으로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따른 일반연구비 부족재원 마련을 위해 5억 200만원, 국외업무여비 부족재원 마련을 위해 800만원 및 직책수행경비 부족재원 마련을 위해 400만원을 전용하였음.

[2023회계연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결산 전용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용액	주요 전용사유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4	·직책수행경비 재원 마련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8	·국외업무여비 재원 마련
경호장비시설개선	105	·소프트웨어 개발에 따른 일반연구비 재원 마련
경호업무정보화	250	·소프트웨어 개발에 따른 일반연구비 재원 마련
경호안전교육원 운영	147	·소프트웨어 개발에 따른 일반연구비 재원 마련
합 계	514	

자료 : 대통령경호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라. 불용 내역

2023회계연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세출예산 중 불용액은 46억 6,500만원으로, 인건비 4억원, 기본경비 9억 1,200만원, 주요사업비 33억 5,300만원이 불용됨.

[2023회계연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결산 불용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불용액	집 행 잔 액 내 역
합 계	4,665	-
▢ 인 건 비	400	· 보수 등 집행잔액
▢ 기본경비	912	
-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642	· 상용임금 등 집행잔액
-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270	·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집행잔액
▢ 주요사업비	3,353	
- 요인 및 국빈경호활동	333	· 국내여비 등 집행잔액
- 경호장비시설개선	2,046	· 공사비 등 집행잔액
- 경호업무전산화	255	· 일반용역비 등 집행잔액
- 경호안전교육원 운영	221	· 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등 집행잔액
-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498	· 임차료 등 집행잔액

자료 : 대통령경호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마. 이월 내역

2023회계연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세출예산 중 다음연도로 이월된 금액은 56억 7,000만원으로, 공사일정과 납기가 지연됨에 따른 것임.

[2023회계연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결산 다음연도 이월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이 월 액	이 월 사 유
경호장비시설개선	5,502	· 공사일정 지연(4,542) 및 납품지연(959)
경호안전교육원 운영	168	· 공사일정 지연
합 계	5,670	

자료 : 대통령경호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3. 재무 결산

가. 재정상태표

재정상태표는 재정상태표 작성기준일 현재의 자산과 부채의 명세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 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성됨(「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2023회계연도 말 기준 대통령경호처 자산은 전기 대비 362억 600만원 증가한 7,701억 7,300만원으로 토지 222억 3,500만원 등 일반유형자산 증가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부채는 전기 대비 7억 4,600만원 순증하였고, 이는 교육원운동자 공사 등 관련 미지급금 발생에 따른 것임.

[2023회계연도 대통령경호처 재정상태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A)	2021(B)	증 감	
			금액 (C=A-B)	비율 (C/B)
자산 합계	770,173	733,967	36,206	4.9 %
Ⅰ. 유동자산	126	25	101	404.0 %
Ⅱ. 투자자산	361	433	△72	△16.6 %
Ⅲ. 일반유형자산	766,583	729,763	36,820	5.0 %
Ⅳ. 무형자산	3,061	3,703	△642	△17.3 %
Ⅴ. 기타비유동자산	43	43	-	-
부채 합계	746	-	746	순증
Ⅰ. 유동부채	746	-	746	순증
Ⅱ. 장기충당부채	-	-	-	-
순자산	769,427	733,967	35,460	4.8 %

자료 : 대통령경호처

나. 재정운영표

재정운영표는 회계연도 동안 수행한 정책 또는 사업의 원가와 재정운영에 따른 원가의 회수명세 등을 포함한 재정운영결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프로그램순원가, 재정운영순원가, 재정운영결과로 구분하여 표시함(「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2023회계연도 대통령경호처의 프로그램순원가는 전기 대비 174억 6,800만원 증가한 1,221억 3,600만원이고, 재정운영결과는 전기 대비 176억 5,400만원 증가한 1,199억원임.

[2023회계연도 대통령경호처 재정운영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A)	2022(B)	증 감	
			금액 (C=A-B)	비율(C/B)
Ⅰ.프로그램순원가	122,136	104,668	17,468	17
Ⅱ.관리운영비	-	-	-	-
Ⅲ.비배분비용	-	-	-	-
Ⅳ.비배분수익	1,236	2,421	△1,185	△49
Ⅴ.재정운영순원가(Ⅰ+Ⅱ+Ⅲ-Ⅳ)	119,900	102,246	17,654	17
Ⅵ.비교환수익 등	-	-	-	-
Ⅶ.재정운영결과(Ⅴ-Ⅵ)	119,900	102,246	17,654	17

자료 : 대통령경호처

다. 순자산변동표

순자산변동표는 회계연도 동안 순자산의 변동명세를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기초순자산, 재정운영결과, 재원의 조달 및 이전, 조정항목, 기말순자산으로 구분함(「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

2023회계연도 말 기준 기말 순자산은 전기 대비 354억 5,900만원 증가한 7,694억 2,600만원임. 이는 재정운영결과로 1,199억원 감소, 재원의 조달 및 이전으로 1,433억원 증가, 조정항목에서 120억 5,900만원 증가 등에 의한 것임.

[2023회계연도 대통령경호처 순자산변동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A)	2022(B)	증 감	
			금액 (C=A-B)	비율(C/B)
Ⅰ.기초순자산	733,967	571,721	162,246	28
Ⅱ.재정운영결과	119,900	102,246	17,654	17
Ⅲ.재원의조달및이전	143,300	265,111	△121,811	△46
Ⅳ.조정항목	12,059	△61,937	△73,996	△119
Ⅴ.기말순자산 (Ⅰ-Ⅱ+Ⅲ+Ⅳ)	769,426	733,967	35,459	5

자료 : 대통령경호처

Ⅱ. 검토의견

1. 세입 : 위약금(57-572)

가. 결산 현황

「위약금」은 지체상금 및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 등 법령과 계약에 의거하여 국가가 수납하는 항목으로, 2023년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지는 아니하였으나, 1,3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를 전부 수납하였음.

[2023회계연도 위약금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2023년								2024년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0	0	0	0	13	13	0	0	0

나. 연례적 경호장비 납품 지연문제 개선 필요

납품기한 미준수 등으로 인한 지체상금은 예산안 편성 당시에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대통령경호처는 세입예산으로 위약금을 편성하지 않고 있으나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9년 이후 매년 위약금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고 있음.

[최근 5년간 대통령경호처 위약금 수납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2019년도	0	0	13	13	0	0
2020년도	0	0	10	10	0	0
2021년도	0	0	20	20	0	0
2022년도	0	0	6	6	0	0
2023년도	0	0	13	13	0	0

자료 : 대통령경호처

이에 대하여 대통령경호처는 총기 등 장비가 외국에서 생산하거나 특수물품인 관계로 통관에 시일이 지체되는 측면이 있고, 특히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코로나로 인한 생산공상 셧다운 및 수출입 통제, 2022년부터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총기의 주요 생산국인 미국과 유럽의 총기생산 및 통관절차가 강화되어 납품 지연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대통령경호처의 설명과 같이 납품지연은 대통령경호처가 예측할 수 없는 사정변경 또는 계약상대방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긴 하나, 경호장비에 대한 납품 지연은 차질 없는 경호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대통령경호처는 향후 경호장비를 구매함에 있어 생산·조달 업체의 납품능력에 대한 면밀한 사전조사 및 계약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납품 지연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임.

2. 예비비(1) :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

가. 결산 현황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는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국내외 정상 등에 대한 경호를 위한 사업으로, 2023년 예비비 50억 500만원이 배정되어 45억 700만원이 집행(예산현액 대비 90%)되고 4억 9,800만원(예산현액 대비 10%)이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0	0	0	0	5,005	5,005	4,507	0	498	0

예비비의 구체적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① 운영비 28억 2,300만원 중 24억 9,500만원을 집행, 3억 2,800만원을 불용하였고, ② 국내여비 1억 500만원 및 ③ 특수활동비 5억원은 전액 집행하였음.

또한, ④ 업무추진비 2억원 중 1억 9,900만원을 집행하였고, ⑤ 건설비는 총 3억 6,500만원 중 2억 3,700만원을 집행, 1억 2,800만원을 불용하였으며, ⑥ 유형자산 10억 1,300만원 중 9억 7,100만원을 집행하고 4,200만원을 불용하였는 바, 세부 결산 내역은 다음의 표와 같음.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예비비) 비목별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배정 사유
	예산액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① 운영비(210)	0	2,823	2,823	2,495	0	328	
- 일반수용비 (210-01)	0	584	584	558	0	26	경호작전 소모품
-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0	200	200	187	0	13	경호작전상황실 통신회선 비용
- 피복비(210-03)	0	104	104	104	0	0	경호근무자 피복
- 임차료(210-07)	0	1,416	1,416	1,280	0	137	경호시설장비 임차
- 유류비(210-08)	0	52	52	25	0	27	경호차량 유류비
- 시설장비유지비 (210-09)	0	447	447	341	0	105	경호시설장비 유지보수
- 일반용역비 (210-14)	0	20	20	0	0	20	경호업무 영상자료
② 여비(220)	0	105	105	105	0	0	
- 국내여비(220-01)	0	105	105	105	0	0	경호작전 출장여비
③ 특수활동비(230)	0	500	500	500	0	0	
- 특수활동비 (230-00)	0	500	500	500	0	0	경호활동비
④ 업무추진비(240)	0	200	200	199	0	1	
- 관서업무추진비 (240-02)	0	200	200	199	0	1	경호업무협의
⑤ 건설비(420)	0	364	364	237	0	128	
- 실시설계비 (420-02)	0	17	17	0	0	17	경호작전 상황실 공사
- 공사비(420-03)	0	345	345	234	0	111	
- 시설부대비 (420-05)	0	2	2	2	0	0	
⑥ 유형자산(430)	0	1,013	1,013	971	0	42	
- 자산취득비 (430-01)	0	1,013	1,013	971	0	42	경호장비 도입
합 계	**0**	**5,005**	**5,005**	**4,507**	**0**	**498**	

자료 : 대통령경호처

나. 국회의 예산안 심의를 생략한 사업추진 지양 필요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 사업은 2023년 5월 29일 및 30일 양일간 진행된 제1차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이하 “정상회의”)에 따른 경호업무 수행을 위해 예산을 집행한 것이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첫째, 대통령경호처의 정상회의 경호업무를 위한 예비비 배정은 「국가재정법」 및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른 예비비 요건을 충족해 이루어져야 하나 동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

즉, 「국가재정법」 제22조[149] 및 「2023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150]」에 따르면 예비비는 당초 본예산 편성시 예측이 불가능하고(예측불가능성), 다음 연도 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시급하게 지출할 필요가 있어야 하며(시급성), 확정된 기존 예산으로 충당할 수 없는(보충성) 등 불가피한 초과 지출에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경호처의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 사업의

149) 「국가재정법」 제22조(예비비) ①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50) 「2023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기획재정부, p.142
【예비비 예산】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 요구에 앞서 당초 본예산 편성시 예측할 수 없었는지, 연도 중에 시급하게 지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기정예산으로 충당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경우 ① 정상회의 개최안이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 2022년 9월경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는 점, ② 정상회의 주관 부처인 외교부가 관련 예산 120억원을 국회의 예산 심의를 거쳐 2023년 본예산에 편성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대통령경호처 역시 외교부와 마찬가지로 국회의 예산안 심사 단계에서 증액 의견제시를 통해 2023년도 본예산에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예비비 배정 요건 중 예측불가능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2023회계연도 외교부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준비기획단 운영	1,274	1,274	0	330	0	1,604	1,016	0	588
의제발굴 및 업무협의	350	350	0	0	0	350	221	0	129
정상회의 개최	10,376	10,376	0	△330	0	10,046	7,530	30	2,486
합 계	12,000	12,000	0	0	0	12,000	8,767	30	3,203

이에 대하여 대통령경호처는 외교부로부터 정상회의 계획을 공유받지 못하여 당초 정부안에 편성하지 못하였고, 이후 2022년 9월 경 국무회의에서 정상회의 개최안이 심의·의결되긴 하였으나 당시 전반적인 회의 일정 및 경호 규모가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에 예산을 요청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해당 예산을 예비비로 요구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둘째, 예비비를 요구함에 있어 소요 추계가 면밀하지 못하여 전액 불용되거나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한 예산항목이 있는 바, 이는 국회의 예산안 심사가 생략됨에 따라 부수적으로 재정적 비효율성이 발생한 것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상회의 예비비 예산 50억 500만원 중 불용액이 4억 9,800만원으로 배정받은 예비비 총 예산의 10%에 달하고, 일반용역비(210-14) 2,000만원 및 실시설계비(420-02) 1,700만원은 전액 불용되었으며, 공사비(420-03)의 경우 3억 4,500만원 중 2억 3,400만원을 집행함에 따라 집행률이 68%에 불과하였음.

따라서, 대통령경호처는 향후 대통령 국외 행사 주관 부처인 외교부와의 면밀한 소통을 통해 경호 관련 예산을 가급적 국회 심의를 거쳐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고,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소요 추계를 면밀히 파악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3. 예비비(2) : 경호보안시스템 강화

가. 결산 현황

「경호보안시스템 강화」는 대통령 집무실 등 일부에만 설치된 도·감청 방지 시스템을 대통령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까지 확대하는 등 경호보안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2023년 2개 세부사업에서 총 86억 6,600만원의 예비비가 배정되어 24억 4,400만원이 집행(예산현액 대비 28.2%)되고, 54억 8,500만원이 이월(예산현액 대비 63.3%)되었으며 7억 3,700만원이 불용(예산현액 대비 8.5%)되었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요인 및 국빈경호활동」 사업에서 특수활동비 11억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②「경호장비시설개선」 사업에서 공사비 51억 8,900만원 중 6,100만원을 집행하고, 45억 4,300만원을 이월 및 5억 8,500만원 불용하였으며 ③ 동 사업에서 자산취득비 23억 7,700만원 중 12억 8,300만원을 집행하고, 9억 4,200만원 이월 및 1억 5,200만원을 불용하였는 바, 세부 결산내역은 다음의 표와 같음.

[경호보안시스템 강화(예비비) 비목별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배정 사유
	예산액	예비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① 요인 및 국빈경호활동	16,911	1,100	18,011	17,678	0	333	
- 특수활동비(230-00)	0	1,100	1,100	1,100	0	0	경호활동비
② 경호장비시설개선	17,005	7,566	24,720	17,172	5,502	2,046	
- 공사비(420-03)	0	5,189	5,189	61	4,543	585	경호시설 공사
- 자산취득비(430-01)	0	2,377	2,377	1,283	942	152	경호장비 도입
합 계(예비비)	**0**	**8,666**	**8,666**	**2,444**	**5,485**	**737**	

자료 : 대통령경호처

나. 예비비 배정 및 과다 이월 부적절

대통령경호처는 용산 청사의 경우 대통령 집무실 등 주요 시설에만 방지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 회의실 등 대통령실 주요 직위자 등이 활동하는 시설에도 도·감청 방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예비비를 배정받아 「경호보안시스템 강화」 사업을 집행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이는 지난 2023년 4월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대통령실 감청 의혹이 제기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보이나,[151]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면 일부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첫째,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보안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예비

151) 동아일보, 「美 유출 문건에 한국 등 감청 정황…대통령실 "필요한 협의 예정"」, 2023. 4. 9.
한국일보, 「대통령실 "문건 상당수 위조"... 감청 여부엔 "美 조사 지켜봐야"」, 2023. 4. 11.

비 배정은 「국가재정법」 및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른 예비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보임.

즉, 「국가재정법」 제22조[152] 및 「2023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153]」에 따르면 예비비는 당초 본예산 편성시 예측이 불가능하고(예측불가능성), 다음 연도 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시급하게 지출할 필요가 있어야 하며(시급성), 확정된 기존 예산으로 충당할 수 없는(보충성) 등 불가피한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임.

그런데, ① 용산 청사 내 주요 시설에 대한 도·감청 방지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은 지난 2022년 5월 대통령실이 용산 청사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고 보이며,

이 경우 사전 준비를 거쳐 경호보안시스템 강화를 위한 예산을 2023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가능했을 것이므로, 예비비 배정 요건 중 예측불가능성을 충족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

152) 「국가재정법」 제22조(예비비) ①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53) 「2023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기획재정부, p.142

【예비비 예산】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 요구에 앞서 당초 본예산 편성시 예측할 수 없었는지, 연도 중에 시급하게 지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기정예산으로 충당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② 동 사업 예비비가 배정된 시점은 2023년 9월경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시작되기 전이었고, 전체 예비비 중 63.3%에 해당하는 규모의 이월액이 발생해 국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동 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반영하지 못할 만큼 시급성이 있었는지 검토가 필요함.

둘째,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보안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예비비 집행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예비비를 집행함에 있어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한 「2023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154]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예비비 이월이 발생하였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통령경호처가 예비비를 배정받은 특수활동비(230-00) 11억원은 전액 집행하였고, 공사비(420-03) 51억 8,900만원 중 45억 4,300만원, 자산취득비(430-01) 23억 7,700만원 중 9억 4,200만원 등 총 54억 8,500만원은 차년도로 이월되었는바, 이는 전체 예비비 86억 6,600만원의 63.3%에 달하는 규모임.

위와 같은 이월액이 발생한 이유에 대하여 대통령경호처는 경호보안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해당 장소가 업무상 지속적으로 사용됨에 따라 공사가 불가피하게 지연되었다는 점과 외산장비 납

154) 「2023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기획재정부, p.142
【예비비 예산】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를 집행함에 있어,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품이 지연됨에 따른 불가피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경호보안시스템 구축 시설의 지속적 사용과 외산장비 납품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은 예비비 배정 시점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여지며, 이 경우 해당 연도에는 시급한 예산만 신청하고 나머지 예산 소요는 차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방안이 바람직했을 것으로 보임.

특히, 공사비(420-03)의 경우 51억 8,900만원 중 87.6%에 해당하는 45억 4,3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이는 국회의 예산안 심의를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보아 예비비를 배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축이 필요한 해당 장소가 업무상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공사가 지연되었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따라서, 대통령경호처는 향후 경호업무 및 관련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예산은 면밀한 사전계획 수립을 통해 국회의 심의를 거쳐 편성·집행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고, 불가피하게 예비비 소요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연내 집행 가능한 예산에 대해서만 신청하는 등 예비비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4.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1011-251)

가. 결산 현황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는 대통령경호처의 기관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이며, 이 중 '일반용역비(210-14)'는 재무, 공보업무 등의 용역을 위한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2억 1,800만원 중 2억 1,100만원이 집행(집행률 96.8%)되고, 7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중 일반용역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본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9,847	9,847	0	630 △630	9,847	9,577	0	270	11,526
일반용역비	50	50	0	168	218	211	0	7	220

나. 회계연도 시작 전 용역계약 추진 부적절

대통령경호처는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비대상)에 편성된 일반용역비를 통해 '재무결산 및 회계, 예산 업무지원을 위한 용역'에 1,90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2023회계연도 시작 이전인 2022년 11월에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이 회계연도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

[2023회계연도 재무결산 위탁용역 계약 현황]

(단위: 백만원)

계약명	발주금액 (입찰공고서 기준)	계약금액 (계약서 기준)	계약 기간	계약유형
재무결산 위탁용역	20	19.5	2022. 11. ~ 2023. 11.	수의

자료 : 대통령경호처

「국가재정법」 제3조[155]에 따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회계연도 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156]에 따라 임차계약·운송계약·보관계약 등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회계연도 시작 전에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다만, '재무결산' 계약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다른 국가기관의 재무결산 위탁용역 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계연도 시작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파악됨.

155)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15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체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계약·운송계약·보관계약 등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 관리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시작 전에 해당 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국고금 관리법」 제20조(지출원인행위의 준칙) 지출원인행위는 중앙관서의 장이 법령이나 「국가재정법」 제43조에 따라 배정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의 금액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다른 국가기관의 재무결산 위탁용역 계약 현황]

(단위: 백만원)

기관명	계약명	계약기간	예산액
국회사무처	국회 소관 재무결산 작성 용역	2023. 2.~12.	20
대법원	2022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작성 자문	2023. 1.~9.	19
외교부	2022회계연도 재무결산 자문용역	2023. 1.~12.	18.7
행정안전부	2022회계연도 재무결산 용역	2023. 1.~5.	20
고용노동부	2022회계연도 재무결산 회계지원	2023. 1.~4.	18
해양수산부	국가회계 재무결산	2023. 1.~12.	36
중소벤처기업부	2022회계연도 재무결산 위탁 용역	2023. 1.~12.	41

자료 : 각 부처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 요구자료(II-1) 참조

따라서, 대통령경호처는 향후 '재무결산'을 포함한 용역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국가재정법」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5. 경호경비과학화(1231-501)

가. 결산 현황

「경호경비과학화」는 보안검색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빅데이터에 근거하여 위험물 여부를 판독하는 인공지능(AI) X-Ray 적용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하여 2023년도에 신규 편성된 R&D 사업으로, 2023년도의 경우 연구개발출연금(360-05) 명목으로 10억원이 편성되어 전액 집행되었음.

[2023회계연도 경호경비과학화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1,000	1,000	0	0	0	1,000	1,000	0	0	500

나. AI X-Ray 프로그램 개발사업의 신속·면밀한 추진 필요

「AI X-Ray 프로그램 개발사업」은 2019년부터 진행되어 2021년 특허[157]를 등록한 대통령경호처 경호안전교육원의 AI를 이용한 위험물 검출 등 보안검색 업무 효율화에 대한 자체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하여, 2023년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다부처 R&D 사업임.

---

157) 대통령경호처가 등록한 특허명 및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① 4색 X-ray 장비를 활용한 원소의 판별방법 :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의 밀도에 따라 X-ray 결과값 중 색상이 달라지는 원리를 보안검색 업무에 적용하는 기법
② 인공지능을 이용한 위험물 검출 시스템 및 방법 - 대통령경호처 특허 검색기법을 적용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

동 R&D 사업은 기존의 X-Ray 검사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는 차세대 경호(보안검색) 대응기술을 개발하는 연구로, ① 일반적 금지물품과 전략적 위험물품(재래식 무기, 액체 위험물 및 위장무기류, 급조폭발물) 등에 대한 '빅데이터 구축', ② 이를 바탕으로 과학적 검색기법을 기반으로 하는 'AI 검색 프로그램 개발', ③ 이러한 AI 검색기술을 이용한 '보안검색업무 교육체계 정립' 등 3개의 단위과제로 구성되어 있음.

[과제기획서상 사업개요]



자료 : 대통령경호처

대통령경호처는 동 R&D 사업 1차년도 연구 달성정도를 ① 빅데이터 구축 분야 20%, ② AI 검색 프로그램 개발 분야 40%, ③ 보안검색업무 교육체계 정립 분야 40%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또한, 대통령경호처가 제출한 동 R&D 사업의 추진배경 및 기대효과를 살펴보면, 현재 보안검색업무는 정형적 형태를 가지지 않는 액체 위험물(강산류), 화학적 위험물, 생물학적 위험물 및 모양을 변형한 IED(급조폭발물)와 위장무기류 등 검색에 한계가 있어 다수의 보안검색 실패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검색대상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의 구성에 기반한 과학적 검색기법 및 훈련시스템 구축을 통해 보안검색업무 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AI 검색프로그램의 보조를 받아 광범위한 위험물을 사전에 인지하여 국가 보안검색 업무가 질적으로 향상됨으로써 국가안보 및 국가안전 제고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한편, 동 R&D 사업 구축을 위하여 당초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개년간 총 100억원의 예산을 대통령경호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7 비율로 분담하여 집행할 예정이었으나,

[당초 - 연도별 AI X-Ray 개발사업 소요예산 계획(안)]

(단위: 백만원)

구 분	소요예산			
	2023년	2024년	2025년	계(비율)
대통령경호처	1,000	1,000	1,000	3,000(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00	4,000	2,000	7,000(70%)

자료 : 대통령경호처

2024년도 예산안 편성을 거치면서 사업 총 규모는 동일하되, 대통령경호처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분담 비율이 종전 3:7에서 5:5로, 사업기간이 종전 3개년에서 5개년으로 변경되었음.

[변경 - 연도별 AI X-Ray 개발사업 소요예산 계획(안)]

(단위: 백만원)

구 분	소요예산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계(비율)
대통령경호처	1,000	500	1,500	1,500	500	5,000(5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00	500	1,500	1,500	500	5,000(50%)

자료 : 대통령경호처

이에 대하여 대통령경호처는 2024년도 예산안 편성 시 기관 간 예산 분담비율이 변경(3:7 ⇒ 5:5)되는 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분담금 감소분이 대통령경호처 예산에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당해연도 예산이 줄어들어 총 사업기간이 길어지게 되었으므로, 남은 3개년도 예산을 집중 투입하여 사업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설명하고 있음.

따라서, 대통령경호처는 향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면밀히 소통하여 예산 집중 투입에 따른 사업 기간의 단축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단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여 국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동 R&D 사업은 총 100억원에 달하는 상당 규모의 국가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AI 위험물 탐색 시스템 및 훈련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국가안보와 국민안전 보장이라는 당초 사업 목적이 차질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Ⅴ. 대체토론 요지

(생　략)

Ⅵ.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배 준 영 위원장)

1. 국회 소관

국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되, 국회사무처 19건, 국회도서관 4건, 국회예산정책처 3건, 국회입법조사처 6건 등 총 32건의 시정요구사항과 국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음.

주요 시정요구사항은,

- **첫째**, 외국인의 청원권과 관련하여 외국 사례와 학계 논의 등의 연구·조사를 통해 국민동의청원제도의 발전적 운영 방향을 검토하도록 함

- **둘째**, 국회도서관 전문가정보데이터베이스의 이용실적과 인지도가 낮은 수준이므로, 유사 데이터베이스와의 차별성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국회 구성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활용도를 제고하도록 함.

- **셋째**,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가 회답기간 준수율 감소 및 평균 회답소요일수 증가로 전년 대비 지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의안 비용추계의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넷째**,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가 정치행정 분야에 집중되는 반면 경제산업·사회문화 분야는 발간이 저조하므로, 다양한 입법·정책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분야별로 균형 있게 보고서 발간계획을 수립·관리하도록 함.

부대의견으로는,

- **첫째,** 국회사무처는 승강기 근로자를 비롯한 공무직 근로자의 업무 대기 공간을 마련할 때 업무와 휴식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 **둘째**, 국회사무처는 필리버스터 등 철야 운영 시 필수 종사자의 초과근무 수당 제한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2.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되, 총 5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함.

주요 시정요구사항은,

- **첫째**, 전문상담위원의 예산 집행 실적과 상담 실적이 지속적으로 저조하므로, 전문상담위원제도의 운영 전반을 점검·검토하여 전문상담위원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하도록 함.

- **둘째**, 아셈 노인인권정책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부담금 이외에 아셈 회원국이나 다른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을 통하여 재원조달 방안을 다각화하도록 함.

3.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되, 총 6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함.

주요 시정요구사항은,

- **첫째**, 기본경비 예산 편성 시 실제 소요를 바탕으로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 전용 및 세목조정 등 예산 변경을 최소화하도록 함.

- **둘째**,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타 부처의 중복연구 방지 및 연구용역 결과 활용 등을

위하여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보다 적극적으로 등록·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함.

4. 대통령경호처 소관

대통령경호처 소관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되, 경호장비를 구매함에 있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납품 지연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등 총 3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함.

Ⅶ. 심사결과

1. 국회 소관

원안 의결

2.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원안 의결

3.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원안 의결

4. 대통령경호처 소관

원안 의결

Ⅷ. 소수의견 요지

없 음.

Ⅸ. 시정요구사항

〔 붙 임 〕 참조

Ⅹ. 부대의견

○ 국회사무처는 승강기 근로자를 비롯한 공무직 근로자의 업무 대기 공간을 마련할 때 업무와 휴식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국회사무처는 필리버스터 등 철야 운영 시 필수 종사자의 초과 근무 수당 제한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붙 임] 소관기관별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

1. 2023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 결과 : 총 46건의 시정요구사항 채택

(단위: 건)

부 처 명		변 상	징 계	시 정	주 의	제도개선	합 계
국회	국회사무처	-	-	-	2	17	19
	국회도서관	-	-	-	-	4	4
	국회예산정책처	-	-	-	-	3	3
	국회입법조사처	-	-	-	-	6	6
국가인권위원회		-	-	-	-	5	5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	-	-	1	5	6
대통령경호처		-	-	-	-	3	3
합 계		-	-	-	3	43	46

2. 시정요구사항

가. 국회사무처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1</td><td rowspan="3">국유재산 장기
미수납 방치
문제 해결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세입) - 변상금(57-571) · 기타경상이전 수입(59-596)</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국회사무처</td></tr>
<tr><td>지적사항</td><td>❍ 2023년도 세입 결산 상 커피전문점·식당의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료 미수납액은 총 1억 5,000만원임.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연체료 부과액 및 미수납액 현황]
(2023년말 기준, 단위: 백만원)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3"></th><th rowspan="2">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불납결손액</th><th rowspan="2">미수납잔액</th></tr>
<tr><th>변상금</th><th>연체료</th><th>부과총액</th></tr>
<tr><td>가배두림</td><td>81</td><td>61</td><td>142</td><td>25</td><td>116</td></tr>
<tr><td>㈜고촌정</td><td>87</td><td>66</td><td>153</td><td>118</td><td>34</td></tr>
<tr><td>합 계</td><td>168</td><td>127</td><td>294</td><td>144</td><td>150</td></tr>
</table>
- 2011.2.15.~10.10.(8개월) 의정관을 무단점유한 커피전문점(가배두림)에 대하여 변상금 8,100만원, 연체료 6,100만원 부과 후 소멸시효 완성으로 2,500만원 불납결손 처리
- 2014.6.21.~2015.1.16.(7개월) 헌정기념관을 무단점유한 식당(고촌정)에 대하여 변상금 8,700만원, 연체료 6,600만원 부과 후 소멸시효 완성으로 1억 1,800만원 불납결손 처리
❍ 국회사무처는 채권회수를 위하여 관할세무서 위탁징수,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채권회수 위탁계약 체결 등을 추진하였으나 회수 실적이 없고, 소멸시효(5년) 경과로 매년 변상금 및 연체료의 상당액이 불납결손 처리되고 있음.
※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불납결손액 : 총 1억 4,400만원 (2023년말 기준)</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회사무처는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부과한 변상금과 변상금 연체료의 수납실적 개선을 위하여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세출) - 총괄	제도개선	국회사무처
		지적사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는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각 공공기관의 물품·용역 구매액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 이상이 되도록 규정함. ○ 2023년도 국회사무처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은 물품·용역 총 구매액 678억 9,300만원 중 6억 800만원으로, 그 비율은 0.90%임. - 최근 3년간 국회사무처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 및 2023년도 공공기관 전체 평균(1.07%) 대비 미흡 ※ 최근 3년간 우선구매비율 현황: (2020) 1.15% , (2021) 1.27%, (2022) 1.15%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제도는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 재활을 돕기 위한 것으로, 국회사무처는 동 제도와 관련된 법정 구매목표 비율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함.		
		시정요구사항	○ 국회사무처는 물품·용역구매 집행 부서와 직원 등을 대상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동 제도의 적용이 용이한 분야를 발굴·확대함으로써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실적을 개선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3</td><td rowspan="3">SNS동영상
제작지원
사업의 충실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입법활동지원(1031-300)</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국회사무처</td></tr>
<tr><td>지적사항</td><td>❍ 입법활동지원의 내역사업인 “SNS 동영상 제작지원” 사업은 정책세미나 요약 영상제작, 입법 및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영상콘텐츠 제작, 국회방송 SNS 동영상 제작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액 30억원 중 집행액이 10억 5,000만원으로, 집행률은 35%에 불과함.
[SNS 동영상 제작지원 2023년도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table>
<tr><th rowspan="2">내역명</th><th colspan="6">2023</th><th rowspan="2">2024
예산액</th></tr>
<tr><th>예산액</th><th>이·전용등</th><th>예산현액</th><th>집행액</th><th>다음연도
이월액</th><th>불용액</th></tr>
<tr><td>SNS동영상 제작지원
(일반용역비)</td><td>3,000</td><td>-</td><td>3,000</td><td>1,051</td><td>707</td><td>1,242</td><td>3,000</td></tr>
</table>
❍ 동 사업 예산의 집행부진은 사업계획 미흡에 따른 것임.</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회사무처는 SNS동영상 제작지원 사업의 계획을 충실히 수립하여 예산의 이월과 불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	**의정지원 불용예산 적극활용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의정지원(1031)	제도개선	국회사무처
		지적사항	○ 2023년도 국회사무처 결산 상 가장 불용액이 많은 단위사업은 “의정지원”으로, 당초 예산액은 815억 7,500만원이고 예산현액은 796억원이며, 집행액은 690억원이고, 불용액은 97억원임(불용율 12.2%). - 의정지원 단위사업은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 명목으로, 입법활동지원, 입법및특별활동지원, 입법및정책개발, 의원연구단체활동, 국정감사및조사 등의 세부사업으로 구성 ○ 의정지원사업은 연례적으로 불용율이 10%를 초과(2023년도 12.2%, 2022년도 10.4%, 2021년도 12.4%)하고 있고, 운영위 검토보고서도 집행률 개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음. ※운영위 검토보고서 지적사항: 2021년(정책자료 발송료 집행률 제고 필요), 2022년 (정책자료 발간 및 홍보물 유인비 집행률 제고 필요), 2023년 (정책연구비 적정규모 예산 편성 및 집행률 개선 필요) 등 ○ 매년 수십억씩 발생하는 불용액은 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반드시 개선 필요		
		시정요구사항	○ 국회사무처는 의정지원 단위사업의 예산 불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5</td><td rowspan="3">정책연구비의
적정규모 예산
편성 및 집행률
개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입법 및 정책개발(1031-302)</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국회사무처</td></tr>
<tr><td>지적사항</td><td>❍ 「입법 및 정책개발」 정책연구비 예산액 21억원 중 13억 3,300만원이 집행되고, 7억 3,900만원이 불용되어,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집행률(63.5%)을 보임.

[최근 5년간 연도별 정책연구비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예산액</th><th rowspan="2">이전용
등</th><th rowspan="2">예산
현액(B)</th><th rowspan="2">집행액
(C)</th><th rowspan="2">불용액</th><th colspan="2">집행률</th></tr>
<tr><th>본예산
(A)</th><th>추경</th><th>본예산대비
(C/A)</th><th>현액대비
(C/B)</th></tr>
<tr><td>2019</td><td>1,200</td><td>1,200</td><td>200</td><td>1,400</td><td>1,323</td><td>77</td><td>110.3</td><td>94.5</td></tr>
<tr><td>2020</td><td>1,200</td><td>810</td><td>100</td><td>910</td><td>886</td><td>24</td><td>73.8</td><td>97.4</td></tr>
<tr><td>2021</td><td>1,200</td><td>1,200</td><td>－</td><td>1,200</td><td>1,191</td><td>9</td><td>99.2</td><td>99.2</td></tr>
<tr><td>2022</td><td>1,200</td><td>1,200</td><td>－</td><td>1,200</td><td>909</td><td>291</td><td>75.8</td><td>75.8</td></tr>
<tr><td>2023</td><td>2,100</td><td>2,100</td><td>△28</td><td>2,072</td><td>1,333</td><td>739</td><td>63.5</td><td>64.3</td></tr>
</table>
※정책연구비: 입법·정책개발 목적의 여론 수렴, 조사연구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지원 (1회 최대 1,000만원, 2명 이상의 의원 공동 발주 시는 최대 2,000만원 한도)

❍ ① 최근 5년간 정책연구비 실집행 규모가 9억원에서 13억원 내외였다는 점, ②국회의원 궐원으로 인한 미집행, ③정보공개 청구나 언론 보도, ④연구용역 표절 검사 의무화 등의 영향으로 정책연구비가 소극적으로 집행된 측면을 고려하면, 2023년도 정책연구비 예산액은 실수요와 집행 가능성 대비 과다 편성된 측면이 있음.</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회사무처는 정책연구비 실집행 소요에 부합하는 적정 예산액을 편성하는 한편, 의원실을 대상으로 정책연구비의 집행 대상, 활용 방법 및 표절검사 방법 등에 관한 안내·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의원실의 분기별 정책연구비 지출현황을 파악하여 추가 소요가 있는 의원실은 조기 추가배정을 하는 등 예산 집행률을 높이도록 노력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6</td><td rowspan="3">초청외교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의원외교활동 (1033-300)</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국회사무처</td></tr>
<tr><td>지적사항</td><td>❍ 의원외교활동은 초청외교, 방문외교 및 국제회의 부문으로 구성되는데, 2023년도 초청외교의 경우 총 57건을 계획하였으나 성사 실적은 15건(26.3%)에 그침.

[의원외교활동 부문별 계획 대비 실적 현황]

<table>
<tr><th></th><th>계 획</th><th>실 적</th><th>계획대비 비율</th></tr>
<tr><td>초청외교</td><td>57</td><td>15</td><td>26.3%</td></tr>
<tr><td>방문외교</td><td>74</td><td>67</td><td>90.5%</td></tr>
<tr><td>국제회의</td><td>22</td><td>21</td><td>95.5%</td></tr>
</table>
❍ 초청외교 실적 부진은 의원외교의 균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사업간 과다한 예산의 조정과 불용을 유발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함.
- 초청외교에 해당하는 “외빈초청 및 의전행사”의 경우 2023년도 예산액 33억 700만원에서 16억 2,300만원이 내역조정(감액)된 예산현액 16억 8,400만원 중 10억 7,400만원을 집행하고, 6억 1,000만원이 불용되었음.
❍ 초청외교가 한국에 대한 상대국의 이해를 제고하고 양국 의회 간 우호적인 교류·협력 환경의 조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의회외교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초청외교를 활성화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회사무처는 주요 현안과 관련 있는 각국 의회 상임위원장, 의원친선협회, 의원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초청 대상을 확대하고, 의회외교 지원역량을 초청외교에 보다 집중하여 외빈 방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등 초청외교를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7	**연구과제 추천제도 활성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회미래연구원(1034-308)	제도개선	국회사무처 (미래연구원)
		지적사항	○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 환경의 변화를 예측·분석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출하기 위하여 2023년의 경우 총 35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였음. - 국회미래연구원은 「국회미래연구원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매 분기말에 국회의장, 국회상임위원회와 국회의원실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연구과제를 추천받고 있음. ○ 2022년 및 2023년의 경우 국회의장이 추천한 연구과제는 없고, 상임위 또는 특위에서 추천한 연구과제 건수는 총 12건(2022년 8건/2023년 4건)으로, 추천제도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고 보임. - 동 제도는 국회미래연구원의 연구성과가 국회입법과 정부정책으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국회상임위 및 특위와 연계되어 유기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으므로, 연구과제 선정부터 입법기관의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연구에 반영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다 활성화 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회미래연구원은 향후 연구과제 선정 시 연구성과가 유의미한 입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구과제 추천제도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8	**자료제공 요청규정 활용방안 강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회미래연구원(1034-308)	제도개선	국회사무처 (미래연구원)
		지적사항	○ 「국회미래연구원법」 제16조는 국회미래연구원은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 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연구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국회미래연구원이 수행하는 미래연구가 현재 상황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바탕으로 보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래 전망을 제시할 수 있도록,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규정으로 이해됨. ○ 다만, 「국회미래연구원법」이 제정된 2017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해당 규정을 통해 자료제공을 요청한 사례는 없어 사실상 사문화 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됨. - 이에 대하여 국회미래연구원은 자료제공 요청의 필요성은 있으나, 실제 자료요청에 필요한 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아 활용이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음. ○ 국회미래연구원이 미래 환경의 변화를 예측·분석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기관의 설립취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연구분야의 소관 국가기관과 관련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회미래연구원은 국회사무처와 협의하여 「국회미래연구원법」에 따른 자료제공 요청 규정을 활용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9</td><td rowspan="3">연구인력
퇴직자 발생 시
후임자 적시
채용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국회미래연구원(1034-308)</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국회사무처
(미래연구원)</td></tr>
<tr><td>지적사항</td><td>❍ 「국회미래연구원」은 2023회계연도 출연금 예산현액 40억 8,000만원 중 40억 2,000만원을 집행하고, 6,000만원은 불용하였음.
- 불용액은 결원인건비 4,700만원 및 전년도 이월액 1,300만원임.
❍ 국회미래연구원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각 연도 4분기 출연금 교부 시 해당 연도에 발생한 결원인건비를 제외하고 출연금을 교부받고 있음.
- 최근 4년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연례적으로 결원인건비로 인한 불용이 발생하였음.
[최근 4년간 국회미래연구원 결원인건비 내역]
(단위: 백만원)
<table>
<tr><th>구 분</th><th>2020년</th><th>2021년</th><th>2022년</th><th>2023년</th></tr>
<tr><td>결원인건비</td><td>55</td><td>125</td><td>39</td><td>47</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회미래연구원은 결원인건비 발생을 최소화하고,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후임자 채용에 시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0	**국회미래연구원 예산이 편성된 단위사업의 적절성 검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회미래연구원(1034-308)	제도개선	국회사무처
		지적사항	○ 국회미래연구원은 「국회미래연구원법」에 따라 설립된 국회 출연연구기관으로,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 연구사업 추진 및 기관 운영에 있어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됨. ○ 그러나, 국회미래연구원은 법정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상의 지위는 ‘헌정회’, ‘입법정책네트워크 단체’ 등과 함께 ‘국회활동관련단체’에 머무르고 있고, ‘사업계획 승인 및 출연금 교부 결정 통지’, ‘분기별 출연금 교부 및 실적보고’ 등을 국회사무처가 담당하고 있어, 독립성과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을지 의문임.		
		시정요구사항	○ 국회사무처는 국회미래연구원 출연 예산을 국회활동관련단체 지원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1	**국회인권센터의 기능 강화 및 역량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감사활동 (2031-300)	제도개선	국회사무처
		지적사항	○ 국회인권센터는 국회 구성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인권침해 관련 상담 및 조사, 권리구제 활동 등을 추진하는 감사관 산하의 부서로, “국회인권센터운영” 사업은 2023년도 예산액 1,700만원에서 이·전용(증) 1백만원이 반영된 예산현액 1,800만원 중 1,700만원이 집행되고 1백만원이 불용되었음. ○ 현재의 국회인권센터 인력(4명: 센터장 및 국회인권보호관 3명)과 예산으로는 전체 직원(국회 소속기관 및 의원 보좌진 등 4,500여명)을 위해 내실있는 상담 및 사건 조사, 예방 프로그램의 진행에 한계가 있음. - 국회인권센터운영 예산은 현재 감사활동(2031-300)의 세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어, 국회민원센터(2031-308)가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과 차이가 있음. ○ 국회인권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역량을 확대하기 위하여 별도의 세부사업 편성 및 조직개편·확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회사무처는 국회인권센터의 기능 강화 및 역량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12</td><td rowspan="3">국회박물관
기획전시 사업
관리 강화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언론·공보활동 및 국회박물관 운영 (2031-302)</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국회사무처</td></tr>
<tr><td>지적사항</td><td>❍ “국회박물관 기획전시 연출·설계 및 제작·설치”를 위하여 편성된 일반용역비 예산 1억 6,000만원은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음
- 동 사업은 종전에 진행 중이던 기획전시(대한민국임시의정원 개원 103주년 기념 특별전)가 2023년 11월에 종료될 것에 대비하여, 기획전시 개편을 위한 연출·설계·제작·설치 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임.
[일반용역비 예산 이월·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table>
<tr><th rowspan="2">건 명</th><th colspan="2">2023 예산</th><th colspan="3">2024 집행</th></tr>
<tr><th>예산액</th><th>차년도이월액</th><th>사업수행기간</th><th>집행액</th><th>계약방식</th></tr>
<tr><td>국회박물관 기획전시
연출 ·설계 및 제작·설치</td><td>160</td><td>160</td><td>2024.2.~8.</td><td>157</td><td>협상에 의한
계약</td></tr>
</table>
❍ 동 사업은 신규 기획전시 내용의 확정 지연 및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유찰 등으로 연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여 예산액 1억 6,000만원이 2024년도로 이월되었고, 금년도 2월에 용역업체와의 계약체결 및 사업 착수 이후 7월 초에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신규 기획전시는 7월 15일에 대중에 오픈되었음.
❍ 이러한 사업 지연은 예산의 이월집행으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전시공간 폐쇄의 장기화로 국회박물관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회사무처는 전시 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향후 전시교체 계획 및 기획전시 개편안 등을 조기에 수립하고, 전시교체 사업의 일정 관리를 철저히 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13</td><td rowspan="3">헌정자료
확충을 위한
자산취득비
집행률 제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언론・공보활동 및 국회박물관 운영 (2031-302)</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국회사무처</td></tr>
<tr><td>지적사항</td><td>❍ 헌정자료 수집 및 관리 세사업 내 “자산취득비”는 국회박물관 전시콘텐츠 확보 및 연구자료 활용에 필요한 헌정자료를 구매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액 1억 1,000만원 중 6,100만원(55.5%)을 집행하고 4,900만원을 불용하였음.
- 최근 3년간 집행현황을 보면, 예산액 1억 1,000만원 중 집행액은 5,200만원에서 7,000만원 이내이며, 집행률은 60% 내외임.
[최근 3년간 헌정자료 수집 및 관리 자산취득비(430-01)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table>
<tr><th>연 도</th><th>예산액</th><th>집행액</th><th>집행률</th><th>헌정자료 구입실적</th></tr>
<tr><td>2021</td><td>110</td><td>70</td><td>63.6%</td><td>총 197건 539점</td></tr>
<tr><td>2022</td><td>110</td><td>52</td><td>47.3%</td><td>총 52건 98점</td></tr>
<tr><td>2023</td><td>110</td><td>61</td><td>55.5%</td><td>총 154건 342점</td></tr>
</table>
❍ 자산취득비의 연례적 불용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적시에 사용해야 하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국회박물관의 전시역량 강화를 통한 이용자 만족도 제고의 측면에서도 적절하지 않으므로 개선이 필요
※주요 국립박물관의 2024년도 자료(유물)구입 예산액: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7억원), 대한민국역사박물관(8.5억원), 국립한글박물관(10.8억원), 국립민속박물관(14.2억원) 등</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회사무처는 국회박물관 헌정자료 수집에 대한 홍보 강화, 헌정자료 구입 횟수의 확대 및 자료구입 방식의 다변화 등 자산취득비의 집행률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4	**지방의회 의정지원 역량강화의 적정 연수기간 및 인원 확보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연수활동지원 (2031-306)	제도개선	국회사무처
		지적사항	○ 지방의회 의정지원 역량강화 사업(신규)은 지방의회 사무국 소속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장기(6개월 이상 1년 이내) 교육·연수과정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액 3억원 중 1억 2,100만원(40.3%)이 집행되었고, 1억 7,900만원을 불용하였음. ○ 이러한 집행부진은 당초 계획 대비 교육정원과 연수기간이 축소됨에 따라 연수과정 운영경비의 집행소요가 감소하였기 때문임. - (계획) 교육정원 17명, 10개월→ (집행) 교육정원 11명, 6개월 ○ 사업추진 경과를 보면, 장기 연수과정 운영에 필요한 협조를 확보하기 위한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지방의회의 연수대상자 선발 등 사전절차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었고, 이에 따라 당초 계획한 2023년 2월이 아닌 6월에 연수과정이 시작되었음. ○ 연수계획의 차질없는 시행과 예산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사업 계획을 보다 면밀히 수립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의·조정 등 사전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예산효과성 제고, 지방의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연수 과정 품질관리를 위하여 연수인원의 확대와 연수프로그램의 확대개편이 필요해 보임.		
		시정요구사항	○ 국회사무처는 지방의회 의정지원 역량강화 과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준비 과정에 조속히 착수하는 한편, 연수인원 추가 확보를 위하여 행정안전부 및 지방의회 등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추진하고 연수프로그램을 확대 개편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5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와 입법지원 서비스의 연계성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입법서비스지원활동 (2032-300)	제도개선	국회사무처
		지적사항	○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는 국회의원과 국회사무처가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지역현안에 대한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법률안 입안·검토 등 입법지원 서비스로 연계함으로써 지역현안의 입법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 2023년도 결산 현황: 예산액 6,200만원에서 이·전용(감) 300만원이 반영된 예산현액 5,900만원 중 5,100만원을 집행하고 8백만원을 불용 ○ 그러나, 최근 토론회 개최 및 관련 법률안 입안 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토론회 개최와 법률안 입안지원 서비스 간의 실질적인 연계성이 미흡함. - 제21대국회 기간 중 국회사무처는 총 11건의 토론회를 공동개최하였으나, 토론회 개최 이후에 해당 의원실로부터 토론회 주제와 관련한 법률안의 입안을 의뢰받아 성안한 실적은 1건임. ○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가 법률안 입안·검토 지원서비스와 긴밀히 연계되어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칫 일회적인 행사 개최 지원에 그치게 될 우려가 있음. ※ 참고로, 국회사무처는 최근(2024.5.)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 개최에 관한 내규」를 개정하여 토론회 개최 제한사유에 "토론회의 주제인 지역현안에 관한 법률안을 이미 발의하여 법률안 입안·검토 등 입법지원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추가하였음.		
		시정 요구사항	○ 국회사무처는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와 입안지원 서비스의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내규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토론회 개최를 신청한 의원실저을 대상으로 법률안 입안서비스 및 입안의뢰 방법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등 사업 관리를 강화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16</td><td rowspan="3">공공요금 및
제세 이용증액
과다 및
적정예산 편성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국회청사 유지 및 관리 (2033-300)</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국회사무처</td></tr>
<tr><td>지적사항</td><td>❍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는 청사 내 수도・전기・전화요금 등을 집행하는 사업으로, 국회사무처는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분 충당을 위하여 당초 예산액(83억 900만원)의 25%에 해당하는 20억 8,900만원을 ‘사무처 인건비(7001-150)’에서 이용하였고, 예산현액 103억 9,800만원을 집행하였음.
❍ 최근 3년간 공공요금 집행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23년도에는 전년 대비 26.4%가 증가하였음.
- 코로나 해제로 인한 재택근무의 완화 및 방문객 증가에 따른 에너지 사용량의 증가, 에너지 요금 인상 등
[최근 3년간 수도·전화·전기요금 등 집행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table>
<tr><th colspan="2"></th><th>2021년도 집행액</th><th>2022년도 집행액</th><th>2023년도 집행액</th></tr>
<tr><td rowspan="3">국회청사
(여의도)</td><td>수 도</td><td>717</td><td>782</td><td>1,253</td></tr>
<tr><td>전 화</td><td>150</td><td>141</td><td>141</td></tr>
<tr><td>전 기</td><td>6,085</td><td>6,538</td><td>8,033</td></tr>
<tr><td>국회
부산도서관</td><td>수도·전화
전기</td><td>75</td><td>322</td><td>412</td></tr>
<tr><td colspan="2">소 계
(전년 대비 증가율)</td><td>7,027</td><td>7,783
(10.8)</td><td>9,839
(26.4)</td></tr>
</table>
❍ 공공요금 및 제세의 경우 부족분 발생 시 「국가재정법」 제47조, 예산총칙 등에 따라 타 비목으로부터 자체이용하여 집행할 수 있으나, 예산편성・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국회가 확정한 예산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예산 이용은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함.</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회사무처는 적정규모의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공공요금 인상 추이와 사용량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사용량 관리를 강화하는 등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의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7	**국회통합 디지털센터 건립 추진 지연 최소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건립 (2033-302)	제도개선	국회사무처
		지적사항	○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건립사업은 정보자원의 통합 이용과 정보보안의 강화 및 위기 발생 시 자료유실 위험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복합 문화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액 30억 2,200만원이 전액 불용되었음. - 당초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사업비 467억 7,900만원 규모로 추진 예정이었으나, 사업 초기부터 유찰,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상승 등의 영향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고, 이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 규모가 500억원 이상으로 증가되어 2022년 10월부터 시행된 타당성 재조사가 금년도 1월에 완료됨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였음. - 2021. 01. ~ 05.: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 2021. 06.: 입찰방법 심의(설계·시공 일괄입찰, 국토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 2021. 06. ~ 09: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 보완 및 심의 - 2021. 10. ~ 2022. 01.: 입찰공고 (1차~4차) - 2022. 01. ~ 05.: 기본설계 및 우선시공분 공사 실시설계 - 2022. 06. ~ 08.: 우선시공분 공사 가격협상(결과 : 결렬) - 2022. 08. : 입찰방법 변경 심의(설계·시공 일괄입찰→설계·시공 분리입찰) - 2022. 09. ~ 10.: 타당성재조사 심의자료 제출 및 총사업비 조정 요청(국회사무처→기획재정부) - 2022. 10. ~ 2024. 1: 타당성재조사 시행 (한국개발연구원) ○ 국회의 정보보안 강화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체험·연수 장소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산 투입의 효과성이 큰 사업이므로 조속한 건립이 필요함.		
		시정요구사항	○ 국회사무처는 향후 국회통합디지털센터 건립 공사일정을 적기에 추진하고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추가적인 사업 지연을 최소화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8	**국회방송 경쟁력 강화 및 시청자 만족도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회방송운영 (2036-300)	제도개선	국회사무처
		지적사항	○ 국회방송운영 사업의 성과지표 중 하나인 ‘시청자 만족도’는 목표수치인 70점에 연례적으로 미달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시청자 만족도는 60점대이며, 2023년도의 시청자 만족도는 62.9점임. - 국회방송의 시청률 조사 결과를 보면, 2023년도의 국회방송 시청률은 0.036%(전체 223개 채널 중 84위)로 전년도의 0.052% (275개 채널 중 65위) 대비 0.016%p 하락하였음. ○ 최근 4년간 국회방송의 직접제작 프로그램 내역을 보면 라이브 뉴스, 의사·의정 중계, 법률 및 책 소개 프로그램 중심의 구성이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고, 전체 방송시간 중 본방송 비율이 줄고 재방송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재방송 비율: 2020년도 60.9% ⇒ 2023년도 64.5%)하였음 ○ 최근 스트리밍 서비스 및 소셜미디어 플랫폼 등 뉴미디어의 등장과 콘텐츠 경쟁의 심화 추세를 고려할 때, 국회방송이 의정활동 정보 제공을 위한 공공채널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시청자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회사무처는 본방송시간 확대와 더불어 신규 시청자 유입을 위한 특화 콘텐츠 제작,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 활성화 등 국회방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9	**국민동의청원 제도의 발전적 운영 방안 검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입법정보화(정보화) (2034-500)	제도개선	국회사무처
		지적사항	○ 국민청원은 「대한민국헌법」 제26조제1항, 「국회법」 제123조제1항 및 「국회청원심사규칙」에 따른 국민의 권리임에도, 현행 국회전자청원시스템은 장기체류 외국인도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청원에 참여가 가능하여 국민여론 왜곡의 우려가 있음. ※ '통합전자청원시스템 구축' 사업(의원소개청원 전자제출시스템과 기존 국민동의청원시스템을 통합하고 기능 개선)의 결산현황: 2023년도 예산액 7억원 중 3억 7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1,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됨. •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 **「국회법」** 제123조(청원서의 제출) ①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받거나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국회청원심사규칙」** 제1조의2(청원의 종류) 청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소개청원"이란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가 국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받아 서면 또는 「국회법」 제123조의2에 따른 전자청원시스템(이하 "전자청원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는 청원을 말한다. 2. "국민동의청원"이란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가 전자청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등록하고 국민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는 청원을 말한다.		
		시정요구사항	○ 국회사무처는 외국인의 청원권과 관련하여 외국 사례 및 학계 논의 등의 연구·조사 등을 실시하여 국민동의청원제도의 발전적 운영 방안을 검토할 것		

나. 국회도서관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전자책 및 오디오북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노력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회부산도서관운영(3031-301)	제도개선	국회도서관
		지적사항	○ 국회부산도서관운영(3031-301) 사업에 구독형 전자책 및 오디오북 서비스 사용료 예산 9,00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음. ○ 2023년 전자책 및 오디오북 월별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구독형 전자책 서비스를 확대 개편한 3월에 급격히 증가(2월 927책→3월 29,278책)한 다음, 서서히 감소하다가 10월에 급격히 감소(9월 13,788책→10월 37책)한 것으로 나타남. - 국회부산도서관에 따르면 이는 구독형 전자책 및 오디오북 서비스 예산이 9월에 조기 소진되어 구독료를 지급할 수 없었기 때문임. ○ 예측하지 못했던 이용 수요 급증으로 인하여 관련 예산이 부득이하게 조기 소진된 면은 있지만, 제공되던 서비스를 연도 중 일시에 중단하게 되면 서비스 이용자에게 불편이 발생하고 나아가 제공 서비스에 대한 신뢰 저하를 초래할 수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회도서관은 전자책 및 오디오북 서비스가 연중 균형 있고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이용 추이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적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	**미디어 스튜디오 활성화 방안 강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도서관자료보존및열람(3033-301)	제도개선	국회도서관
		지적사항	○ 2023년 8월 국회도서관 디지털정보센터(국회의정관 3층) 내에 미디어 스튜디오를 설치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7,707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음. ○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의 미디어 스튜디오의 이용실적을 살펴보면, 월평균 7회의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는 미디어 스튜디오가 국회의정관에 설치되어 있어 주요 사용자인 국회의원의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비슷한 시기(2023년 7월) 국회사무처가 국회의원회관에 설치하여 운영을 시작한 '이실직고 스튜디오'의 2023년 12월까지의 월평균 이용실적 53건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이용실적이 낮음.		
		시정요구사항	○ 국회도서관은 운영시간·요일의 확대 및 국회 내 다른 영상 촬영 스튜디오와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등 사용자 편의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미디어 스튜디오 이용에 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	**전문가정보데이터베이스 차별성 확보 및 활용도 제고 방안 강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전자도서관운영(3035-500)	제도개선	국회도서관
		지적사항	○ 전자도서관운영(3035-500) 사업에 전문가 정보의 구축 및 관리를 위한 예산 5,80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음. ○ 최근 3년간(2021년 ~ 2023년) 전문가정보데이터베이스 이용 실적을 살펴보면, 2021년 약 44,000건, 2022년 약 37,000건, 2023년 약 40,000건으로 국회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른 정보시스템 이용 실적과 비교할 때 비교적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2023년의 연간 이용 실적과 일평균 이용 실적은 국회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시스템 중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2023년 의회 및 법률정보서비스 만족도조사」 결과를 보면, 의원 및 국회직원의 인지도 및 만족도가 낮은 수준임. - 인지율 47.1%, 이용경험률 49.6%, 종합만족도 69.6점 ○ 국회도서관이 구독계약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는 Web-DB인물검색(조인스) 등 유사 서비스 대비 정보의 양과 차별성에 한계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회도서관은 전문가정보데이터베이스 서비스에 대하여 유사 DB와의 차별성 확보방안을 모색하고 국회 구성원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통하여 활용도를 제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	**AI의정분석서비스 아르고스 인지도·활용도 제고 및 개선 방안 고려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전자도서관운영(3035-500)	제도개선	국회도서관
		지적사항	○ AI의정분석서비스 아르고스는 뉴스, 소셜 데이터 등 국회 외부자료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현안 이슈 추출 및 관련 전문자료를 연계 제공하여 국회 입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임. ○ 전자도서관운영(3035-500) 사업에 AI의정분석서비스 아르고스의 구축·운영을 위한 예산 6억 5,500만원을 편성하여 6억 5,100만원을 집행하였음. ○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AI의정분석서비스 아르고스의 일평균 이용자는 202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는 하나, 2023년 일평균 이용자수는 462명 수준임. ○ 「2023년 의회 및 법률정보서비스 만족도조사」 결과를 보면, 의원 및 국회직원의 인지도 및 만족도가 국회도서관 서비스 중 최하위를 기록함. - 인지율 28.8%, 이용경험률 47.3%, 종합만족도 66점		
		시정요구사항	○ 국회도서관은 AI의정분석서비스 아르고스의 활용도 제고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국회사무처와 국회도서관이 202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국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시 아르고스를 사용자 편의 차원에서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할 것		

다. 국회예산정책처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예산정책자문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 활성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기획관리 및 정책총괄지원(4031-300)	제도개선	국회예산정책처
		지적사항	○ 2023년에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예산으로 3,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1,816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53.4%에 불과함. - 구체적으로, 사업추진비 800만원은 전액 집행되었으나, 일반수용비는 2,600만원 중 1,016만원을 집행함. ○ 이는 2022년에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신규 설치·운영하면서 예산을 증액하였으나, 분과위원회 개최실적이 3회에 불과하였고 개최 시기 또한 연말에 집중되는 등 2023년 운영 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하였기 때문임.		
		시정요구사항	○ 국회예산정책처는 예산정책자문위원회 분과위원회를 연말에 집중되지 않도록 운영을 개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	**의안 비용추계의 적시성 확보**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의안비용추계 및 조세분석(4032-301)	제도개선	국회예산정책처
		지적사항	○ 2023년도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의 회답기간 준수율이 전년대비 감소하고 평균 회답소요일수도 전년대비 늘어나, 전반적으로 회답의 적시성이 떨어지고 있음. - 회답기한 준수율: 70.7% → 62.6% (△8.1%p) - 평균 회답소요일수: 13.9일 → 17.8일 (3.9일) ○ 의안 비용추계가 지연될 경우 의안 심사에 적절하게 활용되기 어려워 비용추계의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회예산정책처는 의안 비용추계의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3	**재정경제통계시스템 활용도 · 인지도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예산정책처 정보화(4033-500)	제도개선	국회예산정책처
		지적사항	○ 국회예산정책처는 입법 및 예결산 심사에 필요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재정·경제 관련 주요 통계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재정경제통계시스템'을 운영 중임. ○ 시스템 구축 이후 이용실적을 살펴보면, 2020년 이후 이용자 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2023년 기준 국회 내부 일평균 이용자 수는 8.76명에 불과함. 활용도가 저조한 원인 중 하나는 통계수치의 최신화가 미흡한 점임. - 일평균 이용자 수: 82명('19) → 112명('20) → 106명('21) → 104명('22) → 92명('23)		
		시정요구사항	○ 국회예산정책처는 통계수치 최신화를 통한 재정통계시스템의 활용도·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라. 국회입법조사처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민간위탁교육 이용률 제고**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입법조사처 운영관리(5031-300)	제도개선	국회입법조사처
		지적사항	○ 국회입법조사처는 입법조사처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6개월 미만의 야간 전문과정 교육비를 지원하는 ‘입법지원서비스능력개발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매년 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그러나 동 사업의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2021년, 2023년에는 교육 실적이 전무했고, 교육이 이루어진 2019년과 2022년에도 예산집행률이 50%에 불과하여, 연례적으로 예산집행률이 저조함.		
		시정요구사항	○ 국회입법조사처는 민간위탁교육 프로그램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	**조사회답의 적시성 제고**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입법 및 정책 조사분석 서비스(5032-300)	제도개선	국회입법조사처
		지적사항	○ 전년대비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분석 회답 처리건수가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회답소요일수는 증가하여 평균적인 회답의 적시성이 떨어짐. - 조사회답 처리건수: 5,071건 → 4,822건 (△249건) - 평균 회답소요일수: 15.7일 → 16.9일 (1.2일) ○ 특히, 부서별로 조사분석 회답의 평균처리일의 편차가 최대 2배 이상 크게 나타나고 있고, 일부 부서는 전년대비 평균처리일이 7일 이상 늦어지고 있음. - 참고로, 국회입법조사처가 2023년에 실시한 「국회입법조사처 의정활동지원 만족도 조사」에서도 회답기간의 '적시성'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국회의원이 47.4%, 보좌진이 50%로 조사 지표 중 가장 낮았음.		
		시정요구사항	○ 국회입법조사처는 입법조사서비스의 적시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서별 업무량을 고려한 인력증원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3</td><td rowspan="3">조사회답 관련
외부자문 활성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입법 및 정책 조사분석 서비스(5032-300)</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국회입법조사처</td></tr>
<tr><td>지적사항</td><td>○ 국회입법조사처는 입법조사회답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심층적 분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있으며, 2023년에는 전문가 자문을 19건 실시함.

○ 최근 3년간 조사회답과 관련된 외부전문가 자문은 매년 15~25건 수준으로, 연간 국회입법조사처가 처리하는 조사회답이 약 5,000건 가량임을 고려할 때 전문가 자문이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최근 3년간 입법조사회답 건수 및 외부전문가 자문 건수]
<table><tr><th>구 분</th><th>2021년</th><th>2022년</th><th>2023년</th></tr><tr><td>입법조사회답 처리 건수(A)</td><td>5,763</td><td>5,071</td><td>4,822</td></tr><tr><td>외부전문가 자문 건수(B)</td><td>15</td><td>25</td><td>19</td></tr><tr><td>비율(A/B)</td><td>0.26%</td><td>0.49%</td><td>0.39%</td></tr></table>
- 참고로, 국회입법조사처가 2023년에 실시한 「국회입법조사처 의정활동지원 만족도 조사」에서도 응답자인 국회의원 및 보좌진의 약 25%가 입법조사회답 서비스의 만족도 제고 방안 중 하나로 “외부자문 적극활용”을 제시하는 등 외부자문에 대한 수요가 상당한 상황임.</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회입법조사처는 입법조사회답의 질적 제고를 위해 외부전문가 자문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	**분야별 균형을 고려한 보고서 발간**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장단기 입법 및 정책과제 개발(5032-301)	제도개선	국회입법조사처
		지적사항	○ 2023년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발간계획 및 실적에 따르면, ‘NARS 입법·정책’ 및 ‘NARS 현안분석’이 계획 대비 발간실적이 미진함. 이를 실·국별로 살펴보면, 정치행정 분야에 집중적으로 보고서가 발간되는 반면, 경제산업·사회문화 분야는 보고서 발간이 저조함. - 구체적으로, 2023년에 발간된 ‘NARS 입법·정책’ 23권 중 정치행정분야는 14권(61%), ‘NARS 현안분석’ 32권 중 정치행정분야가 16권(50%)이었음. ○ 실·국별 보고서 발간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은 당초 발간계획 수립 시에는 분야별로 고르게 보고서 발간을 추진하였으나, 경제산업 및 사회문화 분야의 보고서 발간실적이 계획 대비 저조하기 때문임. ○ 이와 같이 보고서 발간이 특정 분야에 편중될 경우 보고서의 주요 수요자인 국회의원 및 상임위원회의 다양한 입법·정책 조사 수요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회입법조사처는 다양한 입법·정책 수요에 부합하도록 분야별로 균형 있게 보고서 발간계획을 수립하고 점검·관리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	**보고서 발간시기 평준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장단기 입법 및 정책과제 개발(5032-301)	제도개선	국회입법조사처
		지적사항	○ 최근 3년간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하는 주요 보고서인 ‘NARS 입법·정책’과 ‘NARS 현안분석’의 발간 시기가 10월 이후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4/4분기 발간 비율: 60.0%('21) → 53.0%('22) → 58.2%('23) ○ 특히, 2023년 기준 ‘NARS 입법·정책’은 총 23건 중 19건(82.6%)이 4/4분기에 발간되었고, 12월에 발간된 건수는 14건(60.9%)에 달했음. ‘NARS 현안분석’은 총 32건 중 13건(40.6%)이 4/4분기에 발간되었음. ○ 이들 보고서가 회계연도 말(특히, 12월)에 집중적으로 발간될 경우 의원실에서 입법조사처 보고서를 활용하는 데 제한적인 문제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 발간이 연말에 집중되지 않도록 보고서를 시의성 있게 연중 고르게 발간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	**세미나 관련 예산 효율적 집행 도모**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법령 및 제도개선사항 조사분석(5032-302)	제도개선	국회입법조사처
		지적사항	○ 국회입법조사처는 2023년 11월 지방소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방소멸 위기, 실천적 방안과 대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총 2,342만원을 집행하였음. ○ 동 세미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비목인 일반용역비(210-14)를 세목조정을 통해 집행하였는데, 이는 예산편성 당시 계획되지 않은 예산집행일 뿐만 아니라 장소변경 등 사업수행방식 조정을 통해 절감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부합하지 않음. - 구체적으로,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 내부 토론회장 등이 아닌 무대·음향·조명장치 등이 구비되지 않은 ‘국회의정관 3층 중앙홀’에서 세미나를 개최함에 따라, 관련 시설·장비 설치를 위해 일반용역비 2,000만원을 세목조정을 통해 확보하여 1,985만원을 집행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국회입법조사처는 세미나·토론회 등을 개최할 경우 가급적 국회 내 회의 장소를 활용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 소모를 방지할 것		

마. 국가인권위원회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노후화된 인권교육 콘텐츠 시의성 확보 노력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인권교육 기획 및 운영(1032-301)	제도개선	국가인권위원회
		지적사항	○ 국가인권위원회는 사이버 인권교육 콘텐츠의 시의성을 고려하여 노후화된 콘텐츠의 경우 최대 5년(3년 원칙)을 유효기간으로 설정하고, 해마다 기존 콘텐츠에 대한 개정 작업과 신규 콘텐츠 제작을 병행하고 있음. ○ 2023년 사이버 인권교육 콘텐츠 및 이수 현황을 살펴보면, 총 43개 콘텐츠 중 2023년 기준으로 5년 전인 2018년 이전에 과정을 개시한 콘텐츠가 15개로 나타나고, 10년 전인 2013년 이전에 과정을 개시한 콘텐츠도 7개에 이르는 등 시의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①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군인 인권(2013년 과정 개시), 학교 폭력(2014년 과정 개시) 관련 콘텐츠, ② 2017년 과정 개시 후 다섯 차례 법률이 개정된 장애인차별법 관련 콘텐츠와 ③ 2022년 실시한 콘텐츠 분석 결과 사용중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기업과 인권(2019년 과정 개시) 관련 콘텐츠는 우선적으로 시의성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시정요구사항	○ 국가인권위원회는 노후화된 사이버 인권교육 콘텐츠의 시의성 확보 및 품질 제고와 인권분야별 적정 안배 등을 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기존 콘텐츠 개편 및 신규 콘텐츠 제작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	**전문상담위원제도 활성화 방안 모색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상담서비스 접근성 제고(1033-300)	제도개선	국가인권위원회
		지적사항	○ 2023년 전문상담위원 운영 사례비 예산으로 5,700만원 편성하여 1,200만원(21.1%)을 집행하였음. 최근 5년간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2020년 집행률은 2019년 대비 급감한 36.4%이고, 2023년 21.1%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 2020년 코로나-19로 인하여 방문상담이 제한되면서 상담실적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전문상담위원의 수를 축소하여 운영하였는데,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도 2019년(51명)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축소된 채 유지(2023년 26명)되고 있음. ○ 2019년에 1,083건이었던 상담실적이 2020년 코로나-19로 인하여 방문상담이 제한되면서 303건으로 급감하였고,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도 2023년 209건으로 전문상담위원 상담 실적이 2019년 대비 20~30% 수준으로 저조한 상황임.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방문상담은 전문상담위원, 직원 및 상담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방문상담 중 전문상담위원을 통한 상담이 차지하는 비율이 2021년 35.2%에서 2023년 29.2%로 줄어들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및 차별 피해자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서비스 제공이 위축되지 않도록 전문상담위원제도의 운영 전반을 점검·검토하여 전문상담위원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	**정보인권전문 위원회 운영 및 예산 집행 부적정**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1034-301)	제도개선	국가인권위원회
		지적사항	○ 정보인권전문위원회는 2023. 1. 16.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회 규칙」 개정을 통해 신설된 위원회로서 2023년 총 4회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3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하고 1회는 장소를 임차하여 개최하였으며, 참석사례비 등 소요 경비(1,719만원)는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1034-301) 사업에 이미 편성된 정보인권 포럼 관련 예산에서 집행하였음. ○ 위원회 운영 측면에서, 일반적인 다른 전문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있는 점, 전문위원회는 대규모 공간이 필요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회의장소를 임차하여 개최한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임. ○ 예산 집행 측면에서 회의장소 임차로 인하여 임차료(286만원)가 추가로 지출되었음.		
		시정요구사항	○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보인권전문위원회의 성격에 부합하도록 회의운영 및 소요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4</td><td rowspan="3">아셈
노인인권정책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확보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국제교류협력(1036-300)</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국가인권위원회</td></tr>
<tr><td>지적사항</td><td>○ 국가인권위원회는 아셈 노인인권정책센터가 설립된 2018년 이후 해당 센터의 예산 전액을 국제부담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2018년 5억 3,000만원을 지원한 이후 2023년까지 매년 6억 8,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아셈 노인인권정책센터 국제부담금 지원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table>
<tr><th>구 분</th><th>2018년</th><th>2019년</th><th>2020년</th><th>2021년</th><th>2022년</th><th>2023년</th></tr>
<tr><td>예산액</td><td>530</td><td>686</td><td>686</td><td>686</td><td>686</td><td>686</td></tr>
</table>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 아셈 노인인권정책센터 설립 이후 협력기관을 통한 외부자금 조달 현황을 보면, 2021년 이전에는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한 사례가 있으나, 2022년~2023년에는 외부자금을 조달하여 공동사업 형태로 추진한 실적은 없음.</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가인권위원회는 아셈 노인인권정책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부담금 이외에 아셈 회원국 또는 다른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을 통하여 재원조달 방안을 다각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	**시민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내교류협력(1036-303)	제도개선	국가인권위원회
		지적사항	○ 국내교류협력(1036-303) 사업에 시민사회단체 보조금 예산으로 1억 7,900만원을 편성하여 이 중 1억 7,400만원을 집행하고 5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3년에는 총 16개 단체에 대하여 보조사업을 실시하였는데, 각 단체별로 570만원에서 2,200만원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음. ○ 시민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 2019년에 기획재정부로부터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시 해당 보조사업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이므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후, 국회 등으로부터 해당 보조사업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기획재정부의 지적 이후 5년이 지난 현재까지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으로 조속한 시일 내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시민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은 동일 단체에서 총 5회에 걸쳐 선정되는 등 매년 특정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선정되는 문제가 있는 상황임. - 5회 선정단체: 사단법인 인권의학연구소(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3년)		
		시정요구사항	○ 국가인권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의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고, 동일 단체가 지속적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하는 등 해당 사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바.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1</td><td rowspan="3">인건비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인건비(1001-100)</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td></tr>
<tr><td>지적사항</td><td>❍ 2023년 인건비(1001-100) 예산현액 422억 8,800만원 중 366억 2,300만원을 집행하고, 56억 6,500만원을 불용하여 집행률(86.6%)이 상대적으로 부진함.
- 이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전 정부 대비 인력을 감축·운영함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 2023년 12월 기준 정원 대비 약 25% 감축 운영 중(정원 490명 / 현원 368명)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인력 현황]
(2023. 12월 기준, 단위: 명)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총 계</th><th>정무직</th><th>비서관</th><th>행정관</th><th>행정요원</th></tr>
<tr><td rowspan="3">대통령
비서실</td><td>정원</td><td>443</td><td>12</td><td>38</td><td>238</td><td>155</td></tr>
<tr><td>현원</td><td>336</td><td>7</td><td>34</td><td>152</td><td>143</td></tr>
<tr><td>과부족</td><td>-107</td><td>-5</td><td>-4</td><td>-86</td><td>-12</td></tr>
<tr><td rowspan="3">국가
안보실</td><td>정원</td><td>47</td><td>3</td><td>7</td><td>30</td><td>7</td></tr>
<tr><td>현원</td><td>32</td><td>3</td><td>7</td><td>17</td><td>5</td></tr>
<tr><td>과부족</td><td>-15</td><td>-</td><td>-</td><td>-13</td><td>-2</td></tr>
<tr><td colspan="2">정원 계</td><td>490</td><td>15</td><td>45</td><td>268</td><td>162</td></tr>
<tr><td colspan="2">현원 계(정원 대비 비율)</td><td>368(75%)</td><td>10(67%)</td><td>41(91%)</td><td>169(63%)</td><td>148(91%)</td></tr>
</table>
❍ 이러한 정원대비 부족한 인력 운영은 특근매식비(210-05) 및 직책수행경비(250-02)에도 영향을 주어 본예산 대비 집행률이 각 86.3%와 83.8%로 높지 않은 상황임.</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인건비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2</td><td rowspan="3">일용임금의
연례적
집행부진 개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기본경비(1011-200)</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td></tr>
<tr><td>지적사항</td><td>○ 「기본경비」는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기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운영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208억 3,700만원 중 195억 3,800만원을 집행하고 12억 9,900만원을 불용하였음.
○ 최근 4개년 간 「기본경비」 내 일용임금(110-04)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2021년도를 제외하고는 연례적으로 집행률이 70%에 미달한 것으로 파악됨.
- 특히 2023년의 경우 예산현액 3억 3,100만원 중 7,8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5,300만원을 불용하여 집행률이 23.6%에 불과하였음.
[최근 4년간 일용임금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table>
<tr><th>구 분</th><th>예산액</th><th>예산현액(A)</th><th>집행액(B)</th><th>집행률(B/A)</th><th>불용액</th></tr>
<tr><td>2020년도</td><td>296</td><td>296</td><td>129</td><td>43.6</td><td>167</td></tr>
<tr><td>2021년도</td><td>300</td><td>300</td><td>262</td><td>87.3</td><td>39</td></tr>
<tr><td>2022년도</td><td>315</td><td>315</td><td>219</td><td>69.5</td><td>96</td></tr>
<tr><td>2023년도</td><td>331</td><td>331</td><td>78</td><td>23.6</td><td>253</td></tr>
</table>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일용임금 집행 대상 인력소요가 한시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집행이 다소 저조하였고, 2024년부터 각종 행사지원, 기록물 정리, 통·번역 등의 인력 소요가 발생함에 따라 집행률이 높아질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2024년 8월 말 기준 일용임금 집행률은 11.4%(3억 4,100만원 중 3,900만원 집행)에 불과한 상황임.</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예산안 편성 시 일용임금의 적정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예산을 조정함으로써 집행률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3</td><td rowspan="3">실제 소요에
기반한 적정
예산 편성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기본경비(1011-200)</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td></tr>
<tr><td>지적사항</td><td>○ 「기본경비」는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기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운영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208억 3,700만원 중 195억 3,800만원을 집행하고 12억 9,900만원을 불용하였음.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국외업무여비(220-02) 재원 마련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전용 및 세목조정 등 예산변경을 실시하였음.
- 당초 항공임 1억 9,600만원 및 숙박료 8,000만원 등 2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임차료(210-07)에서 2억원을 전용하고, 국내여비(220-01)에서 2억 3,540만원을 세목조정하여 당초 편성한 예산 대비 254% 증가한 7억 200만원을 집행하였음.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정상회담 후속조치 등 국외출장 소요 증가에 따라 불가피하게 전용 및 세목조정을 실시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최근 4년간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2023년도 초과집행된 예산의 규모가 과도한 측면이 있음.국회의 예산안 심의 취지를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최근 4년간 국외업무여비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table><tr><th>구분</th><th>예산액(A)</th><th>이·전용등</th><th>예산현액</th><th>집행액(B)</th><th>불용액</th><th>집행률(B/A)</th></tr><tr><td>2020년도</td><td>300</td><td>△50</td><td>250</td><td>213</td><td>37</td><td>71</td></tr><tr><td>2021년도</td><td>270</td><td>150</td><td>420</td><td>405</td><td>15</td><td>150</td></tr><tr><td>2022년도</td><td>253</td><td>△13</td><td>240</td><td>214</td><td>26</td><td>84.6</td></tr><tr><td>2023년도</td><td>276</td><td>426</td><td>702</td><td>702</td><td>-</td><td>254.3</td></tr></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향후 기본경비 예산 편성 시 실제 소요를 바탕으로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 전용 및 세목조정 등 예산 변경을 최소화 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	**비체계적인 세목조정 지양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정운영관리(1131-301),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1133-600)	제도개선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지적사항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2023회계연도 「국정운영관리」 및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일부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세목조정을 실시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 첫째, 「국정운영관리」의 경우 지난 2023년 7월 ‘일반수용비 부족’을 이유로 일반용역비(210-14) 1억 6,120만원을 일반수용비(210-01)로 세목조정하였으나, 같은 달에 동일한 금액을 다시 일반용역비(210-14)로 세목을 조정하였음. - 이후 9월에 다시 일반용역비(210-14) 1억 6,120만원을 일반수용비(210-01)로 다시 세목조정 하여 비체계적 세목조정이 있었음. ○ 둘째,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의 경우 지난 2023년 12월 ‘불용 최소화 및 사업량 조정’을 이유로 관리용역비에서(210-15) 3,000만원을 일반수용비(210-01)로 세목조정하였으나, 같은 달 조정받은 일반수용비(210-01) 3,000만원을 다시 관리용역비(210-15)로 세목조정 하였음. ○ 상기 두 사안과 같이 동일한 세목 간 동일한 금액의 세목조정이 수 차례 이루어지거나, 세목조정된 예산이 바로 다시 원래 세목으로 환원되었다는 점은 세목조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측면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불가피하게 예산을 변경하여 집행하는 경우에는 체계적인 집행계획 수립을 통해 불필요한 세목조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	**정책연구용역의 보다 적극적인 등록·공개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정운영관리(1131-301),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1133-600)	제도개선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지적사항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2023회계연도 정책연구용역 수행을 위하여 「국정운영관리」 및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 등 2개 세부사업에 편성된 정책연구비(260-02) 예산현액 5억 4,000만원 중 5억 600만원을 집행하고, 3,400만원을 불용하였음. - 「국정운영관리」에서 12건,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에서 3건 등 총 15건의 정책연구용역 수행 ○ 2023년 수행한 정책연구용역 총 15건 중 정부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3조에 근거하여 구축·운영하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등록한 용역은 8건이고, 이 중 2건을 공개하여 전체 용역 중 공개율은 13.3%에 해당함. * 참고로, PRISM에 등록하였으나 공개하지 아니한 6건은 국민이나 타 기관이 해당 연구용역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미등록과 유사함.		
		시정요구사항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향후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타 부처의 중복연구 방지 및 연구용역 결과 활용 등을 위하여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보다 적극적으로 등록·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6</td><td rowspan="3">시설관리 및
개선 소요 관련
적정예산
사전반영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시설관리 및 개선(1131-303)</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td></tr>
<tr><td>지적사항</td><td>❍ 「시설관리 및 개선」은 청사 경내 건물 및 각종 시설물 등 유지관리를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 예산현액 51억 7,100만원 중 50억 1,4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5,700만원이 불용되었음.
❍ 당초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던 실시설계비(420-02)에 대하여, 동 사업 내 공사비(420-3)에서 1억 1,000만원을 조정받은 예산현액 1억 5,000만원 중 1억 3,300만원을 집행하고 1,700만원을 불용하여 본예산 대비 333%의 집행률을 기록함.
[시설관리 및 개선 내 실시설계비 및 공사비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table>
<tr><th>구 분</th><th>예산액</th><th>이·전용</th><th>예비비</th><th>예산현액</th><th>집행액</th><th>불용액</th></tr>
<tr><td>실시설계비(420-02)</td><td>40</td><td>110</td><td>-</td><td>150</td><td>133</td><td>17</td></tr>
<tr><td>공사비(420-03)</td><td>2,890</td><td>△110</td><td>-</td><td>2,780</td><td>2,686</td><td>94</td></tr>
</table>
❍ 청사의 노후화에 따른 공사수요가 있다 하더라도 예산안 확정시 당초 계획에 없던 사업을 세목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그 결과 당초 예산 규모를 상당히 초과하여 집행함.</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청사 등 노후화 시설 및 설비에 대한 개보수 공사수요를 사전에 면밀히 파악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연도별 계획에 따라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td></tr>
</table>

사. 대통령경호처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1</td><td rowspan="3">연례적 경호장비
납품 지연문제
개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세입 - 위약금(57-572)</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대통령경호처</td></tr>
<tr><td>지적사항</td><td>○ 「위약금」은 지체상금 및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 등 법령과 계약에 의거하여 국가가 수납하는 항목으로, 2023년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경호장비 납품지연을 이유로 1,300만원을 위약금으로 징수결정하여 전부 수납하였음.
- 지체상금은 예산안 편성 당시에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대통령경호처는 세입예산으로 위약금을 편성하지 않고 있으나, 2019년 이후 매년 위약금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고 있음.
[최근 5년간 대통령경호처 위약금 수납 현황]
(단위: 백만원)
<table>
<tr><th>구분</th><th>예산액</th><th>징수결정액</th><th>수납액</th><th>미수납액</th><th>불납결손액</th></tr>
<tr><td>2019년도</td><td>0</td><td>13</td><td>13</td><td>0</td><td>0</td></tr>
<tr><td>2020년도</td><td>0</td><td>10</td><td>10</td><td>0</td><td>0</td></tr>
<tr><td>2021년도</td><td>0</td><td>20</td><td>20</td><td>0</td><td>0</td></tr>
<tr><td>2022년도</td><td>0</td><td>6</td><td>6</td><td>0</td><td>0</td></tr>
<tr><td>2023년도</td><td>0</td><td>13</td><td>13</td><td>0</td><td>0</td></tr>
</table>
○ 납품기한 미준수 등에 기인한 경호장비 납품 지연은 차질 없는 경호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음.</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대통령경호처는 경호장비를 구매함에 있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납품 지연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2</td><td rowspan="3">용역사업 추진 시
계약 관계법령
준수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1231-50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대통령경호처</td></tr>
<tr><td>지적사항</td><td>○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는 대통령경호처의 기관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이며, 이 중 ‘일반용역비(210-14)’는 재무, 공보업무 등의 용역을 위한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2억 1,800만원 중 2억 1,100만원이 집행되고, 700만원이 불용되었음.
- 대통령경호처는 일반용역비를 통해 ‘재무결산 및 회계, 예산 업무지원을 위한 용역’에 1,90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2023회계연도 시작 이전인 2022년 11월에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이 회계연도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
[2023회계연도 재무결산 위탁용역 계약 현황]
(단위: 백만원)
<table>
<tr><th>계약명</th><th>발주금액
(입찰공고서)</th><th>계약금액
(계약서)</th><th>계약 기간</th><th>계약유형</th></tr>
<tr><td>재무결산위탁용역</td><td>20</td><td>19.5</td><td>2022.11. ~ 2023.11.</td><td>수의</td></tr>
</table>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임차계약 · 운송계약 · 보관계약 등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회계연도 시작 전에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상기 계약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대통령경호처는 용역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국가재정법」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	AI X-Ray 프로그램 개발사업의 신속·면밀한 추진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경호경비과학화(1231-501)	제도개선	대통령경호처
		지적사항	○ 「경호경비과학화」는 보안검색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빅데이터에 근거하여 위험물 여부를 판독하는 인공지능(AI) X-Ray 적용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하여 2023년도에 신규 편성된 R&D 사업으로, 2023년도의 경우 연구개발출연금(360-05) 명목으로 10억원이 편성되어 전액 집행되었음. - 동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다부처 R&D 사업으로, ① 일반적 금지물품과 전략적 위험물품 등에 대한 ‘빅데이터 구축’, ② 이를 바탕으로 과학적 검색기법을 기반으로 하는 ‘AI 검색 프로그램 개발’, ③ 이러한 AI 검색기술을 이용한 ‘보안검색업무 교육체계 정립’ 등 3개의 단위과제로 구성 ○ 동 R&D 사업 구축을 위하여 당초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개년간 총 100억원의 예산을 대통령경호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7 비율로 분담하여 집행할 예정이었으나, - 2024년도 예산안 편성을 거치면서 사업 총 규모는 동일하되, 대통령경호처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분담 비율이 종전 3:7에서 5:5로, 사업기간이 종전 3개년에서 5개년으로 변경되었음. ○ 대통령경호처는 기관 간 예산 분담비율이 변경(3:7 ⇒ 5:5)되는 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분담금 감소분이 대통령경호처 예산에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2024년도 예산이 줄어들어 총 사업기간이 길어지게 되었으므로, 남은 3개년도(2025년부터 2027년까지) 예산을 집중 투입하여 사업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설명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대통령경호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면밀히 소통하여 예산 집중 투입에 따른 사업 기간의 단축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관련 예산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3. 부대의견 : 2건

○ 국회사무처는 승강기 근로자를 비롯한 공무직 근로자의 업무 대기 공간을 마련할 때 업무와 휴식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국회사무처는 필리버스터 등 철야 운영 시 필수 종사자의 초과근무 수당 제한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한다.